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공 백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한 사회의 발전 정도는 그 사회가 소외된 집단이나 약자에 대해 얼마만큼 배려하고 지원하는가에 따라 가늠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오랜 역사를 미성숙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규정되어 일방적인 보호와 규제의 대상이 되어온 아동·청소년의 경우,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모든 권리를 누리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아예 배제되는 등 여전히 이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존재하고 있다.

다행히 1991년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서서히 일어나고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청소년분야에서는 청소년의 권리와 자율·참여를 강조하는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1998~2002)'과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제3차 청소년육성 기본계획(2003~2007)'의 시행으로 구체적인 청소년인권신장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 출범(2001)으로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구체적인 활동과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본격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청소년 스스로의 인권의식 성장으로 자발적인 청소년운동들이 싹을 틔우기도 하였으며, 민간 단체들에서 청소년 인권교육이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활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가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다양한 청소년 인권문제들 - 폭력, 왕따, 학교붕괴, 경쟁적 입시체제, 차별, 성폭력, 자치활동 규제, 노동착취, 취약계층 청소년의 기본권 문제 등 - 이 우리사회의 한 단면으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

이다.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러한 국내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을 담은 제2차 정부보고서를 심의한 후, 1차 정부보고서 심의(1996)에 대한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우려하면서 한국의 입시교육과 경쟁적인 교육시스템 개선, 경제적 취약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학생회나 교외 정치활동 등 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 보장, 체벌 금지, 장애청소년 및 이주노동자 가정 청소년 인권보장 등 각 분야에서 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노력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연구분야에서도 그 동안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왔다. 청소년 인권과 관련 국내외 동향 연구(이용교·김영지·임지연, 1999), 청소년 권리의식 조사(정희욱·길은배·김정래, 2000), 청소년 권리신장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김영지·이용교·안재희, 2001), 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개발 연구(길은배·이용교·김영지, 2001) 등이 그것이며, 그 결과 청소년의 인권실태와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청소년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정도와 인권정책 효과 평가를 위한 척도로 '청소년인권지표'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청소년 인권신장 노력들이 실질적인 인권침해 사례 해결과 인권증진 활동으로 이어져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제 2003년은 그 동안의 청소년 인권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결집하여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시점이다. 보다 체계적으로 청소년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상담하며, 전사회적으로 청소년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해 인권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칠 때이다.

즉, 실질적인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청소년 인권침해 행위 조사 및 권고, 인권교육, 인권상황에 대한 연구조사 등을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며 이의 필요성은 청소년 및 인권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바 있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

로 ‘청소년인권센터’이다. 청소년인권센터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한 상담과 옹호, 인권교육, 인권에 대한 조사 연구와 홍보, 인권 관련 정보의 집적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다.

이미 일부 인권단체나 청소년단체에서 자체 사업비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청소년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 인권관련 조사, 침해사례 접수, 인권교육 등의 활동을 하거나, 청소년 스스로 인권자치단체를 결성하여 인권침해 사례 조사, 캠페인이나 건의활동 등을 펼치고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과 공식적인 위상 부재로 제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현재 설치·운영중인 청소년인권센터의 운영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청소년인권 전담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모색하고 전국적으로 청소년인권 전담기구를 확대 설치·운영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인권 신장을 위해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소년인권센터’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청소년인권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1)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실태 파악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인권센터’의 역할과 기능 등 운영 실태를 알아보고, 특히 운영과정의 어려움과 문제점, 개선과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설립·운영할 ‘청소년인권센터’ 운영모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외국의 청소년인권 신장 활동 사례분석

외국의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과 프로그램 사례들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청소년인권 신장 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에 시사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청소년인권센터의 효과적인 역할과 기능을 추출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기구 및 법·제도, 아동권리협약 이행 노력과 관련된 정부 및 민간단체의 활동, 아동권리 전문 연구기관, 다양한 인권신장 단체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하도록 한다.

(3) 청소년인권과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설문조사

청소년인권센터가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해 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 관계 전문가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인권센터의 역할과 기능 및 효과적인 운영형태와 전략,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청소년인권사업은 현재 청소년들의 인권의식과 실태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청소년인권실태와 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함께 실시하도록 한다.

(4)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제시

청소년인권센터는, 사례에 따라 어느정도의 차별성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청소년인권 침해 사례 접수 및 상담, 인권교육, 인권에 대한 조사연구와 홍보, 인권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경우 재정 및 위상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인권센터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인권특성의 특성과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와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청소년인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고,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기구와 제도에 대한 문헌자료를 검토·분석한다.

(2) 전문가 자문

연구의 효과적 진행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구체적으로 청소년인권센터의 위상과 역할, 조직과 기능, 주요사업 및 자원, 효과적 운영 전략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한국사회의 청소년인권 신장 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여론을 수렴한다.

(3) 국내·외 사례조사

국내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사례에 대해 현지 방문조사와 우편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조직과 기능,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어려움, 활성화 방안 등을 파악한다. 또한 선진외국의 청소년 인권신장 활동과 인권 전담기구의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청소년인권 신장 활동과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추출하도록 한다.

(4) 설문조사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인권과 인권전담기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인권실태와 청소년인권센터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 청소년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파악한다.

(5) 관계자 워크숍

청소년 인권신장 활동과 청소년인권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학계·정책 관련 전문가, 청소년들이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며, 한국의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 아이디어와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II. 청소년 인권현황과 개선 방향

1. 아동·청소년 인권 현황
2.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공 백

II. 청소년 인권현황과 개선 방향

1. 아동·청소년 인권 현황

청소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장유유서를 강조하였고, 가부장제 생활양식이 뿌리깊기에 아동과 청소년은 한 인격체로 대우받기 어려웠다. 아동의 권리신장에 관심을 가진 선각자들이 1923년에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아동의 권리 공약3장을 선포하였지만, 연령차별은 아직도 불식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1989년에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1991년에 비준하였고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의 인권 실태는 협약의 정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은 주기적으로 협약의 이행 상황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1994년 11월에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2000년 5월에 제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아동권리에 관심있는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2002년 6월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민간단체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1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보고서 심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심사를 마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1월 31일에 한국정부에 제2차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이 글은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차 국가보고서와 민간단체의 보고서 그리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국가보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의한 사항과 심사후에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실태와 발전방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은 18세 미만이므로 이 글의 ‘아동’에는 우리 사회의 통념상 청소년인 중·고등학생이 포괄되어 있다.

(1) 일반원칙

아동권리협약은 무차별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생명·생존과 발달권, 그리고 아동에 대한 의사존중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한국은 국가보고서를 통해서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신분애 따른 특권과 불합리한 차별 및 연좌제를 금지함으로써 아동에 부당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종차별이나 민족간의 분쟁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였다(변용찬·서문희·배화옥, 1998: 27).

그런데, 한국에서 아동에 대한 연령차별은 매우 심각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은 심한 인종차별을 겪고 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에 20세 이하 외국인 아동의 수는 53,627명이고 전체 외국인의 9.71%를 차지한다(대한민국, 2003: 3). 그중 상당수는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녀이고, 이들은 비록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어렵다.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의 국민만을 다루지 않고, 자국의 관할권 안에 있는 모든 아동에게 어떤 종류의 차별도 해서는 안된다고 한 점에서 볼 때 이는 심각한 인종 차별이다.

한국 아동의 권리 중에서 가장 경시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의사존중의 원칙’이다. 아동의 권리 중에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은 어느 정도 인식이 높아졌지만, 아동의 참여권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아동은 가정과 학교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고 관철할 법적 힘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법 제909조는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고 명시하여 자녀인 아동의 의사결정권

을 부모에게 유보하고 있다. 또한,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어 자녀의 양육이나 친권자를 지정할 때 15세 미만은 “의사표명권”조차도 없다.

이처럼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부모나 보호자가 대리할 수 있다는 ‘가부장적 사고와 생활양식’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봉건적 가치인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이익을 대리할 수 있고, 교사는 학생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본다. 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대와 같이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조차도 법령은 부모에게 관대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참여권은 철저히 배제되거나, 발달 단계에 상응한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대한민국 정부가 2차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아동권리 관련 법규의 제·개정’에 담은 주요 내용에는 민법과 국적법의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997년 12월에 개정된 민법은 제781조 제1항 가운데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출생아동의 국적 취득과 호적등재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국적법 제2조 제1항을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부모 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였고, 개정된 국적법은 제10조 제2항에서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원국적을 상실할 수 없는 아동이 우리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민법과 국적법은 한국인 아내가 속지주의를 채택한 외국인 남편사이에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할 때, 자녀의 국적을 취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이다. 또한, 속지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는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중국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늘어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는 여전히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어렵다. 아버지가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한국에서 새로 태어난 자녀도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연좌제의 일종이다. 이들 자녀들은 국적을 취득할 수 없기에 호적과 주민등록에 등재될 수 없고,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도 없으며, 취학연령이 되어도 학교에 입학하기 어렵다. 어머니의 동거인으로 등재하는 편법이 있지만, 이렇게 되면 아동은 부모와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시민적 권리와 자유 중에는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고문과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한국에 민주정부가 수립된 것이 55년이 지났고,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11년이 지났지만 아동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한국정부는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결사 및 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받으며, 이는 아동에 대하여도 차등 없이 적용된다”(변용찬·서문희·배화옥, 1998: 35)고 주장하지만, 20세 미만은 공직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학생회 회칙의 51.2%는 “학생의 정치활동”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정치활동이라 함은 정당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치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구로건강복지센터 외, 2002: 9). 학교당국은 학생이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하는 것조차 ‘정치활동’으로 규제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규제는 교육적 필요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시민적 권리는 직접 실천에 의해서 습득될 수 있다. 마치, 날개짓을 한 어린 새만이 하늘을 날 수 있듯이, 아동도 스스로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누릴 때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심지어 아동은 “비인도적 취급”이라고 볼 수 있는 체벌을 제도적으로

받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동법시행령 제31조 7항에서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체벌을 금지하고 비폭력적인 훈육방법을 개발해야 할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3월 18일에 ‘체벌 허용’을 골자로 한 훈육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형법에도 없는 체벌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각급 학교의 교칙이 체벌을 용인하기 때문이다.

2000년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교사 10명 가운데 7명은 학생들에게 체벌한 경험이 있고, 서울시 중·고생 503명 대상 조사 결과 한달 동안 교사에게 맞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13.7%(69명)로, 친구나 선후배에 의한 폭력 경험이 있는 학생 8.8%(41명)보다 높게 나타났다(구로건강복지센터 외, 2002: 14).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 9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10,381개 초·중·고교 가운데 72.6%인 7,536개교가 학칙에 체벌 허용조항을 담고 있다. 이를 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65.7%와, 중·고교의 각각 80.2%가 체벌을 허용했다(한겨레, 2003년 9월 15일).

(3) 가정환경과 대리보호

대한민국이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이래로 아동의 권리가 가장 실질적으로 신장된 영역은 가정환경과 대리보호이다. 한국 정부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보육의 사회화를 획기적으로 신장시켰다. 2002년 현재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2만여개소이고 보육을 받는 아동은 70만명이 넘는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자녀에게는 보육비의 50%를 감면하기 때문에 보육여건은 양호한 상태이다.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학대받는 아동은 법적 보호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사례를 보고받는 1차 기관은 경찰과 아동학대예방센터이고, 아동학대예방센터는 현재 중앙센터 1개소와 시도 지역센터가 17개소가 있다.

2001년 한해동안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보고된 2,606건의 사례 중 2,105건이 아동학대로 판명되었다. 학대 유형을 보면 방임이 31.9%(672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신체적 학대 22.6%(476명), 유기 6.4%(134명), 정서적 학대 5.4%(114명), 성적 학대 4.1%(86명), 그리고 복합적 학대가 29.6%(623명)이었다(대한민국, 2003: 6).

학대받는 아동이 보다 적절히 보호되기 위해서는 치료형 보호시설이 시급하다. 현재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위기상담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학대받은 아동의 53.0%가 피해자의 집으로 돌려보내지고 있다. 나머지는 시설보호(18.0%), 센터의 임시보호(15.0%), 친인척보호(7.0%), 다른 기관에 위탁(7.0%) 등으로 보호되지만(대한민국, 2002: 7), 치료형 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학대받는 아동들이 별 대책없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고 있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생활권단위(인구 50만명 수준)에 1개소씩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요보호아동이 발생되면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지정하여 보호하였다. “소년이 가장이 될 수 있느냐”는 전문가와 국제사회의 비판을 접한 한국 정부는 아동과 동거하는 조부모나 친인척 혹은 자격을 갖춘 자를 “위탁부모”로 지정하고, 가정위탁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3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시·도에 1개소씩 설치하였다.

한국정부는 극단적으로 양육위기에 빠진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정책을 개발하였지만, 부모의 이혼시에 자녀의 의사표시권을 인정하

지 않고, 이혼후 부모와의 면접교섭권을 주지 않으며, 양육비의 안정적인 확보에 대해서는 별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2001년 한해 동안 이혼한 부부가 13만 5천쌍에 이르고, 그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이 70%이므로 매년 새로 이혼가정에서 살게 되는 아동이 10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한국은 부모 이혼시에 15세 미만 자녀의 의사표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률이혼시 판사는 자녀가 부모 중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에 대해서 자녀의 의사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의사를 묻는 경우에도 법정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아동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기 어렵다. 부모가 이혼한 이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있지만, 부모에 대한 자녀의 면접교섭권은 없기 때문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이를 바꾸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한국정부는 2차보고서에 대한 추가 서면답변에서도 “국내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유보를 철회하는 것이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협약 9조 3항에 대한 유보에 관해서는 이혼과 아동보호에 관련된 법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아동의 부모면접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하여(대한민국, 2003: 13), 조만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이혼시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면서도 자녀의 부모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란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자녀를 부모의 종속물이고, 자녀의 권리는 부모의 친권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61.3%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구로건강복지센터 외, 2002: 15), 양육책임이 있는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징수

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점이 큰 문제이다. 외국에서는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불하고 지급의무자에게 양육비를 받거나, 양육비 지급의무자(대체로 이혼한 아버지)의 직장에서 임금의 일부를 직접 양육비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한국 정부도 이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입양제도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협약 제21조(a)를 유보하였다. 2000년 한해 동안 입양된 아동은 4,046명이고, 그중 국외로 입양된 아동은 전체의 58.3%이다. 이는 과거 입양아동의 2/3가 국외입양인 것에 비교할 때, 국외입양이 줄었다. 하지만, 아동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주 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이 2001년 한 해 동안만도 2,360명에 이른 것은 아동을 위한 입양이라기보다는 부모를 위한 입양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외입양이 많은 이유는 입양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입양알선기관이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양알선기관은 국내입양의 비용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입양수수료를 국내보다 4~5배가량 많이 받을 수 있는 국외입양을 중단하기 어렵다. 국내입양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서 입양알선기관이 경제적인 이유로 국외입양을 더 많이 하는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4) 기초보건과 복지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통해서 아동의 기초보건과 복지에 획기적인 신장이 있었다. 1980년에 출생 1,000명당 17.3명이던 영아사망율이 1990년에는 12.8명으로 저하되었다(변용찬·서문희·배화옥, 1998: 51).

그러나, 정부보고서가 인용한 '1997년 통계청 사망통계연보'를 분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0~9세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한국의 사고사망자는 30명이어서 일본의 10명, 영국의 7명

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아동의 사고사망률이 높은 것은 안전 시설과 점검이 미비하기 때문이다(구로건강복지센터 외, 2002: 6). 특히, 교통사고에 의한 아동 사망이 매우 커서 1997년의 경우 1~9세와 10~19세 사망원인의 1위가 교통사고이었다. 2001년 한해동안 19세 이하로 자살한 사람은 271명에 이르고,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757명이다(대한민국, 2003: 8).

한국은 1997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국민연금을 확대적용하며 건강보험을 통합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했다. 국가는 소득이 낮은 국민 중 150만여 명을 수급자로 지정하여, 생계급여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에게는 중·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교육급여로 지급한다.

그런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아동수당제도가 없고 도입할 계획조차 없다. 2001년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유도 아동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비용을 사실상 부모가 모두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

기초보건과 복지분야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 양육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처럼 아동의 양육을 거의 전적으로 가족에게 맡긴다면, 빈곤가족의 아동은 삶의 질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아동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높이려면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무상교육을 확대하며, 교육급여의 적용대상자와 급여내용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교육급여를 고등학교에서 전문대학(대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아동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취학을

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다. 헌법은 아동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의 무상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2004년도에는 3학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2년 현재 초등학교 취학률은 100.0%이고, 진학률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99.9%,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94.8%, 일반고에서 대학교로 93.9%, 실업고에서 대학교로 54.4%이기에 취학률과 진학률은 매우 높다(문화관광부, 2002).

그런데, 한국의 학교교육은 내용과 질, 만족도 등에서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아침 7시 30분까지 등교하게 하는 “0교시”와 방과후에도 저녁 10시까지 보충수업, 특기적성 교육, 심화학습 등의 명목으로 학생들을 학교에 머물게 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은 학생청소년의 삶을 황폐하게 한다. 학습시간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은 여가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또한, 학교에서 교칙, 선도규정, 용어규정 등을 통해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을 광범위하게 억압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교칙은 학생의 정치활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학교장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은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선도규정과 용의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 많고, 이에 의거하여 학생을 징계할 때에도 당사자에게 소명이나 재심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이 모든 일이 “교육적 필요”라는 이유로 실행된다.

2003년에 새로 집권한 노무현 정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공약을 하였기에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기대된다. 학교에서 교육이 정상화되어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아동과 청소년이 여가와 문화적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6) 특별보호조치

한국에서 소년비행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범죄행위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이고, 촉법행위는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또한 우범행위는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격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여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체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격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다.

소년의 비행을 어떻게 다루냐는 국가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추세는 비행소년이 인격형성 과정에 있고 순화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벌보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소년법 등에서 소년의 비행을 일반범죄와 달리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001년의 경우 소년범죄자는 138,030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5.7%이다.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1997년 7.8%에서 매년 조금씩 줄어서 2001년에는 5.7%로 감소하였다. 소년범죄의 유형은 폭력범이 37.0%, 재산범이 24.5%, 교통사범이 30.3%,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이 2.5%이었다.

아동의 권리의 관점에서 소년범죄를 보면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은 “우범행위”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까지도 사법적 관점에서 다른 것은 아동과 청소년의 행위를 법의 이름으로 부당하게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소년법은 20세 미만의 소년범죄자를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하여 교정교화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2000년 한해 동안 보호처분을 받은 32,270명 중에서 보호자(대체로 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신

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 28,572명으로 가장 많고,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과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한 처분은 896명, 병원·요양소에 위탁하는 처분은 10명에 불과했다. 약물오남용을 한 경우나 정신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위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시설이 없어서 보호소년을 보호관찰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문화관광부, 2001: 543-544).

한편,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는 성인들은 형사처벌되고,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데, 성매수 청소년을 위한 보호서비스가 매우 미흡하다. 2001년에 성적 착취의 피해자가 된 아동과 미성년자는 매매춘 41명, 강간 등 2,205명, 성매수 대상자 1,102명이지만, 보호·재활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은 1,222명에 불과하다(대한민국, 2003: 12).

성범죄 피해자인 아동은 신속하게 법적 구제를 받고 의료적 치료와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법률체계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여 그 피해를 증명하도록 하기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이를 기피하여 고소를 취하한다. 이때 역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해자를 죄인으로 만들기도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전문가가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증거로 채택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2.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1) 국가적 권리기구

한국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수립·시행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아동 관련 정책의 조

정과 협약 이행사항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아동복지정책을 시행하고, 문화관광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를 위한 상설 “국가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없다. 한국은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국가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답변했다가, 제2차 국가보고서의 심의과정에서 상설 국가위원회는 없다고 해명했다. 즉, 정부대표단은 “아동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이 위원회는 상설적인 기구가 아니라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위원회다. 2차 보고서에 기술된 ‘아동권리조정위원회’도 그렇다. 우리 대표단과 나는 이런 식으로 밝혀진 것을 유감으로 여기며, 2차보고서에 기술된 아동권리조정위원회를 마찬가지로 성격 가진 것으로, 민간단체와 조정 노력을 하기 위한 기구로 이해해주길 요청한다. 우리는 아동 권리 상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협약의 평가에 관하여 상설적인 모니터링 기구를 설립할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인권운동사랑방 역, 2003: 12).

한국 정부는 보건복지부에 다양한 민간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11명 위원중에 아동권 전문가는 한명도 없고, 1년 2개월동안 3천건이 넘는 진정 사건 중에서 아동권에 관한 것은 단 한 건(장애아라는 이유로 유치원 입학이 거절당한 사건)에 불과했다는 사실로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를 아동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전문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정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아동권리위원회’ 혹은 ‘아동·청소년권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위원회로 아동·청소년권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동·청소년권리위원회는 청소년육성위원회와 같은 비상설기구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가 되어야 하고, 위원회 산하에 ‘청소년인권센터’와 같은 강력한 행동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주로 청소년인권센터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다.

(2) 통계 확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획기적으로 신장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고, 이에 대한 통계가 종합적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통계를 종합적으로 생산하는 기관은 통계청인데, 이 기관은 전체 인구 혹은 5세 간격으로 계층화해서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18세 미만 혹은 9세에서 24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통계는 많지 않고, 다른 연령대가 포함된 통계가 산출되기 쉽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인구, 건강, 학업, 직업, 주거 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협력이 절실하다.

한국 정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게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도록 했고, 향후 5년마다 아동권리지표를 평가해서 2005년부터 매5년마다 백서를 출간할 것이라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했다(대한민국, 2003: 15).

그런데, 이 지표는 아동의 권리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된 국가보고서를 준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작업을 보면 지표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예컨대, ‘제8장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에서 각급 학교의 종류와 그 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취학률, 진학률, 교육예산 등만 다루고 있다. 학생인 아동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인한 과도한 학습시간,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획일화된 교육과정, 학생의 학습능력이 고려되지 않는 평준화교육,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 학생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유보시킨 교칙·선도규정, 학생의 참여권이 박탈된 학교운영

위원회 등을 개선하기 위한 지표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인구 및 주택 총조사, 교육통계연보, 범죄백서 등의 통계 자료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에 관한 자료만을 뽑아서 만든 통계가 아닌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통계를 확보해야 한다.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가족에서의 행복지수 등과 같이 아동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에 관한 통계도 다수 포함시켜야 한다.

(3) 모니터활동

한국사회에서 아동의 권리 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하는 집단은 아직 없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한국아동권리학회가 아동의 권리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며,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권리교육을 실시하지만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를 포괄적으로 감시하고 인권옹호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은 아직 없다.

정부는 아동의 권리 상황을 모니터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모니터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국무총리,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인권운동을 하는 다양한 민간단체의 모니터활동을 지원하고, 민간의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모니터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실시하고 있는 음부즈퍼슨(음부즈맨)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스웨덴 정부는 1993년 14명의 직원을 둔 아동문제 음부즈퍼슨 사무국의 음부즈퍼슨을 임명하였다. 사무국은 스웨덴의 보건사회부 산하에 속해 있으며 스웨덴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 사항을 모니터하는 일이 주된 임무이다. 아동문제 음부즈퍼슨의 일은 4개 분야로 나뉘는데, 그것은 아동의 성장 상황, 심리·사

회적 문제, 아동안전, 그리고 사회계획이다. 아동문제 ombuds퍼슨은 1994년 5월에 스웨덴 정부에 첫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였다(이재연, 1997: 12).

정부의 활동과 별도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민간단체도 협의회를 만들어서 아동권리에 관한 책임있는 모니터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연례보고서로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일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같은 협의기구가 중심이 되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 전문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4) 인권교육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두차례나 강력히 권고하였다. 한국정부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의식하여,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다루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2년에 ‘아동인권동화’를 개발하여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다시 한번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아동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아동의 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아동권리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동 인권교육은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과 함께 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특히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 법률가 등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권리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와 같이 아동의 권리 중에서 일부 측면에 한정시키지 말고, 모든 아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권리를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그 내용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는 일부 부모에 의한 자녀의 신체적·성적

학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의견을 무시하는 성인의 행동, 아동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 아동을 소외시킨 관습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과 가장 가까이에서 아동의 권리를 무심코 침해할 수 있는 성인에 대한 권리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에 대한 권리교육의 목표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동이 스스로 인권을 자각하고 타인의 권리를 배려하는 생활양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5) 민간단체 육성

국가적 아동권리기구가 상설 설치되어서 아동권리에 관한 통계 확보, 모니터활동, 인권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부족하다. 많은 국가들이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할 때,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였다.

이러한 취지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각국의 아동권리상황을 심의할 때, 각 국가가 제출한 보고서와 함께 민간단체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한국아동권리학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등 민간단체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정부보고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민간단체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두차례나 제출하였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전국에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이 아동권리 관련 학술활동을 할 때 지원하지만,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은 아직 약하다. 정부는 민간의 다양한 아동권리 옹호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아동단체들간의 협력활동, 그리고 국내외 교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이 주기적으로 아동권리백서를 발간하도록 후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 전문가들이 제안한 아동권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하여 아동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6) 관련법의 개정

한국 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연령차별과 성차별을 당연시하는 법령을 개폐하고, 아동을 경시하는 관습을 아동을 존중하는 관습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한국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였기에 헌법에 따라 이 협약을 국내법과 동일하게 다루고 법정에서도 판결의 준거로 삼아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4조에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법은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하도록 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부모의 이익에 의해서 박탈될 수 있도록 방임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 속에 뿌리깊은 성차별을 조장하는 민법상의 호주제를 폐지하고, 교사에 의한 학생의 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령을 개정하며, 범죄의 우려가 있는 소년까지 처벌하는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등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이러한 법률이 담고 있는 조항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정신은 아동은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독립된 인격체가 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관점은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많은 경우 아동의 발달권을 억압하고 참여권을 박탈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대책을 아동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

Ⅲ.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실태

1.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개요
2. 주요사례로 본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현황
3. 종합 분석

공 백

III.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실태

1.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개요¹⁾

(1) 충청남도 ‘청소년인권센터’

① 활동취지

충남청소년인권센터는 도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충청남도청소년종합상담실 부설로 1999년 1월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충남청소년종합상담실은 상담실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의 대부분이 청소년인권침해 상황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주목하고 청소년 상담자들의 청소년 인권 옹호자로서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 의해 청소년인권센터를 설치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인권센터에서는 ‘청소년은 그들의 인권을 지키고 누리며 향유할 인권의 주인’이라는 대주제 아래 청소년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청소년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청소년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청소년인권 관련법령과 제도연구를 통해 청소년인권의식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우려를 줄여 나가기 위한 기본적

1) 초기에 설립된 청소년인권센터 현황은 ‘한국청소년개발원 편(1999. 9). 새로운 천년과 청소년 권익증진의 과제’, ‘이용교·김영지·임지연(1999).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동향 연구’, ‘김영지·이용교·안재희(2001). 청소년 권리신장 정책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기존 자료의 현황 요약과 최근 설립된 인권센터의 현황을 기술하며, 다음 절에서 초기에 설립된 인권센터의 구체적인 운영실태와 과제를 알아본다.

출발점은 새로운 인권문화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사업임을 인식하고, 청소년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시와 함께 효과 검증을 통한 체계적인 청소년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청소년인권센터는 사회적으로 청소년인권에 대한 관심 부족과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존의 청소년상담실과 연계된 청소년인권사업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② 주요활동

충남청소년인권센터에서는 청소년인권모니터 활동, 청소년인권 지킴이 마당, 사이버상의 인권마을, 청소년인권동아리 햇귀운영, 청소년인권 조사·연구활동, 청소년인권교육 활동, 청소년인권연대활동, 청소년인권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충남 청소년인권센터가 소개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청소년인권동아리 운영과 인권교육프로그램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인권동아리 햇귀 운영

햇귀는 천안시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인권동아리이다. 이 동아리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삶의 주체가 되어 인권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운다는 취지 아래 만들어졌다.

햇귀의 모임은 매월 두 번 모이는 정기모임과 매월 1회 인터넷상에서의 정기채팅,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한 만남이 있다.

인권동아리 햇귀에서는 청소년인권 스터디를 구성하여 세계인권선언, 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청소년헌장,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청소년보호법 등의 청소년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다. 또한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청소년관련 정책 및 청소년문제에 관한 주제를 정하고 이를 토론한다. 2000년 11월에는 토론회

를 통해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청소년인권 웹진 ‘햇귀’ 홈페이지(www.freechal.com/rightskeeper)를 만들어 청소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최근의 청소년 관련 쟁점을 가시화하고 청소년인권 연대활동의 모색을 비롯해 햇귀 활동 및 청소년인권센터를 홍보하기도 한다.

이외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파랑새 학교에서 결식아동을 돕거나 장애인편의시설 체험 및 홍보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 청소년인권교육

1999년 3월에 시작된 청소년인권교육은 청소년인권세미나, 청소년인권교육프로그램, 심포지엄 개최, 교사인권교육 등 그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표 III-1> 청소년인권교육 프로그램 내용 예시

회기	회기제목	프로그램 목표
1회	청소년인권이 뭐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인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 인권의 개념을 이해한다.
2회	짜잔~ 하고 나타난 청소년인권? 오우 N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인권에 대한 역사를 이해한다 ◦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인권침해의 상황을 발견한다.
3회	청소년인권! 너를 보여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구체적인 삶인 학교에서의 인권상황을 이해한다. ◦ 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을 통해 전반적인 청소년인권의 내용에 대해 이해한다.
4회	소중한 너! 알려뷰~청소년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현장에 대해 이해한다. ◦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5회	걱정마! 청소년 인권지킴이가 있으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적 놀이 게임을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을 복습하여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제공한다. ◦ 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들을 연습한다.

청소년인권교실은 ‘청소년인권지킴이 마당’이라는 주제아래 1999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청소년인권교육에 참가한 시간은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 후에는 청소년인권센터의 청소년인권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인권교육프로그램 워크북을 제작하여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 자세한 내용은 <표 III-1>에 제시되어 있다.

교사를 위한 청소년인권교육은 학생지도에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해 바르게 알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교사들에게는 이를 도교육청 승인 직무연수(15시간 1학점) 시간으로 인정해 주며, 향후 청소년 인권교육 교사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교육내용은 ‘청소년인권이란 무엇인가’,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등이다. 또 다른 형태의 교사대상 인권교육은 교사직무 연수 중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③ 재정충당 방식

충남청소년상담실은 국가보조, 도청보조와 자체 운영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의 사업 중 ‘인권 동아리’ 운영비에 25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

④ 활동의 어려움²⁾

첫째, 재정적인 면이다. 예산배정 시스템상 기존 시설·기관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 예산지원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담실로 지원되는 정해진 예산으로 상담실 사업과 더불어 인권센터 프로그램

2) 충남청소년인권센터는 여러가지 운영상의 여건 변화로 현재는 잠시 인권사업 휴지기에 있다. 2003년 9월 2일 개최한 워크숍에 참석한 담당자에 따르면, 기존 인권사업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담당자가 이를 이어가기 위해 준비중인 시기이다. 대부분의 청소년인권센터가 기존 청소년단체·시설에서 1인 정도를 청소년인권사업 담당자로 지정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경우 담당자 이동이 생기면 인권전문 활동가가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 지속성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새로운 후속 담당자가 인권사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한 만큼 잠시 사업이 정지되는 것이다.

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사회·문화적 환경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보수적 의식이 강해 청소년인권이나 권리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한 편이어서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비평준화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학생의 가장 우선적인 일은 입시준비라는 인식이 강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해 내기가 힘들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서울중심의 인권논의와 시설 집중도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인권교육과 관련해 도움을 받고 싶어도 관련 프로그램이나 인력 풀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점이 많다.

넷째, 인권침해 사례가 접수되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전담인력 부족때문에 기인하기도 한다. 청소년인권센터가 충남청소년상담실의 부설로 운영되다 보니 전담업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연계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전담업무인력 확보 및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홍사단 ‘청소년인권센터’

① 활동취지

홍사단 청소년인권센터는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대변하는 역할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1999년 구성되었으며, 2001년도에 중단되었다.

② 주요활동

● 기획단 운영

기존의 청소년인권단체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을 지니

고 있음을 인식하고, 흥사단에서는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스스로 해결하고 자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2000년도에 기획단을 구성하였다. 기획단은 청소년 단체별 청소년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이 기획단의 특징 중의 하나는 학생 및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청소년 관련 단체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단의 주요 활동으로는 매년 ‘청소년 포럼’을 구성하여 각종 청소년 자치활동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획단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 시기별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 교육정책 및 청소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문제, 청소년이 참여 가능한 영역의 문제, 교사 및 학부모와의 대화가 가능한 문제 등을 선정하여 토론회를 갖는다. 토론회의 운영은 청소년이 직접 말으며 성인 토론자 1인 이상을 초청하고 있다. 보다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토론 주제는 최소 2주전에 확정하고 사이버 상에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토론회를 갖기도 한다. 나아가 토론회의 결과물을 토대로 타 청소년 관련기관과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토론된 주제들을 보면 ‘내가 바라는 학교 또는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할 권리’, ‘꿈이 있는 세상, 꿈이 없는 학교’, ‘학생회 활동의 현황과 대안’, ‘미래사회 주인공? 청소년 인권’, ‘학교축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봉사활동’, ‘청소년 포럼의 평가와 이후 역할’, ‘청소년문화마당 우리들만의 잔치’ 등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발언권이 박탈되어 있는 청소년의 현실 문제를 다루고, 토론회를 언론 홍보와 정책대안 수립의 장으로 활용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기획단을 중심으로 기존의 일손 돕기 차원의 자원봉사 차원을 넘어서 시민단체에서 실천하는 시민사회 운동을 펼치고 있다. 타

NGO단체(비정부시민단체)를 방문하여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사회활동을 모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방문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이해와 실천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NGO청소년 탐방 아카데미’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 사회단체와의 연계활동

인권센터에서는 청소년 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통일적이고 효과적인 역할분담 및 정책방향으로 만들고자 다른 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 지도력 훈련 캠프 및 교육활동

홍사단 인권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도력 훈련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청소년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리더쉽 교육 및 청소년 인권교육, 단체 매뉴얼 소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특강 등을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학교 학생회 임원을 대상으로 학생회의 역할, 민주시민교육, 청소년인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 청소년 및 동아리 임원을 대상으로 협상력 훈련 및 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실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청소년 인권교육 지도자 양성을 위해 청소년 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연수, 청소년 인권의 현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특강 등을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교육활동을 전체적으로 모아 청소년 인권 프로그램을 발간할 예정에 있다. 이러한 책자 발간은 서울 지역은 물론 타지방에 있는 청소년 인권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단체와 개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③ 재정충당 방식

홍사단 청소년인권센터는 별도의 인권센터 사업비가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담당자가 공공 및 민간단체의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여 청소년인권관련 프로그램 운영비를 마련해오고 있다.³⁾

(3) 광주시 ‘청소년인권센터’

① 활동취지

광주시가 YMCA에 위탁해 운영하는 광주청소년인권센터는 청소년들의 권리와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청소년 정책 수립·수행 및 평가과정에 이들을 직접 참여시켜 청소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청소년 인권기구로 2000년에 구성되었다. 청소년인권센터에서는 청소년문제 전문가와 상담원,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돼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청소년문제를 상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청소년인권센터는 그동안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학대받거나 사회적 관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찾기, 그리고 성인들의 표준과 잣대로 만들어 놓은 규제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청소년들 스스로 지켜야할 규정을 만들고 권리를 찾아 나가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 청소년인권센터는 시민단체가 청소년인권 운동에 나서는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청소년인권 개념을 심리적 측면에서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확장하고 일상적인 삶의 양식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② 주요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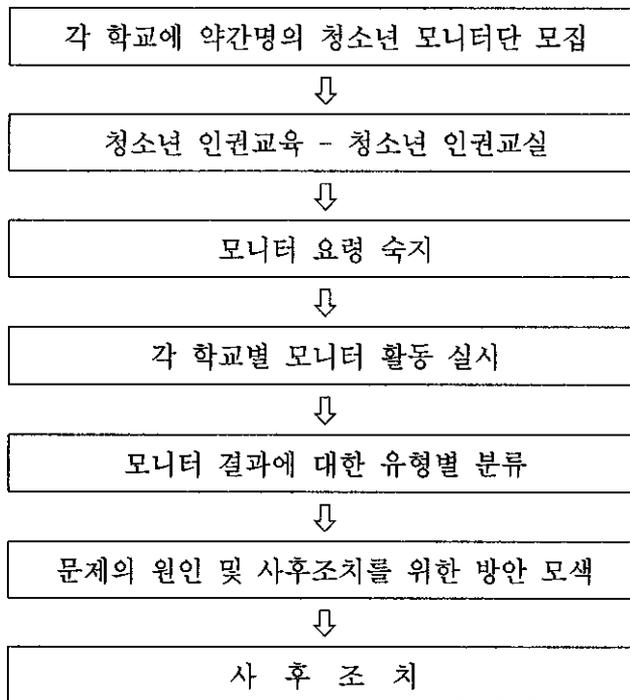
● 청소년 인권 모니터단 운영

청소년 인권 모니터 활동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모니터 활동 및 ‘청소년 인권 지킴이’ 활동을 통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를 개선하여 청소년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권센터에서는 2000년 4월에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여 연구·분석하고 대안 및 해결점을 모색하여 보고서로 발간

3) 현재 흥사단 청소년인권센터는 사실상 해소된 상태이다. 2절 주요 사례별 운영실태와 과제를 통해 자세한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였다. 또한 청소년 인권 모니터 요원은 월 2회(격주) 청소년 인권 모니터 사례를 모아 인권센터에 접수하고 월 1회 모니터 모임을 통해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공유와 더불어 대안을 모색하며, 이를 인권신문에 게재해 전문가의 자문과 포럼, 시민운동과의 연대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인권 모니터 활동은 청소년들이 자아성취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그림 III-1] 청소년 인권모니터단 활동체계

● 인권교육개발센터 운영

청소년인권센터 안에는 청소년 인권교육과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청소년인권교육개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개발

팀은 교수, 교사, 대학원 학생, 청소년, 청소년 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청소년 인권에 대해 고민하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으로는 청소년인권침해사례 수집과 대응방안 제시, 청소년 인권에 대한 연구 조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관련 법제 연구,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인권백서 발간 등이 있다.

③ 재정충당 방식

광주청소년인권센터는 인권센터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청소년육성기금 2,300만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시작이 되었으며, 여기에는 1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4) 부산 I & C 청소년인권평화센터 ‘톡’

① 활동취지

부산 I & C(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의 부설기관으로 사회에 팽배한 편견과 허위의식, 무관심과 극한의 상업주의 속에 외면당하는 청소년의 인권을 개선, 혁신하기 위해 2001년 3월에 창립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청소년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톡’(talk)은 청소년의 인권을 찾기 위해 세상의 평화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대화하는 것을(talk) 의미하며, 세상의 편견과 금기를 깨뜨리기 위한 행동, 21세기 사이버 키드인 청소년들의 네트워크와 접속전략, 청소년들의 창조적이고 신선한 문화감성을 표현하는 용어를 가리킨다. 전체적인 센터 운영은 12명 정도의 운영위원회 회원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되는데, 운영위원회는 교수, 교사, 학부모, 청소년 대표로 구성된다.

② 주요활동

● 토론회 활동

공식적으로는 매월 1회(공교육학생과 탈 학교학생이 함께 참석하

며, 주중에는 활동이 어려워 대체로 주말에 토론회를 연다.) I & C 내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토론회 참가자는 참가신청을 하고 서류면접을 거친 후에, 토론회에 참여하여 기존 토론회 참석자들에 의해 평가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동의를 얻어야 최종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 사이버공간에서의 또래상담활동

사이버공간에 또래상담실(톡실)을 두어 학교와 사회,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부당한 인권침해 상황과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진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2002년부터는 청소년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담원은 I & C 내에서 실시하는 상담원 양성교육(1년에 1회씩 양성과정이 있으며, 현재 2기가 활동하고 있다)을 이수한 자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담활동은 I & C의 부서적인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도 활동하고 있으며, 내담자가 상담원을 선택(성인이나 또래) 할 수가 있다. 여기서 내담자가 또래상담자를 선택할 경우에는 '톡' 으로 링크된다.

- 정책워크숍 개최(연 1회)

정책워크숍은 2002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인권과 관련된 주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학부모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결과를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2002년에는 학부모, 전문가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침해' 라는 주제로 청소년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교사와 학부모를 발제자로 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2003년 5월, '문화공간' 이라는 주제로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1월 15일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프리스쿨 '술' 운영

정규 학교교육에 적응을 못하고 중퇴한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진로를 찾는 대안학교의 한 형태로 '술'을 운영해왔다. 이는 제도권 교육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소년들이 배우고 싶은 내용을 스스로 결

정하고 공부하며 매일 2~3시간씩 토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움을 찾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프리스쿨 수업은 검정고시 준비나 역사기행, 배낭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2002년 이후 현재는 활동이 중단되었으며, '좋은친구 만들기 운동본부'라는 새로운 명칭 하에 대안교육의 관심자나 비전자 모집과 기금마련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 철학캠프나 리더십 교육뿐만 아니라 매체 바로 알기 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부산의 청소년축제 '반' 및 청소년 문화아카데미 등을 기획·진행하였다.

- 청소년 소식지 '톡(talk)' 발간

'톡' 회원으로 구성된 기자학교 멤버들이 소식지 '톡'의 발간을 위해 준비중에 있으며, 이미 준비호는 발간되었다. '웹진'형태로 다양한 주제의 칼럼이 주를 이룬다.

③ 재정충당 방식

시청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사업비 60% 정도를 충당하고 있다. 그 외는 연말에 청소년들이 벌이는 '경매'나 캠페인을 통한 기부금 모금 등으로 충당한다.

(5) 군포시 일하는 청소년인권센터

① 활동취지

군포시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하는 청소년 인권센터'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급증에 따라 올바른 아르바이트문화 정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아르바이트나 장기취업 등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아르바이트문화와 취업 준비에 관련된 상담실시를 위해 2002년 3월에 개소하였다.

② 주요활동

● 상담활동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고발 접수 및 처리,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취업 관련 고충 상담, 진로탐색을 위한 적성·성격·흥미·지능검사 실시를 통해 상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교육활동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아르바이트 사전 교육 및 직업교육, 직업세계 체험활동, 청소년 아르바이트 매뉴얼 발간 및 배포(「니들이 알바에 대해 알아?」),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한 각종 집단상담, 청소년 진로결정을 위한 또래 지도자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시기는 6월이며, 7~8월에 기업체와 연계해서 1일 직장체험을 가진다. 활동모집은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인문계 30명 정도가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 신용교육, 미래체험교육, 직업체험단 활동을 통해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2년차 활동으로 지역에 아직 자리잡지 못하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게 국한되어 일반학생들에게는 홍보되지 않아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토론회, 설문조사활동 및 캠페인 활동

2002년에 인권센터를 설립하면서 기초작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현재 하고 있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인권과 관련된 실태조사실시를 통해 실태파악 및 지역홍보를 주로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청소년의 건강한 아르바이트문화 및 일할 권리의 보호를 위한 각종 캠페인, 세미나, 심포지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일하는 청소년 인권센터 홍보 리플렛 제작 및 배포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하는 청소년의 인권침해사안 설문조사,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는 작업장의 업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인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며, 더욱이 학교와 연계하는데에 어려움이 커서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③ 재정충당 방식

일하는 청소년인권센터는 재정의 80%가 프로젝트 사업비로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군포시청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프로젝트를 수탁해왔다. 재정의 20% 정도는 자체 내에서 기부금이나 회원의 회비로 충당된다. 2003년도 인권센터 사업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1,000만원 정도이다. 주로 교육비나 설문조사 요원 수당, 자료집이나 리플렛, 스티커 제작비 등에 소요되었다. 지속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축소되기도 한다.

(6) 울산청소년인권센터

① 활동취지

울산 YWCA에서는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우려가 만연된 현실에서, 청소년인권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가정, 사회, 학교에서 신체적 학대, 체벌, 성차별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는 모든 청소년들의 인권의식 고취를 위해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청소년 인권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2002년 7월에, 부설기관인 청소년인권센터를 설립하였다.

② 주요활동

● 청소년과 성인 인권침해실태 모니터 활동

변호사, 교사, 학부모, 경찰 등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조직하여, 청소년의 인권침해에 관한 논의와 문제해결을 다각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에게 관심 있는 성인으로 구성된 YWCA 청소년부 위원회를 통해 모니터 활동과 사례모집을 하고 토론을 통하여 청소년들과 가까워 질 수 있는 방법들을 다루어 오고 있다.

모니터 활동은 YWCA에서 권리모니터교육을 받은 자(200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년 2회 교육을 실시한다)로 구성된 청소년과 성인이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인권의 주인으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래의 시각으로 청소년 인권침해사례를 수집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쓴다. 또한, 청소년 인권센터와 인권에 대한 홍보로 사회적인 인식확산에 기여한다. 수집된 사례에 대해서는 인권모니터요원을 위촉하고, 교사나 학부모로 구성된 위원회가 함께 매월 1회씩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모니터링을 한다. 이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함께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관습타파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 청소년 인권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인권 지킴이 마당” 진행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연령별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청소년과 대학생은 방학중에 1주일간, 성인(인권에 관심이 있거나 회원중에 청소년 자녀를 둔 성인)은 주 1회(2003년 현재 총 10회를 계획으로 2시간씩) 교육을 실시한다. 인권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인권의 개념이해, 청소년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인권내용에 대한 이해, 청소년인권의 증진에 대한 이해,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연습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은 청소년 인권침해사례와 가정에서의 대화법, 청소년기의 특징이해를 통해 가정에서부터 청소년들이 인간으로 존중받고 또 가족간의 화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교육과정이 끝나면 ‘인권동아리 지원을 위한 활동과 교육’을 실시한다.

근로청소년과 소외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충상담 및 인권교육을 연중 실시하도록 계획 중에 있으며, 청소년을 일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부모, 교사, 경찰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및 심포지엄 “청소년의 사각지대”를 각 연 1회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재미있는 인권이야기”(소책자)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 청소년 인권동아리 활성화

청소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별로 영화제작동아리, 사진동아리, 자전거 동아리, 음악동아리, 만화동아리, 토론동아리, 모니터활동동아리 등을 모집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청소년 인권침해에 관해 관찰하고 모니터 활동을 하는 동아리가 결성된 바 있으며, 월 2회의 모임을 갖는다. 청소년들이 각 동아리별로 특색에 따라 인권동아리를 활성화시켜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 울산 청소년의 인권의식 조사

울산시 소재 청소년의 권리인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인권교육의 지표를 설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관련단체와 간담회 및 네트워크 형성

청소년인권침해에 대한 공동연계성 구축을 위하여 관련단체와의 연 1회 간담회와 청소년 인권자문위원 위촉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피해사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 인권페스티벌 행사

울산의 '거리축제' 행사에 참여하여 모니터사례나 상담사례를 접수하며, 학교생활에서 '이런적이 있다' 라는 문구 하에 스티커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다트판에 풍선(깨뜨리거나 없애고 싶은 용어들이 적힌)을 붙이고 터뜨리는 활동을 벌인다.

③ 재정충당 방식

청소년인권센터는 YWCA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없으며, 인권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문화관광부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 운영되고 있다. 2003년도 인권센터 운영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1,000만원 정도이다.

(7) 익산시 청소년인권센터

① 활동취지

가정과 교육현장인 학교, 그리고 삶의 현장인 사회에서 침해되고 있는 청소년 인권을 청소년 스스로가 보호하고 훈련하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익산 YMCA 부설기관으로 2002년에 청소년 인권센터를 개소하였다.

② 주요활동

● 청소년 인권상담

‘파란꿈 파란마음’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중에 있으며 한부모 저소득층가정의 초등학생(13세 이하)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을 하고 있다.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담대상자 중에서 학교에서의 생활적응이 어려운 아이들은 부모도 함께 상담을 한다.

또한, 신체적 학대, 체벌, 성폭력, 유기, 인신구속 등의 상담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권(임금체불, 아르바이트)과 청소년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 및 인권침해, 사례별 예방, 응급조치, 법률구조 활동을 한다.

● 청소년 인권캠프체험 프로그램 개발

‘리더십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캠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문화답사, 성격검사(MBTI), 진로탐색검사, 진로적성검사, 학습기술검사 등을 실시한다.

●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교육·홍보

2003년 9월부터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목적 등을 교육하면서 차이와 차별을 주제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용교육’과 영어와 미술교육을 실시하면서 체육과 리더십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해 부모 및 교사교육 실시와 청소년 인권 교실, 그리고 청소년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 청소년 인권 정보센터 운영

청소년 인권에 대한 도서열람 및 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 인권에 대한 법령 및 제도소개와 사이버 청소년 인권도시(CYRC : Cyber Youth Right City)운영에 착수하였다.

- 청소년 인권 침해사례 수집

아동폭력 및 학교폭력,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청소년 근로시간, 환경 및 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청소년 인권 지지망 형성

‘18세 선거권 하향조정’을 위한 청소년 인권 캠페인 활동과 청소년 인권 서명운동(선거권 하향조정, 청소년고용법 등)을 펼쳤으며, 청소년 인권 자치조직(인권위원회, 인권동아리, 청소년상담원 등)운영과 유해업소 고용금지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③ 재정충당 방식

2명(소장, 간사)의 상근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액은 총예산의 3%정도에 지나지 않아 주요재원조달은 기부금 및 모금으로 95%이상을 충당하고 있다. 2003년도 인권센터 사업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1,300만원 정도이다.

(8) 인권운동사랑방

① 활동취지

인권운동사랑방은 기존의 인권운동 방식에 한계를 느낀 소수의 인권활동가들이 모여 인권보호·보장을 목적으로 1993년에 설립하였다. 대표나 간부없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전원이 대표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상임활동가 중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되는 집행조정장이 ‘조정’의 역할만을 담당하며, 의사결정과 집행은 상임활동가 총회에서 이루어진다. 상임활동가는 최소 3개월간의 자원활동을 거친 후,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목표와 방식에 동의하는 자로 상임활동가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준된 경우에 될 수 있으며, 상근의 개념이 아닌 인권운동사랑방의 성원 자격을 의미하며, 스스로 생활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주요활동

● 인권 전문 팩스 신문 <인권하루소식> 발행

1993년 9월 7일에 창간하였으며, 주5회(일, 월요일 제외) 발행하여, 2001년 12월 18일에는 <인권하루소식> 지령 2000호를 발행한 바 있으며, 2003년도에 10주년을 맞이하였다.

● 인권교육 워크숍 및 인권캠프 프로그램 운영

1995년부터 인권교육 워크숍, 사회단체연수프로그램, 사회복지학과 실습교육 등 인권교육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9년에는 어린이·청소년·대학생 인권캠프를 열었으며, 2000년에는 안양 전진상 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민간단체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을 비롯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캠프 '인권과 친구하기 2000'을 서울대학교에서 열었다. 어린이 인권캠프는 2001년부터 계속 개최되고 있으며, 2002년 1월에는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과 대학생 인권캠프를 개최하였다.

인권캠프는 양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우선, 인권의 개념이해를 기초로 하고, 인권의 내용과 국제인권의 보장체계, 인권교육의 방법론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구성하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 대학생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권캠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캠프는 다양한 관점에서 인권의 역사를 살펴보고, 국가권력에 의해 상실되는 인권,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 주거권, 일반노동권 및 이주노동자의 권리, 유엔의 인권보장체계, 인권과 관련된 선언 및 조약, 불심검문·인신구속에 대한 지식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권캠프는 우선, 자기소개를 하는 과정에

서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항목들을 찾아가면서 쉽게 권리를 이해하도록 하며, 권리에 대한 탐구에 이어 아이들이 인권모의재판을 열어 각자의 판결문을 내리도록 한다. 또한, 인권신문·포스터·팻지 제작을 통해 인권을 홍보하고, 조별작품제작을 통해 협동심을 키우기도 한다.

2000년부터 인권사랑방내의 인권교육실은 예수살이 공동체에서 2박3일의 일정으로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을 개최해오고 있다. 우선, 인권의 개념파악과 인권역사를 살펴보고, 인권교육의 개념과 기본 커리큘럼, 세계각국의 인권교육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인권교육의 방법론 연구로써 주제별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시연 및 상호평가과정을 거친다. 그 이후에 학교교육과 인권교육의 다리놓기의 방안으로 교과별 인권교육 방안 및 학교 내 인권교육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참가자 인권교육 실천 프로젝트를 발표와 후속작업에 대한 논의를 끝으로 워크숍의 일정을 마친다.

- 인권영화제 개최

인권영화제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동 선언문 제26조에서 제시하는 ‘교육권’ 보장의 한 형태로 영화제를 통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자 1996년 11월에 처음 개최하였다. 초기부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든 작품이 무료 상영되어 재정과 실무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해왔다. 제1회 인권영화제는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라는 주제를 갖고 이화여대 법정대 강당에서 처음 막을 올렸으며, ‘표현의 자유’라는 대의를 위해 사전심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최초로 영화를 대중 상영한 것이 큰 의미를 지닌다. 2002년 9월부터 ‘반딧불’ 인권영화 정기상영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인간을 위한 영상을 찾아서’,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전쟁과 인권’과 같은 주제로 인권영화제는 2003년 현재 7회에 걸쳐 인권영화제가 열린 바 있다.

- 인권운동연구소 운영

인권운동사랑방의 부설기관으로 진보적 인권이론을 세우고, 인권운동의 질적 발전과 인권운동가의 이론적·활동가적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2000년 12월 15일에 개소하였다. 인권이론과 인권운동론, 인권운동 실무교육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연수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권단체 활동가 및 대학생 인권운동 그룹,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실시함으로써 인권의식의 향상, 인권운동과 인권활동가 그룹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한다. 월례포럼을 기획·조정하며, 1년에 2회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인권운동의 주요이슈를 사회적 토론의 장으로 옮겨놓을 예정이며, 그 결과물은 자료집으로 엮어 2년에 1회 논문집을 발간하고자 한다. 또한, 인권운동의 발전과 전망실정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인권관련 문헌을 번역·출간할 계획에 있다.

- 단행본 발행 및 보고서 제출

- 단행본

『아이들의 인권·세계의 약속』(1997), 세계각국의 인권단체들의 참여 속에 제작, 유엔에 헌정된 어린이 인권교재 『Stand up for Your Rights』(1998) 발간에 참여, 『한국감옥의 현실』(1998), 『인권교육길잡이』(1999), 『인간답게 살 권리』(1999), 『깨어나 일어나 : 아이들이 쓴 인권이야기』(2000)

- 보고서

‘한국인권단체편람’ 발간(1995.2),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에 대한 제1차 민간단체보고서 작성사업(1995),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결과보고서 발표(2001.1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2차 민간보고서 제출(2002.6),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제2차 민간단체보고서’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사 회의 모니터(2001.4)

-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취재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2002.7)를 실시하여 보고서 발간

- 모임결성 및 운영
 -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의 국내 홍보와 교육, 아동인권 신장을 위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결성(1995.3)
 - <인권교육실> ‘아이들의 권리 찾기’ 모임 운영(2000)
 - 청년후원회원모임 ‘꿈꾸는 사람들’ 발족(2000.7)
 - 세미나, 워크샵, 토론회 및 공개강좌 개최
 - 인권단체 활동가 월례세미나 개최(1993년 현재 13회)
 -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1·2차 공개강좌 1년간 총 34회 진행(1995)
 - 매달 1회 인권운동사랑방 월례포럼개최(2001~)
 - 인권교육실·인권운동연구소 공동 경희대 교양강의 ‘한국 사회와 인권’ 시작(2002.3~)
 - 국가인권위법 제정 1주년 토론회 인권단체 공동 주최(2002.4)
 - 제 6회 인권영화제 개최 및 인권운동가 단 존스씨 그림전시회(2002.5)
 - 인권대회 참여, 개최 및 인권관련 활동
 - 25년만에 ‘인권’을 주제로 열린 유엔회의인 ‘비엔나세계인권대회’ 참여(1993.6)
 - 아동인권보고서 작성 및 제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 심사 회의 모니터 등의 활동(1995)
 - 한총련 사태시 전경에 의한 여학생 성추행 사건 조사, 사회문제화(1996.9)
 -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 불법검문에 대한 불복종 운동(1998.3)
 -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창립 참여(2001)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실무회의 참가(2002.10)

(9) 다산인권센터

① 활동취지

다산인권센터는 1993년부터 변호사 사무실의 부설기구인 인권상담실을 시작으로 노동문제, 공안관련 사건 등을 중심으로 한 상담과 법률구조 등을 주요한 활동으로 해 오다가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권영역을 확대하여 노동권, 복지권, 지역운동, 인권영화제, 인권교육 등 인권운동의 대중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8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에는 인권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과 함께 진보적 인권운동을 지향하고자 명칭을 ‘다산인권센터’로 변경하였다.

② 주요활동

●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교육을 위한 워크샵개최

1998년에 인권일반관련사업과 인권교육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1999년부터 “2000년 그 이후를 위한 인권교육”이라는 주제로 학교를 방문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각 학교 방문을 통한 인권교육 순회·공개강좌를 실시하였으며, 인권캠프, 인권메뉴얼북 제작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 사회봉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인권교육은 15~20명의 소그룹단위로 이루어지며, 아동·청소년, 학부모, 대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놀이 및 게임과 영상 등을 이용(40명 이상은 강의 형태)하는 형태로 실시된다. 다른 활동에 비해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들은 적극적이다.

2002년에는 양평파라다이스 청소년수련관에서 양일간의 일정으로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첫째 날에는 인권의 개념 및 역사에 대한 강의에 이어 프로그램 실습에 참가한 후 덴마크의 인권교육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둘째 날에는 인권교육의 개념정리 후 교사들이 직접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03년 현재 5월부터 수원영덕고등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및 현장에서 직접 실천해 나가는 교사들로 구성된 인권교육 연구팀을 모집 중에 있다.

● 수원인권영화제 개최

1996년 인권운동사랑방 주최로 서울에서 인권영화제가 처음 개최된 후, 다산인권센터에서는 지역순회 영화제의 첫 출발로, 같은 해 1회 수원인권영화제를 개최하였으며, 2003년 현재 제 8회 인권영화제가 개최되었다.

<표 III-2> 인권영화제 내용

회기	상영날짜	인권영화제의 주제	상영작
1	1996.11.29-12.1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	16
2	1997.11.06-11.8	인간을 위한 영상을 찾아서	12
3	1998.12.10-12.12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17
4	1999.12.20-12.21	야만을 넘어 인권과 평화의 21세기를 위해	11
5	2000.10.27-10.29	우리 시대의 삶과 희망 엿보기	26
6	2001.11.15-11.17	NO WAR! YES PEACE! -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26
7	2002.11.15-11.17	편견에 중독된 세상에서 탈출하라! - 차별과 소외에 관한 기록	22
8	2003.10.31-11.3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선택할 권리	18

●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인권보호활동에서 인권침해의 사전·사후에 개입하는 적극적인 인권활동 전개와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인권을 구제받기 위한 창구를 개설하고 향후 지역 인권활동방향과 실천의 중요한 사례와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경찰, 검찰, 국정원, 구치소, 교도소, 군대 등 국가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부당한 인권침해, 차별행위로 인한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기준으로 한 기타 부당한 인권침해,

노동조합활동, 산업재해, 해고,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노동권 침해에 대한 신고 및 상담업무를 하고 있다.

- 청소년 인권관련 설문조사 실시 및 토론회 개최

2002년 경기지역 국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인권의식 표본 조사발표 및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밖에 1997년에는 사회복지대학을 개설하였으며, 청소년 인권문화제 및 월례 인권포럼, 인권평화학교를 개최(1999)하였다.

- 주간지 ‘다산인권’ 발행 및 인권백서 발간

‘다산인권’은 총 2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는 주간지로 2000년 10월에 첫 발행하였다.

- 인권모임 활동

청소년인권을 위한 인권모임(2000)에 이어 ‘친구야, 성년 사자의 눈으로 세계를 보라!’ 라는 주제 하에 ‘청소년모의법정’이 2001년에 첫 공연을 개최하였다. 이는 수원시내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응모하여 당선된 작품을 연극대본으로 하여 당선학교의 연극반 학생들이 공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2회의 공연을 마친 현재 뚜렷한 호응이나 관심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상태에 있다.

다산인권센터는 권리의식이 높은 것을 ‘버릇없는 태도’와 관련짓는 인식과 인권이 과격하다는 오해, 인권을 도덕적 인성으로 간주하는 관점으로 인해 실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수원시가 청소년인권사업을 지원하고, 수원농생고를 비롯한 각급학교 및 전교조나 전국인권단체 등의 NGO단체들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인권단체들과 교육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인권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0) 경기복지시민연대 ‘청소년인권평화센터’

① 활동취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모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등하고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하에 1999년 3월에 개소하였다.

② 주요활동

● 청소년 인권평화센터

인권의 가치 알기와 인권의 기본내용을 중점 교육한다. 청소년인권평화학교는 순회강좌와 공개강좌로 진행되며 순회강좌는 지역 청소년 모임이나 단체에서 교육을 원할 경우 강사를 파견하며, 공개강좌는 수원에 있는 다산인권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열린다.

● 청소년 인권캠프

2001년에 ‘알렙휴먼라잇즈 청소년 인권캠프’를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양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캠프는 인권의 가치알기와 청소년 복지권리 찾기, 가상 청소년회담 및 100분 토론, 인권으로 그리는 세상, 인권체험놀이, 권리여행, 인권평화찾기 등을 교육하며, 공동체놀이, 또래활동, 인권웃놀이, 인권이야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해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가졌다.

● 인권교육활동 및 메뉴얼북 제작

1999년에 ‘2000년 그 이후를 향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다산인권센터와 함께 청소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권교육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은 우선, 인권의 정의 및 역사, 인권의 내용에 대한 지식전달을 시작으로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지킴이로서 할 수 있는 활동들 찾아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이와 평화의 세계 나들이’, ‘인권과 평화가 있는 학교 만들기 10가지 방법’, ‘부모의 학교활동’,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교사지침’ 등 10여개 부문으로 분류한 메뉴얼북을 제작하여 학교와 각종 청소년 단체 학생들에게 배부한다. 이 밖

에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대를 청소년들의 놀이와 여가활동 공간으로 바꾸는 운동의 일환으로 ‘학교 밖 문화제(다산인권센터와 공동사업)’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는 1999년 11월의 씨랜드 사건과 인천 호프집화재 사건 사진전시회, DDR경연대회 등의 부대행사와 영화제, 사물놀이 및 힙합, 락밴드 공연, 초청가수 공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11)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① 활동취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양심수 석방, 고문종식, 사형제도 폐지 임의 처형 반대와 난민보호 및 대인지뢰반대 등을 위한 국제적 인권 연대운동을 위해 결성된 세계최대의 순수 민간차원의 인권단체로 1972년 3월 28일 한국에서 최초로 인권운동을 시작하였다. 특정 정부, 정파, 이데올로기, 경제체제, 종교적 신념을 초월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강릉, 광주, 대구, 대전, 전주, 서울, 수원, 순창, 구미, 안양 등 전국에 50여개의 그룹을 포함하여 약 3,0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재정은 일반인들의 기부로 충당되며, 인권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들은 원칙적으로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지 않는다.

② 주요활동

정기총회, 국제회의 참석, 가두캠페인, 그룹모임, 인권학교, 인권캠프 및 인권교육 활동, 홍보활동, 서명운동, 기금조성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 엠네스티 인권학교

엠네스티 한국지부인 대구인권학교는 총 9강좌로 진행되며, 인권의 개념과 역사, 생명권과 사형제도, 노동자의 권리, 언론의 개혁과 동성애자의 권리 및 엠네스티와 국제인권운동에 대한 고찰 등의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다. 2003년 6월 현재, 제15기 인권교육을 종강한 상태이다.

- 인권캠프 개최

엠네스티 인권캠프는 19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으로 처음 개최하여 매년 열리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참가하여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인권의 역사 및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인권가페, 인권영화제, 인권보호 캠페인, 인권교육 게임활동, 지정토론 및 조별토론, 주제강연, 비디오 촬영, 인권선언문낭독, 역할극 활동, 거리캠페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친근하게 인권을 접하게 된다. 또한 이 캠프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현재 비공식적으로 토론방을 만들어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 인권동아리활동 및 지역별 그룹활동

엠네스티는 자체적으로 인권동아리(대원외고를 비롯한 각지역 고등학교, 대학교 및 일반지역군별)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별 그룹이 형성되어있다. 현재 지역그룹은 정식그룹(예비그룹에서 집행위원회의 인준으로 정식그룹으로 인정됨)과 예비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그룹들은 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 또한, 각 그룹별로 온라인상에 만들어진 카페는 지역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타그룹과 와도 자유로운 정보교환의 수단이 되고 있다.

- 각종 캠페인 활동 및 인권예술제, 인권세미나 개최

2000년 10월 고문반대캠페인을 시작으로 여성, 아동, 면책, 인종주의 등 소수제에 대한 캠페인, 탈북난민의 인권보호, 중국정부에 대한 탄원활동, 사형제도 폐지, 미얀마 인권상황 개선, 국가보안법 폐지, 러시아인권 등 다양한 주제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인권예술제, 인권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 격월간지 '국제엠네스티' 발행

1972년 월보 엠네스티 1호(8면)간행을 시작으로 인권관련 논설과 캠페인 및 인권소식이 게재되어 있다.

2. 주요사례로 본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현황⁴⁾

1) 광주시 청소년인권센터

1989년 광주는 참교육을 갈망하는 중·고등학생운동이 어느 지역보다도 뜨거웠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자주적 학생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광주지역의 거의 모든 고등학교가 광주지역 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광고협)에 가입하였고 그 때문인지 연일 만 명이상이 모이는 집회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전교조 가입교사의 대량해고와 더불어 전국 최초로 고등학생이 시국사건과 관련해 수감생활을 하게 되는 파란을 겪기도 하였다.

1989년 이후 1991년 분신정국 속에서 보성고 3학년인 김철수 학생이 ‘참교육 실현, 조국통일’을 외치며 분신하였고 이 불길은 89년 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광주지역 중·고등학생 운동에 불을 지피며 동아리 활동은 물론 학외 모임 활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자주적 학생회 건설이라는 중·고등학생 운동의 방향성을 다시금 각인하게 하였다.

중·고등학생 운동은 그로부터 몇 번의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시대적 사명감과 역사 의식, 학교현장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90년대 중반까지 계속 간직하고 학교와 학교 밖

4) 이 절의 주요사례는 2003년 9월 2일 청소년인권센터 관련 전문가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광주청소년인권센터의 운영실태와 과제’는 광주YMCA 청소년팀의 이운기선생님이, ‘홍사단청소년인권센터의 실태와 과제’는 권혜진선생님이 발표한 글이다. 두 인권센터는 가장 최초로 설립·운영된 곳들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각 인권센터를 처음 설립·운영해온 담당자로서 실제 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과제를 솔직하고 생생하게 정리하고 있어, 가능한 발표내용을 그대로 소개함으로써 향후 청소년인권센터 활성화 과제 모색에 근거 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90년대 후반 중·고등학생 운동조직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청소년 단체 활동에 중요한 푼대가 되었으며 광주지역이 현재 진행하는 청소년 인권운동과 사회참여운동에 소중한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청소년인권센터는 이러한 광주지역 청소년 운동의 기반과 무관하지 않다.

(1) 광주광역시 청소년인권센터의 시작

광주광역시 청소년인권센터는 광주광역시가 광주YMCA의 요청을 받아 들여 청소년육성기금 2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2000년 5월 30일 개소한 이래, 4년여 기간동안 광주지역 청소년인권운동을 진행해나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밝혀두어야 할 숨은 이야기가 있다.

89년 이후 중·고등학생 운동의 방향을 고민하던 몇몇 젊은 사람들이 '청소년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모임'을 구성하고 청소년운동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이면서 자유대학, 청소년참여기획단 등을 운영하게 되었고 이때 학생인권선언과 전라도 한유빈 사건 등에 대한 PC통신에서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청소년참여운동의 중요한 화두로 청소년인권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청소년 스스로가 청소년 현안의 주인으로서 자기 목소리와 대안을 갖고 사회와 파트너십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인식으로 발전해 1998년 '청소년 포럼'이 결성되고 다양한 청소년 현안에 대하여 스스로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당시 청소년 포럼은 학생회와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 클럽회원 등이 주축이 되었으며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청소년 스스

로가 모색한 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광주지역의 열린 청소년 토론공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광주광역시 청소년인권센터는 이때 청소년포럼이 3회 주제로 제시한 ‘청소년인권,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토론의 성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당시 청소년포럼 회원들은 청소년 인권의 현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주장하기 위해 3차례의 소토론을 진행하여 자료집을 만들고 이 자리에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계장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은 토론회라기보다는 거의 청문회 분위기였으며 모든 질문은 청소년육성계장으로 집중되어 팽팽한 긴장 속에서 진행되었다.

토론이 끝나고 청소년육성계장은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며 시종 일관 주장하는 청소년인권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청소년인권센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당시 토론회에 함께 토론자로 참여했던 이용교 교수님의 도움과 청소년육성계장의 열린 마인드, 청소년포럼의 당찬 제기가 광주광역시 청소년인권센터의 오늘이 있게 한 산모 역할을 하였다.

청소년인권센터에서 근무할 때 가끔 타 지역의 초청으로 토론회나 간담회 등에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아 청소년인권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는지, 보조금교부신청 당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메일로 보내줄 수는 없는지?’였다.

사실 청소년인권운동을 꾸준히 외쳤던 많은 단체의 활동가들이 예산지원의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 열망을 접고 돌아서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인권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활동가들의 고민이 예산이라는 벽에 부딪히면 금새 사라져 버리는 우리의 한계, 그

것을 스스로 넘어서서 가능한 부분으로부터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산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청소년인권운동으로 많은 역량을 허비하게 될 것이다.

(2) 광주광역시 청소년인권센터의 한걸음

2000년 5월 30일 개소한 청소년인권센터는 이용교 교수님의 청소년 인권센터 운영 모델을 중심으로 1) 청소년인권정보센터운영 2) 청소년 인권의식 함양 3) 청소년인권상담 4) 청소년인권신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 형성을 일감으로 하고 다음의 세부활동을 진행하였다.

① 청소년인권정보센터 운영

- 청소년인권센터 홈페이지(www.yrights.or.kr)를 구축하고 고등학생 4명과 대학생 2명을 운영팀으로 하여 인권관련 자료 및 청소년 인권침해고발신고, 핫이슈, 청소년인권칼럼, 불법자율학습신고 등의 내용을 운영하고 있다.

- 청소년인권자료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서, 논문, 교재, 보고서 등의 자료구비와 더불어 구비된 자료목록을 시민사회단체 및 청소년단체, 교육단체, 학교 등에 알림으로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매년 마다 광주광역시 청소년인권센터의 활동내용과 각종 설문조사 내용을 청소년인권보고서로 발간하여 300여 청소년단체 및 인권관련단체, 교육단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② 청소년인권의식의 함양

- 연 2회 청소년인권교실을 개최하고 청소년, 교사, 인권단체활동가, 청소년단체활동가가 참여하는 청소년인권교육개발팀을 구성하고

청소년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 언론지 '밥 매거진'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고정면등을 운영하고 있다.

- 또한 분기별로 청소년 인권포럼을 개최하여 학생자치, 교육, 문화, 사회 등 청소년 인권관련 다양한 주제를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6회 이상의 청소년인권 캠페인과 연말에는 광주지역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청소년인권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③ 청소년 인권 상담

- 청소년인권모니터단으로 청소년인권119를 교교YMCA 조직망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위기전화와 청소년거리상담등을 운영하고 있다.

④ 청소년인권신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 아르바이트에 대한 시간당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방학 중 집중 홍보활동과 업소방문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아르바이트 실태과약을 위한 설문조사와 청소년인권 교사직무연수, 만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미래유권자연대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청소년인권센터는 2천3백만원의 청소년육성기금으로 각 영역별 총 28개의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소년인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칙을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한 전문집단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4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광주광역시 청소년인권센터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그것은 청소년인권운동이 처한 현실이 그만큼 곤궁하다고 해야 옳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청소년인권센터의 4년은 수많은 성과와 더불어 많은 안타까움을 안고 성장한 시간들이었다.

(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의 한계와 과제

청소년인권센터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함께 한 실무자로서, 그리고 지금은 애정을 가지고 청소년인권운동을 고민하는 활동가로서 내가 바라 본 청소년인권센터의 4년은 그야말로 지역 내 청소년운동의 새로운 활력으로서 의미와 더불어 많은 안타까움을 안고 성장한 4년이 었다.

① 청소년인권상담의 한계 : 용감한 사람이 정을 맞는다.

청소년인권센터의 홈페이지와 위기전화를 통해 접수되는 사안을 보면 상담이라기보다는 고발의 성격이 강하며 내용을 분류해보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침해가 가장 많고 다음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침해 순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광주지역 청소년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광주지역 청소년인권지표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 가정, 사회에서 청소년이 느끼는 인권만족점수를 확인한 결과 학교가 47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사회가 48점, 가정이 64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이 느끼는 인권체감점수를 묻는 질문에 대한 1,010명의 응답점수를 평균값으로 계산한 결과인 52점에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학교와 사회가 청소년이 느끼기에 평균이하의 인권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청소년인권센터에 접수되는 주요한 고발도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당한 대우, 자율학습을 가장한 타율학습의 강요, 교사의 감정적 폭력과 폭언, 특기적성교육을 가장한 보충수업, 두발 및 복장의 규제, 동아리 활동에 대한 학교의 태도, 행정기관이나 어른들의 태도 등 광범위하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인권센터는 접수된 모든 사안들에 대한 대처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그것은 접수되는 지역이 광주 뿐 아니라 너무

광범위하고 접수된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 않아서 몇 번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청소년인권침해의 많은 사례가 학교에서 접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 피해 청소년의 증언과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피해 청소년이 학교에서 당할 피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활동이 들어가면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청소년은 학교권력으로부터 약자이며 따라서 피해 청소년이 자신의 피해를 관련기관에 호소할 경우 이를 보호하는 장치와 더불어 학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후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청소년인권침해에 대한 한계는 극복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② 재정의 어려움 : 청소년인권센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청소년인권센터는 광주광역시로부터 2천3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어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인권단체에 비해 조금은 나은 처지라고 할 수 있으나 상근활동가의 인건비를 제하면 실제 운영비는 천3백만원 정도로 광주광역시에서 청소년사업으로 지출하는 청소년캠프 하나의 예산보다도 낮다.

이는 정부의 청소년육성정책이 청소년의 권리증진과 참여의 기회 확대를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예산집행은 정책의 의도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하여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이 나은 편이다.

작년에 방문한 어느 지역 실무자의 말에 의하면 청소년담당공무

원이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해서 괜히 문제를 일으키는 운동권 집단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러한 청소년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시각은 청소년인권센터를 만들고자 했던 여러 지역의 시도를 무산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정부의 청소년육성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동권 집단을 양성하는 불온한 활동처럼 여겨지는 현재의 정책괴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청소년 권리 증진과 참여기회 확대라는 정책기조는 사문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③ 청소년인권교육의 한계 :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은 교문에서 잠잔다.

청소년인권센터의 활동내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청소년인권교육이다. 청소년 스스로가 권리의식을 가지고 자기권리를 요구하며 개선을 이루어갈 때 청소년인권현실은 달라질 수 있다.

흔히들 청소년을 보면서 ‘자기 책임도 다 못하는 무책임한 아이들’이라고 비난하지만 우리사회가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느끼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를 따져보면 답답한 일이다.

청소년인권교육은 청소년 스스로가 권리의식을 갖고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인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책으로만 발간되어 있어 이것을 실제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처음 청소년인권교육개발팀을 준비할 때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인권교육용 시청각자료를 만들고자 했지만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좌절하고 말았다.

청소년개발원에서 청소년인권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각자료를 만들어 학교나 청소년단체에 보급한다면 실제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청소년활동에 있어서 학교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사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청소년단체가 교육문제를 가지고 학교와 대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년인권센터 또한 이러한 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청소년인권교육 참가자를 모집하거나 동아리의 운영 및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의 협력을 구하지만 실상 학교의 반응은 무슨 불온한 의도라도 있는 것처럼 경계하기 일췌며 청소년인권센터에서 활동한다고 하면 일단 색안경부터 쓰고 학생들을 위협하기도 한다.

정부는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이야기 하지만 학교는 청소년인권센터의 활동이 학교 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를 89년 당시의 분란(?)의 소용돌이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하는 반박까지 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청소년인권교육에 참여하는 층은 언제나 소수에 불과한 형편이다. 물론 소수의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인권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인권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굳게 닫힌 교문이 활짝 열려야 한다.

청소년의 대다수가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의 변화는 청소년인권운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청소년정책은 있되 교문 밖에서만 통하는 정책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④ 청소년인권단체의 네트워크 : 뭉쳐야 산다.

청소년인권센터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최소인건비 보장, 만18세 선거권 쟁취를 위한 미래유권자연대활동 등을 진행하며 지역의 청소년인권문제 뿐 아니라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청소년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인권문제가 사안에 따라서 지역적인 특징을 갖기도 하나 상당한 부분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로 미래유권자연대활동은 만 18세 청소년의 선거권 쟁취를 위한 청소년사회의 중요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연대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청소년인권단체의 수가 많지 않은데다 어떤 단체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서 연대의 목소리를 내는데 난관이 있었다.

청소년인권운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청소년인권센터가 개소되고 활발히 운영되는 한편으로 청소년인권운동가대회와 같은 전국적인 연대교류의 장을 통해 서로의 활동을 함께 나누고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며 공동의 목소리를 갖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⑤ 가장 두려운 것은 조급증

물을 먹어야 살 것 같은데 아무리 애를 쓰고 달래 봐도 물을 먹으려 하지 않는 소가 있다. 하는 수 없이 억지로라도 고삐를 쥐고 물가로 이끈다. 뒷발로 버티는 소를 바라보며 스스로 좌절감에 빠질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얼마 전에 몇 사람과 만나서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때 청소년단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던 한 선배가 당시의 심정을 소에 비유한 적이 있다. 한참동안 이 비유를 되새기며 청소년인권센터의 일을 되돌아보았다.

청소년인권교육과 청소년인권캠프, 청소년인권캠페인 등 많은 활동을 했지만 그때마다 참가 청소년을 모집하는 것이 가장 힘겨운 일이었다. 청소년인권하면 따분하고 웬지 지루할 것 같다는 느낌이 팽배

해 있어서인지 잘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 물론 학교가 청소년인권센터에 각을 세우고 있어서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말이다.

어렵게 모집한 청소년 또한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말이 아니다.

길거리 상담을 나가면 아이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신들의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냉소적이거나 철저히 방관자적인 아이들이 많을 때는 답답하다.

그러나 절대로 조급해해서는 안된다.

17년 동안 청소년은 권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배우며 살아온 그들의 생각과 태도가 변화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활동가의 조급증은 아이들의 변화를 바라보는 눈을 가리고 인권의식을 비인권적인 방법으로 심어주고자 하는 무리한 시도를 하게 된다.

긴 호흡을 가지고 청소년과 함께 인권운동을 풀어나가기 위한 끈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⑥ 청소년인권센터의 방향모색을 위한 고백

2001년도에 광주청소년인권센터는 청소년인권운동을 지역의 시민단체 및 청소년단체, 교사, 학생의 참여 속에서 함께 공유하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및 정책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제기된 활동가들의 지적은 다음과 같았다.

『지난 4월 전국중고등학생연합 광주지부는 청소년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캠페인을 광주우체국 앞에서 개최하였다. 당시 캠페인에는 장학사는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나와서 학생들의 신상을 확인하려 했으며, 이 날 이후 광주중고등학생연합 소속 회원 중 신상이 공개된 학생들은 학교에서 질책을 당하였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 청소년인권을 억압하고자 하는 외압들로부터 맞서서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청소년인권센터의 활동은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청소년인권센터는 청소년의 인권을 억압하는 권력과 맞서서 그 대안과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청소년인권센터는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실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또한 청소년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학생자치활동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청소년인권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으로 청소년인권센터를 만든 것은 청소년인권운동에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남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청소년인권센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바램은 오히려 첫 발을 디는 청소년인권센터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청소년인권운동은 청소년인권센터뿐 아니라 청소년인권에 관심을 갖는 각계의 연대를 통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논의가 이 자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인권운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쳐선 안 될 것이 여자청소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제 많은 곳에서 여자 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심각성은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동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운동은 학교에서의 자치권이나 교육권, 자유권 등의 논리뿐 아니라 여자청소년의 성적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더불어 되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인권은 크게 보호권과 자유권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청소년 보호권은 각종 법과 제도를 통하여 담보되고 있으나 자유권은 거의 초보적 수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더불어 시민권을 확장해나가기 위한 방안이 정책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청소년 인권운동의 주체인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는 동반자로서의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청소년인권센터는 이를 위한 선두에서 담론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인권운동은 학교에 비해 관심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 정치, 노동의 영역에서 청소년이 처한 권리침해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각각의 성인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며 이러한 운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 구조가 성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신장을 위해 성인역량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 권리는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청소년 스스로의 노력과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뜨거울 만큼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기대치도 높은게 사실이다. 그동안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던 여자 청소년의 인권문제, 학교에 비해 관심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사회, 정치, 노동 영역에서의 권리신장, 청소년자치활동에 대한 지원과 연대, 제도적 대안 제시, 행사성 사업보다 내실있고 구체적인 활동 등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운동으로 풀어낼 것인가의 문

제가 청소년인권센터의 정체성과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으나 힘겨운 상황이다.

그러나 청소년인권센터 정책설명회는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한 지역의 시민단체와 청소년단체, 교사와 청소년 모두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때 광주청소년인권센터는 청소년인권운동을 인권센터의 몫으로만 여기며 외로운 길을 스스로 자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인권운동의 성장을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의 시민단체와 청소년단체, 교사조직, 청소년조직과의 긴밀한 연대망을 형성할 때 운동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더불어 청소년인권운동을 일이 아닌 운동으로 고민하며 향후 방향 모색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부끄럽지만 광주청소년인권센터는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동안 너무 게을렀던 것이 사실이다.

뒤늦게나마 청소년인권소위원회가 조직되어 청소년인권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곧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2) 흥사단 청소년인권센터

어느새 ‘청소년 인권’이란 말이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가는 듯하다. 1999년 이 운동을 시작할 때쯤 “무슨 청소년에게도 인권이 있어?”라는 자조 섞인 물음이 주위에서 들려 왔다. ‘인권’이란 성인 중심의 힘있는 사람들에게나 쓰여지는 단어로밖엔 들려오지 않았던 시절이 바로 몇 년 전의 일이다.

사회적 무관심과 냉소 속에 ‘청소년 인권 운동’이 시작했다. 당연히 예산과 전문인력이 부족했고 ‘청소년 인권’이란 조합된 단어조차 익

속지 않을 뿐 아니라 몇몇 사람들에게겐 거부감마저 들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사회적 지원은 고사하고 단체 내에서조차 지원을 이끌어 내기란 참으로 힘들었다.

그렇게 청소년 인권센터를 시작했고 하나의 막을 내렸다.

이후 몇몇 단체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인권센터의 존재 이유만으로 이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토대가 아닌가 싶다. 인권운동이란 것이 유행처럼 시작됐다 철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운동이 아니다. 사람들의 무관심이, 냉대가 심해질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 인권 운동이다. '청소년 인권 운동'은 그래서 더욱 필요한 운동일 수밖에 없다.

(1) 청소년 인권운동의 역사적 배경

1998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학생인권선언'을 발표하기 위해 전국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선언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통해 청소년 인권 문제가 제한적이나마 사회적 관심을 갖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애초 이 시안에 따르면 차별 금지와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의 참여부분이 들어가 있는 등 나름대로 학생 인권의 신장을 위한 노력이 참 많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공청회를 거듭하면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차별을 금지한다'고 변경되어 차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이마저도 교육계의 저항에 부딪혀 '학생인권선언문'이 발표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청소년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차원이 운동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이전에 청소년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했던 역사적 배경이 존재한다.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1929년 '광주학생의거'와 1960년 4·19 혁명이 그 좋은 예이다. 1980년대에는 87년 6월 항쟁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회장 직선제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분출된 청소년의 사회참여 운동은 90년대 들어와 학생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러 시도와 하이텔, 나우누리의 통신 공간에서 시작된 ‘학생 복지회’ 등이 나름대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들어 사회운동의 재편기에서 학생들의 사회참여 운동은 다른 형태를 띠게 된다. 봉사활동이 성적에 포함되고 7차 교육과정에서 사회적 참여활동이 일부 보장되게 되면서 청소년 단체별로 청소년 사업이 활성화되어진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가 제도권 속으로 편입되어 확대되어지는 형태로 진행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학교 안에서의 일부 의식 있는 교사 중심으로 학생인권을 개선하고 사회참여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도 시작된다. 대영중학교의 ‘NGO 탐방반’이 그 좋은 예이다.

대영중학교 NGO 탐방반은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현재 사단법인으로 독립하여 ‘국제민주연대’로 바뀜)와 ‘깨끗한 세상 만들기(CCC운동)’를 전개하였고 성남외국인노동의집, 민연련 등의 탐방활동을 전개하면서 사회의 구조문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2) 청소년인권센터 발족과 청소년 인권운동

계속해서 청소년의 사회참여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청소년 인권운동이 결국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사회참여와 조직화가 인권운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1998년에 인권운동사랑방과 홍사단, 청소년 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 인권 연대’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주로 세미나 중심으로 ‘인권의 개념’과 ‘인권운동의 역사’, ‘청소년 인권 운동의 화두’를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과정에서 자민련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체벌에 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합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여타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연대회의를 구성, 이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1999년 4월 서울 홍사단 내에 청소년 인권센터를 구성하여 활동하기에 이른다. 당시 ‘왕따’의 문제와 ‘청소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팽배해 있던 때이다.

그때까지 청소년 단체별로 진행되어 온 청소년 문화 운동과 동아리 활동 중심의 활동이 이러한 청소년 사회문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지는 못하던 때이다. 이른바 청소년 인권센터의 활동은 이전의 문화적 접근에서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접근을 시도한 커다란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3) 홍사단 청소년인권센터의 활동

① 1999년 왕따 문제와 청소년 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즐거운 학교 만들기 시민운동 전개’

당시 학교안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왕따문제와 학생 폭력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그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성인 중심의 문제 해결 방법이었고 언제나처럼 근본적인 문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단위 학교를 모델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운동을 시작하기 앞서 왕따 문제와 학생 폭력의 문제의 원인 지점을 찾고 그에 맞는 해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왕따의 대상이 이전과 다른 따돌림 문제와는 다르게 공부 잘하고 집 잘살고 잘난 척 잘하고 선생님께 이쁨 받는 학생이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이러한 학생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지만 오히려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어진 것은 학생들의 교사와 학교 등 사회의 불만이 왜곡되어져 분출되어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학생 폭력의 문제도 교사의 무분별한 체벌에서 일부 기인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힘의 논리가 무차별적으로 학생들의 생활문화에 침투되어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비춰지게 한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벌점과 체벌, 징계 등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효과의 분석과 교사가 아닌 상담전문가의 학교 안에서의 상담활동 강화, 자치활동 및 학생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 교사제(한시적) 도입, 가해 학생의 사회봉사 활동 활성화, 청소년 인권교육 확대를 통한 문제 해결방식의 효과 분석을 통해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식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각 담당 교사의 양성과 표본 학교 집단을 선정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학교의 섭외 과정에서 '우리 학교에는 왕따 문제나 학생 폭력 문제가 전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학교측의 비 협조로 이 사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아쉽지만 이를 대신하여 11월 학생의 날 행사를 통해 '청소년 인권선언문'을 발표하고 '고등학교 학생회의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② 2000년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위한 운동 전개

당시 청소년 문제의 현안은 두발 자유화에 있었다. 여학생은 단발 머리 내지 긴머리일 때 머리카락을 묶어야 했고 염색은 당연히 금기 사항이었다. 남학생은 스포츠 머리를 강요하여 학생의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관습이었다. 몇몇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가 모여 두발의 제한 규정을 바꾸기도 하고 인터넷 상에서의 공론화를 통한 자유화 바람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자발적 사회참여의 흐름 속에서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스스로' 바꾸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청소년 포럼'과 '청소년 NGO 탐방활

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기존의 청소년 문제 접근 방식이 여러 성인 전문가 집단의 ‘요즘 청소년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문제 해결방식을 떠나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자는 취의 내용이었다.

‘두발 자유화’, ‘청소년 인권의 문제’, ‘청소년 놀이 공간의 대안찾기’ 등이 그 주제로 토론되었고 12월에는 ‘청소년 보호법 이대로 괜찮은가?’의 주제로 청소년 보호위원회 관계자와 폐지를 위한 시민단체 전문가를 모셔와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판단하는 모의 재판 형식의 포럼을 진행하였다.

한편 NGO 탐방활동을 통해 사회 각각의 문제에 대한 참여식 교육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하였다. NGO 단체별 현안 문제를 듣고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벌이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아닌 현실 사회의 주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커다란 믿음을 심어 주었다.

③ 2001 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한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및 청소년 인권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전개

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해 보다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청소년 인권 지도자 양성의 문제였다. 청소년 인권 전문가가 부족한 시점에서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참여는 참으로 중요했다. 또한 학교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 포레 지도자(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하는)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인권 교육이 이를 확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봤다.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각 2회 과정으로 하였고 이 과정에서는 청소년 인권의 이론적 문제와 게임을 통한 인권교육의 내용을 담아 진행하였다. 여기서 배출된 지도자들은 각 현장에서 현재까지 청소년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④ 청소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존의 인권운동사랑방 등 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와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독일에서 넘어온 민주시민교육방법론을 이용하여 청소년 인권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청소년인권 프로그램집’을 99년과 2001년에 발간하였다. 지금까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 진부하여 21세기를 살아가는 청소년의 정서와 다양성을 따라잡지 못하였다. 이 프로그램집을 발간하면서 청소년이 스스로의 인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데 보다 용이하고 재미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서 프로그램집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4) 홍사단 청소년인권센터 활동 정지

2001년을 끝으로 홍사단 청소년인권센터와 그 운동이 끝나게 되었다.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단체내의 지원부족과 전문가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다.

① 사회적 인식 부족과 실무인력의 부족

2001년 청소년인권프로그램집 발간을 끝으로 청소년 인권 운동이 홍사단 내에서 사라져버렸다.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결국 단체 내 인식 부족이 그 핵심이었다. 본인 또한 청소년인권센터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실무자로서 단체 내에서 그 일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 자원봉사자의 노고와 프로젝트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3년의 활동 시간에서 개인적인 활동비는 몇몇 아는 동기와 선배들에게서 나오는 후원금과 외부의 청소년 인권교육의 출강 등으로 나오는 강사료로 버틸 수밖에 없었다. 이 운동이 단체의 성과물로 남기보다는 한 개인의 욕심의 문제나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어지기도 하였다. 내부적인 문제라 거론하는 것조차 민망하지만 어찌라, 이것이 현실인 것을.....

이러한 문제는 활동가의 재충전을 위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청소년 인권의 문제가 사회적 필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열악한 청소년 인권의 현실이 부각되기도 하지만 문화적 접근이나 상담방식의 대중적 접근보다 수익구조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청소년 관련 단체의 재정구조로는 원활하게 지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각 단체의 재정구조는 회원의 회비 20~30%와 사업 수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사업의 형태를 진행하고자 할 때 최소한의 인건비로 사업의 수익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 사업의 형태에서 보여지듯 각종 캠프활동과 상담실 운영은 그 수익적 측면에서 일정정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접근 방식의 청소년 인권 운동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는 고사하고 이를 수행하는 활동가의 활동비마저 감당할 수 없다. 한 예로 청소년 국토순례, 예절캠프, 비만캠프, 상담캠프, 지도력 훈련캠프 등은 참가를 원하는 수요층이 넓지만 어디 청소년 인권캠프라 하면 누가 참여하겠는가? 그래서 웬만한 재정을 갖추고 있거나 오너의 의지가 강하지 않는 한 청소년 인권 운동의 지속성을 담보해 낼 수 없다. 누굴 원망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의 문제인 것이다.

② 전문가인력의 문제

청소년 인권 운동의 연력이 적듯이 이에 대한 전문인력 또한 손에 꼽을 정도이다. 대학의 청소년 관련 학과는 대표적으로 '청소년 지도학과'와 '청소년 학과'가 있다. 그러나 서울 S여대에서 보여지듯 청소년 학과를 몇 년 시행해 보지도 못하고 교수진의 부족으로 인해 학과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청소년 인권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가!

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한 과제는 너무나 많다. 학교와 같은 제도 교육 안에서의 청소년 인권문제와 제도 밖의 청소년 인권문제, 장애 청소년의 문제, 인권교육의 측면, 법·제도적 측면, 청소년 인권 조직화 운동, 연대기구 구성 등 다양한 청소년 인권 운동의 영역을 담보할

만한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절실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과제를 창출해내고 해결해 나가는 노력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단체내에서 제도적으로 운영되어 있거나 인건비가 책정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몇몇 개인 활동가의 의지로는 전문적 영역을 담보해 나가기 힘든 실정이다.

(5) 청소년인권센터의 새로운 모형 만들기

① 사회적 지원의 문제와 수익구조 창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성되어져 활동하고 있고 문화관광부와 청소년개발원에서 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한 여러 구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알고 있다.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몇몇 관련 기구에서 이 문제의 공론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는 것이 어찌 환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 주도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결국 이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각 단체와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물론 민관의 영역이 좁아지고 있는 사회지만 일정의 역할 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초기에는 그것이 관의 민간 위탁 형식이든 사업비 지원이든 지원의 역할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민관 협력이 구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결국 민간차원의 청소년인권센터 구성과 활동을 위해서는 그 수익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청소년 인권'이란 명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홍보를 통해 회원제 운영과 회원 회비 중심의 수익구

조가 그 필수적 요소이다. 사업을 통한 수익구조의 문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중략하겠다.

② 전문인력 양성의 문제와 연대 활동

결국 교사와 청소년 단체 교육 담당자의 청소년 인권 전문가로의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청소년인권센터 안의 연구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내부인력 뿐 아니라 외부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인권센터의 활성화는 실무자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고 청소년 인권침해의 사례를 분석하며 새로운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청소년인권센터의 지속성을 담보해 가는 핵심적 요소의 한가지다.

특히 교사와 청소년 단체 교육 담당자의 참여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의 인권교육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들 중 몇몇은 청소년 인권문제의 전문가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 나가는 노력이 보다 확대된 인력풀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본다.

③ 이제는 장애 청소년이다.

청소년 인권의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고민되어지는 부분이 소외 청소년의 접근방식이었다. 약자를 중심으로 보고 활동하는 것이 인권운동의 핵심이듯 청소년 안에서의 소외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학생 청소년 중심의 활동 내용 하나라도 벽차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애를 갖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와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장애청소년의 학습권 침해와 학교 밖 노동청소년의 인권침해, 학교 안에서의 저소득 청소년의 문제 등은 하루 속히 활동 매뉴얼을 만들어 연구작업과 활동을 시작해야 된다고 본다.

④ 학생의 변론권과 저항권

청소년들의 인권침해 사례 중 가장 큰 부분이 자신의 변론권과 저항권이 없어서 생긴 문제이다. 사생활의 침해와 프라이버시 문제, ‘합법적 폭력’(?)에 대한 일방적 침해 등 일상생활 속에서 약자로 특히 당하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하나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결하기엔 우리의 운동역량이 부족할 따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학교내의 징계 시 변론권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을 진행했으면 한다.

교사 중심의 사고에서 학생 개개인의 선입견으로 또는 파워 있는 학부모의 입김에 의해 정당한 절차에 없이 사고에 대한 징계가 내려고 있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의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와 가해, 피해 학생의 의견 진술권을 주는 등의 방안을 연구하여 실현시키는 운동을 시작해 보자. 이러한 운동의 과정에서 일상적인 학생의 발언권을 높이고 개인의 주관과 선입견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줄여나가는 것이 어떤지 생각해 볼 문제다.

⑤ 인권운동도 조직화의 문제다.

인권운동도 조직화의 문제다.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 인권문제의 핵심이다. 독일의 여성인권문제를 예를 들자. 일반 유흥업소에 여자의 요염한(?) 사진이 있을 때 동독의 여성과 서독의 여성은 서로 다른 반응을 한다. 서독의 여성이 강하게 반발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반면 동독의 여성은 의외로 담담하다. 이는 동독의 여성의 인권은 국가에 의해 주워진 인권이고 서독 여성의 인권은 스스로 개선시킨 소중한 인권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인권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청소년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한 청소년 단위의 조직화를 꾀하는 작업은 청소년인권센터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성인 중심의 대안마련과 해결책은 미봉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청소년인권센터가 청소년이 직접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성인은 조력자의 역할로서 더욱 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종합 분석 :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와 과제

Ⅲ장에서는 청소년인권센터의 운영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구체적인 성과와 어려움, 향후 과제 등을 추출해 내고자 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인권센터는 그 특성과 성격이 다양하여 통일되지는 않지만 ‘청소년인권센터’의 이름을 걸고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은 대략 7개 정도이다.

1999년 1월 처음 설립·운영된 충남청소년인권센터를 시작으로 하여 2002년 하반기에 익산시청소년인권센터가 개소되기까지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청소년인권센터의 명맥이 이어지고 더욱 확장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면서 부딪혔던 많은 어려움이 3~4년간의 경험과 역사 속에서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재, 인권침해 사례 해결과 조직적 대응을 위한 연계구축,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인권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인력보강 등의 문제는 이미 1999년 9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한 워크숍(「새로운 천년과 청소년 권익증진의 과제」)에서 충남청소년인권센터 담당자가 제안했던 과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는 2003년 9월에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인권센터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그 동안의 인권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1)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현황

<표 III-3>에서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인권센터는 충남, 광주, 부산, 경기도 군포시, 울산, 익산 등 7개 정도이며, '청소년인권센터'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 인권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인권단체로 인권운동사랑방과 다산인권센터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홍사단청소년인권센터는 2001년 말에 중단됨).

<표 III-3> 청소년인권센터 설립·운영 현황

구 분	설립연도	운영주체	운영여건
충남 청소년인권센터	1999. 1	충남청소년종합 상담실	상담실 사업비와 인력으로 인권센터 사업 병행. 담당 자 1인
· 홍사단 청소년인권센터	1999. 4~2001. 12	홍사단	담당자 1인이 프로젝트 공 모를 통해 사업비 충당. 2001년 중단됨
광주 청소년인권센터	2000. 5	광주YMCA	광주시청에서 광주시청소년 육성기금 2,300만원 지원(1 인 인건비 포함)
부산 청소년 인권평화센터	2001. 3	부산 I&C (부산청년정보 문화공동체)	시청이나 공동복지모금회 등에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충당, 기부금
군포일하는청소년 인권센터	2002. 3	군포YMCA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사업 비 충당, YMCA 회비와 기 부금 등
울산 청소년인권센터	2002. 7	울산YWCA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사업 비 충당
익산 청소년인권센터	2002. 12	익산YMCA	기부금이나 모금으로 95% 이상 충당, 공공재원 3% 정도, 상근직원 2명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1993년 설립, 1995년부터 청소년인권교육, 모 니터, 연구조사 등 실시	인권운동 사랑방	자체 운영비
다산인권센터	1993년 설립, 1998년부터 청소년인권교육, 모 니터, 연구조사 등 실시	다산인권센터	자체 운영비

① 설립 배경과 취지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 청소년의 '자율·참여'와 '권익신장'에 방점을 두면서 기존에 비해 청소년 권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전반적으로 청소년인권과 참여확대를 위한 사업프로그램들이 새롭게 개발·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회 속에서 청소년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청소년과 성인들의 자각과 관심 확대로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 모색이 이루어졌고, 이의 일환으로 '청소년인권센터'가 점차 설립되기 시작한다.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최초 구상은 1996년 한국청소년개발원 발간 보고서인 '청소년인권 보고서(연구책임자 이용교)'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청소년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청소년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의 연구, 청소년인권 교육자료의 개발, 청소년인권 상황에 대한 감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공공기관으로 청소년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센터의 설립배경은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공적 대응, 청소년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국제협약의 준수 등이다. 더불어 청소년인권센터의 기능과 사업, 기구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설립된 청소년인권센터들은 큰 틀에서 보면 위 보고서가 제안하고 있는 운영모델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처음 제안한 인권센터의 성격이 '공공기관'인 것에 비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권센터들 대부분은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서 민간차원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⁵⁾

5) 청소년인권센터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대전지역에서 인권센터 운영사업을 준비했던 담당자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것 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조직으로 시작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 설립·운영될 때 그 성격과 기능 및 역할 규정에 대해

설립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보면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기는 하나, 결국은 해당 단체·기관의 청소년인권에 대한 관심, 특히, 담당 실무자의 청소년인권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첫 출발이 되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 청소년인권센터의 경우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인권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행정기관 담당자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킴으로써 공적인 지원을 가능하게한 사례로서 자치단체 청소년사업 담당 공무원의 청소년 인권의식 확대가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군포시 일하는 청소년인권센터의 경우는 청소년인권 사업이 세분화·전문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청소년인권 문제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며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과 사안별로 필요로 하는 주안점과 대처방법에 있어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들어 청소년의 '노동권' 요구가 높아지고 이와 관련된 침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시대상황에 따라 새롭게 대두하는 인권이슈에 대한 예측과 대처도 필요하다.

현재의 추세로 보면, 청소년인권 문제는 더욱 다양해지고 사안에 따라 더욱 심각해지기도 하며, 청소년들의 인권의식과 요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관심있는 성인들의 노력도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포괄적인 노력으로서 '청소년인권센터' 기능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도 더욱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② 설립시기

1999년 1월 충남청소년인권센터가 최초로 설립되었다. 1998년 중

수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각 지역단위로 청소년인권 관련 이슈의 특성과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성격의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향후 발전과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연구진의 제언은 VI장에서 제시될 것이다.

충남도에서는 청소년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체적인 증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가운데 구상된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사업이었다. 자치단체 증장기계획을 통해 구상된 정책아이디어가 바로 다음 해에 현실화된 것이다.

그 이후 4월 홍사단청소년인권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다음해 2000년 5월에는 광주광역시 청소년인권센터가 설립되었다. 그 다음해인 2001년 3월에는 부산지역에서 인권센터가 운영되었으며, 2002년 들어 3개의 인권센터(군포, 울산, 익산)가 차례대로 개소하였다.

한편, 그 사이 대전지역에서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중심으로 2001년과 2002년도에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청소년인권 관련 연구조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인권센터 설립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1999년 이후 꾸준히 청소년인권센터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2002년도에 들어 더욱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현재, 전국에 설립·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인권센터는 7개 정도이다.

③ 운영주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인권센터의 경우 대부분 기존 청소년단체·시설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청소년 인권사업을 실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충남의 경우 청소년종합상담실에서, 광주와 군포, 익산시의 경우는 YMCA에서 운영하며, 울산의 경우는 YWCA에서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부산청소년인권평화센터는 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에서 운영한다.

충남의 경우만 청소년상담실에서 운영하며, 나머지 센터들은 청소년단체에서 운영하는 형태이다. 주로 YMCA와 YWCA의 청소년인권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는데, 이들 단체는 오랜 청소년운동의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사업에 있어 청소년 인권 문제의 중

요성과 심각성을 일찍 간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인권센터가 자체적인 관심과 필요성에서 시작된 만큼 해당 단체·기관과 실무자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중요한 첫출발이 되고 있다.

④ 운영여건 : 인력과 자원

현재 청소년인권센터들은 인력과 자원 면에서 어려운 운영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센터가 인권센터 사업을 전담하는 별도의 인력과 재원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청소년인권센터만이 유일하게 자치단체(광주시청)로부터 공공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광주청소년인권센터는 광주시청소년육성기금에서 2,300만원 정도를 지원받는데, 여기에는 1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다른 센터들에 비하면 가장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규모는 다른 청소년프로그램 1개 운영비보다 작아서 활발한 인권사업을 펼치기에는 턱없이 작은 규모이지만 별도의 기금 지원이 없는 타 센터들에 비하면 상당히 선진적인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의 인권센터들은 운영단체의 사업비를 쪼개어 인권센터 사업을 운영하거나 외부 프로젝트 공모(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공모사업)를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특히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는, 제안서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인권사업을 실시하기 어렵게 되기도 하여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또한 어렵게 사업비를 조성하더라도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아 결국 인권센터 담당자가 운영단체의 다른 사업을 병행해서 수행해야 하므로 인권센터 운영을 적극적으로 맡아 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곧 인권센터의 인력 문제로 연결된다. 현재 청소년인권센터 운영비 내에서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광주청소년인권센터뿐이다. 다른 센터들은 인권센터 운영 전담인력을 위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운영단체의 지도인력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청소년인권센터의 인권사업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인권센터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인권센터 사업과 가장 연계를 갖는 다른 청소년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한다.

결국 전담인력이 없는 경우 과중한 업무로 적극적으로 인권센터 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담당주체의 의욕과 열의를 지속시키기 어렵게 된다. 또한 불안정하고 열악한 재정구조는 청소년인권센터의 사업을 축소시키고 후순위로 미루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⑤ 기타 청소년인권조직 현황

한편, 청소년인권센터 설립은 아직도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중이기도 하다. 2003년 8월부터 대구지역에서 '청소년아르바이트인권센터' 설립을 준비하는 작업이 진행중이기도 하며,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청소년인권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 10월부터 설립·운영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굿네이버스 위탁)는 아동학대 신고 24시간 핫라인 설치 및 신고 접수, 신고사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 관련 기관과의 연계, 관련 실태 연구조사 및 교육프로그램과 자료 개발·보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인권센터' 설립·운영 모델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⁶⁾

6)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는 전국 차원의 아동학대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확립과 아동학대 정책제언을 통해 학대받는 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고, 일반 시민들의 아동학대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2001년 10월 보건복지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아동학대예방센터

2003년 9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위기 청소년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참여인권센터(시소센터)'를 설립하여 청소년 정책참여, 청소년의 고민 상담, 청소년 권리침해에 대한 사이버 신고 접수 처리, 위기 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그 외에 '청소년인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권센터의 주요기능인 청소년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례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 유니세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국제기구 한국지부들 뿐만 아니라 (재)아우내 미래문화연구원 평화위원회와 같은 연구기관에서도 현장 교사들과 연계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사회교사모임 인권교육분과나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등 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현장검증을 거쳐 자료화되고 있기도 하다.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인권단체에서 청소년인권에 대한 관심은 더욱 확대되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별도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청소년인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청소년분야에서도 이들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권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어려움과 과제

청소년인권센터가 우리 사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이 1999년이라면 벌써 4년째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 역사에 비해 아직 청소년인권센터의 획기적 발전 전기를 맞고 있지는 못하다. 그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는 2000년 7월 13일 시행된 아동복지법 2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0년 10월 17개 시·도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립되었으며, 2001년 10월 18일에는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세워졌다.

①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어려움

첫째, 가장 우선적으로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 문제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인권’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나 청소년인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인권센터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학교와의 연계와 협조를 얻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소년 자신들의 참여도 아직 미흡한 편이다.

둘째, 재정지원이 미흡하다. 청소년인권센터의 취지와 중요성에 비해 공공지원이 미약하며, 운영 단체 내에서도 인식 부족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기존 사업비 내에서 일부를 인권사업에 활용해야 하므로 운영 단체 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도 필요한 것이다.

셋째, 전담인력이 부족하다. 대부분 인권센터 담당자는 운영 단체 내에서 다른 업무와 인권센터 업무를 병행하여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센터 사업만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를 갖는다. 또한 대부분 담당인력도 1인 정도에 그치고 있어 청소년 인권 모니터, 인권교육, 인권상담, 침해사례 접수 및 처리, 홍보 및 캠페인,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인권센터 사업을 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넷째, 인권사업 전문인력 부족 문제이다. 청소년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인권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 구조상으로는 이런 측면이 부족하다. 인권센터 운영이 개인 실무자의 헌신성과 열의에 의존하고 있고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못하므로, 담당 실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 인권센터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된다. 인권전문 지도인력 양성과 지속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다섯째, 청소년 인권 침해 상담과 접수 및 처리 권한과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 청소년인권 침해 사례 접수 시 관련 기관들과의 신속

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사 및 해결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인권 관련 프로그램과 자료가 미흡하다. 인권센터의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활용할 만한 청소년인권 분야의 자료나 정보,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② 청소년인권센터 활성화 과제

첫째,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의 자발적 인권신장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자치활동과 일상 속의 권리찾기 운동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인력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및 자치단체의 공공재원을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사업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 모델과 같이 전국의 16개 시·도에 청소년인권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다. 청소년육성기금을 활용하여 중앙단위에서 50% 정도 지원하고 자치단체에서 50%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권센터 설립·운영을 권장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인권센터 설립·운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는 문화관광부에서 ‘(가칭)청소년 평화인권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운영하여 청소년인권센터와 같이 청소년 인권사업에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해온 기관의 인권프로그램에 우선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 인권프로그램에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요구와 문화에 맞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지역 단위로 지역 내 학교와 다른 시설·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인권’ 사업 분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명칭에 있어서도 ‘갈등해결, 평화문화, 타문화이해, 관용교육, 의사소통훈련, 리더십, 인권감수성, 공동체문화’ 등 인권교육이 포괄하는 내용별로 다양하게 프로그램화하여 청소년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인권 전문지도자 양성 및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 인권센터를 아무리 확대하려 해도 이를 담당해서 사업을 추진할 전문 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청소년인권 사업을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과 보수교육 과정에 ‘인권 전문가’ 과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향후 청소년인권센터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권지도자 양성과정을 이수한 인력이 담당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인권 관련 자료 개발·보급이 시급하다. 최근 들어 청소년인권교육 프로그램들이 점차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청소년인권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현장적용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자료 뿐만 아니라 지도자 대상 매뉴얼과 다양한 매체 형태로 인권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여섯째, 청소년인권 침해사례 접수와 처리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사례 신고 접수 및 처리과정과 연계하여 청소년인권 분야 문제해결 과정에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결국 청소년인권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인권센터의 실태와 과제를 알아보았다. 현지방문조사, 우편조사, 이메일과 전화면접 등이 이루어졌으며, 전문가워크숍을 통해 인권센터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

장의 어려움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최종 정리된 내용이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인권센터 운영 어려움이 과연 예산과 인력의 문제로만 치부될 수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인권센터의 설립취지와 지향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몇가지 기타 의견들도 있었다. 본 절에서 제시한 향후 과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권센터의 현실적인 수준과 여건 내에서의 개선점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다.

보다 이상적인 청소년인권센터의 활성화 과제는 향후 인권센터의 위상과 역할 모델에 대한 검토와 맞물려 논의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도단위 청소년인권센터의 경우 정부의 공공지원을 받아 독립적인 인권기구로 설립·운영하고, 시·군·구단위 인권센터의 경우는 기존 단체·기관의 부설 형태로 인권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IV. 외국의 청소년 인권신장활동과 인권기구 운영 사례

1. 주요 외국의 청소년 인권신장 활동
2. 청소년 인권기구 운영 사례
3. 시사점

공 백

IV. 외국의 청소년 인권신장활동과 인권기구 운영 사례

1. 주요 외국의 청소년 인권신장 활동⁷⁾

(1) 영국

영국정부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권리를 추진하는 관련 부서간의 역할과 기능의 충돌, 그리고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위한 독립기구 조직에 관한 비정부기구들의 요구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1, 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평가 이후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고, 교육과 건강, 그리고 특별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에게 이들이 필요한 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영국은 2003년 6월 블레어수상이 내각을 개편하면서 교육기술부 내에 '아동부'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마가렛 홋지(Margaret Hodge) 전 고등교육부문 장관을 그 부문의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아동권리증진에 획기적인 시도를 하였다.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는 2001년 6월 교육고용부(DfEE)에서 분리되어 교육부문만 전담하는 독자적인 부처로 편성되었다. 이 부처는 연령별로 나누어져 이번에 편성된 5세 이하 부문(Children), 5세에서 16세까지의 학교부문(School standards), 16세 이후 교육(lifelong learning, further and higher education)을 담당하는 세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세 부문으로 나누는 근간은 의무교육기간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나누어져 있지만 업무에 따라

7) IV장은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이재연교수(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가 집필 하였음. 영국자료는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Beacon Research 최봉섭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것임을 밝힘

서는 연령층이 겹치는 부분도 많다.

교육기술부에는 4명의 장관이 임명되어 있으며 수석장관(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 and skill)이 있고 그 하부에는 위에서 열거한 세 부문에 장관(minister)이 세 명 있다(www.dfes.gov.uk/insidedfes 참조).

이번 ‘아동부문’이 설립된 것은 여러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아동 보호법’과 관련된 업무들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직접적인 동기 중 하나는 양부모에 의해 수년간에 걸쳐 학대받다가 2000년 2월 살해 된 Victoria Climbié라는 8세 여아의 사건에 기인되어 있으며 2003년 1월 국회 조사보고서(Victoria Climbié Inquire : report of an inquire by Lord Laming, 2003/01, Command paper 5730)에서 현행 행정제도로는 그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영국 정부 부처 중에서 아동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은, 각종 아동복지수당(benefit)을 관할하는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구 사회복지부는 이곳에 편입)’, 아동의 건강을 점검하는 ‘Department for Health’, 미성년 범죄자를 수용·관리하는 ‘Home office’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술부’이다.

2003년 8월 현재, 교육기술부 내 ‘정책기획과(Policy setup)’에 따르면 아직까지 ‘아동부문’의 분장업무는 관련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서 문서상 명확하게 명시되어 출판된 것은 없으며 홈페이지도 개설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보호대상’ 아동들을 체계적으로 보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취학 전 아동교육, 아동 보호시설의 체계적 재정지원(사설 놀이방, 유치원,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 후 놀이방 등), 장애 아동 보호 교육, 가족법과 관련된 가정법원의 사안들의 신속한 처리, 불안정한 부모들을 위한 지원,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십대 미혼모 처우문제, 청소년 범

죄자 수용 및 처우, 청소년 직업훈련 알선, 청소년 부랑자(homeless)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국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 개인가정을 방문하여 환경을 살펴 볼 수 있는 공권력을 가진 사람은 ‘사회복지원(Social health care)’ 정도이다. 만약 학교 교사가 아이의 얼굴에 맞아서 멍이 든 상처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 사정을 밝혀내고 가정 내 폭력의 재발을 막기까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영국의 현 제도에서 본다면, 학교교사(교육부)는 사회복지원(사회복지부)에 연락을 하고, 사회복지원이 가정방문을 하여 문제가 심각할 경우 경찰(내무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이 부모가 구속이 되면 이 아이를 돌봐 줄 위탁가정을 찾아야 한다. 이와 같이 가정 내 폭력의 처리과정이 무척 복잡하고 길어 종종 진행도중에서 관료주의의 태만에 묻혀 버리곤 한다. 더구나 이러한 가정 내 폭력과 관련된 아이들의 문제들은 누군가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다.

‘Victoria Climbié 보고서’를 작성하여 현행 아동보호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Laming 경은 ‘아동부’를 하나의 내각 수준 정부 부처로 만들지 않는 한 그 부서장의 권한은 현행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풀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권고를 했으나 블레어 수상은 교육기술부 산하의 한 부서로 위치를 정했다.

(2)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f the Children’s Right : CRC)을 1991년에 비준하였고 노르웨이의 이행사항을 움부즈맨이 계속 모니터링 해왔지만, 노르웨이 협약의 실행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노르웨이는 일찍이 1881년 아동옴부즈맨기구(Barneombudet)를 설치하여 옴부즈맨 제도를 통하여 대중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였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처럼 노르웨이는 아동·청소년 권리 신장을 위해 앞선 나라이기는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평등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비평도 제기되었다. 이것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노르웨이에 대한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 기관인 아동옴부즈맨은 유엔아동권리 협약이 노르웨이 국내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3) 미국

아동권리 협약이 UN총회에 의해 채택된 이후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협약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다. 미국에서 혼란스러운 것 중의 하나는 인권 주장자들 자신이 협약의 내용과 그 이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는 전국규모의 시민단체들이 있다. 이 단체들은 잘 조직되어 있고 국회와 정기적으로 접촉한다. 그들은 아동권리를 가족에 대한 위협으로 바라보는 보수적 종교그룹이 대부분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게 되면 미국의 주권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단체도 있다. 즉, UN이 세계적인 정부가 아니라 주권이 있는 국가들의 조직이고 국가들의 주권을 조심스럽게 조정해 가는 조직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협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국가아동권리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the Rights of the Child)와 아동과 청소년 권리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은 정보의 차이를 메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교육자들은 아동과 청소년권리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하여 일하고 있고 대학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협약에 서명하고 상원에 그것을 보내기까

지 국가아동권리위원회와 다른 아동·청소년 권리 옹호자들은 기꺼이 그 협약을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비준시키기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Vermont주의 경우에 한 고등학생 집단은 미국의 입법기관에 협약을 지지하고 비준할 것을 청원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주의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한 결과, 몇몇 주들은 특별히 ‘아동권리의 날’을 선언하였다. 종교집단에 의해 조직되었던 아동권리의 반발을 고려할 때 이것은 대단한 업적이다. 비록 아동권리협약의 비준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이것은 협약 지지자들에게는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즉 지지자들에게 협약에 대한 상원 청문회에 앞서 부정적인 정보에 대항하고 이를 조직해 나갈 시간을 준다.

(4) 일본

일본은 1994년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으나 이념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사회에서 형식적·일반적으로 협약을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가정과 학교 등 개별적인 상황에서는 반대한다. 권리에 관한 사회의 인식을 볼 때, 권리보다는 책임을 강조하고, 아이들의 권리는 어른이 지킨다는 생각이 강하며,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관에 대한 거부반응이 만연하다.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동·청소년 권리증진 활동으로는 호우고우깡 아동인권 음부즈맨 제도나 사이따마깡 아동권리옹호 위원회 조례 등을 찾아볼 수 있으며, 1993년부터 시민단체 주최의 「아동권리 협약 포럼」이 매년 11월 조약채택 기념일에 개최된다. 2002년 8월 호우고우깡 가와니시에서 개최된 「지방자치와 아동시책」이란 심포지엄은 공무원들의 연수기회의 장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대표적인 청소년 참여 정책으로는 가와사키시의 아동·청

소년조례 제정과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 참여를 들 수 있다.

① 가와사키(川崎子ども)시 아동·청소년 권리조례⁸⁾

• 아동·청소년 권리조례 성립 배경

‘가와사키(川崎子ども)시 아동 권리에 관한 조례’는 2000년 12월 21일에 가와사키(川崎子ども)시 의회에서 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 조례는 일본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종합적인 조례이며, 조례 안은 아동과 시민이 함께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다.

조례작성의 시작은 1998년 9월 당시 다카하시 시장이 ‘아동·청소년 권리조례’를 만든다고 기자회견을 한 이후부터이며, 가와사키(川崎子ども)시가 아동·청소년의 권리조례를 만들고자 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돌림이나 등교거부, 아동학대, 입시경쟁 등으로 지금의 아동·청소년들은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동 권리협약은 국가가 지켜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직접 정책을 시행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조례가 필요하였다.

둘째, 가와사키(川崎子ども)시는 ‘인간도시 가와사키(川崎子ども)’를 표어로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여 그 정책을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의 보장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셋째, 시민참가의 새로운 추진사항으로, 교육에의 시민 참여와 아동·청소년 참여를 추진함과 동시에, 시와 시민이 약속한 것은 하나씩 조례로 만들어어나가는 것으로, 시민주체가 뿌리를 내릴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8) 이 부분은 푸른 부천21 실천협의회의 「2002년 아동권리 조례 간담회 자료집」을 참고한 것임.

- 아동·청소년 권리조례 작성 원칙

아동·청소년 권리조례작성은 ‘시민과 함께’, ‘시 전체로’, ‘가와사키(川崎子ども)시에 뿌리내린 내용을’이라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시민과 함께’는 철저한 시민참여 원칙으로 조례 안을 만드는 심의회는 모두 공개로 진행되었다. 또한 심의 중간에 팸플릿을 만들어 배부하거나, 여러 시민과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을 심의에 반영하기도 한다. 심의회에는 아동·청소년도 의원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는 가정, 지역, 학교현장에서 가와사키(川崎子ども)시의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시 전체로’는 아동·청소년이 관여하는 부서는 교육, 복지, 보건, 청소년, 인권, 종합기획 등 폭넓은 분야로 나누어지며 각각 관계되는 법규나 국가의 방침에 따라 움직이고, 관계조직의 연계가 중요시된다는 것이다.

‘가와사키(川崎子ども)시에 뿌리내린 내용’이라는 원칙은 정보공개조례나 지역교육의회와 같이 현재까지 가와사키(川崎子ども)시에서 다루어온 여러 권리 보장 시책을 살려서 가와사키(川崎子ども)시의 아동·청소년들의 생각에 따라 발전시킬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 아동·청소년 권리조례 내용

먼저 ‘이념’ 부분으로, 조례 안 작성 시 성인과 아동·청소년, 성인들끼리도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크게 달랐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권리가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서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조례에서는 아동·청소년 권리를 공통으로 인식하기 위한 장을 만들어 명시하였다. 이는 전문에서 제3장까지로, 전문은 아동·청소년 권리의 사고방식, 제 1장은 정의, 제 2장은 가와사키(川崎子ども)시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있어 중요한 권리를 분류해서 제시하였다. 제 2장은 아동·청소년의 생활 장면에 적절한 권리 보장의 방법을 가정, 학

교나 복지시설, 지역으로 나누어, 학대나 체벌금지, 따돌림 방지 등 아동·청소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은 ‘참가’ 권리에 대한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며, 중요한 것은 어른이 결정하여 아동·청소년이 따르도록 했다. 그러나 권리조약에는 아동·청소년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되어 어른과 함께 생각하고 결정에 관계하도록 하였다. 학교 운영에 아동·청소년이 참가하고, 시 행정 및 도시 조성에 아동·청소년이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참가를 통한 권리보장을 추구하였다.

‘구제’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구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당시의 제도로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상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자신이 상담 가능하고, 제일 좋은 해결방법을 함께 찾는 조직을 신설하였다. 그것이 ‘인권 ombuds퍼슨제도’이며 ‘인권 ombuds퍼슨조례’를 제정하여 2002년 5월부터 상담과 구제 활동을 시작했다.

‘추진’ 부분에서는 아동·청소년 권리조례가 만들어져도 시책이 바뀌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 권리의 현실을 조사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와 검증의 구조가 요구되어 제 6장에서는 시가 시책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제 7장에서 ‘아동·청소년 권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 권리 조례는 전문에서 제 3장까지의 이념 규정과, 제 4장 이후의 구체적인 제도나 구조의 규정으로 이루어지며, 이념과 제도가 관련되어 전체로서의 실효성이 발생하는 종합적인 조례라고 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 권리조례 추진 내용

2001년 4월부터의 조례시행에 따른 주된 제도로 아동·청소년의

권리 신장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학년에 맞는 권리 학습자료 배부 및 강사 파견 제도를 만들어 각 학교에서 권리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활동으로써 매년 11월 20일을 ‘아동·청소년 권리의 날’로 정해, 아동·청소년과 시민이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서로 생각해보게 하고 있다.

참가 보장에 관해서는 ‘가와사키(川崎)시 아동·청소년 의회’를 설치하여, 공모해서 모인 아동·청소년들이 아동·청소년들만의 회의를 만들어 그 내용을 시 행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추진회의’는 열린 학교 만들기와 학교운영에 아동·청소년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아동·청소년,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등으로 된 의회조직을 설치했다.

현재 각 학교가 독자적으로 연구해가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구제의 구조로는 ‘인권 음부즈퍼슨’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시책의 검증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권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시책 전체를 추진하기 위한 시민부서의 인권 섹션 중에 ‘아동·청소년 권리 담당 부서’가 설치되어 시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② 학교 참여 정책⁹⁾

최근 일본에서는 그동안 학교 내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어른들 사이에서만 논의를 해왔지만,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이 참여의 기회를 제공받고, 스스로가 학교교육의 주인으로서 학교생활을 영위해 나아가게 하자는 것이다. 참여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참여경험을 통하여 성숙되어지기 때문에 학교 내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참

9) 이 부분은 김형욱 선생의 2003년 한국아동권리학회 제 11회 월례발표회 자료 ‘학교에서의 아동참여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사쓰나이기타 소학교의 교과외활동을 중심으로-’를 참고한 것임

여의 장이 마련되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야 하지만 이와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다. 법적·제도적 차원에서의 조건정비 부족, 기존의 아동관과 어른들의 권리의식 부족 등이 아동과 청소년 참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子どもの人權刊行委員會, 1997).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 참여활동과 영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학교의 모든 행사를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맡기고 그들의 자주·자립의 정신을 육성하려고 하는 기다림의 교육과 교사의 지원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二階堂陽一外, 1981).

학교 참여정책의 한 사례로 사쓰나이기타 학교에서는 2000년도부터 운동회, 교내 축제 등의 학교행사를 아동·청소년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그리고 전 교직원들은 아동·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아동·청소년들의 주체적인 활동을 위해 학생회를 맡 그대로 학생들의 활동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이 학교의 모든 교과외 활동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계획·실행·평가의 전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교사 측의 기다림의 자세가 학생들의 자유스러운 발상과 활동을 이루어 낸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일본의 학교에서는 아동참여를 지원해 주는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하여 즉, 학부모, 지역 주민, 교육행정 당국, 그리고 학교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자들과의 실천의식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교사의 참여지원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건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일본의 학교 체제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의사표현권과 함께 교사의 의사표현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참여지원은 학교의 관리 책임자나 지역교육행정의 이해를 얻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학교는 교사의 교육권의 일부인 연구와 실천의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해 민주적인 학교 분위기 조성⁹⁾과 자치적인 교사 집단 만들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조건정비는 아동·청소년 참여지원을 실시할 때 생길 수 있는 혼란을 교사집단의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할 수 있고, 또한 자체적인 연구활동으로 잘못된 지원을 막을 수 있다. 나아가 학교에서의 교사의 연구의 자유가 보장된 이후에는 학부모, 지역주민과의 연계도 요구되어진다. 학교의 관리책임자나 지역교육행정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협력이 없으면 아동참여지원이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¹⁰⁾.

(5) 유럽의 청소년 참여정책

유럽 각국에서는 교육과 보건 그리고 여가뿐만 아니라 주택, 노동, 환경 그리고 청소년의 정치적·법적 그리고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영역에서 청소년의 특정한 상황과 요구에 적합하게 청소년 정책이 체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다음에서는 지방자치 단체들에서 입법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예와 지원조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정책 입법 과정에서의 청소년 참여

시민들이 정책에 영향을 주는 방법 중의 하나는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스스로 나서는 것과 대표할 다른 사람을 선출하는 간접민주주의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두 유형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개선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국가들마다 제안한 방법 중 하나는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는

10) 사즈나이기타 소학교의 실천도 당초에는 주위로부터 비판도 받았지만 지금은 학교주최의 특별강연회에도 참석을 하는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강연은 왜 아동참여가 필요한지를 널리 소개하는 자리로도 이용된다.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자는 제안으로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일정수의 의석을 청소년에게 제공하자는 것이다.

청소년과 관련된 정부의 모든 결정에서 정부는 반드시 청소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인 책임을 가진다. 이러한 자문 체계는 대의 민주제를 지지하고 시정해준다.

시민의 진정한 참여를 위한 선제조건은 적절한 정보의 교환이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정책제안 뿐만 아니라 누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자문해야 하는지 자문 진행과 관련한 정보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대중을 위한 정보의 활용과 접근 용이성에 책임이 있다.

관련된 자문 과정에서 청소년을 개입시키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어 환경, 교육, 그리고 주택 정책을 위한 자문회의에 청소년들의 참여가 배제된다. 오스트리아 법은 심지어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적어도 5명 고용한 회사들은 청소년 노동자의 대표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참여 권리를 정부가 인정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지방의 주나 그 외의 단계에서 이러한 참여를 지지하고 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청소년의 힘키우기에 성공적인 나라의 예들이 있다. 많은 도시와 정부는 청소년 의회를 운영한다. 청소년 노동자 대표를 구성한 이러한 의회의 대부분은 청소년 노동에 대한 거의 모든 문제를 처리하게 된다.

② 청소년 참여를 위한 지원조직

청소년 권한 부여의 다른 방법들은 “청소년 참여를 위한 지원 조직”을 지방과 국가 차원에서 옹호하는 것이다. 정책입안 과정에서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이 참여하는 기술과 지식을 갖기를 요구한다. 청소년들이 정책수립과정에 잘 준비하고, 정책 제안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

지지체계는 청소년에게 아래와 같은 점들을 제공한다.

- 구조적으로 생각하고 토의하도록 배울 수 있는 환경조성
- 청소년 문제에 대한 비전개발
- 정책이나 문제정의
- 다양한 정책 이슈들과 관련된 새로운 생각들의 강점검토
- 대안적인 정책 제안 개발

청소년은 다른 집단보다, 의도한 활동들을 자극하고 지원해주는 조직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책 상황에서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로 자주 교체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비교적 단기간동안 청소년 범주에 해당된다.

참여하는 청소년이 계속적으로 교체되고 청소년의 관심 사안이 새롭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팀과 같은 조직적 구조와 조정기구가 필요하다. 프로젝트팀은 새로운 구성원들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주제마다 적절한 구성이 필요하다. 각 주제는 프로젝트팀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프로젝트의 주제와 팀의 구성은 계속 변화해 나간다.

조정기구는 프로젝트팀보다는 더 지속성이 크다. 이들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청소년 관련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팀 구성 권장하기
- 프로젝트팀에게 기술적인 서비스 제공하기
- 정보교환 방법을 구조화하고 협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프로젝트팀 활동 조정하기
- 정치적 결정 따르기
- 정부가 청소년에게 정보를 주고 자문을 구하는 책임을 하는지 모니터하기

이 조정기구가 프로젝트팀들 혹은 정부 사이에서 정책제안과 같은 정보 교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정기구

에 너무 과도한 짐을 부과함으로써 지원조직과 정부 사이의 의사 소통이 방해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지원조직의 중요한 문제는 프로젝트 팀의 토론에서 나온 청소년 사안을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즉 청소년 집단이 경험한 문제들과 지원조직이 제안하는 문제들 그리고 지방정부나 국가가 제시하는 사안들 사이에서의 의견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기술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대중과 지원집단, 그리고 정부와 같은 다양한 집단의 요구사이에서 경쟁하여 결정된다. 그러한 과정은 다음의 세 경로를 거친다.

첫 번째 경로는 사회의 집단, 예를 들면 일반 청소년이나 청소년 활동 그룹이 선정한다. 이들은 이전에 정치조직과는 접촉이 없었던 이들로, 자신들의 문제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이어서 정치적인 사안으로 그들의 활동을 넣으려고 시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원 집단의 구성원들이 청소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사안으로 삼는 것이며, 세 번째는 정치적 사안이 지원집단조직의 사안으로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청소년 참여를 위한 지원집단은 정치적 사안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일은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책 결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청소년 관련 공무원은 반드시 이러한 책임을 가져야만 한다. 청소년 참여를 위한 청소년 담당자의 주된 의무들은 다음과 같다.

- 참여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며 모니터하기, 청소년 참여를 위한 청소년지원 조직의 개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련자와 협력하기
- 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의 관심 고려하기
-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기본적인 사항을 평가하기, 지지 조직과 협력하기

2. 청소년 인권기구 운영 사례

1) 아동·청소년 옴부즈 기구

(1) 아동·청소년 인권기구 개요

①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의 역사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옴부즈활동을 들 수 있다. UNICEF에서는 옴부즈맨(Ombudsman 혹은 Ombudsmen)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스웨덴 말로 어느 특정 사람을 칭한다기보다는 사무소 혹은 어떤 기능을 일컫는다. 국가가 가진 힘의 남용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이 개념은 1809년 스웨덴에서 옴부즈맨을 임명하는데서 비롯된다. 이어 1919년 핀란드가, 1955년에는 덴마크가 그리고 1962년에는 노르웨이에서 옴부즈맨이 임명된다. 그 후 40개국 이상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어 고충을 처리하게 된다. UN은 이러한 진전을 강하게 지지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권신장을 하는 기구를 만들도록 격려했다. 1993년 국제인권회의에서는 이러한 기구의 설립을 적극 권고하였다.

옴부즈맨은 일반적으로 보건, 구금, 세금과 같은 행정적인 측면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옴부즈맨의 기능은 공적기관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사안이 공정한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등의 문제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서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하는 기구를 말하는, 상당히 광범위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기구에서는 옴부즈맨 혹은 위원장(commissioners)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민단체 옴부즈맨으로는 1970년대에 스웨덴 아동보호재단(Save the Children)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법적인 근

거를 가지고 아동을 위한 옴부즈맨을 국가에서 처음으로 만든 것은 1981년 노르웨이에서 시작되었다.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이후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특화된 기구들이 많이 생겨났다. 현재는 약 30개국에서 아동·청소년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기구들이 생겨났다. 초기에 옴부즈맨은 그 서비스에 아동을 제외하지 않았는데도 아동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기회가 아주 드물었다. 더구나 옴부즈기구는 아동과 성인이 처한 상황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성인들이 당하는 권리침해는 주로 공권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는 가해자가 부모이거나 보호자 혹은 아동의 삶에 강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성인과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었다. 이 점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②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의 기능

아동·청소년을 위한 독립적인 인권기구의 목적은 이들의 인권을 모니터하고 보호하며 증진하는 것이다. 이들 기구는 각 나라마다 기존의 기구와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과 아동·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들 기구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정책입안가나 실행가들에게 아동·청소년의 권리 설명하기

첫째, 기존의 법과 정책이 협약의 정신에 적합한지 분석하는 것이다. 마케도니아 아동옴부즈맨(Macedonian Ombudsman for Children)은 2000년에 정부의 정책과 법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였다. 부랑아와 근로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법개정을 촉구하였다. 아이슬란드 아동옴부즈맨(Icelandic Ombudsman for Children)은 성학대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개정을 제안하였다.

둘째,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청문

회를 개최한다. 이것은 기존의 제안을 점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인권위원회는 지방과 벽지 학교 교육, 연령차별, 가정이 없는 아동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아이슬란드 아동옴부즈맨은 텔레비전 폭력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셋째, 제안된 새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옴부즈맨은 사회복지법과 아동보호자 법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넷째, 정식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아동이나 관심 있는 성인집단이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고하는 분야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호주인권위원회의 경우 아동보호 체계에 대해 조사하였다.

- 아동·청소년의 견해 존중하기

아동·청소년의 견해를 존중하기 위한 개입 조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급전화(Hot line)를 개설한다. 아동·청소년이 전화로 자기의 관심사를 말하게 하기 위해 덴마크의 아동위원회(Danish National Council for Children), 헝가리 의회의 아동위원회, 러시아의 Ekaterinberg 아동위원회는 응급전화를 설치하였다.

둘째, 아동·청소년이 함께 하는 지방회의이다. 주어진 사안에 대해 특정집단, 예를 들면 난민아동·청소년, 부랑아와 같은 집단을 관련 회의에 참석시킨다.

- 아동·청소년과 성인들에게 권리 인식 증진시키기

첫째,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제공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대해 안내하는 지침을 개발한다. 러시아 Volgograd 아동권리위원회(Volgograd Children's Rights Commissioner)는 읽기 쉬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였다. 스웨덴 아동옴부즈는 아동권리에 관한 정보를 보다 잘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부모를 포함한 성인들에게도 필요하였다. 많은 부모들은 아동권리가 부모의 권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겼다.

둘째,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한다. 기존의 자료를 분석하고, 아동의 삶에서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새로이 자료를 만들도록 하였다.

셋째, 학교 교과과정에 권리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킨다. 마케도니아 아동옴부즈맨(Macedonian Ombudsman for Children)과 노르웨이의 아동옴부즈맨은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을 협약의 정신에 맞도록 개혁하였다.

넷째, 미디어를 활용한다. 미디어가 가진 강력한 힘을 활용하여 아동의 목소리를 일반에게 전하는 것이다. 노르웨이 옴부즈는 정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아동이 관심사를 말하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전문가를 훈련한다. 아동과 일하는 전문가 집단 즉, 판사, 교사, 법률가, 경찰 등을 훈련시킨다.

여섯째, 인식 증진을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 11월 20일을 국제 아동권리의 날로 정해 아동권리를 알리는 기회로 삼는다. 호주의 아동권리단체들은 협약채택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를 하였다. 이 중에는 강의와 달력제작, 정부문서에 아동권리 스탬프 찍기 등도 포함되어 있다.

- 아동·청소년 권리 침해 시정 장치 확보

아동·청소년 권리 기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모델이 제시되어 있다.

하나는 기구의 역할에 개별 아동·청소년을 옹호하는 일이 포함되는 경우이다. 즉 아동 옴부즈맨이 개별 아동·청소년의 권리 침해

사항도 다루어준다. 예로 노르웨이의 아동옴부즈맨, 벨기에 그리고 뉴질랜드위원회는 개별 사례도 접수 처리한다.

다른 하나는 아동집단의 문제만을 다루는 모델이다. 여기에서는 아동·청소년 개인보다는 집단으로서의 아동·청소년 문제를 다룬다. 예로 스웨덴의 아동옴부즈맨은 개별 사례를 다룰 권한이 없다. 옴부즈맨 사무소는 일반적인 아동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이슬란드나 덴마크도 아동집단의 문제만을 다룬다.

③ 아동권리기구의 성과

옴부즈맨의 활약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분위기와 시민단체의 압력, 국제적인 차원의 노력 등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독립된 아동·청소년인권기구의 성과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아동·청소년 인권기구가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슬랜드는 아이슬랜드 옴부즈의 제안으로 아동사고를 줄이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아동사고를 등록하는 협력체 구성 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 그리고 아동옴부즈맨은 청소년 범법자를 감옥에 보내기보다는 재활센터에 보내도록 조치하였다.

• 스웨덴 옴부즈맨

스웨덴의 옴부즈맨은 지방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도록 권장하였다. 처음 1995년에 시작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7%만이 협약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나 1997년에는 25%로, 1999년에는 64%로 증가하였다. 아동옴부즈의 영향으로 의회내에 아동학대를 다루는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스웨덴 정부는 1998년 스웨덴 아동옴부즈맨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평가와 권고를 하였다.

먼저, 긍정적인 성과로는, 정보와 의견수렴 활동 등을 통해서 아

동·청소년과 관련된 사안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전반적인 아동·청소년의 생활상을 가시화하였고 이들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 협약의 이행에 공헌하였으며, 아동을 대변하고 이들의 경험과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킨 점 등이 인정되었다.

한계점으로는 법적인 힘의 부족, 아동·청소년의 대변인으로 일하는데 있어서 네트워크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권고로는 다음 사항들이 제시되었다. ombudsman이 아동·청소년과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개정할 것, 법에 ombudsman의 의무와 기능을 설정하여 독립성을 키울 것, ombudsman에게 기관과 지방정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 변화의 과정에 아동·청소년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것 등이다. 평가단은 그 효과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ombudsman의 힘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노르웨이 ombudsman

노르웨이 ombudsman은 가상의회를 설립하여 아동들이 관심사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아동과 국가 그리고 지방정부 사이의 대화를 여는 장이 되었다.

1993년 노르웨이 정부는 ombudsman을 평가할 위원회를 임명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1995년 다음과 같은 성과가 보고되었다. : 정치적인 아젠다에 아동의 위치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아동들은 ombudsman 사무소와 그 기능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아동이 권리를 가지며, 아동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아동권리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고 아동의 법적인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국제적으로 노르웨이 ombudsman은 다른 나라의 귀감이 되었고 아동을 국제적인 아젠다로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위원회는 옴부즈맨이 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 보다 총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었고, 정치적·전문적인 절차에서 협력하고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개별적인 사안보다는 전반적인 사안이나 원칙과 관련된 일에 보다 집중적으로 일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아동옴부즈맨 유럽연합(The European Network of Ombudsmen for Children : ENOC)은 유럽 여러 나라들의 아동옴부즈맨의 협력체로서,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 전략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1997년에 처음 노르웨이에서 10개국을 회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12개국으로 회원국이 늘었다. 2000년에는 교육에서의 아동 참여와 부모들에게 아동권리 교육시키기 캠페인을 벌였다.

(2) 주요국의 아동·청소년 옴부즈 기구

① 벨기에의 아동권리위원회(Children's Rights Commissioner)

벨기에 플란더스 지역 아동권리위원회는 법이 통과되어 1997년 설립되었으나 1999년부터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6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고 일년에 한번 의회에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상황을 모니터하며 아동·청소년의 생활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일반대중에게 알린다. 위원회는 아동의 욕구와 이익 그리고 권리를 대변하고, 아동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며, 개별적인 불만 사항을 조사한다. 최근 활동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후원하는 것이며, 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와 기관, 정책입안가들을 방문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관심사에 대해 이메일을 통하여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이혼중재와 미디어 관련 불만, 스포츠 경기에서 연령제한 그리고 학교 참여에 관해서 정부에 권고를 하기도 하였다.

② 캐나다의 옴부즈맨 사무소(The Office of the Ombudsman)

1987년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는 기존의 옴부즈맨에 아동·청소년

담당 부옴부즈맨을 만들었다. 그러나 1990년 주정부에서 독립적인 기구로 되면서 옴부즈맨과 부옴부즈맨 모두가 아동·청소년 일을 맡도록 하였다. 그리고 5명으로 된 아동·청소년 팀이 구성되었다. 1995년에 정부는 아동·청소년·가족 옹호팀을 만들고 사회 서비스와 관련하여 아동을 옹호하도록 하였다. 아동·청소년 팀은 장애, 청소년의 임금 부조, 학교와 학교위원회, 가정부조, 청소년 보호와 관련되어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이 팀은 옴부즈법으로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부옴부즈맨과 함께 이 팀은 아동과 정부당국 그리고 시민단체와 협조하면서 아동권리증진에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옴부즈사무소 외에 아동과 청소년들은 아동·청소년·가족 옹호팀과 아동위원회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아동옹호팀(Children's Advocates)은 5개의 다른 주 즉, 알버타주, 마니토바주, 온타리오주, 퀘벡주, 사스캐츄완 주에 설치되어 있다.

③ 덴마크의 아동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Children Borneradet)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8명의 위원 중 3명은 사회부 장관이 임명하고 5명은 시민단체가 임명한다. 이 위원회는 사회부 내에 3년 동안 시범으로 운영되다가 1996년 평가 후 정식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이 기구는 덴마크 아동의 상황을 평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아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협약의 이행상황을 모니터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아동들에게 긴급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과 지역사회 회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는 부모가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가정에 사는 아동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열고 아동의 신체적인 학대를 막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체벌을 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혼 가정의 아동 상황에 관한 토론도 중요한 사업이었다.

④ 프랑스의 아동옴부즈맨

(Ombudsman for Children, Defenseur des enfants)

2000년에 설립되었고 처음에는 8명의 인원으로 출발하였으나 20명 이내로 증원될 예정이다. 이 기구는 독립적인 기구로 출발하였으며 국내법과 국제법을 지키면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 옴부즈맨은 6년 임기로 임명되며 재임은 될 수 없다. 옴부즈맨은 아동들로부터 불평을 접수하고 조사하여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권고를 한다. 그리고 이 옴부즈맨의 활동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⑤ 마케도니아공화국의 아동옴부즈퍼슨

(Macedonian Ombudsperson for Children)

1999년 1명의 보좌역과 1명의 비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사무소는 성인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아동옴부즈퍼슨은 아동이 직접 불만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최근에는 각 법들이 협약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아동보호 증진을 위해 아동보호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⑥ 뉴질랜드의 아동위원회(Office of the Commission for Children)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향상하고 이들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 1989년에 아동·청소년·가족법에 의거해서 설립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특별위원회(Social Service Select Committee)는 새로운 아동권리법령을 만들어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의회의 공식 기관장이 되도록 제안하였다. 위원회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어떠한 사안에 관해서나 조사할 수 있고, 특히 아동학대나 방임 그리고 권리 침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정이나 법정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다. 위원회는 협약을 지침으

로 삼아 일하고,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을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출판하며, 1년에 4회 아동(Children)이란 뉴스레터를 낸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아동에 관한 문제의 인식을 높인다.

⑦ 노르웨이의 아동옴부즈맨

(Children's Ombudsman, Barneombudet)

노르웨이는 1981년 세계 최초로 아동옴부즈맨을 탄생시켰다. 노르웨이 옴부즈맨은 공적인 기구와 시민단체와 관련해서 아동의 이익과 권리를 증진시키고 아동의 삶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개별적인 사안도 다루고, 미디어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아동의 참여를 촉진시키며 일반 대중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초·중등학교에서 아동참여를 위해 학교를 개혁하는 일을 시도하고, 소수민족과 난민 아동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

1998년 옴부즈맨 사무국은 아동과워라인을 설치하였다. 최근에 중·고생을 위한 인터넷 의회를 만들어(2001)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며, 여러 학교가 이 인터넷 의회에 가입되어 있다. 이외에도 사무국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개발에 영향력 행사, 아동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 아동관련법 모니터링,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실행사항 모니터링, 아동권리 교육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옴부즈맨은 많은 아동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현상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옴부즈맨 웹사이트에 '폭력은 그만(STOP BULLYING)' 난을 개설하였다. 방송과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전통적인 부모역할을 대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노르웨이 옴부즈맨의 최근의 주요 활동이 되고 있다.

⑧ 스웨덴의 아동 옴부즈맨

(The Childrens' Ombudsman, Barnombudsmannen)

1993년 설립되었고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옴부즈맨은 개별 아동의 사안을 다루지는 않는다. 옴부즈맨은 매년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나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옴부즈맨은 협약,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에 관한 사항 등 크게 3가지 유형의 일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상황의 아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일과 아동·청소년에 관한 통계자료를 모으고 조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옴부즈맨은 아동권리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의사결정과 활동과정에서 협약을 이행하는 지침서를 마련하였고 스웨덴 아동의 생생한 상황을 아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옴부즈맨은 의회에 협약을 이행하는 국가적인 방안을 제안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⑨ 영국 웨일즈의 아동위원회(Children's Commissioner for Wales)

20명의 인원으로 2001년에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웨일즈 지방 18세 미만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아동의 보건, 보호와 교육에 관한 면을 관장하고 있다.

⑩ 필리핀의 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센터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 the Philippines, KOMNAS)

1987년 필리핀은 인권보호를 위해 이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1994년부터 위원회는 내부에 아동권리센터를 설치하여 아동의 권리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협약의 이행에 관해 모니터하고 있다. 센터는 법과 갈등이 되는 아동의 상황을 조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권리에 관한 만화영화를 제작하였으며, 아동권리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여 왔다.

① 일본의 옴브즈퍼슨제도

일본의 가와사키(川崎)시의 인권옴브즈퍼슨(Ombuds Person)은 아동·청소년과 남녀평등에 관한 시민의 인권 침해에 대해 쉽게 상담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인권구제기구이다. 현재 가와사키(川崎)시 인권옴브즈퍼슨이 실시하는 사업으로는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과 조언 및 지원,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신청시 필요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당사자간의 조정과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그 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 소속기관에 제도 개선의 의견표명과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시 소속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 시장에 의한 공표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인권에 대한 과제에 대해 의견공표를 할 수 있다.

상담이나 구제신청은, 신청의 원인이 된 사건이 가와사키(川崎)시 내에서 발생했을 경우 인권침해를 당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아는 사람 및 제 3자도 상담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의 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집단따돌림, 학대, 학교와의 문제 등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상담과 성차별 및 성희롱, 가정폭력 등 남녀 평등에 관한 인권침해 관련 사례도 상담이 가능하다. 최근 아동 옴부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되고 있는데 교부현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기부현과 가와사키시로 확대되었다.

2) 청소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은 최근에 청소년 참여와 관련하여 가장 널리 활용되며 이슈가 되고 있는 방법 중의 한가지이다.

청소년의 의회참여는 접근 방식에 따라 자문수준의 참여, 주도적

인 참여, 옹호수준의 참여 등 3개의 범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이들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고, 경계선 또한 분명치 않다. 그러나, 현재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의회 참여의 다양한 형태와 프로그램 사례를 위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 참여의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1) 자문수준의 참여

청소년이 의회의 자문과정에 참여한 예는 주요 외국의 청소년 활동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련의 예를 통해 볼 때, 자문수준의 참여는 청소년이 법률, 정책 서비스 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이 아동의 경험, 시각, 관심거리 등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의회의 자문과정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경우, 청소년들로부터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위한 법률, 정책, 서비스 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자문과정에 참여할 경우, 참여에 대한 기술과 자신감을 획득하고 의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① 국제청소년의회(The International Youth Parliament: IYP)¹¹⁾

호주의 국제청소년의회는 옥스팜 국제구호단체(Oxfam Community Aid Abroad)에 의해 운영되며 더 나은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국제적인 청소년단체이다. 국제청소년의회는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증진시킨다. 국제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인간의 권리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고 평화적인 문화를 형성하도록 후원한다.

11) www.iyp.oxfam.org

국제청소년의회의의 목적은 ‘청소년이 세계를 공정하고, 평화로우며 안정되게 만든다.’는 것이다. 국제청소년의회의의 첫 번째 회의는 2000년 10월에 시드니에서 소집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IYP2000은 세계의 청소년에게 참여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인간 사회를 건설한다는 점에 목표를 두고,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② 유로네트¹²⁾

유럽아동들의 권리연합인 유로네트(EURONET : The European children's Network)는 아동들이 아동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고 느끼는지, 어떤 차별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국가적 또는 유럽 전체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지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2000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로네트 협의회에는 유럽 주요 다섯 국가가 참가하였다. 각각의 참가국에서 선발된 아동·청소년들은 그룹 토론, 질문, 면담 등을 통해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이 협의회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institutions)에 제시할 수 있는 일련의 권고사항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이후에 그 결과는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아동·청소년들에 의해 직접 제안되었다.

③ 타이문청소년의회(TIMUN Youth Assembly)

네덜란드의 THIMUN(The Hague International Model United Nations : THIMUN) 청소년의회는 1999년도의 ‘평화를 위한 헤이그 선언’과 2000년도의 ‘제2회 세계 물 포럼’에 THIMUN 청소년 파견단의 참여로부터 발전되었다. 이러한 두개의 중요한 국제회의에서는 세계가 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

12) www.europeanchildrensnetwork.org

하게 알리게 되었다. 각 회의에서 THIMUN팀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일반적인 비전과 행동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을 이슈로 삼고 함께 토론하였다. 이 팀이 진행하는 중요한 업적은 THIMUN 회의과정에서 만들어낸 THIMUN의 중요한 포럼 중 하나인 임시소위원회(ad hoc sub-committee)에 의해 Action paper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타이문 청소년의회는 국가나 정부의 간섭없이 국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항들을 발전시키는 포럼을 준비한다. 참가자들은 특정 국제적 이슈에 초점을 맞춘 의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특정주제를 Action Paper를 통해 발전시킨다. 이 Action Paper는 UN이나 그 밖의 국제회의에 상정되기 이전 청소년의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이문청소년의회의 다양한 위원회에서 나온 목적과 활동의 계획들은 특히, 2001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인종차별 국제회의’와 2002년 ‘청소년고용정상회의’(Youth Employment summit)와 같은 국제회의에서의 THIMUN 청소년 대표들의 지속적인 참여의 기반이 된다. 첫 번째 청소년의회는 2001년 1월에 열렸고, 여기서 만들어진 Action Paper는 “타이문 청소년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예를 들어 ‘문화적 다양성과 수용 위원회’에서 발간한 이 Action Paper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001년 8월에 열린 ‘인종,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 그리고 이와 관련된 편협성에 대항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THIMUN 청소년 대표들에게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④ 슬로베니아 아동·청소년의회(Children’s Parliment in Slovenia)

슬로베니아에는 1990년에 의회 민주주의가 소개되면서 아동·청소년의회가 설립되었다 아동·청소년들은 매년 학교에서 주제를 정하고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된다. 100명 이상의 13세~15세 아동·청소년이 선발되어 스스로 정한 주제에 대해 토론한다. 의회의 마지막 과정에서는 다음해에 개최될 의회에서 다룰 주제를 정한다. 제 1회의 주제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이었으나, 전쟁이 일어나자 제 2회 의회에서는 사정이 달라져 나라의 미래에 대한 관심과 정치가들의 책임에 관한 불평을 토로하였다. 정치가들은 이에 귀를 기울였고, 이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제 3회는 ‘아동·청소년에게 친숙한 학교만들기’로 폭력없는 우정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⑤ 짐바브웨 아동·청소년의회(Children's Parliament in Zimbabwe)

아프리카 통일기구(the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 OAU)는 매년 ‘아프리카 아동·청소년의 날’을 선언해 왔다. 짐바브웨의 대통령은 매년 아동·청소년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아동·청소년의회의 주제는 아프리카 통일기구에 의해 선정된다. 아동·청소년의회의 임원들은 학교에서 선출되고, 그들은 의회에서 자신들의 유권자를 대표하기 위한 연설문과 대중연설을 준비해 토론한다. 각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선출된 대표들은 1년 동안 이 의회의 임원으로 활동한다. 의회는 이틀동안 하루는 리허설, 나머지 하루는 본의회의 진행으로 이루어진다. 본 의회에서 아동·청소년 하원의원들은 배당된 2분 동안 주어진 주제에 대해 강연하게 된다.

⑥ 영국 청소년의회(UK Youth Parliament : UKYP)

영국의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들과 청소년의 관점과 욕구에 관심이 있는 기관들의 주도로 개최되었다.

영국 청소년의회는 1999년 6월 시작되었으며, 2001년 2월 런던에서 첫 번째로 개최되었다. 이 의회에서는 11세~18세의 청소년을 포함하여 약 400명이 넘는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여기에 다양한 인종적·지역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뿐 만 아니라 신체적 및 언어 장애자도 포함되었다. 또한 영국 청소년의회는 매년 개회식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이 성명서에 대한 응답을 한다. 영국 청소년의회의 가장 중

요한 활동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다.

⑦ 영국의 아동·청소년 멀티미디어 의회

(Multimedia consultation with disabled children and young people)

아동의 사회(The children's Society)라는 NGO 그룹은 아동들과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관계당국의 계획아래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그들의 의견과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의회를 만들었다. 지난 2000년에 개최된 제 6회 아동·청소년 멀티미디어 의회는 장애에 관한 개인적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200명의 아동·청소년들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신체장애, 지각능력에 있어서의 장애, 또는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도 참여하였다.

의회의 과정은 전통적 형식과는 다르게 멀티미디어적 접근을 이용한 드라마나 노래, 미술, 만화 이야기, 영상일기으로써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아동들이 선택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이나 견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만들었다.

(2) 주도적인 참여

청소년 참여의 세 가지 방법 중 한가지인 주도적인 참여는 아동·청소년 자신이 프로젝트, 연구, 서비스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는 어른과 청소년의 협력과정을 수반한다. 일은 성인이 주최하지만 청소년이 협력자로서 참여하여, 성인과 청소년이 결정권을 나누어 가진다.

① 프랑스 아동·청소년 의회 연합

(National Association for Children and Youth Town Council)

1970년대 이후 프랑스에는 청소년의회가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지

금은 수백개에 이른다. 이들의 역할은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었다. 1991년에는 전국청소년시의회연합(National Association for Children and Youth Town Council)이 설립되었다. 첫 해에는 700명의 아동과 400명의 성인들이 참여하였는데 첫 번째 의회를 통하여 스के이트보드 타는 시설과 장애아를 위한 공간 설치, 만화도서관의 설립, 교통수단 개선, 시 지도 만들기, 시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비디오에 담기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② 청소년 시의회(Young People's City Council)

유럽의 주요 선진국가에는 각 시별로 청소년 시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Fildestadt(Kreis Esslingen)의 청소년 시의회는 14세와 18세 사이의 청소년들로 구성되었다. 선발된 청소년들은 2년 임기의 청소년 시의회 의석을 갖는다. 이 의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논의하고 조언하도록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청소년 시의회의 각 제안은 독립적인 힘이 없고 시의회에 승인 받아야만 한다.

Epinal 청소년 의회("Conseil des Jeunes")는 전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선출된다. 각 중·고등학교는 청소년 중 13세와 17세 사이의 대표 남아 한 명과 여아 한 명을 선발하였다. 각 학교들은 어떻게 자율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대표들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의회는 새롭게 구성된다. 청소년 의회는 성인으로 구성된 시의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③ 청소년포럼

유럽 주요 선진국가의 지방도시들, Weingarten, Basel, Innsbruck, Pforzheim 그리고 Norwich에서는 매년 청소년 포럼이 열린다. Weingarten시에서 청소년들은 1978년 이후로 매년 2번씩 시의회에서 청소년 문제를 논의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도시의 모든 청소년들은 청소년 포럼에 초대를 받았으며, 이것은

청소년들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특별한 청소년들의 이슈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청소년들은 시의회 의원들에게 자신들의 문제와 나아갈 방향을 알리는 기회를 갖게 된다. Grenbole시에서 초등학교(9~11세) 고학년 아동들은 의회에 의해 제안된 다섯 개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젝트 중 하나를 선정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④ 콜롬비아 Hojas Anchas 학교

콜롬비아의 New School 프로그램은 가난한 시골 청소년들이 농업과 교육의 경쟁적인 요구에 직면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응하여 발전되어 왔다. 그것은 여러 연령층이 혼합되어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룹으로 배우는 교실에서 촉진자의 기능을 하는 교사들과 함께 유동적인 교육과정으로 소개되었다.

이러한 학교들은 청소년들이 협동적인 민주적 공동체로서 기능을 하는 구조로 발전되었다. 매주 각 구역의 학교간에 변화에 대한 각각의 다른 경영방법에 도움을 주는 교사 대 교사 미팅(teacher-to-teacher meeting)이 지원되었다.

Hojas Anchas 학교는 민주적인 학습을 위한 공동체에 기초한 센터로서 학교들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지역 환경의 보호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곳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지역에 나무를 심음으로써 산 경사의 침식을 막도록 하는 숲 보존 프로젝트가 운영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는 거의 교사들과 함께 계획된 것이 분명하지만, 학생들은 그 아이디어에 대해 완전한 주인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활동은 학생들이 나무들을 딸감과 판매용으로 이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역주민들에게 교육하는 것이었다. 또한, 학생들은 현존하는 나무들로부터 종자를 채취해서 지역 어른들과 협동으로 지어질 육아시설을 위해 학교로 가져오는 활동을 했다. 이 아이디어의 창안 멤버 중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지역마을 정책 회의에도 참가한다.

⑤ 영국의 Highfield 학교

영국의 Highfield 학교는 영국의 소외된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이다. 이 학교는 폭력과 일탈, 싸움, 그리고 무단결석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1990년 초, 새로운 학교장이 학교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학교 공동체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장은 좀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사들과 행정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상담하였다. 상담결과, 학생들은 학교의 모든 정책 발전과 직원 채용까지 관여하는 권한을 갖는 학교위원회 설립, 학생들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학교폭력고발 상자”의 설치를 제안했으며, 친구가 없고 괴롭힘을 당하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수호천사”를 선정하는 것, 그리고 놀이현장에서 학생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중재인” 선정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이 중학교는 인기를 얻게 되었고, 학생들은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교육적 성과를 얻었으며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사회적 책임감, 협상에 있어서의 기술 등을 습득하게 되었다.

⑥ 여아들을 위한 프로젝트(Girl Child Project)

파키스탄의 “여아 프로젝트”는 청소년기 여아의 힘을 키우고 가족 안에서 여성의 지위를 개선시켰다. 2001년, 이 프로젝트는 시골 지역과 도시 빈민촌 안의 500개 지역에서 2만5천명의 여아들에게 실시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으로, 여아와 여성의 지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여자와 남자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포함시켰다. 이 프로젝트에 해당된 지역사회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찬성하였다. 처음 프로젝트가 실시된 후 각 지역에서 선발된 50명의 여아들은 프로젝트 과정 중 다음단계의 계획에 관해 숙고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여아들은 그들의 권리를 자각시키는 것을 계획하였고, 여아들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여러 기회들이 주어졌다. 예를 들면 건강에 관한 문제, 리더십, 응급치료, 회계 기술 같은 것들이다. 각각의 프로젝트 내용은 역할놀이와 그림 그리기, 단체활동 등을 포함한다. 프로젝트 실시 결과, 여아들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여성과 여아들의 지위에 관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역할 모델로서 행동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⑦ 미국의 모델 의회와 법정(Model Legislature and Court: MLC)

미국 캘리포니아주 YMCA 모델 의회와 법정(Model Legislature and Court)은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지역의 1학년울 제외한 2,200명 이상의 고등학생들이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성을 형성·촉진·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높은 수준의 경험적이고 교훈적인 모의실험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 활동에 기초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포괄적이고,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과 정부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주정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준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출되거나 임명된 소수의 직위를 맡고 있는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은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한곳에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청소년과 정부의 입법부서는 각 지역대표단에서 시작한다. 각각의 대표집단들은 법안 주제를 조사하고, 관련이 있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찾아낸 다음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만들어낸다.

모델의회는 청소년과 정부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모델의회는 실제 정부처럼 정부조직의 모든 영역과 상호작용을 한다. 로비활동가들은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되도록 구성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위원회 기간에 연설한다. 보조입법분석가는 입법의 중요한 영향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한다. 신문매체들은 그 과정을 보고하며 청소년주지사는 우선적인 법안들에 대한 연설을 한다. 입법가들은 법안이 양 의회에 소개되기 전에 이사회를 지지받고 승인될 기회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주지사를 만난다.

사법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정부 프로그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험으로 여겨진다. 4일 안에 법정케이스를 준비해야 하는 높은 강도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며, 잠을 충분히 잘 수도 없는 등 대표단들은 많은 압력을 받는다. 청소년 대표단은 검사, 변호사, 판사의 역할을 배정 받는다. 한편, 국가문제위원회(National Issues Commission : NIC)는 국가행정기구의 YMCA 청소년위원회에 기초한 프로그램이다. 각 위원들은 모델의회와 법원 회의 논쟁에서 국가적·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창출해낸다. NIC 각 참여자들이 계획안을 제작한다는 점에서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데, 그 과정에서 법안은 입법부내의 대표단 수준정도에서 제작된다. 위원들은 일반 하원회의에서 논쟁하기 위해 2단계 시리즈의 계획안을 제출한다. 일반 하원회의에 들어간 다음에, 계획안은 의회에서 사용된 방법과 비슷하게 통과·거부의 방법으로 논쟁을 한다. 위원청문회는 대표단 과정에서 프로그램 스텝들에게 선택된 대표단에 의해서 진행된다. 일반 하원회의는 선출된 위원들에 의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1998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아주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로비활동가(Lobbyist), 보조입법분석가(Assistant Legislative Analyst), 기록자, 주정부 위원회(State Boards) 등의 역할이 있다.

(3) 옹호수준의 참여

청소년 옹호수준의 참여는 청소년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슈를 의회에 제시할 수 있는 힘을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어른들은 청소년과 협동적인 관계임을 인정하며 그 과정과 성과를 조절하

는 힘을 청소년에게도 부여하는데 대한 명백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른들은 종교자, 후원자, 기금 조성자 등의 지지자로서도 지속적인 역할을 해야만 한다. 현재 청소년의 옹호수준의 참여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① 부랑아와 근로청소년을 위한 “나비 프로그램”

(Butterflies Programme of Street and Working Children)

나비 프로그램(Butterflies Programme)은 인도, 뉴델리의 거리에서 일하며 생활하는 800명 정도의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하며 그들에게 자신을 보호할 기술과 지식을 전해주고 존중받는 생산적인 시민이 되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접근은 아동이나 청소년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비공식적 교육, 응급구조 지식, 레크리에이션 활동, 보건프로그램 등 다양한 접촉경로를 통하여 행하는데, 특히 아동을 참여시키는 거리교육팀을 육성하는데 집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월례아동회의에서 다양한 경로로 제기된 이슈들을 통해 대부분의 활동을 계획한다. 이 회의에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한다. 이러한 회의는 그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며 다양한 사회·정치적 사건들을 분석하고 집단적인 행동을 위한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회의에 참석한 아동과 청소년들은 약물, 경찰폭력, 무임금, 더 좋은 직업에 대한 욕구, 도박 등의 문제를 다룬다. 이 회의는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아동에게 민주주의의 원리를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많은 구체적인 선도활동이 생겨났고 이것은 아동노동자 조합, 신용조합, 아동노동자의 소리 등을 포함한다. 이 프로그램은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활동을 계획할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도움의 의무는 프로그램을 소유한다는 느낌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 의견표명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에콰도르의 근로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Programme of Working Children)

에콰도르의 근로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환경 프로젝트로서 아동·청소년들의 권리증진과 참여를 높이는 국가적인 조직이다. 전국적으로 ‘대안 공간’에서 아동 및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작업은 가난한 시골환경에서 살아가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다. 1993년에는 미래의 환경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의 회의가 매년 열리도록 결정되었다. 국가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사회생태학자들의 협조 속에서 80명의 어린 아동들과 함께 일하는 4명이나 5명의 청소년들이 그룹별로 훈련을 받았다. 그와 함께, 청소년들은 그들 자신의 주위환경을 지도로 만들고, 그들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대중매체와 함께, 더 안전하고 지속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천으로 어른들의 대중적인 자각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3) 청소년 인권단체·기관

① 미국아동보호재단(Childrens Defense Fund : CDF)

미국의 아동보호재단은 1973년에 비영리단체로 설립되어 “소외된 아동이 없도록(Leave No Child Behind).”이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는 ‘Healthy Start’, ‘Head Start’, ‘Fair Start’, ‘Safe Start’, ‘Moral Start’ 등 크게 다섯 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섯가지 목표를 두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실시하여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도움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성공적인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있다.

CDF는 투표할 수 없고 의회의 로비활동을 할 수도 없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는 미국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크고 효과

적인 힘이 되어주었다.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병이 나거나, 사정상 학교를 그만두게 되거나 가족이 해체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아동과 청소년의 요구에 대하여 국가로 하여금 예방차원의 투자를 하도록 촉진시킨다.

아동이 어려서부터 적절한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헤드스타트(Head Start)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보건과 예방사업, 조산, 십대임신 등과 관련된 헬씨스타트(Healthy start)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페어스타트(Fair Start)프로그램을 통해 적절한 주거, 빈곤, 실업과 관련된 문제와 요보호아동일시부조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세이프스타트(Safe Start)프로그램은 학대, 가정폭력, 위탁, 입양, 약물 등의 문제와 폭력예방, 학교폭력, 미디어폭력, 비행, 총기 등의 문제를 다룬다. 모럴스타트(Moral Star)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아동이 어려서부터 건전한 가치를 배우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 중 'Child Watch visitation'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이들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아동·청소년과 가족이 실제 처해있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도록 한다. 이것은 아동·청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통계숫자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아동과 가족의 생생한 모습을 경험함으로써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며, 변화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의 각종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과 가족을 직접 방문하는 활동 외에도, 공공정책 전문가의 보고, 배경지식에 대한 보고, 그리고 경험적인 활동 등을 포함한다.

② 아동권리 정보네트워크

(Child Rights Information Network : CRIN)¹³⁾

1995년 만들어진 CRIN은 아동권리기구간의 연계를 사업의 목표로 하였다. 현재 CRIN은 아동권리기구 연계를 넘어 일반대중에게도 아동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하고있다. 다양한 형식과 미디어에 의한 정보를 체계화하여 배포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며, 아동권리조직의 구성, 회원서비스 등의 활동과 아동권리행사의 보도, CRIN 뉴스레터발행, 이메일 서비스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CRIN의 목표 중의 하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수행을 국내외적으로 지지하고 촉진하는 것’이며, 아동권리를 유엔인권위원회와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주류체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홍보, 시민단체의 대안보고서와 유엔총회자료와 같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과 유엔아동특별총회(Special Session on Children) 및 후속사업, 그리고 시민단체들을 웹공간에서 지원하는 것 등이 이 단체의 사업이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자료 외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원래 보고되었던 내용들을 NGO와의 공조로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다.

주요 NGO 네트워크와 유엔기관들과의 공조는 런던에서 하나의 협조단위를 만들어 아동권리를 주류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공조는 현재의 CRIN 회원들간의 정보네트워크 안에서 발생한다. 아동권리협약을 위한 시민단체들, 국가별 아동권리기구들, 유엔총회 아동특별 회기의 아동권리대회, 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니세프와 같은 주요 단체와의 공조를 통하여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다. 국제적인 아동권리기구 회원

13) www.crin.org

들에게 최근에 개발된 자료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어서 CRIN 회원 상호간의 공조가 매우 필요하다

CRIN은 아동권리기구 회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정보교환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Leeds Metropolitan University's school of Information Management' 와의 협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자료들은 책으로 출간하여 아동권리기구와 인권기구들에 배포하고 있다.

CRIN은 국제인권정보와 자료시스템(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ystems, International: HURIDOCs)과 연계함으로써 인권의 모니터링과 정보사용에서의 도구와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한편, 아동권리기구가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조사와 기록, 출판 등을 지원하고 있다.

CRIN의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지역사회에의 기관프로그램 소개는 아직 미비한 단계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을 형성하여 공유하는 능력을 촉진시켜서 지역적 특수성과 국가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정보를 다양한 언어와 형태로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③ 영국의 BBC 방송국의 '아동을 위한 세계'

영국의 아동권리 모니터링에서 BBC방송을 비롯한 방송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아동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방영되는 광고 중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혹은 도덕적으로 유해한 광고인지 판단한 후 방영한다. 이것은 사회의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BBC 웹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세계(A world for Children)'는 아동이 자신의 생활을 보고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사이트의 운영은 세계 아동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방송국의 이와 같은 목적은 협약의 내용을 얼마나 세계가 실행하고 있는지를 모니터하기 위한 것이다.

BBC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권리교육도 하고 있다.

④ 영국아동학대예방협회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 NSPCC)

. 영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아동보호와 학대예방을 목적으로 한 영국의 주도적인 자선단체로 1889년에 Benjamin Waugh 목사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학대의 위험에 처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영국의 기관이다. 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모든 사람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아동은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산하에 1,800명의 직원이 있으며 180개의 아동보호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은 200개 지역 지부와 협력한다. 중앙본부의 기금조성부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기금조성을 위해서 17,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 가장 주력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영국 사회내에서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Full STOP' 캠페인이다. 이 결과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아동학대 근절 선언에 서명하였다. 영국의 국회의원들은 2001년에 가장 영향력있는 자선단체로 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선정하였다. 내무부(Home Office)는 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아동을 대상으로 인터넷의 폐해성에 대해 교육하는데 1,500만 파운드를 지원하였다. 2002년 5월 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제정한 어린이날에는 체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다.

⑤ 호주 아동·청소년 법률센터

(National Children's and Youth Law Centre: NCYLC)

호주 아동·청소년 법률센터는 1993년 호주청소년재단(Australian Youth Foundation)의 프로젝트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Foundation for

Young Australians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센터는 시드니 대학과 공익옹호센터(Public Interest advocacy Centre) 등과 협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의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이들의 부모들에게 법적인 권리와 책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호주 청소년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과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이를 위한 연구와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협약의 이행을 추진하고 아동·청소년들이 각 수준에서 참여하는 기회를 증진시키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1997부터 이 센터는 'Lawstuff'라는 가상공간을 통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혁신적인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사이트는 곧 전국적인 법률상담창구로 변하였다.

한편, 호주청소년 협회(Peak Youth Organizations)는 비행소년사법문제, 보건, 교육, 고용, 주거, 정치적 권리 등 다양한 측면의 현안문제들에 관한 청소년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이들은 국립아동·청소년법률센터가 연구조사에 착수하거나 캠페인 활동을 할 때 법적자문이나 법적근거, 정책정보, 로비, 지지 등의 역할로 아동·청소년법률센터에 도움을 준다.

⑥ 호주 청소년문제 협회(Australian Youth Affairs Coalition : AYAC)

호주청소년문제협회는 전국적인 규모의 호주청소년협회와 다른 여러 전국청소년부문 조직들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국가·국제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 협회는 또한 호주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호주사회의 모든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며 정부 및 그 이상의 기구나 조직에 청소년과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해 정책적인 조언을 한다. 호주청소년문제협회는 전국회원과 일반회원으로 나누어 지는데 전국회원은 각각의 전국 청소년 협회이고 일반회원은 기타 청소년단체 네트워크와 개인 등이다.

⑦ 지역법률센터전국연합

(National Association of Community Legal Centers : NACLC)¹⁴⁾

지역법률센터전국연합은 호주 전역에 존재하는 207개의 지역법률기구 연합체이다. 지역법률센터(Community Legal Center: CLC)는 무보수 임직원들이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개인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조언 등의 서비스를 해 줄 뿐 아니라 학교나 단체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법률교육도 제공하며, 법률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기도 한다.

⑧ 전국청소년옹호네트워크

(National Youth Advocates Network: NYAN)

전국청소년옹호네트워크는 지역법률센터전국연합(NACLC)의 하위조직으로 국립아동·청소년법률센터(National Children's and Youth Law Center)와 공조한다. 전국청소년옹호네트워크는 지역 법률서비스기구(communitary legal services), 아동옹호기구(children's advocacy organizations), 지역정보기구(communitary information services)를 담당한 호주 전역의 50명의 아동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조화로운 방법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법률서비스와 권리옹호활동을 하고자 한다. 매 4분기마다 가지는 모임의 내용을 지역법률센터전국연합에 보고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신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연합로비활동 및 옹호활동과 청소년 권리옹호자를 위한 전문적인 정보제공 및 청소년의 모든 필요에 따른 법률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 네트워크에서 호주 아동·청소년법률센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14) www.ncylc.org.au

⑨ 국제아동보호연구 네트워크

(Child Watch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이 기구는 비영리 비정부기구로 1993년에 창설된 아동권리연구 단체들의 조직체이다. 아동의 생활조건에 대한 연구기관간 협력연구, 그리고 다학제간 연구를 시행하고, 이들간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아동의 생존조건을 개선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천명하고 있는 아동권리를 실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다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아동권리를 연구하는 사람들과 협약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실무진간의 정보교환도 중시한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가족센터와 4년간에 걸친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이들의 설립목적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기구의 사무소는 노르웨이의 오슬로대학에 위치하고 있으며 6개 대륙의 25개 연구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세계 아동의 생존·보호·발달 선언(the Declaration on the Survival, Protection, Development of Children) 등과 같은 국제 조약들이 이 기구의 연구자료로 활용된다. 아동연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각 지역망들 간의 정보교환과 의견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자정보망을 구축하고, 아동에 대한 국제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최근 이들의 주된 연구주제는 아동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가에 대한 것이다.

⑩ 벨기에의 아동권리센터(The Children's Rights Centre)

아동권리센터는 1978년 벨기에의 Gent 대학교에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아동을 있는 그대로 한 개인으로서 수용되고 존중될 수 있다는 접근을 강조하면서 사회 속에서 아동의 위치를 연구하는 연구위주의 기관으로 출발하였다.

아동권리와 관련된 연구와 인식을 널리 전파할 목적으로 활동하며, 초기 활동으로는 Gent에서 1987년에 1회 아동옴부즈맨 회의를 개

최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노르웨이만이 아동음부즈맨이 있었다. 이어 2회는 1992년에 암스테르담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 1992년에는 벨기에 정부로부터 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아동권리가 학문의 분야로 자리잡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센터에서는 교육과 학문적 접근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권리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선택과정 : 심리 교육학부에 설치되어 해당과목 수강.
- 학위 후 과정 : 5년을 단위로 돌아가면서 사회 속에서의 아동, 아동에 관한 국제규정, 벨기에 아동의 법적인 상황, 협약에 따른 아동 모니터링, 세계의 아동권리 분야에 대한 계획안 등 5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
- 유럽과정 : 1994년부터는 15개의 유럽 대학들이 협동하여 매해 유럽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개설
-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유럽세미나 : 교육에서 아동과 인권에 대한 주제

아동권리센터에서는 다학문적 접근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아동을 단순히 보호받고 사회화되어야 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파악하되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관련분야에서 연구한다. 최근의 연구 관심사는 아동의 참여권에 대한 새로운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며, 법적인 측면에서 아동권리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한 요구와 법규를 분석하며 법률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그 외에 연구에서 도출된 지식을 적용하고 개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 제안, 서비스와 설비지원과 지도, 정보제공, 아동의 상황모니터를 위한 개념화 및 방법 등을 개발한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의무에 대한 지원 및 관찰, 타 기관과의 연계 등의 활동을 한다.

⑪ 네팔의 아동클럽(Children's clubs)

아동클럽은 아동 자신들에 의해 상당부분 운영되며 지난 10년간 새로운 종류의 기관으로 발전하였다. 이 단체가 발전하게된 중요 요인은 참여에 관한 협약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욕구가 컸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다른 기관들의 발전에 힘을 입은데 있다.

현재 네팔에는 수 백 개의 이러한 클럽들이 있다. 아주 많은 수는 마을 단위로 운영중인 'child to child' 훈련 프로그램에서 발전해왔다. 이것은 몇몇 아동의 요청으로 시작되기도 했지만 또한 하테말로(Hatemalo) 아동 라디오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대부분의 참여아동은 8세~16세이며 몇몇은 18세까지도 포함된다. 클럽의 구성원은 한 달에 한 두 번 만나서 영화관람과 레크레이션도 하고, 공동체 개발사업을 벌이며, 토론을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대부분의 클럽은 성인이 주도하여 운영해왔지만 시간이 가면서 아동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남아 있는 성인들은 자문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⑫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한 시민단체그룹(NGO for the CRC)

영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한 시민단체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의 이행과 아동권리 증진 및 모니터링을 위해 일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의 협력체이다. 1983년 아동권리협약을 위한 임시 NGO모임(Ad Hoc NGO Group for the Drafting of the CRC)이란 이름으로 시작되어 초기 회원들은 협약의 초안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협약의 최종본을 만드는데 공헌하였다. 협약이 채택되자 협약의 이행과 모니터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었고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시민단체그룹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 협약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아동을 옹호한다.

-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행동으로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촉진시킨다.
- 아동권리위원회와 시민단체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촉진한다.
- 협약이행과 모니터링에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들간의 협력과 정보교환을 한다.
- 협약이행을 위한 분야의 일을 수행하고 정책을 개발한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모니터링 작업을 돕는다.
- 시민단체들간의 일을 창안하고 지원하며 국가 수준에서 아동 권리를 증진한다.

시민단체그룹은 국제적으로 50개 이상의 시민단체를 회원으로 가지고 있다. 정회원은 1년에 두 번 제네바에서 회의를 하면서 협력전략을 세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이 가입되어 있다. 시민단체 그룹은 협약의 구체적인 조항과 관련이 있는 하위그룹과 특별전문위원회(taskforces)를 가지고 있다. 이들 분야는 아동노동, 성착취, 갈등과 무력상황에서의 아동 등이다.

시민단체그룹은 연락사무소(Liaison Unit)와 아동성착취에 관한 대표기관(focal point)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락사무소에서는 1990년 초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는 세계의 시민단체들과 아동위원회 사이의 협력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이 단체의 일이다.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시민단체가 아동권리위원회의 회기 이전의 실무그룹회의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주요 국제적인 사안에 대한 알리고 개입하도록 90개국 이상에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 아동옹호와 모니터링을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의 연합을 위한 방법과 지침을 개발한다.
- 아동권리옹호와 네트워킹을 위한 시민단체 관련자들을 훈련한다.

한편, 아동 성착취에 관한 대표기관으로서, 아동성착취에 관심이 있는 단체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아동 성착취에 대한 국내·국제적 정보를 제공한다.
- 1년에 3번 뉴스레터를 발행한다.
- 자문 혹은 지역 워크숍을 조직한다.
- 아동 성착취와 학대에 관해 새롭게 등장한 문제에 대해 도전하고 진전 사항을 검토한다.

⑬ 국제아동권리국(International Bureau for Children's Rights: IBCR)

국제아동권리국은 1994년에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아동권리가 침해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조사하며 대중의 인식증진과 국제적인 협력을 창출하여 아동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국제아동권리국은 인권과 형법 그리고 아동관련 사안에 관심이 있는 5명의 판사가 주축이 되어 캐나다 정부의 지원과 자선단체 그리고 개인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제아동권리국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아동권리에 관한 대중의 인식 높이기
- 아동권리 증진 방안을 개발하고 권리침해 사안 건의하기
- 국제·지역간·국내에서 아동권리 증진 활동 지원하기
- 국제간 협력 지원하기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에 한 단체와 협력으로 “캐나다 아동의 목소리”라는 CD를 제작하였다.

3. 시사점

첫째, 아동·청소년의 참여는 아동에게 새로운 사회기술을 제공해주고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며 아동기와 종종 연관되어 있는 무력감에 스스로 도전해보게 해준다. 그리고 민주적인 참여의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나은 세상 만들기에 기여이 동참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므로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참여 자체가 목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회의 주최자가 단순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만으로 아동·청소년을 참여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 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이 하는 역할에 대해 처음부터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은 의견을 물어보는 상대가 되는 것에서부터 회의의 책임을 지고 의견을 교환하는 역할까지 다양할 수 있다. 단순히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보여주기 위해 어른들의 회의에 데려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을 관여시켜서 목표, 형식, 내용, 회의를 통해 의도하는 결과를 확정하는 것까지 참여시킬 때 대부분 가장 효과적인 회의가 된다.

셋째, 전문적으로 훈련된 아동·청소년회의꾼이 되어서는 안된다. 청소년 중에는 그들의 조직을 위한 연설가 또는 대표가 되도록 전문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 그와 같이 전문화된 꾀이 되는 것은 참여자로 하여금 공공의 활동무대에서 자신들의 삶을 소비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청소년들이 참여를 통해 기여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아동·청소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청소년들의 직접

적이고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서 표현하기 위함이다.

넷째, 아동을 참여시키는 프로젝트나 조직은 참여자들이 계속 성장발달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아동을 추가시키는 방법을 개발하고, 임기가 끝난 청소년을 새로운 참여자로 용이하게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아동들이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한 최고 연령범위에 다다르면 처음의 참여자 역할에서 조력자 역할로 바꾸어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역할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다섯째, 청소년의 참여가 “청소년을 참여시켰다”라는 명목상의 것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청소년들에 의해 제기되는 제안이나 문제에 대해 경청하고 이해하려 애쓰며, 그러한 참여의 과정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게다가 그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은 신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자신들의 민주적인 책임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격려해주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 참여한 프로젝트나 청소년의회의 결과물이 청소년들에게 피드백을 주어 그들이 보고서를 볼 기회를 갖고, 그들의 공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섯째, 권리기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이 가시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권리기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절차가 관료적이지 않고 자료나 정보가 발달 수준에 맞아야 하며 청소년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음부즈맨이 인터넷과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기구의 운영에 아동을 자문집단으로 직접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청소년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는 청소년의 관심사를 효율적으로 반영시키기가 쉽지 않다.

일곱째, 청소년을 위한 인권기구는 국내와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의 다른 단체와 상호 협력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국내 시민단체와는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이들이 가진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다. 또

한 이들 단체와의 협력으로 기존의 이미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여덟째, 청소년 인권기구는 연례보고서를 만들어서 정부나 국회 등에 그 진가를 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인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모니터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일반 청소년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청소년용 보고서를 제작하여 그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벨기에 위원회의 경우 청소년용 연례보고서를 만들어 청소년이 보는 신문에 내용을 싣고, 또한 학교나 도서관 그리고 청소년이 잘 가는 장소에 비치한다.

전체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청소년권리신장을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옴부즈기구나 국가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가적 수준의 기관뿐만 아니라, 아동권리센터나 법률센터 등 민간 부문의 권리단체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향후 오랜 경험과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외국의 청소년인권기구 운영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추출하고 벤치마킹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청소년권리와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청소년대상 설문조사 결과
2. 청소년지도자대상 설문조사 결과
3. 종합 요약

공 백

V. 청소년권리와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청소년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조사대상자의 표집은 전국 중학교와 고등학교(일반고, 실업고)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학교 8개교와 고등학교 13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총 1,275명을 표집하였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2003년 6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회수된 설문지 1,270부 중에서 신뢰성이 낮다고 판정된 자료 23부를 제외한 1,24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1) 조사도구의 구성

조사도구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청소년권리, 청소년이 생각하는 권리신장방안, 청소년인권센터와 관련된 활동 및 인식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2000년도 본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권리의식조사」의 조사문항 일부를 활용하여 그 동안의 변화양상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분석에 활용된 주요 독립변인은 성(남·여), 교급(중·일반고·실업고), 지역(대도시·중소도시·군읍면), 생활수준(상·중·하), 학교성적(상·중·하)의 다섯 가지이다.

조사내용은 총 141문항으로 가정에서의 청소년권리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은 생존권 2문항, 보호권 7문항, 발달권 3문항, 참여권 5문항 등 총 17문항이다.

학교에서의 청소년권리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은 생존권 2문항, 보호권 7문항, 발달권 3문항, 참여권 8문항 등 총 20문항이다.

사회에서의 청소년권리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은 생존권 2문항, 보

호권 7문항, 발달권 10문항, 참여권 9문항 등 총 28문항이다.

청소년권리에 대한 인식 및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은 청소년 권리에 대한 인지도 9문항, 인권의식수준 3문항, 권리향유정도와 주장성 7문항, 인권교육 6문항, 선거연령 2문항으로 총 27문항이다.

권리신장방안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은 가정 5문항, 학교 12문항, 사회 9문항, 권리신장과제 1문항, 권리취약원인 2문항으로 총 29문항이다.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은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해 4문항, 활동과 참여경험에 대해 16문항으로 총 20문항이다.

설문지의 각 문항은 Likert식 4점척도로 평가하여 ‘매우 필요’는 1점, ‘필요하다’는 2점, ‘필요하지 않다’는 3점, ‘전혀필요하지 않다’는 4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긍정적인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점수가 낮을수록 권리가 잘 보장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V-1-1> 설문영역 및 내용

설문영역		설문문항
가정에서의 청소년 권리	생존권	*1-4 가정에서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1-12 나의 부모는 내가 아플 때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며 건강을 잘 돌보아 주신다
	보호권	*1-1 나의 부모는 나를 비하하는 말을 자주 하신다
		*1-2 가정에서 체벌을 자주 받는다
		*1-3 가정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1-5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적 학대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1-6 다른 형제·자매들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1-7 집에서 나는 무시당하는 편이다
	발달권	*1-8 가정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다
		1-10 나의 부모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돌봐주신다
		1-11 나의 부모는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교육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
	참여권	1-13 나는 가정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 받는다
		*1-9 나의 인생은 부모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1-14 나의 부모는 집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를 참여시킨다
		1-15 나의 부모는 평소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
		1-16 나의 부모는 내 개인적인 생활과 비밀을 존중해 주신다
	1-17 나는 가정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학교에서의 청소년 권리	생존권	2-17 안전사고로부터 나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2-18 학생들의 균형있는 영양상태와 건강을 고려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호권	*2-1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2-2 집이 가난한 학생은 학교에서 차별을 받는다
		*2-3 학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차별하고 있다
		*2-4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차별하고 있다
		*2-5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자주 하신다
		*2-6 학교에서 나는 무시당하는 편이다
	*2-7 학교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다	
	발달권	*2-11 보충학습 등 입시공부를 위해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게 하고 있다
		2-15 학교에서 다양한 여가·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2-19 장애학생을 배려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으로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설문영역	설 문 문 항
참여권	2-8 우리 학교의 교칙은 학생들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다
	2-9 교칙을 제정하는데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2-10 소지품 검사나 두발과 복장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2-12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학생자치활동이 보장되고 있다(학생회, 아리활동 등)
	2-13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된다
	2-14 학교에서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2-16 벌이나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을 변호할 기회 등 적절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2-20 학교에서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낀다
생존권	3-22 건강과 의료보장을 받을 권리
	3-23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받을 권리
보호권	3-4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나 환경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3-8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9 부당한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11 약물남용이나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
	3-12 신체, 정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약품·시설·장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21 부당하게 시키는 일이나 유해한 노동,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28 남녀 성별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회에서의 청소년 권리	3-3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
	3-5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
	3-7 아동·청소년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권리
	3-13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
	3-14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
	3-15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3-16 휴식과 다양한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과 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할 권리
	3-17 또래 친구들과 사귀고 모임에 참가할 권리
	3-18 차별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
	3-19 개인차와 연령에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참여권	3-1 자신의 감정, 의사,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
	3-2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
	3-6 자신의 사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

설문영역		설문문항
참여권		3-10 적절한 절차(자신을 변호할 기회 등)에 따라 처벌받을 권리
		3-20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24 자신의 개인 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3-25 청소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
		3-26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존중받고 침해받지 않을 권리
		3-27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단체를 만들고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권리
청소년권리에 대한 인식 및 현황	청소년권리에 대한 인식도	4-1 나는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알고 있다
		4-2 나는 「유엔 아동·청소년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3 나는 청소년들에게 「의견표명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4-6 나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인권운동을 알고 있다
		4-16 대중매체는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하하는 내용을 많이 보도하고 있다
		*4-18 근로청소년들은 어려운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일한만큼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4-19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은 임금체불이나 초과노동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4-20 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내용을 알고 있다	
	4-21 나는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위한 청소년자치기구인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의회' 활동에 대해 알고 있다	
	인권의식수준	*4-12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4-13 청소년들에게 의사결정권과 참여권을 주어도 청소년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를 것이다
		*4-17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인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권리향유정도와 주장성	4-4 청소년들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4-5 청소년들은 아직 완전한 자립능력과 권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권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4-7 학생이 잘못했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벌이 불가피하다		
*4-8 수업시간에 소지품, 두발, 복장 검사 등을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4-9 어떤 아이들은 왕따 당해 마땅하다		
4-11 나는 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분명하게 시정을 요구한다		
4-14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나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설문영역		설문문항	
인권교육	4-10	나는 청소년으로서의 나의 권리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한 적이 있다	
	4-15	청소년으로서의 나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한 홍보물(팸플렛 등)을 받아본 적이 있다	
	11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11-1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11-2	인권교육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1-3	기회가 된다면 인권교육을 받아볼 의향이 있습니까	
선거연령	9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지방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몇 세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리취약원인	5	전반적으로 우리사회의 청소년 권리 수준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6	청소년의 권리수준이 열악하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리신장방안	가정에서	7-22	가정에서 부모 자녀간 대화시간을 많이 갖는 것
		7-23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
		7-24	가정에서의 체벌 금지
		7-25	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대 강화
		7-26	청소년 인권에 관한 부모교육 실시
	학교에서	7-1	학교운영과정에서의 학생의견 수렴 및 반영
		7-2	청소년의 자치활동 강화
		7-3	학급당 인원 감축
		7-4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
		7-5	교칙 및 규칙 제정·개정예 청소년 참여보장
		7-6	학업성적 위주의 학생평가 탈피
		7-7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
7-8	청소년대상 인권교육 실시		
7-9	청소년들에게 민주적 사고방식 교육		
7-10	인성교육의 확대		
7-11	학생에 대한 교사의 언행 주의		
7-12	교사와 학생의 대화 시간 갖기		

설문영역		실 문 문 항
권리 신장 방안	사회에서	7-13 교사, 청소년지도자 대상 청소년인권교육 실시
		7-14 청소년들의 자기 권리 주장능력 강화
		7-15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가정, 학교, 관계기관 등에 배포
		7-16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비디오나 TV프로그램 등 영상물 제작·보급
		7-17 청소년권리 주제의 문화프로그램과 행사 개최
		7-18 10대 청소년에게 선거권 부여
		7-19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청소년 조직 구성 (인터넷상의 커뮤니티 등)
		7-20 청소년인권센터나 청소년상담실을 충실히 운영
		7-21 청소년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한 법 제정
		청소년 인권 센터에 대한 인식
12 청소년 여러분의 권리보장을 위한 단체나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지도 및 필요성	13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4 '청소년인권센터' 설립 필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활동과 참여 경험	15-1 청소년인권 침해사태에 대한 상담 및 대처	
	15-2 인권에 대한 조사연구와 토론회 개최	
	15-3 인권침해사태 모니터링활동	
	15-4 인권동아리활동의 지원(또래인권지킴이 등)	
	15-5 청소년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시	
	15-6 청소년지도자와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15-7 인권교육지침서 개발·보급	
	15-8 인권정보자료실의 운영	
	15-9 국내외 유관 단체와의 협력사업	
	15-10 청소년인권신장을 위한 홍보·캠페인	
	16 '청소년인권센터'에서 상담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16-1 인권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소감은 어떻습니까	
	16-2 인권센터에서의 상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7 인권 관련 캠프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17-1 인권 관련 캠프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17-2 캠프나 프로그램 참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 분포는 남자 50.7%, 여자 49.3%로 남자비율이 조금 높으며, 교급별로는 중학교 47.3%, 일반고 35.0%, 실업고 17.6%, 지역별로는 대도시 51.2%, 중소도시 40.8%, 군읍면 8.0%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 16.9%, 중위권 68.6%, 하위권 14.4%이며,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상위권 21.4%, 중위권 51.9%, 하위권 26.7%이다.

<표 V-1-2>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 분		사례수(명)	백분율(%)
성별	남	632	50.7
	여	615	49.3
교급	중학교	590	47.3
	일반고	437	35.0
	실업고	220	17.6
지역	대도시	638	51.2
	중소도시	509	40.8
	군읍면	100	8.0
생활수준	상	211	16.9
	중	856	68.6
	하	180	14.4
학교성적	상	267	21.4
	중	647	51.9
	하	333	26.7
전 체		1247	100.0

2) 조사결과

(1) 청소년인권 실태

① 가정에서의 청소년 권리

• 생존권

3.6%(2000년에 비해 6.6% 감소)의 청소년이 '가정에서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P < .01$)에 따라서는 남자(4.7%)가 여자(2.4%)보다, 교급($P < .05$)에 따라서는 중학생(4.0%)이 일반고(3.5%)와 실업고(3.2%) 청소년보다, 지역($P < .01$)에 따라서는 군읍면지역(9.0%)의 청소년이 대도시(3.8%)와 중소도시지역(2.4%)의 청소년보다, 생활수준($P < .001$)에 따라서는 상위권(4.8%) 청소년이 중위권(3.2%)과 하위권(4.6%) 청소년보다, 학교성적($P < .05$)에 따라서는 하위권(4.9%) 청소년이 상위권(4.5%)과 중위권(2.7%)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표 V-1-3>참조).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3.73$, $P < .001$)에 따라서는 남자(3.64)가 여자(3.76)보다, 생활수준($F=6.08$, $P < .01$)에 따라서는 하위권(3.57) 청소년이 상위권(3.76)과 중위권(3.72) 청소년보다 더 '그렇다'고 답하여 남자일수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가정에서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1.7%의 청소년은 '아플 때 부모가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며 건강을 잘 돌보아 주신다'고 답변하였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교급($P < .001$)에 따라서는 일반고(92.2%) 청소년이 중학교(91.9%)와 실업고(86.1%) 청소년보다, 생활수준($P < .001$)에 따라서는 중위권(93.2%) 청소년이 상위권(91.5%)과 하위권(86.1%)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대체적으로 가정에서의 청소년의 생존권은 잘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생활수준(F=13.49, P<.001)에 따라서 상위권(1.52) 청소년이 중위권(1.58)과 하위권(1.84) 청소년보다 더 '그렇다' 고 답하여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건강서비스를 잘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 가정에서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남자	1.4	3.3	24.5	70.7	100.0
	여자	.3	2.1	18.4	79.1	100.0
교급	중학교	.9	3.1	20.1	75.9	100.0
	일반고	1.4	2.1	19.5	77.1	100.0
	실업고	.0	3.2	29.2	67.6	100.0
지역	대도시	1.1	2.7	19.2	77.0	100.0
	중소도시	.6	1.8	24.7	72.9	100.0
	군읍면	1.0	8.0	20.0	71.0	100.0
생활수준	상	2.4	2.4	11.9	83.3	100.0
	중	.6	2.6	21.3	75.6	100.0
	하	.6	4.0	33.3	62.1	100.0
학교성적	상	1.5	3.0	16.1	79.4	100.0
	중	.8	1.9	22.0	75.3	100.0
	하	.6	4.3	24.6	70.5	100.0
전체		.9	2.7	21.5	74.9	100.0

성별 $\chi^2=14.26$ *** 교급 $\chi^2=13.57$ * 지역 $\chi^2=17.56$ **

생활수준 $\chi^2=33.97$ *** 학교성적 $\chi^2=12.91$ *

• 보호권

19.1%(2000년에 비해 9.4% 감소)의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비하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학교성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P<.01$)가 나타났다. 하위권(26.1%) 청소년이 상위권(19.5%)과 중위권(15.2%)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6.1%(2000년에 비해 3.5% 감소)의 청소년은 '가정에서 체벌을 자주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지역($P<.05$)과 학교성적($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7.4%)의 청소년이 중소도시(4.9%)와 군읍면지역(3.0%)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학교성적별로 살펴보면 상위권(9.1%) 청소년이 중위권(4.2%)과 하위권(6.9%)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표 V-1-4>참조).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변인들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V-1-4> 가정에서 체벌을 자주 받는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지역	대도시	.6	6.8	41.8	50.8	100.0
	중소도시	.4	4.5	50.1	45.0	100.0
	군읍면	1.0	2.0	41.0	56.0	100.0
학교성적	상	.8	8.3	40.2	50.8	100.0
	중	.6	3.6	45.8	50.0	100.0
	하	.3	6.6	47.9	45.2	100.0
전체		.6	5.5	45.1	48.8	100.0

지역 $\chi^2=13.43^*$

학교성적 $\chi^2=12.97^*$

14.8%(2000년에 비해 4.1% 감소)의 청소년이 '가정에서 성적이 나빠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들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2.9%의 청소년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적 학대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P<.01$), 생활수준($P<.05$), 학교성적($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3.5%)가 여자(2.3%)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하위권(5.6%) 청소년이 상위권(4.3%)과 중위권(2.0%)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하위권(5.4%) 청소년이 상위권(1.5%)과 중위권(2.2%)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표 V-1-5>참조).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학교성적($F=5.51$, $P<.01$)에 따라서 하위권(3.72) 청소년이 상위권(3.84)과 중위권(3.82) 청소년보다 더 '그렇다'고 답하여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신체적폭력의 경험이 많음을 알 수 있다.

36.0%의 청소년이 '다른 형제·자매들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교급($P<.05$), 학교성적($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13.3%)이 일반고(9.4%)와 실업고(8.2%)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중위권(18.0%) 청소년이 상위권(12.7%)과 하위권(15.1%)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표 V-1-5>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적 학대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남자	.8	2.7	16.7	79.8	100.0
	여자	.5	1.8	10.3	87.5	100.0
생활수준	상	1.0	3.3	8.6	87.1	100.0
	중	.5	1.5	14.9	83.1	100.0
	하	1.1	4.5	11.8	82.6	100.0
학교성적	상	.0	1.5	13.1	85.4	100.0
	중	.8	1.4	12.4	85.4	100.0
	하	.9	4.5	15.8	78.8	100.0
전체		.6	2.3	13.5	83.6	100.0

성별 $\chi^2=13.19^{**}$ 생활수준 $\chi^2=33.97^{***}$ 학교성적 $\chi^2=12.91^{***}$

8.8%(2000년에 비해 4.8% 감소)의 청소년은 '집에서 무시당하는 편이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성적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P<.01$)가 있었다. 하위권(12.3%) 청소년이 상위권(10.1%)과 중위권(6.2%)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10.2%(2000년에 비해 8.8% 감소)의 청소년은 '가정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학교성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P<.001$)가 있었다. 하위권(15.4%) 청소년이 상위권(10.5%)과 중위권(7.3%)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 발달권

86.6%(2000년에 비해 5.6% 증가)의 청소년이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잘 돌봐주신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교급($P<.001$), 지역($P<.05$), 생활수준($P<.001$), 학교성적($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88.7%)이 일반고(86.1%)와 실업고(81.7%)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지역에 따라서 대도시(88.5%) 청소년이 중소도시(85.8%)와 군읍면지역(77.6%) 청소년보다, 생활수준별로는 중위권(87.9%) 청소년이 상위권(86.4%)과 하위권(80.5%) 청소년보다, 학교성적별로는 상위권(87.5%)과 중위권(87.6%) 청소년이 하위권(84.0%)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82.1%의 청소년은 '부모가 자신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교육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교급($P<.001$), 지역($P<.01$), 생활수준($P<.001$), 학교성적($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83.0%)이 일반고(82.8%)와 실업고(78.2%) 청소년보다 더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83.4%)의 청소년이 대도시(82.9%)와 군읍면지역(70.0%)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85.6%) 청소년이 중위권(83.7%)과 하위권(7.4%)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상위권(87.8%) 청소년이 중위권(82.8%)과 하위권(76.9%)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표 V-1-6>참조).

77.5%의 청소년이 '가정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교급($P<.05$), 생활수준($P<.001$), 학교성적($P<.01$)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교(82.4%)와 일반고(82.4%) 청소년이 실업고(79.1%)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85.2%) 청소년이 중위권(83.1%)과 하위권(71.0%)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상위권(83.8%) 청소년이 중위권(83.4%)과 하위권(76.2%)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3.13$, $P<.05$)에 따라서 중학생(1.85)이 일반고(1.86)와 실업고(2.00) 청소년보다, 학교성적($F=6.71$, $P<.01$)에 따라서는 상위권(1.78) 청소년이 중위권(1.85)과 하위권(2.00) 청소년보다 더 '그렇다'고 답하여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수록, 학교성적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가정에서의 적절한 휴식과 다양한 문화생활지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가정에서 4분의 3이상의 청소년이 발달권을 잘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6> 가정에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교육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교급	중학교	35.5	47.5	13.9	31	100.0
	일반고	35.0	47.8	13.5	37	100.0
	실업고	17.7	60.5	20.0	1.8	100.0
지역	대도시	34.8	48.1	13.3	3.8	100.0
	중소도시	30.1	53.3	14.8	1.8	100.0
	군읍면	26.0	44.0	25.0	5.0	100.0
생활수준	상	45.9	39.7	10.0	4.3	100.0
	중	31.9	51.8	14.3	2.0	100.0
	하	17.9	52.5	23.5	6.1	100.0
학교성적	상	42.1	44.7	10.2	3.0	100.0
	중	31.9	50.9	14.7	2.5	100.0
	하	24.9	52.0	18.9	4.2	100.0
전체	32.2	49.9	14.8	3.0	100.0	

교급 $\chi^2=29.75^{***}$ 지역 $\chi^2=18.50^{**}$ 생활수준 $\chi^2=52.77^{***}$ 학교성적 $\chi^2=25.32^{***}$

- 참여권

14.0%(2000년에 비해 17.9% 감소)의 청소년이 '자신의 인생이 부모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들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66.6%(2000년에 비해 8.9% 감소)의 청소년이 '부모가 집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을 참여시킨다'고 응답하였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P<.05$)에 따라서는 여자(70.7%)가 남자(62.6%)보다, 교급($P<.05$)에 따라서는 일반고 (68.0%) 청소년이 중학교(67.3%)와 실업고 (62.1%) 청소년보다, 지역($P<.05$)에 따라서는 대도시(68.0%) 청소년이 중소도시(67.4%)와 군읍면지역(54.0%) 청소년보다, 생활수준($P<.001$)에 따라서는 중위권(68.6%) 청소년이 상위권(67.8%)과 하위권(57.1%) 청소년보다, 학교성적($P<.05$)에 따라서는 상위권(69.2%) 청소년이 중위권(68.7%)과 하위권(60.9%)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표 V-1-7>참조).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3.08$, $P<.05$)에 따라서는 중학생 (2.14)이 일반고(2.16)와 실업고(2.30) 청소년보다, 생활수준($F=7.38$, $P<.01$)에 따라서는 상위권(2.06) 청소년이 중위권(2.16)과 하위권(2.37) 청소년보다 더 '그렇다'고 답하여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수록, 생활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가정에서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7>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를 참여시킨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남자	20.0	42.6	32.3	5.1	100.0
	여자	21.4	49.3	24.5	4.7	100.0
교급	중학교	24.0	43.3	27.4	5.3	100.0
	일반고	20.2	47.8	27.4	4.6	100.0
	실업고	12.8	49.3	33.3	4.6	100.0
지역	대도시	20.8	47.2	27.9	4.1	100.0
	중소도시	20.1	47.3	27.4	5.1	100.0
	군읍면	23.0	31.0	37.0	9.0	100.0
생활수준	상	31.7	36.1	26.9	5.3	100.0
	중	19.6	49.0	27.1	4.3	100.0
	하	13.6	43.5	36.2	6.8	100.0
학교성적	상	22.2	47.0	27.8	3.0	100.0
	중	22.1	46.6	27.1	4.2	100.0
	하	16.9	44.0	31.3	7.8	100.0
전체		20.7	45.9	28.4	4.9	100.0

성별 $\chi^2 = 10.00^*$ 교급 $\chi^2 = 14.12^*$ 지역 $\chi^2 = 12.74^*$ 생활수준 $\chi^2 = 29.78^{***}$ 학교성적 $\chi^2 = 13.43^*$

80.7%(2000년에 비해 6.8%증가)의 청소년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배려해 주신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 < .05$), 교급($P < .05$), 생활수준($P < .01$)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여자(83.8%)가 남자(77.6%)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일반고(83.0%) 청소년이 중학교(79.8%)와 실업고(78.5%)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81.4%) 청소년이 중위권(80.7%)과 하위권(80.2%) 청소년보다 더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 = 3.11$, $P < .05$)에 따라서 일반고(1.94) 청소년이 중학교(1.98)와 실업고(2.10) 청소년보다 더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77.9%(2000년에 비해 13.0% 감소)의 청소년이 '부모가 자신들의 개인적인 생활과 비밀을 존중해 주신다'고 응답하였으며, 교급($P<.05$)에 따라서는 중학생(80.4%)이 일반고(76.8%)와 실업고(73.5%) 청소년보다, 생활수준($P<.05$)에 따라서는 중위권(79.3%) 청소년이 상위권(78.1%)과 하위권(72.1%)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4.31$, $P<.05$)에 따라서는 중학생(1.97)이 일반고(2.08)와 실업고(2.12) 청소년보다, 생활수준($F=4.33$, $P<.05$)에 따라서는 상위권(2.00) 청소년이 중위권(2.01)과 하위권(2.19) 청소년보다 더 '그렇다'고 답하여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에서의 사생활이 잘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적 가정에서는 청소년의 참여를 존중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에 비해 청소년 참여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표 V-1-8>참조).

<표 V-1-8> 가정에서 내 개인적인 생활과 비밀을 존중해 주신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교급	중학교	27.3	53.1	14.9	4.6	100.0
	일반고	20.9	55.9	17.9	5.3	100.0
	실업고	17.8	55.7	22.8	3.7	100.0
생활수준	상	27.6	50.5	15.7	6.2	100.0
	중	24.2	55.1	16.6	4.1	100.0
	하	15.1	57.0	22.9	5.0	100.0
전체		23.4	54.5	17.4	4.7	100.0

교급 $\chi^2 = 15.06^*$

생활수준 $\chi^2 = 13.46^*$

한편, 79.1%(2000년에 비해 4.7% 증가)의 청소년이 '가정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교급($P<.001$)과 생활수준($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급별로는 중학생(82.3%)이 일반고

(78.3%)와 실업고(71.4%)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생활수준별로는 상위권(84.8%) 청소년이 중위권(80.4%)과 하위권(66.5%)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② 학교에서의 청소년권리

• 생존권

51.8%의 청소년이 '안전사고로부터 나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P<.001$), 교급($P<.001$), 지역($P<.01$), 생활수준($P<.05$), 학교성적($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53.2%)가 여자(50.3%)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일반고(61.5%) 청소년이 중학교(56.3%)와 실업고(40.2%) 청소년보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55.6%) 청소년이 대도시(54.0%)와 군읍면지역(33.3%)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56.2%) 청소년이 중위권(54.8%)과 하위권(46.9%)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상위권(54.9%) 청소년이 중위권(54.0%)과 하위권(45.2%)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표 V-1-9>참조).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9.20$, $P<.001$)에 따라서는 일반고(2.45) 청소년이 중학교(2.52)와 실업고(2.70) 청소년보다, 지역($F=5.25$, $P<.01$)에 따라서는 중소도시(2.49) 청소년이 대도시(2.50)와 군읍면지역(2.75) 청소년보다 더 '그렇다'고 답하여 일반고 청소년일수록, 대도시나 군읍면보다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일수록 학교에서 더 안전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9> 안전사고로부터 나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여건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남자	7.6	45.6	38.0	8.7	100.0
	여자	3.9	46.4	39.9	9.8	100.0
교급	중학교	8.3	48.0	34.1	9.5	100.0
	일반고	4.6	46.9	40.7	7.8	100.0
	실업고	1.4	38.8	48.4	11.4	100.0
지역	대도시	6.0	48.0	36.1	9.9	100.0
	중소도시	5.9	46.7	39.4	7.9	100.0
	군읍면	4.0	29.3	54.5	12.1	100.0
생활수준	상	11.0	45.2	32.4	11.4	100.0
	중	4.7	47.1	39.7	8.5	100.0
	하	5.0	41.9	42.5	10.6	100.0
학교성적	상	7.5	47.4	33.1	12.0	100.0
	중	4.5	49.5	38.5	7.5	100.0
	하	6.9	38.3	44.3	10.5	100.0
전체		5.8	46.0	38.9	9.3	100.0

성별 $\chi^2 = 7.99^{***}$ 교급 $\chi^2 = 29.03^{***}$ 지역 $\chi^2 = 16.93^*$ 생활수준 $\chi^2 = 17.50^{**}$ 학교성적 $\chi^2 = 20.00^{**}$

50.7%의 청소년이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양상태와 건강을 고려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 < .001$), 교급($P < .001$), 지역($P < .01$), 생활수준($P < .05$), 학교성적($P < .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57.3%)가 여자(44.0%)보다, 교급별로는 중학생(68.0%)이 일반고(32.6%)와 실업고(40.0%) 청소년보다, 지역별로는 군읍면지역(59.0%) 청소년이 대도시(45.2%)와 중소도시(56.0%) 청소년보다, 생활수준별로는 중위권(51.3%) 청소년이 상위권(44.3%)과 하위권(42.1%) 청소년보다, 학교성적별로는 중위권(53.4%)의 청소년이 상위권(47.9%)과 하위권(47.8%)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 = -6.12$, $P < .001$)에 따라서는 남자

(2.49)가 여자(2.81)보다, 교급(F=104.46, P<.001)에 따라서는 중학생(2.27)이 일반고(3.03)와 실업고(2.90) 청소년보다, 지역(F=8.09, P<.001)에 따라서는 군읍면지역(2.48) 청소년이 대도시(2.75)와 중소도시(2.55) 청소년보다 더 '그렇다'고 답하여 남자일수록,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수록,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는 군읍면지역에 있는 청소년일수록 학교에서의 급식상태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호권

32.0%(2000년에 비해 19.8% 감소)의 청소년이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1), 교급(P<.001), 지역(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36.6%)가 여자(27.3%)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일반고(41.6%) 청소년이 중학교(24.4%)와 실업고(33.2%) 청소년보다, 지역에 따라서는 군읍면지역(50.0%) 청소년이 대도시(24.1%)와 중소도시(38.3%)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표 V-1-10> 참조).

<표 V-1-10>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남자	7.6	29.0	35.4	28.0	100.0
	여자	4.4	22.9	36.4	36.3	100.0
교급	중학교	4.9	19.5	37.8	37.8	100.0
	일반고	8.9	32.7	30.4	27.9	100.0
	실업고	3.2	30.0	41.8	25.0	100.0
지역	대도시	4.5	19.6	39.2	36.7	100.0
	중소도시	7.5	30.8	32.4	29.3	100.0
	군읍면	8.0	42.0	33.0	17.0	100.0
전체		6.0	26.0	35.9	32.1	100.0

성별 $\chi^2 = 16.39^{**}$ 교급 $\chi^2 = 47.03^{***}$ 지역 $\chi^2 = 45.67^{***}$

10.4%(2000년에 비해 15.2% 감소)의 청소년은 '집이 가난한 학생이 학교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5$), 교급($P<.001$), 생활수준($P<.05$), 학교성적($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11.5%)가 여자(9.4%)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일반고(13.3%) 청소년이 중학교(9.4%)와 실업고(7.7%)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20.9%) 청소년이 중위권(9.6%)과 하위권(12.3%)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상위권(13.5%) 청소년이 중위권(9.6%)과 하위권(10.3%)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9.54$, $P<.001$)에 따라서는 일반고(3.22) 청소년이 중학교(3.41)와 실업고(3.32) 청소년보다, 학교성적($F=3.51$, $P<.05$)에 따라서는 하위권(3.26) 청소년이 상위권(3.30)과 중위권(3.38) 청소년보다 학교에서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8%(2000년에 비해 15.6% 감소)의 청소년이 '학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차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5$), 교급($P<.001$), 지역($P<.001$)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36.7%)가 여자(30.8%)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3.08$, $P<.05$) 일반고(42.2%) 청소년이 중학교(29.4%)와 실업고(28.9%) 청소년보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42.7%) 청소년이 대도시(25.9%)와 군읍면지역(38.4%)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13.79$, $P<.001$)에 따라서는 일반고(2.67) 청소년이 중학교(2.97)와 실업고(2.94) 청소년보다, 지역($F=19.99$, $P<.001$)에 따라서는 중소도시(2.68) 청소년이 대도시(3.02)와 군읍면지역(2.77) 청소년보다 학교에서 성차별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7.8%(2000년에 비해 19.1% 감소)의 청소년이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차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01$), 교급($P<.001$), 지역($P<.01$), 생활수준($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64.1%)가 남자(51.6%)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일반고(71.7%)청소년이 중학교(50.2%)와 실업고(50.3%)청소년보다, 지역에 따라서는 군읍면지역(70.7%) 청소년이 대도시(53.3%)와 중소도시(60.8%)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62.8%) 청소년이 중위권(57.5%)과 하위권(53.9%)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4.75$, $P<.001$)에 따라서는 여자(2.25)가 남자(2.49)보다, 교급($F=25.70$, $P<.001$)에 따라서는 일반고(2.13) 청소년이 중학교(2.52)와 실업고(2.47) 청소년보다, 지역($F=8.38$, $P<.001$)에 따라서는 군읍면지역(2.14) 청소년이 대도시(2.47)와 중소도시(2.30) 청소년보다 더 '그렇다'고 답하여 여자일수록, 중학생이나 실업고 청소년보다는 일반고 청소년일수록,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는 군읍면지역에 있는 청소년일수록 학교에서 성적에 따른 차별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5%(2000년에 비해 8.0% 감소)의 청소년은 '교사로부터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5$), 교급($P<.001$), 생활수준($P<.01$), 학교성적($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46.7%)가 남자(40.4%)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교급에 따라서는 일반고(55.6%) 청소년이 중학교(34.4%)와 실업고(44.1%)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49.6%) 청소년이 중위권(42.2%)과 하위권(43.6%)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상위권(46.9%) 청소년이 중위권(42.0%)과 하위권(44.0%)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표 V-1-11>참조).

<표 V-1-11>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자주 하신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남자	11.4	29.0	42.5	17.1	100.0
	여자	13.5	33.2	41.2	12.1	100.0
교급	중학교	10.4	24.0	45.2	20.4	100.0
	일반고	15.6	40.0	36.8	7.6	100.0
	실업고	11.8	32.3	42.7	13.2	100.0
생활수준	상	21.0	28.6	34.3	16.2	100.0
	중	10.2	32.0	44.1	13.7	100.0
	하	13.4	30.2	39.7	16.8	100.0
학교성적	상	13.9	33.0	41.9	11.2	100.0
	중	10.1	31.9	40.8	17.2	100.0
	하	16.0	28.0	43.7	12.3	100.0
전체		12.4	31.1	41.8	14.6	100.0

성별 $\chi^2 = 8.47^*$ 교급 $\chi^2 = 59.44^{***}$ 생활수준 $\chi^2 = 21.95^{**}$ 학교성적 $\chi^2 = 14.75^*$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2.70$, $P<.01$)에 따라서는 여자(2.52)가 남자(2.65)보다, 교급($F=25.68$, $P<.001$)에 따라서는 일반고(2.36) 청소년이 중학교(2.76)와 실업고(2.57) 청소년보다, 학교성적($F=3.70$, $P<.05$)에 따라서는 상위권(2.51) 청소년이 중위권(2.65)과 하위권(2.52) 청소년보다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더 자주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12.4%(2000년에 비해 6.1% 감소)의 청소년이 '학교에서 무시당하는 편이다'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P<.01$)에 따라서는 남자(15.5%)가 여자(9.3%)보다, 교급($P<.001$)에 따라서는 일반고(15.8%) 청소년이 중학교(11.4%)와 실업고(8.2%) 청소년보다, 생활수준($P<.001$)에 따라서는 하위권(21.2%) 청소년이 상위권(14.1%)과 중위권(10.2%)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도 하위권(16.8%) 청소년이 상위권(11.4%)과 중위권(10.6%)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15.95$, $P<.001$)에 따라서는 일반고(3.04) 청소년이 중학교(3.29)와 실업고(3.16) 청소년보다, 생활수준($F=6.75$, $P<.01$)에 따라서는 하위권(3.00) 청소년이 상위권(3.21)과 중위권(3.21) 청소년보다, 학교성적($F=6.72$, $P<.01$)에 따라서는 하위권(3.06) 청소년이 상위권(3.19)과 중위권(3.23) 청소년보다 더 '그렇다'고 답하여 일반고 청소년일수록, 생활수준이나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학교서에 더 많이 무시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3%(2000년에 비해 7.7% 감소)의 청소년은 '학교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다'고 응답하였으며, 교급($P<.001$), 지역($P<.01$), 생활수준($P<.001$), 학교성적($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급에 따라서는 일반고(20.6%) 청소년이 중학교(14.6%)와 실업고(12.6%) 청소년보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18.4%) 청소년이 대도시(14.6%)와 군읍면지역(16.7%)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하위권(29.1%) 청소년이 상위권(14.0%)과 중위권(14.2%)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하위권(23.3%) 청소년이 상위권(12.8%)과 중위권(14.2%)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11.55$, $P<.001$)에 따라서는 일반고(3.02) 청소년이 중학교(3.24)와 실업고(3.14) 청소년보다, 지역($F=6.69$, $P<.01$)에 따라서는 군읍면지역(3.00) 청소년이 중소도시(3.08)와 대도시(3.22) 청소년보다, 생활수준($F=13.10$, $P<.001$)에 따라서는 하위권(2.89) 청소년이 상위권(3.26)과 중위권(3.17) 청소년보다, 학교성적($F=11.02$, $P<.001$)에 따라서는 하위권(2.98) 청소년이 상위권(3.21)과 중위권(3.20) 청소년보다 더 많이 학교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발달권

33.2%의 청소년이 '보충학습 등 입시공부를 위해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게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1$), 교급

($P<.001$), 지역($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35.1%)가 여자(31.2%)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일반고(58.3%) 청소년이 중학교(23.8%)와 실업고(8.6%) 청소년보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47.1%) 청소년이 대도시(21.4%)와 군읍면지역(38.0%)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51.8%(2000년에 비해 1.3% 증가)의 청소년이 '학교에서 다양한 여가·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1$), 교급($P<.001$), 지역($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55.3%)가 여자(49.4%)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61.0%)이 일반고(43.8%)와 실업고(43.7%) 청소년보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54.2%) 청소년이 대도시(53.2%)와 군읍면지역(32.0%)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12.97$, $P<.001$)에 따라서는 일반고(2.27) 청소년이 중학교(2.47)와 실업고(2.59) 청소년보다, 지역($F=26.66$, $P<.001$)에 따라서는 중소도시(2.26) 청소년이 대도시(2.48)와 군읍면지역(2.87) 청소년보다 더 많이 학교에서의 여가·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1%의 청소년이 '장애학생을 배려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으로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1$), 교급($P<.001$), 생활수준($P<.001$), 학교성적($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45.3%)가 여자(36.4%)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51.1%)이 일반고(28.3%)와 실업고(35.4%)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47.8%) 청소년이 중위권(41.0%)과 하위권(32.4%)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중위권(48.2%) 청소년이 상위권(41.9%)과 하위권(33.6%)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표 V-1-12>참조).

<표 V-1-12>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남자	6.3	26.1	39.5	28.1	100.0
	여자	2.0	23.7	41.8	32.6	100.0
교급	중학교	4.9	32.9	39.0	23.1	100.0
	일반고	2.3	13.1	43.4	41.1	100.0
	실업고	5.9	26.8	39.1	28.2	100.0
지역	대도시	5.3	26.9	36.6	31.1	100.0
	중소도시	3.0	25.0	46.1	26.0	100.0
	군읍면	3.0	12.0	38.0	47.0	100.0
생활수준	상	9.5	23.3	33.8	33.3	100.0
	중	2.7	26.1	42.1	29.1	100.0
	하	5.0	21.8	40.2	33.0	100.0
학교성적	상	5.2	25.5	36.3	33.0	100.0
	중	3.9	27.9	41.1	27.1	100.0
	하	3.9	18.7	42.9	34.4	100.0
전체	4.2	24.9	40.6	30.3	100.0	

성별 $\chi^2 = 17.61^{**}$ 교급 $\chi^2 = 74.59^{***}$ 지역 $\chi^2 = 30.75^{***}$ 생활수준 $\chi^2 = 24.77^{***}$ 학교성적 $\chi^2 = 14.64^*$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35.26$, $P<.001$)에 따라서는 중학생(2.80)이 일반고(3.23)와 실업고(2.90) 청소년보다, 학교성적($F=4.10$, $P<.05$)에 따라서는 중위권(2.91) 청소년이 상위권(2.97)과 하위권(3.08) 청소년보다 '장애학생을 배려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으로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 참여권

41.3%(2000년에 비해 14.0% 증가)의 청소년이 '학교교칙이 학생들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P<.001$), 교급($P<.001$), 생활수준($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47.0%)가 여자(36.2%)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

(52.9%)이 일반고(28.8%)와 실업고(39.3%)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47.4%) 청소년이 중위권(40.5%)와 하위권(40.5%)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5.47$, $P<.001$)에 따라서는 남자(2.60)가 여자(2.86)보다, 교급($F=36.30$, $P<.001$)에 따라서는 중학생(2.55)이 일반고(2.97)와 실업고(2.73) 청소년보다 '학교교칙이 학생들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2.3%의 청소년이 '교칙을 제정하는데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P<.01$), 교급($P<.001$), 지역($P<.01$), 생활수준($P<.01$), 학교성적($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35.4%)가 여자(29.1%)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37.8%)이 일반고(23.5%)와 실업고(34.5%) 청소년보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39.4%) 청소년이 중소도시(36.3%)와 군읍면지역(31.0%)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 중위권(33.4%) 청소년이 상위권(30.9%)과 하위권(28.5%)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중위권(34.7%) 청소년이 상위권(27.2%)과 하위권(31.2%)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표 V-1-13>참조).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3.21$, $P<.01$)에 따라서는 남자(2.83)가 여자(2.99)보다, 교급($F=20.37$, $P<.001$)에 따라서는 중학생(2.79)이 일반고(3.11)와 실업고(2.85) 청소년보다, 지역($F=5.82$, $P<.01$)에 따라서는 중소도시(2.82) 청소년이 대도시(2.97) 청소년과 군읍면지역(2.92) 청소년보다 학교에서 '교칙을 제정하는데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3> 교칙을 제정하는데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성별	남자	4.2	31.2	41.8	22.9	100.0
	여자	2.6	26.5	40.0	30.9	100.0
교급	중학교	4.4	33.4	41.1	21.0	100.0
	일반고	2.3	21.2	39.5	37.0	100.0
	실업고	2.8	31.7	43.1	22.5	100.0
지역	대도시	3.6	25.8	38.9	31.6	100.0
	중소도시	3.4	32.7	42.8	21.2	100.0
	군읍면	2.0	29.0	44.0	25.0	100.0
생활수준	상	7.1	23.8	36.2	32.9	100.0
	중	2.7	30.7	41.2	25.4	100.0
	하	2.2	26.3	44.7	26.8	100.0
학교성적	상	4.2	23.0	38.5	34.3	100.0
	중	2.3	32.4	40.4	24.8	100.0
	하	4.8	26.4	43.9	24.8	100.0
전체		3.4	28.9	40.9	26.8	100.0

성별 $\chi^2 = 12.18^{**}$ 교급 $\chi^2 = 43.19^{***}$ 지역 $\chi^2 = 18.14^{**}$ 생활수준 $\chi^2 = 18.94^{**}$ 학교성적 $\chi^2 = 19.50^{**}$

79.1%의 청소년이 '소지품 검사나 두발과 복장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P < .01$), 교급($P < .001$), 지역($P < .01$), 생활수준($P < .001$)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83.4%)가 남자(75.1%)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일반고(88.3%) 청소년이 중학교(70.8%)와 실업고(83.1%) 청소년보다, 지역에 따라서는 군읍면지역(80.0%) 청소년이 대도시(78.9%)와 중소도시(79.3%)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중위권(81.9%) 청소년이 상위권(75.2%)과 하위권(70.4%)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표 V-1-14> 참조)

<표 V-1-14> 소지품 검사나 두발과 복장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남자	28.8	46.2	15.6	9.4	100.0
	여자	35.3	48.1	10.1	6.5	100.0
교급	중학교	19.9	50.9	16.7	12.4	100.0
	일반고	50.1	38.2	8.5	3.2	100.0
	실업고	28.3	54.8	11.4	5.5	100.0
지역	대도시	37.1	41.8	13.5	7.5	100.0
	중소도시	26.6	52.7	11.8	8.9	100.0
	군읍면	27.0	53.0	14.0	6.0	100.0
생활수준	상	38.1	37.1	13.3	11.4	100.0
	중	32.2	49.7	11.8	6.3	100.0
	하	24.6	45.8	17.9	11.7	100.0
전체		32.0	47.1	12.9	8.0	100.0

성별 $\chi^2 = 14.93^{**}$ 교급 $\chi^2 = 126.80^{***}$ 지역 $\chi^2 = 20.24^{**}$ 생활수준 $\chi^2 = 24.70^{***}$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3.59$, $P<.001$)에 따라서는 여자(1.88)가 남자(2.06)보다, 교급($F=57.79$, $P<.001$)에 따라서는 일반고(1.65) 청소년이 중학교(2.22)와 실업고(1.94) 청소년보다, 생활수준($F=5.85$, $P<.01$)에 따라서는 중위권(1.92) 청소년이 상위권(1.98)과 하위권(2.17) 청소년보다 학교에서 소지품 검사나 두발과 복장에 대한 규제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4%(2000년에 비해 29.6% 증가)의 청소년이 '학교에서는 다양한 학생자치활동(학생회, 동아리활동 등)이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P<.05$), 교급($P<.001$), 지역($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61.5%)가 여자(59.1%)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일반고(69.2%) 청소년이 중학교(57.6%)와 실업고(50.0%) 청소년보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70.1%) 청소년이 대도시(56.2%)와 군읍면지역(37.0%)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12.97$, $P<.001$)에 따라서는 일반고(2.27) 청소년이 중학교(2.47)와 실업고(2.59) 청소년보다, 지역($F=26.66$, $P<.001$)에 따라서는 중소도시(2.26) 청소년이 대도시(2.48)와 군읍면지역(2.87) 청소년보다 학교에서 다양한 학생자치활동(학생회, 동아리활동 등)이 더 많이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6.2%(2000년에 비해 19.5% 증가)의 청소년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P<.01$), 교급($P<.001$), 생활수준($P<.05$)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50.5%)가 여자(41.6%)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55.3%)이 일반고(37.3%)와 실업고(39.3%)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49.0%) 청소년이 중위권(47.5%)과 하위권(33.5%)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62.7%의 청소년이 '학교에서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P<.05$), 교급($P<.001$), 지역($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65.6%)가 여자(60.7%)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67.6%)이 일반고(60.0%)와 실업고(54.5%) 청소년보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지역(63.9%) 청소년이 대도시(62.1%)과 군읍면지역(50.0%)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2.20$, $P<.05$)에 따라서는 남자(2.29)가 여자(2.39)보다, 교급($F=9.23$, $P<.001$)에 따라서는 중학생(2.24)이 일반고(2.40)와 실업고(2.49) 청소년보다 학교에서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1%의 청소년이 '별이나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을 변호할 기회 등 적절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P<.05$), 교급($P<.001$), 지역($P<.001$), 생활수준($P<.05$)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38.5%)가 여자(31.7%)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실업고(51.3%) 청소년이 중학교(40.7%)와 일반고(26.2%) 청소년보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38.0%) 청소년이 대도시(34.0%)와 군읍면지역(28.2%)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36.2%) 청소년이 중위권(35.1%)과 하위권(34.1%)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표 V-1-15>참조).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3.12, P<.01$)에 따라서는 남자(2.77)가 여자(2.91)보다, 교급($F=11.83, P<.001$)에 따라서는 중학생(2.74)이 일반고(2.98)와 실업고(2.79) 청소년보다, 지역($F=7.11, P<.01$)에 따라서는 중소도시(2.73) 청소년이 대도시(2.90)와 군읍면지역(2.95) 청소년보다, 학교에서 벌이나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을 변호할 기회 등 적절한 절차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9%(2000년에 비해 3.1% 증가)의 청소년은 '학교에서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P<.01$), 교급($P<.001$), 생활수준($P<.001$), 학교성적($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45.3%)가 여자(36.4%)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51.1%)이 일반고(28.3%)와 실업고(35.4%)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47.8%) 청소년이 중위권(41.0%)과 하위권(32.4%)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중위권(48.2%) 청소년이 상위권(41.9%)과 하위권(33.6%)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표 V-1-15> 벌이나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남자	3.8	34.7	42.5	18.9	100.0
	여자	1.6	30.1	44.4	23.9	100.0
교급	중학교	3.7	37.0	40.5	18.7	100.0
	일반고	2.1	24.1	47.6	26.2	100.0
	실업고	1.4	36.9	42.9	18.9	100.0
지역	대도시	2.5	31.5	39.8	26.1	100.0
	중소도시	2.8	35.2	47.7	14.3	100.0
	군읍면	4.0	24.2	44.4	27.3	100.0
생활수준	상	5.2	31.0	39.0	24.8	100.0
	중	2.0	33.1	45.2	19.7	100.0
	하	3.4	31.3	39.7	25.7	100.0
전체		2.7	32.4	43.4	21.4	100.0

성별 $\chi^2 = 11.19^*$ 교급 $\chi^2 = 28.76^{***}$ 지역 $\chi^2 = 28.54^{***}$ 생활수준 $\chi^2 = 12.88^*$

③ 사회에서의 청소년 권리

● 생존권

81.6%의 청소년이 '건강과 의료보장을 받을 권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 < .05$), 생활수준($P < .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81.8%)가 여자(81.4%)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중위권(82.9%) 청소년이 상위권(81.4%)과 하위권(74.9%)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생활수준($F = 3.42$, $P < .05$)에 따라서는 상위권(1.99) 청소년이 중위권(2.04)과 하위권(2.16)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여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건강과 의료보장을 받을 권리를 존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5.2%의 청소년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받을 권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교급($P < .001$)에 따라서

는 중학생(78.9%)이 일반고(69.3%)와 실업고(76.7%) 청소년보다, 생활 수준($P<.01$)에 따라서는 중위권(77.6%) 청소년이 상위권(71.3%)과 하위권(67.4%) 청소년보다 더 많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V-1-16>참조).

<표 V-1-16>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받을 권리

구 분		매우보장	보장되는 편	보장되지 않음	전혀보장되지않음	전체
교급	중학교	18.5	60.4	15.1	6.0	100.0
	일반고	13.9	55.4	25.4	5.3	100.0
	실업고	9.6	67.1	21.0	2.3	100.0
생활수준	상	17.2	54.1	19.1	9.6	100.0
	중	15.2	62.4	18.1	4.3	100.0
	하	13.5	53.9	28.7	3.9	100.0
전체		15.3	59.9	19.7	5.1	100.0

교급 $\chi^2 = 30.57^{***}$ 생활수준 $\chi^2 = 22.21^{**}$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4.39$, $P<.05$)에 따라서는 중학생(2.09)이 일반고(2.22)와 실업고(2.16) 청소년보다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받을 권리를 존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호권

55.2%(2000년에 비해 14.0% 증가)의 청소년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나 환경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P<.01$), 교급($P<.001$), 지역($P<.01$), 생활수준($P<.01$), 학교성적($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58.0%)가 여자(25.3%)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62.2%)이 일반고(45.9%)와 실업고(55.0%) 청소년보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59.0%) 청소년이 대도시(53.2%)와 군읍면지역(49.0%)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중위권(56.4%) 청소년이 상위권(55.8%)과 하위

권(44.1%)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상위권(58.1%) 청소년이 중위권(56.5%)과 하위권(50.4%)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13.34$, $P<.001$)에 따라서는 중학생(2.35)이 일반고(2.59)와 실업고(2.45) 청소년보다, 생활수준($F=3.79$, $P<.05$)에 따라서는 중위권(2.43) 청소년이 상위권(2.44)과 하위권(2.59) 청소년보다, 학교성적($F=3.47$, $P<.05$)에 따라서는 상위권(2.40) 청소년이 중위권(2.43)과 하위권(2.54)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여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수록, 생활수준은 상·하위권보다는 중위권일수록,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나 환경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4.3%(2000년에 비해 3.7% 증가)의 청소년이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P<.01$), 교급($P<.001$), 지역($P<.01$), 생활수준($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58.7%)가 여자(49.9%)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62.4%)이 일반고(45.7%)와 실업고(50.0%) 청소년보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57.9%) 청소년이 대도시(52.8%)와 군읍면지역(46.0%)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중위권(54.2%) 청소년이 상위권(48.6%)과 하위권(49.7%)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표 V-1-17>참조).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2.98$, $P<.01$)에 따라서는 남자(2.39)가 여자(2.53)보다, 교급($F=13.82$, $P<.001$)에 따라서는 중학생(2.34)이 일반고(2.59)와 실업고(2.55) 청소년보다 학교에서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존중받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표 V-1-17>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구 분		매우보장	보장되는 편	보장되지 않음	전혀보장 되지않음	전체
성별	남자	12.4	46.3	30.8	10.5	100.0
	여자	7.8	42.1	39.2	10.9	100.0
교급	중학교	13.5	48.9	28.3	9.4	100.0
	일반고	7.1	38.6	42.5	11.7	100.0
	실업고	7.3	42.7	37.7	12.3	100.0
지역	대도시	12.2	40.6	37.8	9.5	100.0
	중소도시	8.4	49.5	30.6	11.4	100.0
	군읍면	6.0	40.0	39.0	15.0	100.0
생활수준	상	14.8	43.8	29.5	11.9	100.0
	중	8.9	45.3	36.6	9.2	100.0
	하	10.6	39.1	33.5	16.8	100.0
전체		10.1	44.2	34.9	10.7	100.0

성별 $\chi^2 = 13.81^{**}$ 교급 $\chi^2 = 35.16^{***}$ 지역 $\chi^2 = 18.61^{**}$ 생활수준 $\chi^2 = 17.71^{**}$

45.3%(2000년에 비해 3.0% 증가)의 청소년이 '부당한 무관심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P < .01$), 교급($P < .001$), 학교성적($P < .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49.0%)가 여자(41.4%)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53.0%)이 일반고(37.3%)와 실업고(40.5%)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중위권(49.2%) 청소년이 상위권(38.9%)과 하위권(42.8%)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54.6%(2000년에 비해 1.1% 증가)의 청소년이 '약물남용이나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P < .01$), 교급($P < .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57.8%)가 여자(51.2%)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60.1%)이 일반고(47.2%)와 실업고(54.5%)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55.0%(2000년에 비해 4.0% 증가)의 청소년이 '신체, 정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약품·시설·장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P<.05$), 교급($P<.001$), 생활수준($P<.001$), 학교성적($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58.5%)가 여자(51.6%)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65.2%)이 일반고(43.5%)와 실업고(50.9%)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61.8%) 청소년이 중위권(55.0%)과 하위권(46.9%)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중위권(56.9%) 청소년이 상위권(52.8%)과 하위권(53.3%)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표 V-1-18>참조).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생활수준($F=3.79$, $P<.05$)에 따라서는 상위권(2.36) 청소년이 중위권(2.46)과 하위권(2.58)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여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에서 '신체, 정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약품·시설·장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8> 유해물건·약품·시설·장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구분	매우보장	보장되는 편	보장되지 않음	전혀보장되지 않음	전체	
성별	남자	11.6	46.9	31.9	9.7	100.0
	여자	7.9	43.7	36.7	11.8	100.0
교급	중학교	13.8	51.4	25.9	8.9	100.0
	일반고	6.7	36.8	43.7	12.9	100.0
	실업고	5.0	45.9	37.7	11.4	100.0
생활수준	상	16.3	45.5	24.4	13.9	100.0
	중	8.6	46.4	35.6	9.4	100.0
	하	7.8	39.1	39.7	13.4	100.0
학교성적	상	9.0	43.8	31.5	15.7	100.0
	중	9.2	47.7	34.5	8.7	100.0
	하	11.5	41.8	36.1	10.6	100.0
전체	9.7	45.3	34.2	10.7	100.0	

성별 $\chi^2 = 8.49^*$ 교급 $\chi^2 = 59.02^{***}$ 생활수준 $\chi^2 = 25.14^{***}$ 학교성적 $\chi^2 = 12.91^*$

53.2%의 청소년은 '부당하게 시키는 일이나 유해한 노동,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01$), 교급($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58.2%)가 여자(48.1%)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59.1%)이 일반고(44.5%)과 실업고(54.5%)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50.9%의 청소년은 '남녀 성별차이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01$), 교급($P<.001$), 학교성적($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55.5%)가 여자(46.2%)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59.8%)이 일반고(42.3%)과 실업고(47.3%)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중위권(52.9%) 청소년이 상위권(48.7%)과 하위권(49.3%)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 발달권

71.7%(2000년에 비해 13.3% 증가)의 청소년은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교급($P<.001$), 생활수준($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75.7%)이 일반고(65.0%)와 실업고(73.9%)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중위권(73.4%) 청소년이 상위권(62.8%)과 하위권(61.8%)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7.43$, $P<.05$)에 따라서는 중학생(2.15)이 일반고(2.31)와 실업고(2.20) 청소년보다, 생활수준($F=4.54$, $P<.05$)에 따라서는 상위권(2.18) 청소년이 중위권(2.19)과 하위권(2.36)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여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을 존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9.0%(2000년에 비해 21.5% 증가)의 청소년은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P<.05$), 교급($P<.001$), 생활수준($P<.05$), 학교성적($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70.9%)가 여자(67.1%)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실업고(72.3%) 청소년이 중학교(71.8%)와 일반고(63.5%)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70.7%) 청소년이 중위권(70.5%)과 하위권(59.7%)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중위권(72.0%) 청소년이 상위권(68.4%)과 하위권(63.6%)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5.55$, $P<.01$)에 따라서는 실업고(2.20) 청소년이 중학교(2.22)와 일반고(2.36) 청소년보다, 생활수준($F=4.50$, $P<.05$)에 따라서는 상위권(2.24) 청소년과 중위권(2.24)이 하위권(2.42) 청소년보다, 학교성적($F=3.15$, $P<.05$)에 따라서는 중위권(2.23) 청소년이 상위권(2.26)과 하위권(2.35)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45.6%(2000년에 비해 5.7% 증가)의 청소년은 '아동·청소년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권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01$), 교급($P<.001$), 생활수준($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51.2%)가 여자(39.8%)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52.4%)이 일반고(34.3%)와 실업고(49.5%)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51.5%) 청소년이 중위권(45.3%)과 하위권(39.1%)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표 V-1-19>참조).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4.10$, $P<.001$)에 따라서는 남자(2.51)가 여자(2.69)보다, 교급($F=14.90$, $P<.001$)에 따라서는 중학생(2.49)이 일반고(2.75)와 실업고(2.57)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여 남자일수록,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수록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권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9> 아동·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될 권리

구 분		매우보장	보장되는 편	보장되지 않음	전혀보장 되지않음	전체
성별	남자	8.4	42.8	38.5	10.3	100.0
	여자	4.3	35.5	47.6	12.6	100.0
교급	중학교	8.7	43.7	37.8	9.9	100.0
	일반고	4.6	29.7	51.6	14.1	100.0
	실업고	3.6	45.9	40.0	10.5	100.0
생활수준	상	10.5	41.0	35.2	13.3	100.0
	중	5.3	40.0	44.1	10.6	100.0
	하	6.7	32.4	47.5	13.4	100.0
전체		6.4	39.2	43.0	11.4	100.0

성별 $\chi^2 = 20.01^{***}$ 교급 $\chi^2 = 40.89^{***}$ 생활수준 $\chi^2 = 15.36^*$

68.6%(2000년에 비해 7.0% 증가)의 청소년은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 < .01$), 교급($P < .001$), 생활수준($P < .01$), 학교성적($P < .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70.7%)가 여자(66.5%)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74.2%)이 일반고(60.9%)와 실업고(69.0%)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중위권(69.4%) 청소년이 상위권(64.7%)과 하위권(69.0%)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중위권(71.1%) 청소년이 상위권(67.3%)과 하위권(64.6%)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표 V-1-20>참조).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 = -2.02$, $P < .05$)에 따라서는 남자(2.21)가 여자(2.30)보다, 교급($F = 9.44$, $P < .001$)에 따라서는 중학생(2.16)이 일반고(2.36)와 실업고(2.29)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여 여자는 남자일수록,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수록 사회에서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를 존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0>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

구 분		매우보장	보장되는 편	보장되지 않음	전혀보장 되지않음	전체
성별	남자	15.4	55.3	22.2	7.1	100.0
	여자	9.2	57.3	28.3	5.2	100.0
교급	중학교	16.7	57.5	19.0	6.8	100.0
	일반고	8.7	52.2	33.3	5.7	100.0
	실업고	7.8	61.2	25.6	5.5	100.0
생활수준	상	19.5	45.2	27.1	8.1	100.0
	중	10.7	58.7	25.2	5.4	100.0
	하	11.9	57.1	23.2	7.9	100.0
학교성적	상	15.0	52.3	24.8	7.9	100.0
	중	9.8	61.3	23.8	5.1	100.0
	하	15.1	49.5	28.4	6.9	100.0
전체		12.3	56.3	25.2	6.2	100.0

성별 $\chi^2 = 16.35^{**}$ 교급 $\chi^2 = 40.57^{***}$ 생활수준 $\chi^2 = 19.69^{**}$ 학교성적 $\chi^2 = 18.02^{**}$

70.6%(2000년에 비해 10.6% 증가)의 청소년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 < .05$), 교급($P < .001$), 생활수준($P < .001$), 학교성적($P < .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72.9%)가 여자(68.4%)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75.7%)이 일반고(65.1%)와 실업고(68.0%)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중위권(71.0%) 청소년이 상위권(70.0%)과 하위권(69.7%)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중위권(72.2%) 청소년이 상위권(70.5%)과 하위권(67.9%)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 = -2.23$, $P < .05$)에 따라서는 남자(2.18)가 여자(2.27)보다, 교급($F = 7.16$, $P < .01$)에 따라서는 중학생(2.14)이 일반고(2.30)와 실업고(2.29)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여 여자보다는 남자일수록,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수록 사회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를 존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2.8%(2000년에 비해 12.2% 증가)의 청소년은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교급($P<.01$), 생활수준($P<.05$), 학교성적($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75.9%)이 일반고(69.4%)와 실업고(71.3%)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중위권(74.7%) 청소년이 상위권(73.3%)과 하위권(62.6%)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중위권(76.0%) 청소년이 상위권(73.0%)과 하위권(66.3%)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5.89$, $P<.01$)에 따라서는 중학생(2.11)이 일반고(2.24)와 실업고(2.26) 청소년보다, 지역($F=4.51$, $P<.05$)에 따라서는 중소도시(2.12)와 군읍면지역(2.12) 청소년이 대도시(2.24) 지역 청소년보다, 생활수준($F=4.23$, $P<.05$)에 따라서는 중위권(2.15) 청소년이 상위권(2.17)과 하위권(2.33)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여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수록, 상위권보다는 중·하위권 청소년일수록, 생활수준은 상·하위권보다는 중위권 청소년일수록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3.8%(2000년에 비해 7.1% 증가)의 청소년은 '휴식과 다양한 문화 생활을 위한 시설과 공간·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참여할 권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교급($P<.001$), 지역($P<.05$), 생활수준($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71.4%)이 일반고(52.5%)와 실업고(65.3%) 청소년보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지역(67.9%) 청소년이 대도시(62.0%)와 군읍면지역(53.6%)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중위권(65.5%) 청소년이 상위권(63.7%)과 하위권(55.3%)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표 V-1-21>참조).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2.16$, $P<.05$)에 따라서는 남자(2.29)

가 여자(2.38)보다, 교급(F=18.68, P<.01)에 따라서는 중학생(2.20)이 일반고(2.51)와 실업고(2.35) 청소년보다, 생활수준(F=3.42, P<.05)에 따라서는 상위권(2.30) 청소년이 중위권(2.31)과 하위권(2.48)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여 여자보다는 남자일수록,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휴식과 다양한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과 공간·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참여할 권리를 존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1> 휴식과 문화생활 참여 권리

구 분		매우보장	보장되는 편	보장되지 않음	전혀보장되지않음	전체
교급	중학교	16.0	55.4	21.1	7.5	100.0
	일반고	9.2	43.3	35.0	12.4	100.0
	실업고	6.8	58.6	27.3	7.3	100.0
지역	대도시	12.1	49.9	28.2	9.8	100.0
	중소도시	12.8	55.1	25.2	6.9	100.0
	군읍면	7.1	46.5	29.3	17.2	100.0
생활수준	상	18.7	45.0	24.4	12.0	100.0
	중	11.3	54.2	26.4	8.1	100.0
	하	7.8	47.5	33.5	11.2	100.0
전체		12.0	51.8	27.1	9.2	100.0

교급 $\chi^2 = 50.72^{***}$ 지역 $\chi^2 = 15.50^*$ 생활수준 $\chi^2 = 21.14^{**}$

79.4%(2000년에 비해 12.4% 증가)의 청소년은 '또래 친구들과 사귀고 모임에 참가할 권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지역(P<.01), 생활수준(P<.001), 학교성적(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83.7%) 청소년이 대도시(75.9%)와 군읍면지역(80.0%)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중위권(81.6%) 청소년이 상위권(76.7%)과 하위권(72.1%)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상위권(81.6%) 청소년이 중위권(81.2%)과 하위권(75.0%)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3.03$, $P<.05$)에 따라서는 중학생(1.98)이 일반고(2.09)와 실업고(2.05) 청소년보다, 지역($F=3.03$, $P<.05$)에 따라서는 군읍면지역(1.97) 청소년이 중소도시(1.98)와 대도시(2.09) 청소년보다 더 '그렇다'고 답하여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중소도시나 대도시의 청소년보다는 군읍면지역 청소년이 '또래 친구들과 사귀고 모임에 참가할 권리'를 더 존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4.5%(2000년에 비해 9.4% 증가)의 청소년은 '차별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01$), 교급($P<.001$), 생활수준($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72.4%)가 여자(56.4%)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70.4%)이 일반고(56.8%)와 실업고(64.4%)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중위권(65.9%) 청소년이 상위권(63.8%)과 하위권(58.6%)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5.66$, $P<.05$)에 따라서는 남자(2.18)가 여자(2.42)보다, 교급($F=13.44$, $P<.001$)에 따라서는 중학생(2.18)이 일반고(2.43)와 실업고(2.33) 청소년보다, 지역($F=3.75$, $P<.05$)에 따라서는 대도시(2.26) 청소년이 중소도시(2.31)와 군읍면지역(2.48) 청소년보다 더 '그렇다'고 답하여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수록, 대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1.2%(2000년에 비해 26.5% 증가)의 청소년은 '개인차와 연령에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1$), 교급($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74.9%)가 여자(67.4%)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77.0%)이 일반고(66.2%)와 실업고(65.9%)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2.86$, $P<.01$)에 따라서는 남자(2.18)가 여자(2.32)보다, 교급($F=12.08$, $P<.001$)에 따라서는 중학생(2.11)이

일반고(2.32)와 실업고(2.27) 청소년보다, 지역($F=3.75$, $P<.05$)에 따라서는 중소도시(2.16) 청소년이 대도시(2.22)와 군읍면지역(2.37) 청소년보다 더 '그렇다'고 답하여 여자보다는 남자일수록,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수록, 대도시나 군읍면지역보다는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개인차와 연령에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여권

59.9%(2000년에 비해 23.2% 증가)의 청소년은 '자신의 감정, 의사,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01$), 교급($P<.001$), 생활수준($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64.7%)가 여자(55.0%)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68.4%)이 일반고(49.2%)와 실업고(58.2%)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65.3%) 청소년이 중위권(60.2%)과 하위권(51.9%)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3.67$, $P<.001$)에 따라서는 남자(2.33)가 여자(2.47)보다, 교급($F=15.87$, $P<.001$)에 따라서는 중학생(2.29)이 일반고(2.53)와 실업고(2.43) 청소년보다, 생활수준($F=3.51$, $P<.05$)에 따라서는 상위권(2.30) 청소년이 중위권(2.40)과 하위권(2.48) 청소년보다 더 '그렇다'고 답하여 여자보다는 남자일수록,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감정, 의사,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존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6.7%(2000년에 비해 5.4% 증가)의 청소년은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교급($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생(70.6%)이 일반고(57.5%)와 실업고(66.3%)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16.22$, $P<.001$)에 따라 중학생(2.21)이 일반고(2.45)와 실업고(2.31) 청소년보다 더 '그렇다'고 답하여 고등

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사회에서 한사람의 인격체로 더 존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7.0%(2000년에 비해 15.8% 증가)의 청소년은 '자신의 사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P<.01$), 교급($P<.01$), 생활수준($P<.05$), 학교성적($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70.5%)가 여자(63.3%)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71.4%)이 일반고(60.0%)와 실업고(68.8%)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68.9%) 청소년이 중위권(68.4%)과 하위권(57.7%)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2.75$, $P<.01$)에 따라서는 남자(2.29)가 여자(2.33)보다, 교급($F=6.74$, $P<.001$)에 따라서는 중학생(2.20)이 일반고(2.37)와 실업고(2.24) 청소년보다, 생활수준($F=3.58$, $P<.05$)에 따라서는 상위권(2.22) 청소년이 중위권(2.25)과 하위권(2.40) 청소년보다, 학교성적($F=3.79$, $P<.05$)에 따라서는 중위권(2.20) 청소년이 상위권(2.31)과 하위권(2.35)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여 여자보다는 남자일수록,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성적은 상위권이나 하위권보다는 중위권일수록 '자신의 사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더 존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3%(2000년에 비해 1.8% 증가)의 청소년은 '적절한 절차(자신을 변호할 기회 등)에 따라 처벌받을 권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1$), 교급($P<.001$), 생활수준($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54.5%)가 여자(48.0%)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57.2%)이 일반고(41.0%)와 실업고(55.4%)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중위권(52.6%) 청소년이 상위권(51.9%)과 하위권(44.1%)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표 V-1-22>참조).

<표 V-1-22>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벌받을 권리

구 분		매우보장	보장되는 편	보장되지 않음	전혀보장 되지않음	전체
성별	남자	8.7	45.8	33.9	11.6	100.0
	여자	3.8	44.2	41.4	10.6	100.0
교급	중학교	7.8	49.4	31.9	10.9	100.0
	일반고	5.5	35.6	46.2	12.6	100.0
	실업고	3.6	51.8	35.9	8.6	100.0
생활수준	상	10.0	41.9	32.4	15.7	100.0
	중	5.3	47.3	37.5	9.9	100.0
	하	6.7	37.4	44.1	11.7	100.0
전체		6.3	45.0	37.6	11.1	100.0

성별 $\chi^2 = 17.51^{**}$ 교급 $\chi^2 = 34.44^{***}$ 생활수준 $\chi^2 = 18.47^{**}$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2.41$, $P<.05$)에 따라서는 남자(2.48)가 여자(2.59)보다, 교급($F=8.97$, $P<.001$)에 따라서는 중학생(2.46)이 일반고(2.66)와 실업고(2.50) 청소년보다, 지역($F=3.52$, $P<.05$)에 따라서 중소도시(2.66) 청소년이 대도시(2.66)와 군읍면지역(2.66)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여 여자보다는 남자일수록,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수록, 대도시나 군읍면지역보다는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적절한 절차(자신을 변호할 기회 등)에 따라 처벌받을 권리'를 더 존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1.1%(2000년에 비해 7.0% 증가)의 청소년은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P<.01$), 교급($P<.001$), 생활수준($P<.05$), 학교성적($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75.2%)가 여자(66.9%)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76.8%)이 일반고(63.2%)와 실업고(71.4%)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73.3%) 청소년이 중위권(71.0%)과 하위권(68.7%)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중위권(80.0%) 청소년이 상위권(73.6%)과 하위권(71.2%)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3.41$, $P<.01$)에 따라서는 남자(2.13)가 여자(2.27)보다, 교급($F=14.95$, $P<.001$)에 따라서는 중학생(2.09)이 일반고(2.34)와 실업고(2.20)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여 여자보다는 남자일수록,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수록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더 존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7.5%의 청소년은 ‘자신의 개인 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P<.01$), 교급($P<.001$), 생활수준($P<.01$), 학교성적($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58.2%)가 여자(56.7%)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64.6%)이 일반고(46.4%)와 실업고(60.4%)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중위권(58.1%) 청소년이 상위권(57.6%)과 하위권(53.7%)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중위권(59.3%) 청소년이 상위권(54.9%)과 하위권(56.1%)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19.02$, $P<.001$)에 따라서는 중학생(2.30)이 일반고(2.60)와 실업고(2.38)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여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자신의 개인 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존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4.3%의 청소년은 ‘청소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교급($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생(62.3%)이 일반고(44.3%)와 실업고(52.7%)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표 V-1-23>참조).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17.78$, $P<.001$)에 따라서는 중학생

(2.36)이 일반고(2.65)와 실업고(2.47) 청소년보다, 지역($F=3.51$, $P<.05$)에 따라서는 중소도시(2.44) 청소년이 대도시(2.49)와 군읍면지역(2.66)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여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수록, 대도시나 군읍면지역보다는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청소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더 존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1.8%의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존중받고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1$), 교급($P<.001$), 생활수준($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64.9%)가 여자(58.6%)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69.0%)이 일반고(53.1%)와 실업고(60.0%)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68.9%) 청소년이 중위권(61.8%)과 하위권(53.1%)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2.15$, $P<.05$)에 따라서는 남자(2.32)가 여자(2.41)보다, 교급($F=11.93$, $P<.001$)에 따라서는 중학생(2.26)이 일반고(2.48)와 실업고(2.41) 청소년보다, 생활수준($F=3.88$, $P<.05$)에 따라서는 상위권(2.26) 청소년이 중위권(2.37)과 하위권(2.47)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여 여자보다는 남자일수록,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존중받고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더 존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1.2%의 청소년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단체를 만들고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권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1$), 교급($P<.05$), 생활수준($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62.9%)가 여자(59.5%)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65.8%)이 일반고(57.7%)와 실업고(55.9%)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중위권(63.2%) 청소년이 상위권(62.9%)과 하위권(49.1%)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4.10, P<.05)에 따라서는 중학생(2.32)이 일반고(2.45)와 실업고(2.44)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여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수록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단체를 만들고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권리'를 더 존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3> 청소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구 분		매우보장	보장되는 편	보장되지 않음	전혀보장 되지않음	전체
교급	중학교	10.4	51.9	29.0	8.7	100.0
	일반고	4.4	39.9	42.2	13.6	100.0
	실업고	6.8	45.9	40.5	6.8	100.0
전체		7.7	46.6	35.6	10.1	100.0

교급 $\chi^2 = 42.42^{***}$

(2) 청소년권리에 대한 인식 및 현황

① 청소년권리에 대한 인지도

23.6%(2000년에 비해 7.8% 증가)의 청소년이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1), 교급(P<.001), 지역(P<.05), 생활수준(P<.001), 학교성적(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23.7%)가 여자(22.5%)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30.7%)이 일반고(21.5%)와 실업고(8.7%) 청소년보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27.3%) 청소년이 대도시(21.7%)와 군읍면지역(17.0%)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37.7%) 청소년이 중위권(21.3%)과 하위권(18.4%)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상위권(30.1%) 청소년이 중위권(23.8%)과 하위권(18.0%) 청소년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18.35, P<.001)에 따라서는 중학생(2.90)이 일반고(3.09)와 실업고(3.28) 청소년보다, 지역(F=4.72, P<.01)

에 따라서는 중소도시(2.95) 청소년이 대도시(3.08)와 군읍면지역(3.16) 청소년보다, 생활수준($F=19.24$, $P<.001$)에 따라서는 상위권(2.74) 청소년이 중위권(3.07)과 하위권(3.22) 청소년보다, 학교성적($F=9.14$, $P<.001$)에 따라서는 상위권(2.86) 청소년이 중위권(3.05)과 하위권(3.15) 청소년보다 더 '그렇다'고 답하여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수록, 대도시나 군읍면보다는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생활수준이나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3%(2000년 비해 4.1% 증가)의 청소년이 '유엔 아동·청소년권리협약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1$), 교급($P<.001$), 지역($P<.05$), 생활수준($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21.6%)가 여자(16.9%)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26.4%)이 일반고(11.7%)와 실업고(15.5%) 청소년보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지역(21.4%) 청소년이 대도시(17.6%)와 군읍면지역(19.0%)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27.3%) 청소년이 중위권(18.4%)과 하위권(14.5%)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표 V-1-24>참조).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2.29$, $P<.05$)에 따라서는 남자(3.07)가 여자(3.17)보다, 교급($F=20.32$, $P<.001$)에 따라서는 중학생(2.98)이 일반고(3.27)와 실업고(3.19) 청소년보다, 지역($F=5.32$, $P<.01$)에 따라서는 중소도시(3.03) 청소년이 대도시(3.17)와 군읍면지역(3.21) 청소년보다, 생활수준($F=12.47$, $P<.001$)에 따라서는 상위권(2.92) 청소년이 중위권(3.13)과 하위권(3.30) 청소년보다 더 '그렇다'고 답하여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수록, 대도시나 군읍면보다는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유엔 아동·청소년권리협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4> '유엔아동·청소년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남자	4.0	17.6	46.0	32.4	100.0
	여자	.8	16.1	48.6	34.5	100.0
교급	중학교	4.6	21.8	45.1	28.6	100.0
	일반고	5	11.2	49.2	39.1	100.0
	실업고	.5	15.0	49.5	35.0	100.0
지역	대도시	2.2	15.4	45.6	36.8	100.0
	중소도시	3.1	18.3	50.7	27.9	100.0
	군읍면	.0	19.0	41.0	40.0	100.0
생활수준	상	6.2	21.1	47.4	25.4	100.0
	중	1.5	16.9	48.9	32.7	100.0
	하	2.2	12.3	38.5	46.9	100.0
전체		2.4	16.9	47.3	33.4	100.0

성별 $\chi^2 = 14.13^{**}$ 교급 $\chi^2 = 48.89^{***}$ 지역 $\chi^2 = 15.90^*$ 생활수준 $\chi^2 = 37.09^{***}$

'청소년에게 의견표명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19.7%(2000년에 비해 4.5% 증가)의 청소년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 < .01$), 교급($P < .05$), 생활수준($P < .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24.1%)가 여자(15.3%)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22.5%)이 일반고(17.0%)와 실업고(17.8%)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24.4%) 청소년이 중위권(18.4%)과 하위권(20.1%)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 = -2.86$, $P < .01$)에 따라서는 남자(3.03)가 여자(3.16)보다, 지역($F = 5.07$, $P < .01$)에 따라서는 중소도시(3.03) 청소년이 대도시(3.12)와 군읍면지역(3.28) 청소년보다 '청소년에게 의견표명권이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해서는 22.1%(2000년에 비해 2.2% 감소)의 청소년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

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01$), 교급($P<.001$), 생활수준($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26.6%)가 여자(17.5%)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27.3%)이 일반고(18.5%)와 실업고(15.1%)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27.8%) 청소년이 중위권(19.8%)과 하위권(25.8%)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표 V-1-25>참조).

<표 V-1-25> 청소년들의 자발적 인권운동을 알고 있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남자	5.4	21.2	47.9	25.5	100.0
	여자	2.0	15.5	53.6	29.0	100.0
교급	중학교	5.8	21.5	47.3	25.4	100.0
	일반고	2.5	16.0	50.6	30.9	100.0
	실업고	.5	14.6	60.3	24.7	100.0
생활수준	상	7.7	20.1	44.5	27.8	100.0
	중	2.7	17.1	54.0	26.2	100.0
	하	3.9	21.9	42.1	32.0	100.0
전체		3.7	18.4	50.7	27.2	100.0

성별 $\chi^2 = 18.90^{***}$ 교급 $\chi^2 = 29.70^{***}$ 생활수준 $\chi^2 = 21.24^{***}$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3.68$, $P<.001$)에 따라서는 남자(2.93)가 여자(3.10)보다, 교급($F=7.74$, $P<.001$)에 따라서는 중학생(2.92)이 일반고(3.10)와 실업고(3.09) 청소년보다 더 '그렇다'고 답하여 남자일수록,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수록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내용등급제나 교육행정시스템(NEIS)의 내용'에 대해서 38.7%의 청소년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교급($P<.01$), 생활수준($P<.05$), 학교성적($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급에 따라서는 일반고(46.9%) 청소년이 중학생(35.2%)과 실업고

(31.9%)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40.0%) 청소년이 중위권(39.7%)과 하위권(31.8%)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상위권(49.0%) 청소년이 중위권(38.3%)과 하위권(30.9%)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7.71, P<.001$)에 따라서는 일반고(2.61) 청소년이 중학교(2.83)와 실업고(2.85) 청소년보다, 학교성적($F=10.03, P<.001$)에 따라서는 상위권(2.58) 청소년이 중위권(2.74)과 하위권(2.92)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여 중학생이나 실업고 청소년보다 일반고 청소년일수록,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인터넷내용등급제나 교육행정시스템(NEIS)의 내용'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위한 청소년자치기구인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의회활동'에 대해 20.6%의 청소년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P<.01$), 교급($P<.001$), 생활수준($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26.6%)가 남자(24.5%)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24.5%)이 일반고(19.1%)와 실업고(15.0%)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28.7%) 청소년이 중위권(18.4%)과 하위권(21.4%)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표 V-1-26> 참조).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3.75, P<.001$)에 따라서는 남자(2.95)가 여자(3.11)보다, 생활수준($F=3.44, P<.05$)에 따라서는 상위권(2.90) 청소년이 중위권(3.06)과 하위권(3.07)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여 남자일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위한 청소년자치기구인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의회활동'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6> 청소년 정책참여를 위한 자치기구에 대해 알고 있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남자	5.4	19.1	50.5	25.0	100.0
	여자	2.1	14.5	53.3	30.1	100.0
교급	중학교	5.1	19.4	44.3	31.2	100.0
	일반고	2.5	15.6	56.2	25.7	100.0
	실업고	2.7	12.3	63.6	21.4	100.0
생활수준	상	6.2	22.5	45.9	25.4	100.0
	중	3.0	15.4	54.5	27.1	100.0
	하	4.5	16.9	46.1	32.6	100.0
전체		3.8	16.8	51.9	27.5	100.0

성별 $\chi^2 = 16.33^{**}$ 교급 $\chi^2 = 31.02^{***}$ 생활수준 $\chi^2 = 15.61^*$

이처럼 청소년권리에 대한 인지도는 예년에 비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53.0%의 청소년은 '대중매체는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하하는 내용을 많이 보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교급($P < .05$), 생활수준($P < .05$), 학교성적($P < .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급에 따라서는 실업고(61.4%) 청소년이 중학교(49.2%)와 일반고(53.9%)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54.8%) 청소년이 중위권(52.4%)과 하위권(53.4%)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중위권(93.6%) 청소년이 상위권(52.6%)과 하위권(51.9%)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 = 4.94$, $P < .01$)에 따라서는 실업고(2.34) 청소년이 중학교(2.51)와 일반고(2.41) 청소년보다 더 많이 '대중매체가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하하는 내용을 많이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6.3%의 청소년이 '근로청소년들은 어려운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일한 만큼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1$), 교급($P<.001$), 생활수준($P<.05$), 학교성적($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80.8%)가 남자(72.0%)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실업고(79.1%) 청소년이 중학교(73.9%)와 일반고(78.2%)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하위권(79.8%) 청소년이 상위권(70.5%)과 중위권(76.9%)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상위권(78.2%)과 중위권(78.2%) 청소년이 하위권(71.1%)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표 V-1-27>참조).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3.54$, $P<.001$)에 따라서는 여자(1.96)가 남자(2.12)보다, 교급($F=6.38$, $P<.01$)에 따라서는 일반고(1.95) 청소년이 중학교(2.13)와 실업고(2.01) 청소년보다, 학교성적($F=3.43$, $P<.05$)에 따라서는 상위권(1.98) 청소년이 중위권(2.02)과 하위권(2.14)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여 여자일수록, 중학생과 실업고 청소년보다는 일반고 청소년일수록,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더 많이 '근로청소년들은 어려운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일한 만큼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5.0%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은 임금체불이나 초과노동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01$), 교급($P<.001$), 지역($P<.05$), 생활수준($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80.6%)가 남자(69.5%)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일반고(81.1%) 청소년이 중학교(69.1%)와 실업고(78.2%) 청소년보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지역(76.2%) 청소년이 대도시(74.2%)와 읍면지역(67.0%)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중위권(76.3%) 청소년이 상위권(70.9%)과 하위권(72.7%)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4.48$, $P<.001$)에 따라서는 남자(1.95)가 여자(2.16)보다, 교급($F=19.16$, $P<.001$)에 따라서는 일반고(1.90) 청

소년이 중학교(2.20)와 실업고(1.99) 청소년보다 더 많이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은 임금체불이나 초과노동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7> 근로청소년들은 어려운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남자	22.6	49.4	21.1	6.8	100.0
	여자	26.8	54.0	15.5	3.8	100.0
교급	중학교	21.1	52.8	18.4	7.7	100.0
	일반고	30.6	47.6	18.2	3.7	100.0
	실업고	22.3	56.8	18.6	2.3	100.0
생활수준	상	25.7	44.8	20.0	9.5	100.0
	중	24.4	52.5	18.9	4.1	100.0
	하	24.7	55.1	14.0	6.2	100.0
학교성적	상	32.0	46.2	13.5	8.3	100.0
	중	23.5	54.7	18.0	3.7	100.0
	하	21.1	50.0	22.9	6.0	100.0
전체		24.6	51.7	18.4	5.3	100.0

성별 $\chi^2 = 14.40^{**}$ 교급 $\chi^2 = 24.49^{***}$ 생활수준 $\chi^2 = 14.36^*$ 학교성적 $\chi^2 = 25.53^{***}$

② 청소년 인권의식 수준

69.6%(2000년에 비해 5.5% 감소)의 청소년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교급($P < .05$), 생활수준($P < .01$), 학교성적($P < .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급에 따라서는 실업고(76.4%) 청소년이 중학교(67.4%)와 일반고(69.1%)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중위권(70.6%) 청소년이 상위권(67.1%)과 하위권(68.0%)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중위권(71.9%) 청소년이 상위권(71.8%)과 하위권(63.3%)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표 V-1-28>참조).

<표 V-1-28> 청소년들은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교 급	중학교	17.0	50.4	24.7	7.8	100.0
	일반고	20.9	48.2	26.6	4.4	100.0
	실업고	18.2	58.2	17.7	5.9	100.0
생활수준	상	23.8	43.3	21.4	11.4	100.0
	중	17.5	53.1	24.6	4.8	100.0
	하	18.0	50.0	24.7	7.3	100.0
학교성적	상	24.4	47.4	18.4	9.8	100.0
	중	16.9	55.0	23.9	4.2	100.0
	하	17.2	46.1	29.2	7.5	100.0
전체		18.6	51.0	24.1	6.3	100.0

교급 $\chi^2 = 14.76^*$ 생활수준 $\chi^2 = 19.64^{**}$ 학교성적 $\chi^2 = 28.09^{***}$

56.5%(2000년에 비해 8.3% 감소)의 청소년은 '청소년들에게 의사 결정권과 참여권을 주어도 청소년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를 것이다'고 응답하였으며 생활수준($P < .01$), 학교성적($P < .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하위권(58.6%) 청소년이 상위권(57.1%)과 중위권(58.3%)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중위권(59.9%) 청소년이 상위권(50.0%)과 하위권(54.9%)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 = 3.88$, $P < .05$)에 따라서는 실업고(2.28) 청소년이 중학교(2.44)와 일반고(2.47) 청소년보다 더 '청소년들에게 의사결정권과 참여권을 주어도 청소년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8.4%(2000년에 비해 10.1% 감소)의 청소년은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인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P < .05$), 교급($P < .01$), 생활수준($P < .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62.3%)가 남자(54.5%)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일반고(62.2%) 청소년이 중학교(54.5%)와 실업고(61.0%) 청

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하위권(59.6%) 청소년이 상위권(55.2%)과 중위권(58.9%)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3.29$, $P<.01$)에 따라서 여자(2.31)가 남자(2.41)보다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인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인권의식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③ 청소년 권리향유정도와 권리주장성

78.3%(2000년에 비해 5.0% 감소)의 청소년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5$), 교급($P<.01$), 지역($P<.05$), 생활수준($P<.01$), 학교성적($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81.1%)가 남자(75.6%)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일반고(79.8%) 청소년이 중학교(77.1%)와 실업고(78.6%) 청소년보다, 지역에 따라서는 군읍면지역(84.0%) 청소년이 대도시(75.6%)와 중소도시(80.6%)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중위권(80.7%) 청소년이 상위권(74.3%)과 하위권(72.1%)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상위권(79.9%)과 중위권(79.9%) 청소년이 하위권(74.4%)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3.26$, $P<.01$)에 따라서는 여자(1.93)가 남자(2.08)보다, 교급($F=3.88$, $P<.05$)에 따라서는 실업고(2.28) 청소년이 중학교(2.44)와 일반고(2.47) 청소년보다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9%(2000년에 비해 4.3% 감소)의 청소년은 '청소년들은 아직 완전한 자립능력과 권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권에 권한이 가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변인별로는 교급($P<.01$)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 중학생(51.1%)이 일반고(39.4%)와 실업고(44.5%)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표 V-1-29>참조).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2.06$, $P<.05$)에 따라서는 남자(2.56)가 여자(2.66)보다, 교급($F=6.16$, $P<.01$)에 따라서는 중학생(2.52) 청소년이 일반고(2.71)와 일반고(2.64)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여 남자일수록,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수록 '청소년들은 아직 완전한 자립능력과 권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권에 권한이 가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9> 청소년들의 자유권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교급	중학교	10.9	40.2	34.5	14.4	100.0
	일반고	7.1	32.3	43.2	17.4	100.0
	실업고	5.9	38.6	40.9	14.5	100.0
전체		8.7	37.2	38.7	15.5	100.0

교급 $\chi^2 = 17.83^{**}$

41.8%의 청소년은 '학생이 잘못했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1$), 생활수준($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43.3%)가 여자(40.3%)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하위권(47.2%) 청소년이 상위권(37.6%)과 중위권(41.8%)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32.0%의 청소년은 '수업시간에 소지품, 두발, 복장 검사 등을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이다'고 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1$), 교급($P<.001$), 생활수준($P<.01$), 학교성적($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34.1%)가 여자(29.9%)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38.3%)이 일반고(22.2%)와 실업고(34.7%) 청소년보

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38.8%) 청소년이 중위권(30.5%)과 하위권(30.7%)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중위권(35.8%) 청소년이 상위권(31.5%)과 하위권(24.9%)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2.17$, $P<.05$)에 따라서는 남자(2.87)가 여자(2.98)보다, 교급($F=19.88$, $P<.001$)에 따라서는 중학생(2.80) 청소년이 일반고(3.13)와 일반고(2.85) 청소년보다, 학교성적($F=4.81$, $P<.01$)에 따라서는 중위권(2.86) 청소년이 상위권(2.94)과 하위권(3.04) 청소년보다 수업시간에 행해지는 검열에 대해 교육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2%(2000년에 비해 16.6% 감소)의 청소년은 '어떤 아이들은 왕따 당해 마땅하다'고 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1$), 교급($P<.05$), 지역($P<.01$), 생활수준($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26.1%)가 남자(24.3%)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일반고(27.2%) 청소년이 중학교(24.5%)와 실업고(23.1%) 청소년보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지역(26.6%) 청소년이 중소도시(24.0%)와 군읍면지역(23.0%)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하위권(30.2%) 청소년이 상위권(27.3%)과 중위권(23.6%)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표 V-1-30>참조).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지역($F=4.88$, $P<.01$)에 따라서는 대도시(3.02) 청소년이 중소도시(3.13)와 군읍면지역(3.29) 청소년보다 더 많이 '어떤 아이들은 왕따 당해 마땅하다'고 답하여 대도시지역의 청소년일수록 왕따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0> 어떤 아이들은 왕따 당해 마땅하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남자	83	160	35.7	40.0	100.0
	여자	3.7	22.4	34.6	39.2	100.0
교급	중학교	6.3	18.2	31.1	44.4	100.0
	일반고	6.4	20.8	38.9	33.9	100.0
	실업고	4.5	18.6	38.6	38.2	100.0
지역	대도시	6.8	19.8	38.5	35.0	100.0
	중소도시	5.7	18.3	33.7	42.3	100.0
	군읍면	3.0	20.0	22.0	55.0	100.0
생활수준	상	13.4	13.9	33.0	39.7	100.0
	중	4.3	19.3	36.5	39.8	100.0
	하	5.6	24.6	30.7	39.1	100.0
전체		6.0	19.2	35.2	39.6	100.0

성별 $\chi^2 = 17.34^{**}$ 교급 $\chi^2 = 14.28^*$ 지역 $\chi^2 = 20.07^{**}$ 생활수준 $\chi^2 = 30.47^{***}$

46.0%(2000년에 비해 1.7% 감소)의 청소년은 '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분명하게 시정을 요구한다'고 하였으며 성별($P < .01$), 생활수준($P < .01$), 학교성적($P < .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48.3%)가 여자(43.6%)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47.6%) 청소년이 중위권(45.8%)과 하위권(44.2%)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상위권(50.8%) 청소년이 중위권(47.5%)과 하위권(39.1%)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 = 3.56$, $P < .05$)에 따라서는 중학생(2.49) 청소년이 일반고(2.63)와 일반고(2.55) 청소년보다, 학교성적($F = 3.33$, $P < .05$)에 따라서는 중위권(2.52) 청소년이 상위권(2.48)과 하위권(2.64) 청소년보다 더 많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분명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4%(2000년에 비해 2.3% 감소)의 청소년은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고 응

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1$), 지역($P<.05$), 생활수준($P<.01$), 학교성적($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53.7%)가 여자(51.0%)보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56.1%) 청소년이 대도시(49.9%)와 군읍면지역(49.0%)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57.6%) 청소년이 중위권(52.7%)과 하위권(44.6%)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상위권(70.6%) 청소년이 중위권(52.3%)과 하위권(45.9%)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학교성적($F=4.02$, $P<.05$)에 따라서는 중위권(2.36) 청소년이 상위권(2.46)과 하위권(2.54) 청소년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인권교육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0.8%(2000년에 비해 2.3% 증가)에 불과하며, 변인별로는 교급($P<.01$)과 생활수준($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36.0%)이 일반고(24.8%)와 실업고(28.9%)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40.0%) 청소년이 중위권(29.9%)과 하위권(29.2%)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5.47$, $P<.01$)에 따라서는 중학생(2.79) 청소년이 일반고(2.97)와 일반고(2.92) 청소년보다, 생활수준($F=7.47$, $P<.01$)에 따라서는 상위권(2.67) 청소년이 중위권(2.92)과 하위권(2.93) 청소년보다 더 '그렇다'고 답하여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에 대해 설명한 홍보물(팸플릿)을 받아본 적이 있는' 청소년도 31.2%(2000년 비해 9.2% 증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P<.001$), 교급($P<.01$), 생활수준($P<.001$), 학교성적($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35.3%)가 여자(26.9%)

보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34.5%)이 일반고(29.0%)와 실업고(26.5%)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권(43.1%) 청소년이 중위권(30.0%)과 하위권(22.5%)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상위권(38.8%) 청소년이 중위권(28.8%)과 하위권(53.6%)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2.68$, $P<.01$)에 따라서는 남자(2.82)가 여자(2.95)보다, 생활수준($F=12.61$, $P<.001$)에 따라서는 상위권(2.66) 청소년이 중위권(2.90)과 하위권(3.08) 청소년보다, 학교성적($F=3.79$, $P<.05$)에 따라서는 중위권(2.76) 청소년이 상위권(2.90)과 하위권(2.94) 청소년보다 더 많이 '권리에 대해 설명한 홍보물(팸플렛)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3.5%로 나타났으며, 남자(17.3%)가 여자(9.6%)보다, 중학생(17.5%)이 일반고(9.2%)와 실업고(11.4%)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이 상위권(19.5%)인 청소년이 중위권(12.5%)과 하위권(11.8%) 청소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로는 학교(58.5%)가 가장 많았고, 가정(27.4%), 인권관련 기관·단체(9.1%) 순으로 나타났다(<표 V-1-31>참조).

<표 V-1-31>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

구 분		예	아니오	전체
성별	남자	17.3	82.7	100.0
	여자	9.6	90.4	100.0
교급	중학교	17.5	82.5	100.0
	일반고	9.2	90.8	100.0
	실업고	11.4	88.6	100.0
생활수준	상	19.5	80.5	100.0
	중	12.5	87.5	100.0
	하	11.8	88.2	100.0
전체		13.5	86.5	100.0

성별 $\chi^2 = 15.67^{***}$

교급 $\chi^2 = 15.91^{***}$

생활수준 $\chi^2 = 7.70^*$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65.0%에 그쳤으며, 생활수준이 상위권(81.0%)인 청소년이 중위권(62.7%)과 하위권(44.5%) 청소년에 비해 도움이 더 많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생활수준($F=5.48$, $P<.001$)에 따라서 상위권(1.84) 청소년이 중위권(2.41)과 하위권(2.72) 청소년보다 더 ‘그렇다’고 답하여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인권교육이, 도움이 더 많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청소년(86.5%)중 63.9%가 ‘기회가 된다면 인권교육을 받아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변인별로는 여자(69.4%)가 남자(58.1%)보다, 군읍면지역(74.4%) 청소년이 대도시(59.7%)와 중소도시(67.2%)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이 중위권(67.8%)인 청소년이 상위권(64.4%)과 하위권(56.2%) 청소년보다 ‘인권교육을 받아볼 의향이 더 많다’고 답하였다.

⑤ 선거권

현재 우리사회의 청소년은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이를 18세(29.7%)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았으며, 현재 그대로(20세)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1.9%를 차지하였다. 또한, 그 외에는 19세(18.2%), 17세(16.7%), 16세(13.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선거가능연령으로 적절한 나이를 18세 이하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59.9%, 19세 이하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78.1%이다.

지방의원 출마 피선거권 연령에 대해 청소년은 현재 25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34.9%)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0세 이상(28.2%), 23세 이상(21.4%), 18세 이상(15.6%) 순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 권리신장 방안

① 권리수준과 권리수준 취약원인

‘전반적인 우리사회의 청소년권리수준’에 대해 ‘잘 보장받고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10.7%에 불과했으며, ‘그저 그렇다’ 48.6%, ‘침해당하고 있다’ 40.8%로 나타났다. 변인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15.2%)가 여자(6.0%)보다, 교급별로는 중학생(15.0%)이 일반고(6.6%)와 실업고(5.0%) 청소년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11.8%) 청소년이 중소도시(10.0%)와 군읍면지역(6.1%) 청소년보다, 생활수준별로는 상위권(18.2%) 청소년이 중위권(9.5%)과 하위권(7.4%) 청소년보다 더 ‘잘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4.90$, $P<.001$)에 따라서는 남자(3.29)가 여자(3.54)보다, 교급($F=15.53$, $P<.001$)별로는 중학생(2.89)이 일반고(3.04)와 실업고(3.01) 청소년보다, 지역($F=3.23$, $P<.05$)별로는 중소도시(3.34) 청소년이 대도시(3.46)와 군읍면지역(3.52) 청소년보다, 생활수준($F=7.88$, $P<.001$)별로는 상위권(3.26) 청소년이 중위권(3.41)과 하위권(3.63) 청소년보다 더 ‘잘 보장받고 있다’고 답하여 남자일수록,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수록, 대도시나 군읍면지역보다는 중소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보장받고 있는 권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수준이 취약한 원인으로는 첫째로 ‘입시제도 및 과도한 학습과제’(32.4%)를, 두번째로 ‘청소년을 미숙하고 통제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인중심적 사고’(26.9%)를 꼽았다. 이 결과는 ‘청소년을 미숙하고 통제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인중심적 사고(40.6%)’를 가장 큰 취약원인으로 지적했던 2000년 조사결과와 차이를 보인다(입시제도는 22.8%). 그 다음으로 지적되는 원인으로는 ‘청소년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부족’(17.0%), ‘청소년들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부족’(15.7%), ‘청소년의 권리행사와 능력을 향상시키

는 교육 및 프로그램 부족'(6.4%) 순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성별($P<.01$), 교급($P<.01$), 생활수준($P<.01$), 학교성적($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권리수준의 취약원인을 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의 경우, '입시제도 및 과도한 학습과제'(30.2%), '성인중심적 사고'(23.8%), '의식과 능력부족'(18.8%), '법·제도적 장치부족'(18.6%), '교육 및 프로그램 부족'(6.9%)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입시제도 및 과도한 학습과제'(34.6%), '성인중심적 사고'(30.1%), '법·제도적 장치부족'(15.4%), '의식과 능력부족'(12.5%), '교육 및 프로그램 부족'(6.0%) 순으로 나타났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교 및 일반고 청소년의 경우, 실업고 청소년과는 달리 '입시제도 및 과도한 학습과제'를 가장 큰 취약원인으로 지적하였으며 중학생(29.9%)보다는 일반고(38.1%) 청소년이 더 그렇다고 답하였다. 또한, 실업고 청소년은 '성인중심적 사고'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및 일반고 청소년은 취약원인을 '의식과 능력부족'보다 '법·제도적 장치부족'이라고 더 많이 응답한 반면 실업고 청소년은 '의식과 능력부족'을 '법·제도적 장치부족'보다 더 많이 취약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도 가장 큰 취약원인을 '입시제도 및 과도한 학습과제'로 지적하였으며, 중위권(34.1%) 청소년이 상위권(29.9%)과 하위권(26.9%) 청소년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또한, 하위권 청소년은 상·중위권 청소년에 비해 '의식과 능력부족'이 '법·제도적 장치부족'보다 더 취약원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교육 및 프로그램부족'의 경우 하위권(10.3%) 청소년은 상·중위권(5%정도) 청소년에 비해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상위권의 청소년은 중·하위권 청소년과 달리 '입시제도 및 과도한 학습과제'보다는 '성인중심적 사고'를 가장 큰 취약원인으로 지적하였으며, '법·제도적 장치부족'보다 '의식과 능력부

족'을 더 많이 취약원인으로 응답하였다(<표 V-1-32>참조).

<표 V-1-32> 청소년의 권리수준 열악원인

구 분		의식과 능력부족	법 제도적 장치부족	입시제도 과다한 학습과제	성인 중심적 사고	교육 및 프로그램 부족	기타	전체
성별	남자	18.8	18.6	30.2	23.8	6.9	1.8	100.0
	여자	12.5	15.4	34.6	30.1	6.0	1.3	100.0
교급	중학생	17.9	18.8	29.9	25.1	6.5	1.8	100.0
	일반고	11.8	15.5	38.1	28.0	5.2	1.4	100.0
	실업고	17.5	15.2	27.6	29.5	8.8	1.4	100.0
생활 수준	상	16.2	18.1	29.9	28.9	5.4	1.5	100.0
	중	14.5	17.6	34.1	26.7	5.9	1.2	100.0
	하	21.1	12.6	26.9	25.7	10.3	3.4	100.0
학교 성적	상	17.0	14.4	26.1	33.3	6.4	2.7	100.0
	중	15.4	17.6	34.9	25.2	6.3	6	100.0
	하	15.2	18.0	32.5	25.1	6.8	2.5	100.0
전체		15.7	17.0	32.4	26.9	6.4	1.6	100.0

성별 $\chi^2 = 16.30^{**}$ 교급 $\chi^2 = 19.91^*$ 생활수준 $\chi^2 = 18.98^*$ 학교성적 $\chi^2 = 18.57^*$

② 청소년 권리신장 방안

• 가정에서의 청소년 권리신장 방안

가정에서의 효과적인 청소년권리신장 방안을 '매우 효과있음'은 1 점, '효과있음'은 2점, '효과없음'은 3점, '전혀효과없음'은 4점으로 응답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효과성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청소년 권리신장 방안으로 우선순위 3가지로 살펴보면, '폭력적 언행조심'(1.95), '부모자녀간 대화시간 많이 갖기' (1.96), '청소년인권에 관한 부모교육실시'(2.09)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권리신장 방안으로는 '가정, 지역사회 및 학교의 연대 강화'(2.20), '체벌금

지'(2.27) 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청소년 권리신장 방안을 변인별로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우선 성별에 따라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조심'(t=3.26, P<.01)과 '가정에서의 체벌금지'(t=3.25, P<.01)방안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두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효과있다'고 하였다. 교급에 따라서는 '청소년 권리보호를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대강화'(F=3.57, P<.05), '청소년 인권에 관한 부모교육 실시'(F=5.19, P<.01) 방안은 일반고 청소년이 중학생과 실업고 청소년보다 더 '효과있다'고 하였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조심'(F=3.30, P<.05)과 '체벌금지'(F=3.44, P<.05) 방안은 상위권 청소년이 중위권과 하위권 청소년보다 더 '효과있다'고 하였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가정에서 부모 자녀간 대화시간을 많이 갖는 것'(F=4.01, P<.05), '청소년 권리보호를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대강화'(F=9.74, P<.01), '청소년 인권에 관한 부모교육 실시'(F=5.19, P<.01) 방안은 상위권 청소년이 중위권과 하위권 청소년보다 더 '효과있다'고 하였으며,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조심'(F=9.93, P<.001)은 중위권 청소년이 상위권과 하위권 청소년보다 더 '효과있다'고 하였다.

- 학교에서의 청소년 권리신장 방안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청소년권리신장 방안을 '매우 효과있음'은 1 점, '효과있음'은 2점, '효과없음'은 3점, '전혀효과없음'은 4점으로 응답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효과성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청소년 권리신장 방안으로 우선순위 3가지를 살펴보면, '교사의 언행주의'(2.10), '인성교육확대(2.11)', '교칙 및 규칙 제·개정'에 청소년 참여보장'(2.12) 순으로 효과성이 클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의 권리신장 방안으로는 '성적위주의 학생평가 탈피'(2.13), '민주적 사고방식 교육(2.14)', '청소년대상 인권교육 실시'(2.16), '입시위주의 교육탈피'(2.17), '자치활동 강화'(2.23), '교사와 학생의 대화시간 갖기'

(2.23), ‘교사, 청소년지도자 대상 청소년인권교육 실시’(2.23), ‘학생운영과정에서의 학생의견 수렴 및 반영’(2.24), ‘학급당 인원 감축’(2.38), ‘체벌금지’(2.40) 순으로 답하였다.

학교에서의 청소년 권리신장 방안을 변인별로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우선 성별에 따라 ‘교칙 및 규칙 제·개정’에 청소년 참여보장’ 방안이 유의미한 차이($t=2.02, P<.05$)를 보였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더 ‘효과있다’고 하였다. 교급에 따라서 ‘학급당 인권감축’($F=4.47, P<.05$), ‘학업성적 위주의 학생평가 탈피’($F=4.64, P<.05$), ‘민주적 사고방식 교육’($F=4.40, P<.05$), ‘인성교육의 확대’($F=3.92, P<.05$) 방안은 일반고 청소년이 중학생과 실업고 청소년보다 더 ‘효과있다’고 하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청소년의 자치활동 강화’($F=3.88, P<.05$), ‘체벌금지’($F=5.97, P<.01$) 방안은 중소도시 지역의 청소년이 대도시나 군읍면지역의 청소년보다 더 ‘효과있다’고 하였으며, ‘교사와 학생의 대화시간 갖기’($F=4.54, P<.05$)방안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지역보다는 군읍면지역의 청소년이 더 ‘효과있다’고 하였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학교운영과정에서의 학생의견 수렴 및 반영’($F=3.77, P<.05$) 방안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효과있다’고 하였으며, ‘체벌금지’($F=3.59, P<.05$), ‘교칙 및 규칙 제·개정’에 청소년 참여보장’($F=9.08, P<.001$), ‘학업성적 위주의 학생평가 탈피’($F=5.45, P<.01$), ‘입시위주의 교육탈피’($F=4.50, P<.05$), ‘청소년대상 인권교육실시’($F=4.14, P<.05$) 방안은 중위권 청소년이 상위권과 하위권 청소년보다 더 ‘효과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학교운영과정에서의 학생의견 수렴 및 반영’($F=11.24, P<.001$), ‘청소년의 자치활동 강화’($F=3.61, P<.05$), ‘학급당 인원감축’($F=6.86, P<.01$), ‘교칙 및 규칙 제·개정’에 청소년 참여보장’($F=9.15, P<.001$), ‘학업성적 위주의 학생평가 탈피’($F=6.13, P<.01$), ‘입시위주의 교육탈피’($F=6.93, P<.01$), ‘청소년대상 인권교육실시’($F=5.77, P<.01$), ‘민주적 사고방식 교육’($F=5.61, P<.01$), ‘인성교육

의 확대'(F=4.08, P<.05), '학생에 대한 교사의 언행주의'(F=8.17, P<.001), '교사와 학생의 대화시간 갖기'(F=4.11, P<.05), '교사, 청소년 지도자 대상 청소년인권교육 실시'(F=5.14, P<.01) 방안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더 '효과있다'고 하였다.

• 사회에서의 청소년 권리신장 방안

사회에서의 효과적인 청소년권리신장 방안을 '매우 효과있음'은 1 점, '효과있음'은 2점, '효과없음'은 3점, '전혀효과없음'은 4점으로 응답 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효과성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청소년 권리신장 방안으로 우선순위 3가지를 살펴보면, '청소년권리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한 법제정'(2.08), '청소년들의 자기 권리 주장능력 강화'(2.10),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청소년조직(인터넷상의 커뮤니티 등)'(2.15) 순으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 외의 권리신장 방안으로 '청소년인권센터나 청소년상담실 충실히 운영'(2.17), '청소년권리 주체의 문화프로그램과 행사개최'(2.27), '권리와 관련한 비디오나 TV프로그램 등 영상물 제작 및 보급'(2.34), '홍보책자 발간 및 배포'(2.44), '10대 청소년에게 선거권 부여'(2.45) 라고 답하였다.

사회에서의 청소년 권리신장 방안을 변인별로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우선 교급에 따라 '청소년들의 자기 권리주장능력 강화'(F=3.15, P<.05), '청소년인권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청소년 조직구성'(F=3.66, P<.05)방안은 일반고 청소년이 중학생과 실업고 청소년보다 더 '효과 있다'고 하였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가정, 학교, 관계기관 등에 배포'(F=3.58, P<.05),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비디오나 TV프로그램 등 영상물 제작 및 보급'(F=3.78, P<.05), '청소년권리 주체의 문화프로그램과 행사개최'(F=5.97, P<.01), '청소년인권센터나 청소년상담실을 충실히 운영'(F=3.48, P<.05), '청소년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한 법 제정'(F=5.58, P<.01)방안은 중위권 청소년이 상위권

과 하위권 청소년보다 더 '효과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청소년들의 자기 권리 주장능력 강화'(F=8.07, P<.001)와 '청소년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한 법 제정'(F=9.90, P<.001) 방안은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더 '효과있다'고 하였으며,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비디오나 TV프로그램 등 영상물 제작 및 보급'(F=4.21, P<.05), '청소년권리 주제의 문화프로그램과 행사개최'(F=3.42, P<.05), '청소년인권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청소년 조직구성'(F=3.92, P<.05), '청소년인권센터나 청소년상담실을 충실히 운영'(F=5.01, P<.01) 방안은 중위권 청소년이 상위권과 하위권 청소년보다 더 '효과있다'고 답하였다.

• 청소년 권리신장 과제

청소년권리 신장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5가지를 제시하고 고르게 한 결과, '어리다고 청소년을 무시하는 어른들 인식의 변화'가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 관련 법·제도의 개선'(16.2%), '청소년 권리에 대해 교육·상담할 수 있는 기구(청소년인권센터 등) 운영'(10.4%), '학생자치활동 등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 확대'(9.9%), '청소년 및 청소년 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6.6%) 순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교급(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어른들의 인식변화'를 1순위로, '법제도의 개선'을 2순위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의 과제로 중학교 및 일반고 청소년은 실업고 청소년에 비해 '학생자치활동 등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확대'보다 '청소년권리에 대해 교육상담할 수 있는 기구'를 더 우선으로 꼽았다(<표 V-1-33>참조).

<표 V-1-33> 권리신장 과제

구 분		어른들 인식의 변화	청소년 관련 법제도의 개선	교육· 상담기구	인권 교육 실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확대	기타	전체
교급	중학교	56.1	15.2	11.4	7.3	8.8	1.2	100.0
	일반고	53.0	17.4	10.6	6.7	9.4	3.0	100.0
	실업고	57.8	16.5	7.3	4.6	13.8	.0	100.0
전체		55.3	16.2	10.4	6.6	9.9	1.6	100.0

교급 $\chi^2 = 18.98^*$

(4)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인식

①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단체나 기관의 필요성

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단체나 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에 87.8%의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P < .001$)로는 여자(89.1%)가 남자(54.5%)보다, 생활수준별($P < .01$)로는 중위권(89.9%) 청소년이 상위권(81.9%)과 하위권(84.7%) 청소년보다, 학교성적별($P < .05$)로는 중위권(89.9%)인 청소년이 상위권(81.9%)과 하위권(84.7%) 청소년보다 더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 = 3.56$, $P < .001$)에 따라 여자(1.09)가 남자(1.16)보다, 생활수준($F = 5.57$, $P < .01$)에 따라 중위권(1.10) 청소년이 상위권(1.18)과 하위권(1.15) 청소년보다 더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청소년인권센터의 인지도 및 필요성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18.0%에 불과했으며, 중학생(20.9%)이 일반고(17.7%)와 실업고(10.9%) 청소년보다, 생활수준이 상위권(24.8%)인 청소년이 중위권(17.5%)과 하위권(12.9%) 청소년보다, 학교성적이 상위권(24.7%)인 청소년이 중위권

(17.7%)과 하위권(13.3%)인 청소년보다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교급(F=5.48, 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교(1.79) 청소년이 일반고(1.82)와 실업고(1.89) 청소년보다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해 더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인권교육, 인권상담 및 해결 등 청소년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수행할 기관으로 ‘청소년인권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8.7%의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로는 여자(68.9%)가 남자(66.4%)보다, 생활수준별로는 상위권(72.7%)인 청소년이 중위권(67.3%)과 하위권(64.2%)인 청소년보다, 학교성적별로는 상위권(77.6%)인 청소년이 중위권(67.7%)과 하위권(59.6%)인 청소년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표 V-1-34>참조).

<표 V-1-34> ‘청소년인권센터’ 설립의 필요성

구 분		반드시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체
성별	남자	28.6	37.8	29.0	13	34	100.0
	여자	35.6	33.3	28.4	.8	1.8	100.0
생활 수준	상	33.0	39.7	20.1	1.0	6.2	100.0
	중	32.0	35.3	29.8	12	1.6	100.0
	하	31.8	32.4	32.4	6	28	100.0
학교 성적	상	37.5	40.1	16.9	11	45	100.0
	중	33.0	34.7	30.1	8	14	100.0
	하	26.0	33.6	35.5	15	34	100.0
전체		32.1	35.6	28.7	11	26	100.0

성별 $\chi^2 = 9.98^*$

생활수준 $\chi^2 = 22.28^{**}$

학교성적 $\chi^2 = 36.25^{***}$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2.47$, $P<.05$)에 따라 여자(2.00)가 남자(2.13)보다, 학교성적($F=7.33$, $P<.01$)에 따라 상위권(1.95) 청소년이 중위권(2.03)과 하위권(2.23) 청소년보다, 청소년인권교육, 인권상담 및 해결 등 청소년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수행할 기관으로 '청소년인권센터'의 설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청소년인권센터 활동과 참여경험

청소년인권센터가 설립될 경우 수행해야 할 활동 10가지를 제시하고 필요성정도를 선택하게 하였다. '매우 필요'는 1점, '필요하다'는 2점, '필요하지 않다'는 3점, '전혀필요하지 않다'는 4점으로 응답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필요성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가장 필요한 활동은 '청소년지도사와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1.00)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인권 침해사태에 대한 상담과 대처활동'(1.71), '청소년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시'(1.93)와 '청소년인권신장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1.93), '인권동아리활동의 지원(또래인권지킴이 등)'(1.96), '인권침해사태 모니터활동'(1.98), '인권에 대한 조사연구와 토론회 개최'(2.02)와 '인권정보자료실의 운영'(2.02), '인권교육지침서 개발, 보급'(2.02), '국내외 유관 단체와의 협력사업'(74.5%)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인권센터'에서 상담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3%에 불과했으며 학교성적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 후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1.4%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인권상담의 전문성의 취약성'(57.1%)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그 외에 '인권침해사태와 관련된 현실적인 방안제시의 어려움'(14.3%), '인권상담 후 만족할 만한 구제조치를 받지 못함'(14.3%)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인권 관련 캠프나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0%에 불과했으며 중학생(4.9%)이 고등학생(1.4%)보다, 학교성적이 하위권

(5.1%)인 청소년이 상위권(2.6%)과 중위권(2.2%) 청소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55.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2명당 1명만이 만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만족의 이유를 살펴보면, ‘캠프나 프로그램의 일회성’(28.6%)이 가장 큰 이유이며, ‘캠프나 프로그램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다양하지 못함’(14.3%), ‘비자율성’(14.3%), ‘전문지도자 부족’(14.3%)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3) 조사결과 요약

(1) 청소년 권리에 대한 인식

10.7%의 청소년이 ‘권리를 잘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10명당 1명 정도만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년권리의 취약원인으로 ‘입시제도 및 과도한 학습과제’(32.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번째는, ‘청소년을 미숙하고 통제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인중심적 사고’(26.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학교·사회에서의 청소년 권리신장방안으로는 먼저, 가정에서의 ‘폭력적 언행조심’, ‘부모자녀간 대화시간 많이 갖기’, ‘청소년인권 관련 부모교육실시’, 학교에서의 ‘교사의 언행주의’, ‘인성교육확대’, ‘교칙 및 규칙 제·개정에 청소년참여보장’, 사회에서의 ‘청소년권리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한 법 제정’, ‘청소년들의 자기 권리 주장능력 강화’,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청소년조직(인터넷상의 커뮤니티 등)’ 등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권리 신장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어리다고 청소년을 무시하는 어른들 인식의 변화’가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 관련 법·제도의 개선(16.2%)’, ‘청소년 권리에 대해 교육·상담할 수 있는 기구(청소년인권센터 등) 운영

(10.4%)', '학생자치활동 등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 확대(9.9%)', '청소년 및 청소년 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6.6%)' 순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인식

87.8%의 청소년이 권리보장을 위한 단체나 기관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에,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18.0%에 불과하다. 또한, 청소년인권교육, 인권상담 및 해결 등 청소년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수행할 기관으로 '청소년인권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8.7%의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인권센터' 설립시 가장 필요한 활동으로는 '청소년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대처' 활동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사와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2위)', '청소년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시(3위)' 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인권센터'에서 상담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3%에 그치는 상황이며, 만족을 느끼는 청소년은 41.4%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인권상담의 전문성의 취약성'(57.1%)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그 외에 인권침해사례와 관련된 현실적인 방안제시의 어려움(14.3%), 인권상담 후 만족할 만한 구제조치를 받지 못함(14.3%)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인권 관련 캠프나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3.0%에 불과했으며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55.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2명당 1명 정도만이 만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만족의 이유를 살펴보면, '캠프나 프로그램의 일회성'(28.6%)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캠프나 프로그램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다양하지 못함'(14.3%), '비자율성'(14.3%), '전문지도자 부족'(14.3%) 등이 지적되었다.

2. 청소년지도자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조사대상자의 표집은 전국 청소년단체, 수련시설, 상담실,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인권센터를 대상으로, 청소년단체 251곳, 수련시설 403곳, 상담실 35곳, 자원봉사센터 51곳, 청소년인권센터 9곳의 청소년지도자 총 698명을 표집하였으며, 설문조사기간은 2003년 6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조사방법은 안내공문, 설문지, 반송용 봉투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우편과 팩스를 통해 응답지를 회수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최종 회수된 설문지 240부중에서 신뢰성이 낮다고 판정된 자료 8부를 제외한 23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1) 조사도구의 구성

조사도구는 청소년권리에 대한 인식,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인식, 그리고 청소년지도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결과 분석에 활용된 주요변인은 성(남·여), 연령(20대·30대·40대·50대·60대), 경력(3년 미만·3년~5년 미만·5년~10년 미만~10년 이상), 근무기관(청소년단체·생활권 수련시설·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 상담기관·청소년자원봉사센터·사회(인권)단체), 지역(대도시·중소도시·군읍면)의 다섯 가지이다.

조사내용은 총 68문항으로 청소년권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은 관심과 인지도 7문항, 권리능력과 수준 6문항, 권리실태와 과제 3문항, 선거연령 2문항으로 총 18문항이다.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은 인권교육경험 8문항, 필요성 3문항, 주요활동 10문항, 인권센터 설립·운영방안 10문항으로 총 31문항이다.

청소년지도자의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은 생존·복지권 4문항, 차별받지 않을 권리 2문항, 올바른 업무를 수행할 권리 4문항, 시민으로서의 권리 4문항으로 총 14문항이다.

청소년지도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은 권리 수준 1문항, 권리신장과제 1문항, 참여 및 후원정도 3문항으로 총 5문항이다. 설문문항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심정보 외(2002). 교사의 인권 의식 조사연구'에서 활용한 문항을 일부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각 문항은 Likert식 4점척도로 평가하여 '매우 필요'는 1점, '필요하다'는 2점, '필요하지 않다'는 3점, '전혀필요하지 않다'는 4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긍정적인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점수가 낮을수록 권리가 잘 보장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V-2-1> 설문영역 및 내용

설문영역	설문문항	
청소년 권리에 대한 인식	관심과 인지도	
	1-1	나는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알고 있다
	1-2	나는 「유엔 아동·청소년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3	나는 청소년들에게 「의견표명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1-6	나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인권운동을 알고 있다
	*1-11	대중매체는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하하는 내용을 많이 보도하고 있다
	1-12	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13	나는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위한 청소년자치기구인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의회' 활동에 대해 알고 있다
	권리 능력과 수준	
	1-4	청소년들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1-5	청소년들은 아직 완전한 자립능력과 권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권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1-7	학생이 잘못했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
	*1-8	수업시간에 소지품, 두발, 복장 검사 등을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1-9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1-10	청소년들에게 의사결정권과 참여권을 주어도 청소년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를 것이다	
권리 실태와 과제		
2	전반적으로 우리사회의 청소년 권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3	청소년의 권리수준이 열악하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청소년권리 신장을 위해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제외하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 연령		
5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지방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몇 세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인권 센터에 대한 인식		
인권 교육 경험		
7	인권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7-1	인권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7-2	인권교육이나 연수를 지금까지 몇 회 정도 받아보셨습니까	
7-3	인권교육이나 연수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7-4	기회가 된다면 인권교육이나 연수에 참여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8	인권 관련 캠프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까	
8-1	인권 관련 캠프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소감은 어떻습니까	
8-2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문영역	설 문 문 항
청소년 인권 센터 에 대한 인식	필요성 9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단체나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1 '청소년인권센터' 설립 필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요활동 12-1 청소년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상담 및 대처
	12-2 인권에 대한 조사연구와 토론회 개최
	12-3 인권침해사례 모니터활동
	12-4 인권동아리활동의 지원(또래인권지킴이 등)
	12-5 청소년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시
	12-6 청소년지도자와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12-7 인권교육지침서 개발·보급
	12-8 인권정보자료실의 운영
	12-9 국내외 유관 단체와의 협력사업
	12-10 청소년인권신장을 위한 홍보·캠페인
	인권센터설립·운영방안 13 각 유형별 인권센터는 그 필요성이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14 '중앙 청소년인권센터'가 설립된다면, 그 센터의 지도·감독 기능은 어느 부처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15 '시·도 청소년인권센터'가 설립된다면, 독립적 기관 혹은 다른 기관의 부설기관 중에서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15-1 '시·도 청소년인권센터'를 어떤 기관의 부설기관으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16 '시·군·구 청소년인권센터'가 설립된다면, 독립적 기관 혹은 다른 기관의 부설기관 중에서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16-1 '시·군·구 청소년인권센터'를 어떤 기관의 부설기관으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17 '청소년인권센터'의 직원으로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8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해 보신 적이(또는 현재 운영 중) 있습니까	
18-1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9 청소년인권센터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영역		설문문항	
청소년지도자의 권리 중요도	생존·복지권	20-7 건강·의료에의 권리	
		20-8 적절한 휴식과 문화예술활동의 권리	
		20-9 임금수준 현실화 등 기본적 생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20-10 다양한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보장받을 권리	
	비차별권	20-1 남여 성별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20-2 직급이나 서열, 연령 등의 이유, 또는 기타 다른 기준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올바른업무수행권리	20-4 청소년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해 상급자(또는 상급기관)로부터 나의 고유한 교육관을 지킬 수 있는 권리	
		20-5 내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업무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공문, 출장, 설비나 교구 채택료, 각종 계약 건 등)	
		20-6 청소년행정당국이나 조직 관리자에게 청소년지도활동에 필요한 지원(기자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0-11 청소년지도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보장받을 권리	
	시민권	20-3 예결산, 인사, 조직, 행정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나의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20-12 근무기관(단체) 내에서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권리	
		20-13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동아리모임, 단체가입 및 활동 등)	
		20-14 근무기관(단체) 외의 사회문제를 포함한 공공의 쟁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청소년지도자의 권리	권리수준	21 현재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지도자의 권리 수준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여및후원	과제	22 청소년지도자의 권리신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3 시민운동단체나 인권운동 관련단체(엠네스티 등)에 회원으로 참여하시거나 후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24 청소년 자치활동(동아리활동, 청소년자치위원회, 수련시설청소년운영위원회 등)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거나 후원하시는 편입니까	
		25 기회가 된다면 청소년 인권관련 프로그램(인권침해사례 모니터링동·인권동아리활동·인권캠프 등)을 운영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2)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 분포는 남자 58.6%, 여자 41.4%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 27.2%, 30대 40.9%, 40대 22.8%, 50대 6.9%, 60대 2.2%이며, 경력별로는 3년 미만 12.9%, 3년 이상 5년 미만 11.6%, 5년 이상 10년 미만 15.1%, 10년 이상 10.3%, 무응답 50.0%이다. 자격증소지별로는 청소년지도사 1급 50.2%, 청소년지도사 2급 32.2%, 청소년지도사 3급 7.2%, 청소년상담사 1급 1.4%, 청소년상담사 2급 1.8%, 청소년상담사 3급 0.7%, 사회복지사 1급 12.0%, 사회복지사 2급 2.9%, 교사 14.1%, 기타 13.8%이다

근무지형태별로는 청소년단체 27.6%, 생활권수련시설 24.6%, 자연권수련시설 29.7%, 청소년상담기관 6.0%, 청소년자원봉사센터 7.8%, 사회(인권)단체 4.3%, 행정구역별로는 대도시 35.3%, 중소도시 41.8%, 군읍면 22.8%이다.

<표 V-2-2>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	분	사례수(명)	백분율(%)
성별	남	136	58.6
	여	96	41.4
연령	20대	63	27.2
	30대	95	40.9
	40대	53	22.8
	50대	16	6.9
	60대	5	2.2
경력	3년미만	30	12.9
	3년 이상 5년 미만	27	11.6
	5년 이상 10년 미만	35	15.1
	10년 이상	24	10.3
	무응답	116	50.0

구	분	사례수(명)	백분율(%)
자격증소지	청소년지도사1급	138	50.2
	청소년지도사2급	89	32.2
	청소년지도사3급	20	7.2
	청소년상담사1급	4	1.4
	청소년상담사2급	5	1.8
	청소년상담사3급	2	0.7
	사회복지사1급	33	12.0
	사회복지사2급	8	2.9
	교사	39	14.1
	기타	38	13.8
근무기관	청소년단체	64	27.6
	생활권수련시설	57	24.6
	자연권수련시설	69	29.7
	청소년상담기관	14	6.0
	청소년자원봉사센터	18	7.8
	사회(인권)단체	10	4.3
지역	대도시	82	35.3
	중소도시	97	41.8
	군읍면	53	22.8
행정구역	서울	25	10.8
	부산	10	4.3
	강원	8	3.4
	인천	6	2.6
	광주	11	4.7
	대전	13	5.6
	울산	2	0.9
	경기	35	15.1
	강원	15	6.5
	충북	20	8.6
	충남	11	4.7
	전남	9	3.9
	전북	30	12.9
	경북	8	3.4
	경남	18	7.8
	제주	11	4.7
전		232	100.0

2) 조사결과

(1) 청소년권리에 대한 인식

① 청소년권리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권리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인권 관련 정보에 대한 인식정도를 물어보았다.

54.9%의 응답자들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경력($P<.01$), 근무기관($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경력에 따라서는 10년이상(87.5%)의 청소년지도자가 3년 미만(50.0%), 3년이상 5년미만(37.0%), 5년이상 10년미만(54.3%)의 청소년지도자보다 더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사회(인권)단체(90.0%)의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단체(61.0%), 생활권수련시설(52.7%), 자연권수련시설(50.0%), 청소년상담기관(35.7%), 청소년자원봉사센터(55.6%)의 청소년지도자보다 더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근무기관($F=2.46$, $P<.05$)에 따라서는 사회(인권)단체(1.80)의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단체(2.48), 생활권수련시설(2.47), 자연권수련시설(2.57), 청소년상담기관(2.71), 청소년자원봉사센터(2.44)의 청소년지도자보다 더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엔아동·청소년권리협약’의 경우 45.8%의 청소년지도자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연령($P<.01$), 근무기관($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40대(68.0%)의 청소년지도자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20대는 41.3%, 30대는 34.0%, 50대는 56.3%, 60대는 60.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사회(인권)단체(70.0%)의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단체(54.0%), 생활권수련시설(52.7%), 자연권수련시설(32.8%),

청소년상담기관(21.4%), 청소년자원봉사센터(50.0%)의 청소년지도자보다 더 '그렇다'고 답하였다(<표 V-2-3>참조).

<표 V-2-3> '유엔아동·청소년권리협약'의 내용을 어느정도 안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연령	20대	11.1	30.2	47.6	11.1	100.0
	30대	0	34.0	53.2	12.8	100.0
	40대	4.0	64.0	24.0	8.0	100.0
	50대	.0	56.3	37.5	6.3	100.0
	60대	.0	60.0	40.0	.0	100.0
근무 기관	청소년단체	3.2	50.8	31.7	14.3	100.0
	생활권수련시설	5.3	47.4	42.1	5.3	100.0
	자연권수련시설	1.5	31.3	55.2	11.9	100.0
	청소년상담기관	.0	21.4	50.0	28.6	100.0
	청소년자원봉사센터	.0	50.0	50.0	.0	100.0
	사회(인권)단체	30.0	40.0	30.0	.0	100.0
전체		3.9	41.9	43.7	10.5	100.0

연령 $\chi^2 = 31.56^{**}$

근무기관 $\chi^2 = 39.63^{**}$

'청소년에게 의견표명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는 73.8%로 나타났으며 변인들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연령($F=3.97$, $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40대(2.00) 청소년지도자가 20대(2.03), 30대(2.34), 50대(2.56), 60대(2.20) 청소년지도자보다 청소년의 의견표명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청소년인권운동을 알고 있는 경우는 60.2%였으며, 지역($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대도시(61.0%)의 청소년지도자가 중소도시(48.9%)와 군읍면지역(35.3%)의 청소년지도자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청소년자치기구인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의회’ 활동을 알고 있는 경우는 72.4%로 나타났으며 변인별로는 근무기관($P<.05$), 지역($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생활권수련시설(84.2%)의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단체(71.9%), 자연권수련시설(68.1%), 청소년상담기관(50.0%), 청소년자원봉사센터(72.2%), 사회(인권)단체(72.0%)의 청소년지도자보다 더 많이 안다고 답하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84.1%)의 청소년지도자가 중소도시(71.1%)와 군읍면지역(56.6%)의 청소년지도자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표 V-2-4>참조).

<표 V-2-4>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위한 자치기구에 대해 알고 있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근무 기관	청소년단체	32	50.8	31.7	14.3	100.0
	생활권수련시설	5.3	47.4	42.1	5.3	100.0
	자연권수련시설	1.5	31.3	55.2	11.9	100.0
	청소년상담기관	.0	21.4	50.0	28.6	100.0
	청소년자원봉사센터	.0	50.0	50.0	.0	100.0
	사회(인권)단체	30.0	40.0	30.0	.0	100.0
지역	대도시	28.0	56.1	13.4	2.4	100.0
	중소도시	14.4	56.7	26.8	2.1	100.0
	군읍면	11.3	45.3	39.6	3.8	100.0
전체		18.5	53.9	25.0	2.6	100.0

근무기관 $\chi^2 = 25.55^*$

지역 $\chi^2 = 16.78^*$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근무기관($F=2.83$, $P<.05$)에 따라서는 생활권수련시설(1.84)의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단체(2.11), 자연권수련시설(2.30), 청소년상담기관(2.29), 청소년자원봉사센터(2.17), 사회(인권)단체(2.10)의 청소년지도자보다 청소년자치기구인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의회’ 활동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8.1%의 청소년지도자는 ‘대중매체가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하하는 내용을 많이 보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들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85.8%로 나타났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5$), 근무기관($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91.1%)가 여자(77.8%)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사회(인권)단체(100.0%)의 청소년지도자는 모두가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청소년단체(86.0%), 생활권수련시설(93.0%), 자연권수련시설(87.0%), 청소년상담기관(64.3%), 청소년자원봉사센터(66.7%)의 청소년지도자가 ‘안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근무기관($F=9.54$, $P<.001$)에 따라서는 사회(인권)단체(1.60)의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단체(1.95), 생활권수련시설(1.89), 자연권수련시설(2.01), 청소년상담기관(2.14), 청소년자원봉사센터(2.33)의 청소년지도자보다 인터넷내용등급제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가 무엇인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청소년의 권리능력과 수준

96.1%의 응답자가 ‘청소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청소년은 아직 완전한 자립능력과 권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권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45.4%로 나타났으며 변인들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청소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청소년은 아직 완전한 자립능력과 권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권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근무기관($F=2.88$, $P<.05$)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자연권수련시설(2.35)의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단체(2.69), 생활권수련시설(2.77), 청소년상담기관(2.64), 청소년자원봉사센터(2.50), 사회

(인권)단체(3.00)의 청소년지도자보다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지도자는 성별($P<.05$), 연령($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100.0%)가 남자(94.0%)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20대(98.4%)의 청소년지도자가 가장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30대는 95.7%, 40대는 98.1%, 50대는 93.7%, 60대는 80.0%가 ‘그렇다’고 하였다(<표 V-2-5>참조).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연령($F=5.05$, $P<.01$)에 따라서는 20대(1.37)의 청소년지도자가 30대(1.59), 40대(1.65), 50대(1.94), 60대(2.00)보다 ‘청소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5> 청소년들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성별	남자	44.0	50.0	6.0	100.0
	여자	50.5	49.5	.0	100.0
연령	20대	65.1	33.3	1.6	100.0
	30대	47.3	48.4	4.3	100.0
	40대	36.5	61.5	1.9	100.0
	50대	12.5	81.3	6.3	100.0
	60대	20.0	60.0	20.0	100.0
전체		46.5	49.6	3.9	100.0

성별 $\chi^2 = 6.18^*$

연령 $\chi^2 = 24.11^{**}$

58.7%의 청소년지도자는 ‘학생이 잘못했을 때 교육적 차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01$), 경력($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68.6%)가 여자(44.3%)보다, 경력에 따라서는 10년이상(70.8%)의 청소년지도자가 3년미만(20.7%), 3년이상 5년미만(63.0%), 5년이상 10년미

만(65.7%)의 청소년지도자보다 더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4.18$, $P<.001$)에 따라서는 남자(2.24)가 여자(2.64)보다, 경력($F=7.05$, $P<.001$)에 따라서는 10년이상(2.25)의 청소년지도자가 5년이상 10년미만(2.31), 3년이상 5년미만(2.37), 3년미만(2.97)의 청소년지도자보다 더 '그렇다'고 답하여 여자보다는 남자일수록, 경력이 더 많을수록 교육적 차원에서의 차별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8%의 청소년지도자는 '수업시간에 소지품, 두발, 복장 검사 등을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한 일이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P<.01$), 근무기관($P<.01$), 지역($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54.4%)가 여자(31.6%)보다,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자연권수련시설(60.9%)의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단체(40.7%), 생활권수련시설(35.1%), 청소년상담기관(35.7%), 청소년자원봉사센터(44.4%), 사회(인권)단체(30.0%)의 청소년지도자보다, 지역에 따라서는 군읍면(54.7%)지역의 청소년지도자가 대도시(42.6%), 중소도시(41.3%)지역의 청소년지도자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3.20$, $P<.01$)에 따라서는 남자(2.47)가 여자(2.80)보다, 근무기관($F=3.87$, $P<.01$)에 따라서는 자연권수련시설(2.35)의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단체(2.69), 생활권수련시설(2.77), 청소년상담기관(2.64), 청소년자원봉사센터(2.50), 사회(인권)단체(3.00)의 청소년지도자보다 '수업시간에 소지품, 두발, 복장 검사 등을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한 일이다'고 답하여 검열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이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74.9%로 높게 나타났으나, '청소년들에게 의사결정권과 참여권을 주어도 청소년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를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72.5%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두 문항은 변인들간에 유의미

한 차이는 없었다.

③ 청소년 권리실태와 과제

우리사회의 청소년권리 실태에 대해 4.7%가 '잘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36.2%, '침해당하고 있다' 59.0%로 나타나, 지도자들은 청소년의 권리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인별로는 성별($P < .05$), 근무기관($P < .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3.3%)가 남자(5.1%)보다,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사회(인권)단체(0.0%)의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단체(6.3%), 생활권수련시설(3.5%), 자연권수련시설(4.3%), 청소년상담기관(7.1%), 청소년자원봉사센터(5.6%)의 청소년지도자보다 청소년권리수준이 더 열악하다고 답하였으며, 사회(인권)단체의 청소년지도자는 응답자 모두가 청소년권리실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 = -2.48, P < .05$)에 따라서는 여자(4.04)가 남자(3.74)보다,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사회(인권)단체(4.70)의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단체(3.80), 생활권수련시설(4.14), 자연권수련시설(3.58), 청소년상담기관(4.00), 청소년자원봉사센터(3.72)의 청소년지도자보다 청소년권리수준이 더 열악하다고 답하였다.

청소년의 권리수준이 열악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청소년을 미숙하고 통제 받아야할 존재로 보는 성인 중심적 사고'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입시제도 및 과도한 학습과제(28.0%)', '청소년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 부족(14.7%)', '청소년의 권리행사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프로그램 부족(12.1%)',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 부족(8.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가 그 가장 큰 원인 두 가지를 '청소년을 미숙하고 통제 받아야할 존재로

보는 성인 중심적 사고'와 '입시제도 및 과도한 학습과제'로 꼽는 반면 60대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 부족' 과 '청소년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표 V-2-6>참조).

<표 V-2-6> 청소년의 열악한 권리수준의 원인

구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부족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부족	입시제도 및 과도한 학습과제	성인 중심적 사고	교육 및 프로그램 부족	기타	전체	
연령	20대	12.7	9.5	22.2	39.7	12.7	3.2	100.0
	30대	6.4	22.3	26.6	33.0	11.7	.0	100.0
	40대	5.7	7.5	37.7	34.0	15.1	.0	100.0
	50대	6.3	6.3	31.3	56.3	.0	.0	100.0
	60대	40.0	40.0	20.0	.0	.0	.0	100.0
전체	8.6	14.7	28.0	35.8	12.1	.9	100.0	

연령 $\chi^2 = 33.06^*$

청소년 권리신장 과제로는 '학생자치활동 등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 확대'가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어리다고 청소년을 무시하는 성인 인식의 변화' 22.4%, '청소년 권리에 대해 교육·상담할 수 있는 기구(청소년인권센터 등) 운영' 18.5%, '청소년 관련 법·제도의 개선' 15.5%, '청소년 및 청소년 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9.5% 순으로 나타났다. 변인들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④ 선거 연령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나이로는 '만 18세'가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 19세'가 27.6%, '현재 그대로(20세)'가 16.4%로 나타났다. 변인들간에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20대, 30대는 '만18세'를 40대는 '만18세'와 '만19세'를 50대와 60대는 '만19세'를 가장 적절한 나이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의회의원(시의원, 구의원 등)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에 대해서는 '현재 그대로(25세)'가 61.5%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모든 연령이 '현재 그대로(25세)'의 나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20대와 50대는 다음으로 적절한 연령을 '23세이상'이라고 답한 반면 30대와 40대는 '20세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60대는 모든 청소년지도자가 '현재그대로(25세)'의 나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2)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인식

① 인권교육 경험

인권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지도자는 24.6%에 불과했으며, 근무기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P<.05$)를 보였다. 사회(인권)단체는 70.0%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외의 기관은 인권교육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청소년단체(25.0%), 생활권수련시설(26.3%), 자연권수련시설(20.3%), 청소년상담기관(7.1%), 청소년자원봉사센터(22.2%)로 나타나 인권교육의 보편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2-7>참조).

인권교육이나 연수 경험은 주로 '시민단체나 인권관련단체(56.1%)'와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33.3%)'을 통해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권교육이나 연수 경험은 1~2회가 63.2%로 가장 많았고 3~4회는 26.3%, 5회 이상의 경우는 10.5%였다. 인권교육·연수를 받아본 결과, 85.9%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매우 33.3%, 조금 52.6%), 12.3%는 '그저 그렇다'고 평가하였는데, 성별($t=2.12$, $P<.05$)에 따라서

여자(1.57)가 남자(1.97)보다 더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교육향후 인권교육이나 연수 참여의지는 96.0%로 높게 나타났다.

<표 V-2-7> 인권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본 경험

구 분		예	아니오	전체
근무 기관	청소년단체	25.0	75.0	100.0
	생활권수련시설	26.3	73.7	100.0
	자연권수련시설	20.3	79.7	100.0
	청소년상담기관	7.1	92.9	100.0
	청소년자원봉사센터	22.2	77.8	100.0
	사회(인권)단체	70.0	30.0	100.0
전체		24.6	75.4	100.0

근무기관 $\chi^2 = 14.27^*$

인권관련 캠프나 프로그램을 운영해본 응답자는 14.7%였으며, 운영해본 결과 67.6%만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매우 23.5%, 조금 44.1%).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그 이유는 '프로그램이 체계적·전문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다(60.0%)'가 가장 컸으며, '관련자료나 정보 부족'과 '전문지도자 부족' 문제도 각각 20.0%의 응답률을 보였다. 운영 경험에 있어서는 근무기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인권)단체(40.0%)의 청소년지도자가 가장 많은 운영경험률을 보였다. 그 외에 청소년단체는 18.8%, 생활권수련시설은 21.1%, 자연권수련시설은 7.2%,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5.6%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청소년상담기관은 인권관련 캠프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

② 청소년인권센터의 필요성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단체나 기관이 필요하다는 데에 94.3%가 동의하였다.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는 54.1%로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88.8%가 청소년인권교육, 인권상담 및 해결 등 청소년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수행할 기관으로 '청소년인권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9%는 '잘 모르겠다', 4.3%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③ 청소년인권센터의 주요 활동

청소년인권센터가 설립될 경우 수행해야할 활동 10가지를 제시하고 필요성정도를 물어보았다. '매우 필요'는 1점, '필요하다'는 2점, '필요하지 않다'는 3점, '전혀필요하지 않다'는 4점으로 응답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필요성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가장 필요한 활동은 '인권 침해사태에 대한 상담과 대처활동'(1.42)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인권교육지침서 개발, 보급'(1.45), '청소년지도사와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1.53), '청소년인권신장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1.65), '인권동아리활동의 지원(또래인권지킴이 등)'(1.67), '인권조사 연구와 토론회 개최'(1.71), '인권침해사태 모니터활동' (1.72), '청소년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시'(1.78), '인권정보자료실의 운영'(1.83), '국내외 유관 단체와의 협력사업'(1.8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든 활동과 사업에 대해 평균 2점이하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인권 침해사태에 대한 상담과 대처', 그리고 '인권교육지침서 개발, 보급' 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었다.

④ 인권센터 설립·운영 방안

● 청소년인권센터의 유형

청소년인권센터의 설립 유형과 관련하여 중앙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 인권센터 필요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중앙단위 청소년인권센터 92.3%, 시·도 청소년인권센터 93.7%, 시·군·구 청소년인권센터 92%의 응답률로, 중앙단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별 인권센터의 필요성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 담당부처

‘중앙 청소년인권센터’의 지도감독 기능을 담당할 부처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8.3%, ‘문화관광부’ 15.7%, ‘교육부’ 6.1%, ‘법무부’ 5.2%, ‘보건복지부’ 4.3% 순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근무기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회(인권)단체기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담당부처로 가장 많이 꼽는 반면 그 외의 기관들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가장 적절한 담당부처라고 답하였다(<표 V-2-8>참조).

<표 V-2-8> 청소년인권센터의 지도감독기능 담당부처

구 분		문화 관광부	국가인권 위원회	청소년보호 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보건 복지부	전체
근무 기관	청소년 단체	95	317	41.3	48	95	32	1000
	생활권 수련시설	263	21.1	368	88	53	18	1000
	자연권 수련시설	74	32.4	397	88	29	88	1000
	청소년 상담기관	357	143	429	.0	71	.0	1000
	청소년자원봉 사센터	27.8	11.1	61.1	.0	.0	.0	1000
	사회(인권) 단체	.0	700	200	.0	.0	10.0	1000
전체		15.7	28.3	40.4	6.1	5.2	4.3	100.0

근무기관 $\chi^2 = 44.45^*$

• 지역단위 청소년인권센터 설립 형태

시·도 청소년인권센터와 시·군·구 청소년인권센터 모두 기존 기관의 부설형태보다는 ‘독립적 기관으로 설립되는 것이 좋다(시·도 65.3%, 시·군·구 58.5%)’는 의견이 더 많게 나타났는데, 시·군·구 청소년인권센터는 두 경우에 대한 의견 차이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의견은 근무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해, 독립 기관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자원봉사센터 근무자가, 기존 기관의 부설형태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청소년단체, 청소년상담기관, 사회(인권)단체 근무자가 더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표 V-2-9>참조).

<표 V-2-9> 시·도 청소년인권센터 설립형태

구 분		독립기관	기존기관의 부설기관	전체
근무 기관	청소년단체	45.9	54.1	100.0
	생활권수련시설	74.5	25.5	100.0
	자연권수련시설	80.6	19.4	100.0
	청소년상담기관	46.2	53.8	100.0
	청소년자원봉사센터	70.6	29.4	100.0
	사회(인권)단체	44.4	55.6	100.0
지역	대도시	61.5	38.5	100.0
	중소도시	60.0	40.0	100.0
	군읍면	81.6	18.4	100.0
전체		65.3	34.7	100.0

근무기관 $\chi^2 = 23.17^{***}$

지역 $\chi^2 = 7.44^*$

• 시·도 청소년인권센터 운영기관

시·도 청소년인권센터를 기존기관의 부설형태로 둔다면 어느 기관의 부설기관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물어본 결과, 시·도 청소년상담실(33.7%), 시·도 단위 청소년단체(27.0%), '인권관련 사회단체(15.1%)', '시·도 청소년수련시설(11.6%)'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근무기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청소년단체(41.7%)와 인권사회단체(50.0%) 근무자의 경우 '시·도 청소년단체 부설'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청소년상담기관(75.0%)과 자원봉사센터(33.3%) 근무자는 '시·도 청소년상담실 부설'이, 자연권 수련

시설 근무자(35.7%)는 ‘인권관련 사회단체 부설’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생활권 수련시설 근무자는 ‘시·도 청소년 수련시설’과 ‘시·도 청소년상담실’ 모두 각각 37.5%의 응답률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표 V-2-10>참조).

<표 V-2-10> 부설기관으로서의 시·도 청소년인권센터 형태

구 분	시·도 청소년 수련 시설	시·도 청소년 상담실	시·도 청소년 자원봉 사센터	시·도 단위 청소년 단체	시·도 아동학 대예방 센터	인권 관련 사회 단체	기타	전체	
근 무 기 관	청소년 단체	5.6	27.8	2.8	41.7	2.8	16.7	2.8	100.0
	생활권 수련시설	37.5	37.5	.0	25.0	.0	.0	0	100.0
	자연권 수련시설	14.3	21.4	14.3	7.1	7.1	35.7	.0	100.0
	청소년 상담기관	0	75.0	.0	.0	12.5	12.5	.0	100.0
	청소년자원 봉사센터	.0	33.3	16.7	16.7	.0	16.7	16.7	100.0
	사회(인권) 단체	.0	33.3	16.7	50.0	.0	0	0	100.0
전체	11.6	33.7	5.8	27.9	3.5	15.1	2.3	100.0	

근무기관 $\chi^2 = 49.36^*$

• 시·군·구 청소년인권센터 운영기관

시·군·구 청소년인권센터를 기존기관의 부설형태로 둔다면 적절한 형태에 대해, 시·군·구 청소년상담실(42.6%), 시·군·구 청소년단체(25.5%), 인권관련 사회단체(14.9%), 시·군·구 청소년수련시설(13.8%) 순으로, 시·도 센터의 경우와 유사한 응답을 보였다.

이는 응답자의 근무기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청소년단체(42.1%)와 인권사회단체(50.0%) 근무자의 경우 ‘시·군·구 청소년단체 부설’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생활권 수련시설

(52.4%)와 청소년상담기관(77.8%), 그리고 자원봉사센터(57.1%) 근무자는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부설'이, 자연권 수련시설 근무자(38.5%)는 '인권관련 사회단체 부설'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 청소년인권센터 직원 자격

7가지 전문인력을 제시하고 청소년인권센터 직원으로서의 적합성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분야 전문가' 96.9%, '청소년상담사' 95.1%, '청소년지도사' 94.2%, '인권운동가' 77.2%, '사회복지사' 68.8%, '법학 전공자' 61.1%, '사회과 교사' 42.5% 순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 청소년인권센터 활성화 방안

응답자 중에서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4.1%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업진행을 위한 인력 및 재정 부족(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의 참여 부족(16.7%)'과 '학교 및 관련기관의 이해와 협력 부족(16.7%)',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문제(8.3%)'와 '인권관련 프로그램과 자료 부족(8.3%)'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인권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인권프로그램의 개발·보급(30.9%)'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육성업무 관계자의 청소년인권 의식 함양(30.4%)', '인권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17.8%)', '안정적인 인력과 재정지원(16.1%)',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연대활동 강화(4.3%)' 순으로 나타났다. 변이별 차이로는 대도시지역 지도자(28.0%)의 경우, 중소도시(9.3%)와 군읍면(9.8%) 지역의 지도자에 비해 '안정적인 인력과 재정지원'(필요성) 크게 인식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3) 청소년지도자의 권리

① 청소년지도자의 권리 중요도

• 생존·복지권

‘건강·의료에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은 95.2%('매우 중요'와 '중요' 포함)를 보였으며 연령($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20대(98.4%), 30대(94.6%), 40대(98.1%)는 90%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50대는 81.3%가 '중요하다'고 답하였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6.3%나 되었다. 또한, 60대는 모든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2.44$, $P<.05$)에 따라서는 여자(1.54)가 남자(1.73)보다 '건강·의료에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 현실화 등 기본적 생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의 중요성은 97.8%로 나타났으며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66.7%가 응답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변인별로는 연령($P<.01$), 경력($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20대, 50대, 60대는 모든 응답자가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포함)고 답하였으며 30대는 3.2%, 40대는 1.9%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70%이상을 보였으며, 40대와 50대는 45%이상을 보인 반면에 60대는 20%에 그쳤다. 경력에 따라서는 3년이상 5년미만(96.3%)을 제외하고는 모든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률은 3년이상 5년미만(81.5%)의 청소년지도자가 3년미만(76.7%), 5년이상 10년미만(77.1%), 10년이상(41.7%)의 청소년지도자보다 더 많았다(<표 V-2-11>참조).

<표 V-2-11> 임금수준 현실화 등 기본적 생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구 분		매우 중요	중요 하다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전체
연령	20대	51.6	46.8	1.6	.0	100.0
	30대	41.9	52.7	5.4	.0	100.0
	40대	30.2	67.9	1.9	.0	100.0
	50대	31.3	50.0	12.5	6.3	100.0
	60대	20.0	80.0	.0	.0	100.0
경력	3년 미만	53.3	40.0	6.7	.0	100.0
	3년 이상 5년 미만	37.0	59.3	3.7	0	100.0
	5년 이상 10년 미만	42.9	57.1	.0	.0	100.0
	10년 이상	29.2	70.8	.0	.0	100.0
전체		40.4	54.8	4.3	.4	100.0

연령 $\chi^2 = 23.03^{**}$ 경력 $\chi^2 = 16.92^*$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경력($F=3.73$, $P<.05$)에 따라서는 3년이상 5년미만(1.22)의 청소년지도자가 3년미만(1.23)과 5년이상 10년미만(1.23), 10년이상(1.58)의 청소년지도자보다, 연령($F=4.05$, $P<.01$)에 따라서는 20대(1.21)청소년지도자가 30대(1.32), 40대(1.53), 50대(1.44), 60대(1.80) 청소년지도자보다 기본적 생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휴식과 문화예술활동의 권리’의 중요성은 94.8%로 나타났으며, 근무기관($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인권)단체(70.0%) 외의 다른 기관은 90%이상의 중요성을 보였으며 청소년상담기관과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모든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다양한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보장받을 권리’의 중요성은 97.0%로 나타났으며, 연령($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50대와 60대는 모든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20대는 1.6%, 30대는 2.2%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는 50대(50.0%), 60대(20.0%)보다 높은 60%이상의 응답

를 보였다. 또한 40대는 7.5%가 '중요하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매우 중요하다' 37.7%, '중요하다' 54.7%의 응답률을 보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연령($F=4.54$, $P<.01$)에 따라서는 20대(1.32) 청소년지도자가 30대(1.39), 40대(1.705), 50대(1.50), 60대(1.80) 청소년지도자보다 '다양한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보장받을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별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94.8%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자는 모든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남자는 91.9%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5.44$, $P<.001$)에 따라서 여자(1.34)가 남자(1.74)보다 '성별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이나 서열, 연령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또한 96.6%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별로는 성별($P<.001$), 연령($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자는 모든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남자는 94.8%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연령에 따라 20대와 50대, 60대는 모든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30대는 93.5%, 40대는 98.1%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4.13$, $P<.001$)에 따라서 여자(1.45)가 남자(1.75)보다, 연령($F=3.46$, $P<.01$)에 따라서는 20대(1.41) 청소년지도자가 30대(1.70), 40대(1.72), 50대(1.75), 60대(1.60) 청소년지도자보다 '직급이나 서열, 연령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 따라 여자가 남자보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청소년지도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권리

‘청소년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해 상급자(또는 상급기관)로부터 나의 고유한 교육관을 지킬 수 있는 권리’에 대해 94.4%가 ‘중요하다’(‘매우 중요’와 ‘중요’)고 응답하였다.

변인별로는 연령($P < .05$), 경력($P < .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20대와 60대는 모든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0대는 10.8%, 40대는 93.8%, 50대는 6.3%가 ‘중요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또한, 20대는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54.0%로 다른 연령(45.0%미만)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경력에 따라서는 3년미만과 10년이상의 청소년지도자는 모든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3년이상 5년미만은 7.4%, 5년이상 10년미만은 11.4%가 ‘중요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또한, 3년미만인 경우는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률이 70%나 되었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2.00$, $P < .05$)에 따라서는 여자(1.59)가 남자(1.74)보다, 경력($F=3.78$, $P < .05$)에 따라서는 3년미만(1.30)의 청소년지도자가 10년이상(1.58), 3년이상 5년미만(1.70), 5년이상 10년미만(1.74) 청소년지도자보다, 연령($F=2.46$, $P < .05$)에 따라서는 20대(1.46) 청소년지도자가 30대(1.69), 40대(1.75), 50대(1.75), 60대(1.80) 청소년지도자보다 더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 남자보다는 여자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관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업무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공문, 출장, 설비나 교구 채택료, 각종 계약 건 등)’에 대해 94.0%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변인별로는 연령($P < .01$), 근무기관($P < .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40대(68.0%)의 청소년지도자가 가장 많이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60대(60.0%)를 제외하고는 모두 85%이상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청소년상담기관의 청소년지도자는 모든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청소년단체는 90.6%, 생활권수련시설은 90.6%, 자연권수련시설 94.1%, 청소년자원봉사센터 88.8%, 사회(인권)단체(150)는 80%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사회(인권)단체는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70%로 다른 기관(55%미만)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률(20%)도 다른 기관(8%미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V-2-12>참조).

<표 V-2-12> 부당한 업무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구분		매우 중요	중요 하다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전체
연령	20대	52.4	46.0	1.6	.0	100.0
	30대	39.8	54.8	5.4	.0	100.0
	40대	28.3	64.2	5.7	1.9	100.0
	50대	31.3	56.3	6.3	6.3	100.0
	60대	.0	60.0	40.0	.0	100.0
근무 기관	청소년단체	21.9	68.8	7.8	1.6	100.0
	생활권수련시설	52.6	47.4	.0	.0	100.0
	자연권수련시설	44.1	50.0	5.9	.0	100.0
	청소년상담기관	35.7	64.3	.0	.0	100.0
	청소년자원봉사센터	22.2	66.7	5.6	5.6	100.0
	사회(인권)단체	70.0	10.0	20.0	.0	100.0
전체		39.0	55.0	5.2	.9	100.0

연령 $\chi^2 = 29.00^{**}$

근무기관 $\chi^2 = 34.30^{**}$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근무기관(F=4.05, P<.01)에 따라서 생활권수련시설(1.47)의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단체(1.89), 자연권수련시설(1.62), 청소년상담기관(1.64), 청소년자원봉사센터(1.94), 사회(인권)단체(1.50)의 청소년지도자보다 더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F=4.51,

$P<.01$)에 따라서는 20대(1.49)청소년지도자가 30대(1.66), 40대(1.81), 50대(1.88), 60대(2.40) 청소년지도자보다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양심에 따른 업무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행정당국이나 조직 관리자에게 청소년지도활동에 필요한 지원(기자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96.5%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근무기관($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인권)단체(70.0%)외의 기관은 95%이상이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생활권수련시설, 청소년상담기관,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경우는 모든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청소년지도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보장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98.7%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청소년지도 관련 전문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67.5%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변인별로는 연령($P<.05$), 경력($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30대(96.8%) 외의 연령은 모든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20대(82.5%)의 청소년지도자가 가장 높은 응답률로 ‘매우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경력에 따라서는 ‘매우중요하다’의 응답에 10년이상(54.2%) 외의 경력자는 70.0%이상을 보였으며, 3년이상 5년미만(96.3%)의 경력자 외에는 모든 응답자가 ‘중요하다’(‘매우 중요’포함)고 답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경력($F=3.33$, $P<.05$)에 따라서는 3년미만(1.13)의 청소년지도자가 5년이상 10년미만(1.14), 3년이상 5년미만(1.30), 10년이상(1.46)의 청소년지도자보다, 연령($F=3.11$, $P<.01$)에 따라서는 20대(1.17)청소년지도자가 30대(1.35), 40대(1.43), 50대(1.56), 60대(1.40) 청소년지도자보다 ‘전문성확보 및 보장’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민으로서의 권리

시민이자 노동자로서 조직 내에서 가져야 할 시민적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예결산, 인사, 조직, 행정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나의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95.7%가 '중요하다'('매우 중요'와 '중요')고 응답하였다.

변인별로는 성별($P < .05$), 연령($P < .01$), 근무기관($P < .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97.8%)가 남자(94.9%)보다 더 많이 '중요하다'고 답하였는데, 여자의 경우는 1.1%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60대의 경우는 모든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20대, 30대, 40대는 90% 이상이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50대는 87.5%가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6.3%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률을 보이기도 했다.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사회(인권)단체(80.0%)외의 기관은 90% 이상이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경우는 5.6%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률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사회(인권)단체는 50.0%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하여 다른 기관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인 반면, '중요하지 않다'에도 20.0%의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 = 2.08$, $P < .05$)에 따라서는 여자(1.59)가 남자(1.74)보다, 연령($F = 6.18$, $P < .001$)에 따라서는 20대(1.44) 청소년지도자가 30대(1.71), 40대(1.75), 50대(2.13), 60대(1.80) 청소년지도자보다 의사결정권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단체) 내에서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98.3%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변인별로는 성별($P < .01$), 연령($P < .05$), 경력($P < .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97.1%)에 비해 여자는 모두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20대, 40대, 60대는 모두가 '중요하다'고 답한데 비해, 30대는 3.2%, 50대는 6.3%가 '중요하지 않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또한, 20대는 58.7%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하여 다른 연령(30%미만)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60대는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에 따라서는 3년이상 5년미만의 청소년지도자 중 3.7%(중요하지 않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표 V-2-13>참조).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성별($t=3.43$, $P<.01$)에 따라서는 여자(1.46)가 남자(1.70)보다, 경력($F=5.17$, $P<.01$)에 따라서는 3년미만(1.30)의 청소년지도자가 5년이상 10년미만(1.63), 10년이상(1.67), 3년이상 5년미만(1.78)의 청소년지도자보다, 연령($F=3.76$, $P<.01$)에 따라서는 20대(1.41) 청소년지도자가 30대(1.63), 40대(1.70), 50대(1.75), 60대(2.00) 청소년지도자보다 중요도가 더 높게 나타나, 남자보다는 여자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의 의견을 표현·전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13> 근무기관(단체)에서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

구 분		매우 중요	중요하다	중요하지않다	전체
성별	남자	33.1	64.0	2.9	100.0
	여자	53.2	46.8	.0	100.0
연령	20대	58.7	41.3	.0	100.0
	30대	39.8	57.0	3.2	100.0
	40대	30.2	69.8	.0	100.0
	50대	31.3	62.5	6.3	100.0
	60대	.0	100.0	.0	100.0
	전체	41.6	56.7	1.7	100.0
경력	3년 미만	70.0	30.0	.0	100.0
	3년 이상 5년 미만	25.9	70.4	3.7	100.0
	5년 이상 10년 미만	37.1	62.9	.0	100.0
	10년 이상	33.3	66.7	.0	100.0
전체		41.6	56.7	1.7	100.0

성별 $\chi^2 = 11.08^{**}$

연령 $\chi^2 = 19.86^*$

경력 $\chi^2 = 16.43^*$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동아리모임, 단체가입 및 활동 등)’의 경우 79.6%가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변인들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근무기관(단체)과의 사회문제를 포함한 공공의 쟁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90.5%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변인별로는 연령($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60대는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없었으며 ‘중요하다’는 응답률도 60.0%로 다른 연령(85%이상)에 비해 가장 낮았다.

청소년지도자의 권리에 대해, 전체적으로 연령과 경력이 낮을수록 권리주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청소년지도자의 권리수준

현재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지도자의 권리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53.0%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24.8%가 ‘약간 침해당하고 있다’, 20.9%가 ‘매우 침해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잘 보장받고 있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청소년지도자 권리신장 과제

청소년지도자의 권리신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3가지 정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후, 비슷한 응답내용별로 묶어 6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응답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문직으로서의 지위와 신분보장 제도화’가 57.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임금수준 현실화 및 처우개선’ 54.3%, ‘지속적인 교육관리를 통한 전문성 확보’ 46.3%, ‘사회적 인식확대 및 홍보활동’ 19.4%, ‘지도사 네트워크 구축 및 조직화’ 13.1%, ‘기타’ 5.1%로 나타났다.

④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관심도

시민단체나 인권운동 단체에 회원으로 참여하거나 후원해 본 적이 있는 지도자는 34.9%였으며, 변인별로는 경력($P<.01$), 지역($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경력에 따라서는 10년이상(58.3%) 청소년지도자는 3년미만(23.3%), 3년이상 5년미만(48.1%), 5년이상 10년미만(22.9%) 청소년지도자보다 참여·후원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45.4%)의 청소년지도자가 대도시(32.9%)와 군읍면지역(18.9%)의 청소년지도자보다 참여·후원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경력($F=4.15$, $P<.01$)에 따라서는 10년이상(1.42) 청소년지도자는 3년이상 5년미만(1.52), 3년미만(1.77), 5년이상 10년미만(1.77) 청소년지도자보다 참여·후원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치활동(동아리활동, 청소년자치위원회, 수련시설청소년운영위원회 등)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후원하는 경우는 61.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별로는 근무기관($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연권수련시설(46.4%)과 청소년자원봉사센터(38.9%) 외의 기관인 청소년단체(71.9%), 생활권수련시설(73.7%), 청소년수련시설(63.3%)은 60%이상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경우도 생활권수련시설 3.5%, 자연권수련시설 5.8%, 청소년자원봉사센터 5.6%로 나타났다(<표 V-2-14>참조).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근무기관($F=4.65$, $P<.01$)에 따라서 생활권수련시설(1.91)의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단체(2.08), 자연권수련시설(2.51), 청소년상담기관(2.36), 청소년자원봉사센터(2.44), 사회(인권)단체(2.10)의 청소년지도자보다 청소년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이 참여·후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4> 청소년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참여 및 후원정도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근무 기관	청소년단체	20.3	51.6	28.1	.0	100.0
	생활권수련시설	38.6	35.1	22.8	3.5	100.0
	자연권수련시설	8.7	37.7	47.8	5.8	100.0
	청소년상담기관	0	64.3	35.7	.0	100.0
	청소년자원봉사센터	22.2	16.7	55.6	5.6	100.0
	사회(인권)단체	20.0	50.0	30.0	.0	100.0
전체		20.3	41.4	35.3	3.0	100.0

근무기관 $\chi^2 = 37.41^{**}$

기회가 된다면 청소년 인권관련 프로그램(인권침해사례 모니터 활동·인권동아리활동·인권캠프 등)을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81.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변인들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3) 조사결과 요약

(1)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권리에 대한 인식

청소년권리 실태에 대해 4.7%가 '잘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36.2%, '침해당하고 있다' 59.0%로 나타나, 지도자들은 청소년의 권리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자의 권리수준에 대해서도 '잘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한 의견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자의 권리수준 또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권리수준이 열악한 원인으로는, '청소년을 미숙하고 통제 받아야할 존재로 보는 성인 중심적 사고'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그 다음으로 ‘입시제도 및 과도한 학습과제’ 28.0%, ‘청소년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 부족’ 14.7%, ‘청소년의 권리행사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프로그램 부족’ 12.1%,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 부족’ 8.6%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권리신장 과제로는 ‘학생자치활동 등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 확대’가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어리다고 청소년을 무시하는 성인 인식의 변화’ 22.4%, ‘청소년 권리에 대해 교육·상담할 수 있는 기구(청소년인권센터 등) 운영’ 18.5%, ‘청소년 관련 법·제도의 개선’ 15.5%, ‘청소년 및 청소년 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9.5%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의 권리신장방안으로는 ‘전문직으로서의 지위와 신분 보장 제도화’가 57.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임금수준 현실화 및 처우개선’ 54.3%, ‘지속적인 교육관리를 통한 전문성 확보’ 46.3%, ‘사회적 인식확대 및 홍보활동’ 19.4%, ‘지도자 네트워크 구축 및 조직화’ 13.1%, ‘기타’ 5.1%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인식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단체나 기관이 필요하다는 데에 94.3%가 동의하였으며,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는 54.1%로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8.8%가 청소년인권교육, 인권상담 및 해결 등 청소년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수행할 기관으로 ‘청소년인권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인권센터의 활동으로는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대처’, 그리고 ‘청소년과 지도자, 교사 대상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한편, 인권과 관련된 교육과 연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지도자는 24.6% 정도였다.

청소년인권센터의 설립 유형과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자대상으로 중앙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 인권센터 필요성을 알아본 결과, 중앙단위 청소년인권센터 92.3%, 시·도 청소년인권센터 93.7%, 시·군·구 청소년인권센터 92%의 응답률로 중앙단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별 인권센터의 필요성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중앙 청소년인권센터’의 지도감독 기능을 담당할 부처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8.3%, ‘문화관광부’ 15.7%, ‘교육부’ 6.1%, ‘법무부’ 5.2%, ‘보건복지부’ 4.3%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 청소년인권센터와 시·군·구 청소년인권센터 모두 기존 기관의 부설형태보다는 ‘독립적 기관으로 설립되는 것이 좋다(시·도 65.3%, 시·군·구 58.5%)’는 의견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응답자 중에서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4.1%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업 진행을 위한 인력 및 재정 부족(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의 참여 부족(16.7%)’과 ‘학교 및 관련기관의 이해와 협력 부족(16.7%)’,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문제(8.3%)’와 ‘인권관련 프로그램과 자료 부족(8.3%)’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인권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인권프로그램의 개발·보급(30.9%)’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육성업무 관계자의 청소년인권의식 함양(30.4%)’, ‘인권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17.8%)’, ‘안정적인 인력과 재정지원(16.1%)’,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연대활동 강화(4.3%)’ 순으로 나타났다.

3. 종합 요약

(1) 청소년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태

① 청소년의 전반적인 권리수준

‘전반적인 우리사회의 청소년권리수준’에 대해 청소년은 10.7%가, 청소년지도자는 4.7%가 ‘잘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청소년지도자가 인식하는 청소년권리 수준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영역별 청소년권리 실태

가정·학교·사회에서의 청소년의 권리(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실태를 알아본 결과, 청소년들의 권리 수준은 대체적으로 ‘가정 - 학교 - 사회’의 순서로 낮게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은 대략 70% 이상 수준에서 보장받고 있는 편이었으나, 성적을 이유로한 체벌(14.8%)이나 형제·자매들간에 차별대우(36%) 문제가 있었으며,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거나(3.6%) 신체적 학대나 폭력을 당하는 경우(2.9%)도 있었다. 10.2%는 가정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고 있었으며, 가정의 중요사안에 대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경우는 66.6%로 참여권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가정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응답률은 79.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는 표집대상이 전국의 중·고등학생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안전과 영양·건강 등에 대한 권리는 50% 정도 보장받고 있었으며, 성적으로 인한 체벌(32.0%)과 차별(57.8%), 성차별(33.8%)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듣는 경우도 43.5%로 높게 나타났고 16.3%의 학생은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3.2%가 보충학습이나 야간 학습을 하고 있었으며, 학교에서의 여가·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

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은 51.8%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교칙이 청소년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다는 의견은 절반에도 못미쳤으며(41.3%), 79.1%가 여전히 소지품 검사나 두발·복장 규제를 받고 있었다. 학생자치활동은 60.4%가 보장받고 있었으며,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경우도 절반에 못미치는 것으로(46.2%)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응답률은 40.9%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불행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건강과 기본적 의식주 등 생존권 수준은 80% 내외로 보장받고 있었으며, 학대, 차별, 방임, 유해환경들로부터의 보호권은 50% 내외 수준에서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가지 발달권은 70~80% 수준에서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상대적으로 '휴식과 문화생활 참여'(63.8%)나 '평등한 교육기회'(64.5%) 보장수준은 60% 선으로 낮게 나타났다. 참여권의 경우 의견표명권(59.9%), 사생활권(67.0%), 적법절차의 권리(51.3%), 개인정보 보호권(57.5%), 의사결정과정 참여(54.3%), 집회결사의 자유(61.2%) 등 60% 내외 수준으로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③ 청소년권리에 대한 인식

세계인권선언(23.6%)이나 유엔 아동청소년권리협약(19.3%) 등 청소년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주요 조약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가 낮았으며, 청소년 정책참여를 위한 자치기구(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회)를 알고 있는 경우도 20.6%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지도자의 경우도 아동청소년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45.8%)가 낮았으나, 청소년자치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72.4%)이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권리인식이 부족하며(69.6%), 의사결정권과 참여권을 주어도 사용할지 모를 것이라고(56.5%) 응답하였다. 청소년

년지도자의 경우 이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는데, 권리 인식 부족 74.9%, 사용능력 미흡 72.5%의 응답률을 보였다.

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대해 청소년 78.3%, 지도자 96.1%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나, 아직 자유권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45% 정도가 동의하였다(청소년 45.9%, 지도자 45.4%).

교육적 차원에서 체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은 청소년 41.8%, 지도자 58.7%로 지도자가 더 많았고, 소지품이나 두발·복장 검사의 교육적 불가피성에 대해서 청소년 32.0%, 지도자 44.8%가 동의하였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청소년은 46.0%였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시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청소년은 52.4였다.

④ 인권교육 및 선거권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3.5%였고, 경험이 없는 청소년 중에서 앞으로 인권교육을 받아볼 의향이 있는 청소년은 63.9%로 나타났다. 한편, 인권관련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본 지도자는 24.6%였고, 향후 인권교육이나 연수 참여의지는 96.0%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선거권 행사 가능 연령으로는 18세가(29.7%)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현행 유지(21.9%), 19세(18.2%), 17세(16.7%), 16세(13.5%)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18세 이하 응답률은 59.9%, 19세 이하 응답률은 78.1%이다. 한편, 청소년지도자의 경우 18세가 48.3%로 가장 많았고 19세 27.6%, 현행 유지 16.4%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18세 이하 56.0%, 19세 이하 83.6%로 나타났다.

⑤ 청소년권리 취약 원인

청소년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 청소년의 경우, '입시제도 및 과도한 학습과제(32.4%)', '청소년을 미숙하고

통제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인중심적 사고(26.9%)', '청소년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부족(17.0%)', '청소년들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부족(15.7%)', '청소년의 권리행사와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및 프로그램 부족(6.4%)'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청소년지도자의 경우는, '청소년을 미숙하고 통제 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인중심적 사고(35.8%)', '입시제도 및 과도한 학습과제(28.0%)', '청소년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 부족(14.7%)', '청소년의 권리행사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프로그램 부족(12.1%)',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 부족(8.6%)'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청소년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청소년과 지도자 모두 '입시위주 교육문제'와 '성인중심적 사고'를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는데, 청소년의 경우는 '입시위주 교육'에, 지도자의 경우는 '성인중심적 사고'를 더 크게 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는 '청소년의 권리행사능력과 의식 부족' 문제를, 지도자의 경우는 '권리교육 및 프로그램 부족'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⑥ 청소년 권리신장 방안

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에서의 청소년 권리신장방안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가정에서의 '폭력적 언행조심', '부모자녀간 대화시간 많이 갖기', '청소년인권에 관한 부모교육실시', 학교에서의 '교사의 언행주의', '인성교육확대', '교칙 및 규칙 제·개정'에 청소년참여보장, 사회에서의 '청소년권리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한 법 제정', '청소년들의 자기 권리 주장능력 강화',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청소년조직(인터넷상의 커뮤니티 등)', 등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권리 신장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청소년의 경우 ‘어리다고 청소년을 무시하는 어른들 인식의 변화(55.3%)’, ‘청소년 관련 법·제도의 개선(16.2%)’, ‘청소년 권리에 대해 교육·상담할 수 있는 기구(청소년인권센터 등) 운영(10.4%)’, ‘학생 자치활동 등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 확대(9.9%)’, ‘청소년 및 청소년 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6.6%)’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에 비해 청소년지도자는 ‘학생자치활동 등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 확대’가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어리다고 청소년을 무시하는 성인 인식의 변화’ 22.4%, ‘청소년 권리에 대해 교육·상담할 수 있는 기구(청소년인권센터 등) 운영’ 18.5%, ‘청소년 관련 법·제도의 개선’ 15.5%, ‘청소년 및 청소년 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9.5%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권리신장을 위해 ‘성인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도자의 경우 ‘청소년 참여활동’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청소년지도자의 권리 실태

청소년지도자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지도자의 권리수준에 대해 ‘잘 보장받고 있다’는 의견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10.7%)보다 권리수준이 훨씬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지도자의 권리신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는 ‘전문직으로서의 지위와 신분보장 제도화’가 57.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임금수준 현실화 및 처우개선(54.3%)’, ‘지속적인 교육관리를 통한 전문성 확보(46.3%)’, ‘사회적 인식확대 및 홍보활동’ 19.4%, ‘지도자 네트워크 구축 및 조직화’ 13.1%, ‘기타’ 5.1%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의 권리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생존·복지권,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청소년지도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권리, 시민으로서의 권리 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 대체적으로 90% 이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임금수준 현실화 등 기본적 생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97.8%), '다양한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보장받을 권리'(97.0%), '청소년지도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보장받을 권리'(98.7%) 등의 경우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여, 현재 청소년지도자들의 열악한 권리수준의 단면을 반증해 주었다.

시민단체나 인권운동 단체에 회원으로 참여하거나 후원해 본 적이 있는 지도자는 34.9%였으며, 청소년 자치활동(동아리활동, 청소년 자치위원회, 수련시설청소년운영위원회 등)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후원하는 경우는 6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1.7%의 청소년지도자는 기회가 된다면 청소년 인권관련 프로그램(인권침해사례 모니터링활동·인권동아리활동·인권캠프 등)을 운영할 의향을 밝혔다.

(3)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인식

87.8%의 청소년이 권리보장을 위한 단체나 기관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자 또한 94.3%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18.0%에 불과했으며, 청소년지도자는 54.1%로 절반을 조금 넘었다.

청소년인권교육, 인권상담 및 해결 등 청소년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수행할 기관으로 '청소년인권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8.7%의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청소년지도자는 88.8%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청소년인권센터' 설립시 가장 필요한 활동으로 두 집단 모두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대처', 그리고 '청소년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시'와 '청소년지도자와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이라고 응답하였다.

'청소년인권센터'에서 상담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3%에 그치는 상황이며, 만족을 느끼는 청소년은 41.4%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의 원인으로서는 '인권상담의 전문성의 취약성'(57.1%)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그 외에 인권침해사례와 관련된 현실적인 방안제시의 어려움(14.3%), 인권상담 후 만족할 만한 구체적 조치를 받지 못함(14.3%)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인권 관련 캠프나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3.0%에 불과했으며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55.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2명당 1명만이 만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만족의 원인을 살펴보면, '캠프나 프로그램의 일회성'(28.6%)이 가장 큰 이유이며, 캠프나 프로그램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다양하지 못함(14.3%), 비자율성(14.3%)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청소년인권센터의 설립 유형과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자대상으로 중앙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 인권센터 필요성을 알아본 결과, 중앙단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별 인권센터의 필요성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중앙 청소년인권센터'의 지도감독 기능을 담당할 부처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8.3%, '문화관광부' 15.7%, '교육부' 6.1%, '법무부' 5.2%, '보건복지부' 4.3%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 청소년인권센터와 시·군·구 청소년인권센터 모두 기존 기관의 부설형태보다는 '독립적 기관으로 설립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응답자 중에서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4.1%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업진행을 위한 인력 및 재정 부족(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의 참여 부족(16.7%)'과 '학교 및 관련기관

의 이해와 협력 부족(16.7%)’ 등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인권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인권프로그램의 개발·보급(30.9%)’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육성업무 관계자의 청소년인권의식 함양(30.4%)’, ‘인권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17.8%)’ 등으로 나타났다.

공 백

VI. 청소년인권센터 운영모델과 활성화 방안

1. 운영모델 구상의 전제
2. 중앙청소년인권센터
3. 시·도청소년인권센터
4. 지역청소년인권센터
5. 청소년인권센터 활성화 과제

공 백

VI. 청소년인권센터 운영모델과 활성화 방안

1. 운영모델 구상의 전제

(1) 청소년인권센터의 활동지역

청소년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기관인 ‘청소년인권센터’의 운영모델을 개발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기준이 있다.

먼저, 청소년인권센터의 활동지역을 설정하는 일이다. 기존 청소년인권센터는 대부분 특정 시·도나 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전국을 포괄하는 중앙청소년인권센터와 시·군·구단위에도 청소년인권센터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이다.

본 연구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시·도청소년인권센터 뿐만 아니라, 중앙청소년인권센터와 시·군·구청소년인권센터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즉, 청소년인권센터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는 시·군·구센터가 42.9%로 중앙센터(37.0%)와 시·도센터(31.8%)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매우 필요하다’를 포함하여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시·도센터가 전체의 93.7%로 가장 높고, 중앙센터(92.3%)와 시·군·구센터(92.0%)의 필요성도 아주 높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자들은 모든 수준에서 인권센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단위에서 청소년인권센터를 동시에 설치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면 어떤 순서로 설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진은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센터의 설치에 청소년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중앙센터만으로는 전국 청소년을 포괄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시·도청소년인권센터를 먼저 구

축할 것을 제안한다. 접근성에서는 시·군·구센터가 더 높지만,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생활권단위에서는 아직 광범위하게 일어나지 않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시·도센터를 만든 후에 중앙센터와 시·군·구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2) 청소년인권센터의 감독기관

청소년인권센터의 지도·감독기능을 어느 부처가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이다. 기존 청소년인권센터는 광역자치단체의 일차적인 지도·감독을 받고, 문화관광부의 지원과 감독을 이차적으로 받고 있다. 현재 청소년인권센터는 시·도청소년상담실이나 청소년단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가 지도·감독을 맡고 있다.

본 연구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인권센터의 지도·감독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0.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28.3%), 문화관광부(15.7%), 교육인적자원부(6.1%), 법무부(5.2%), 보건복지부(4.3%) 등의 순이었다. 청소년인권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만, 인권센터의 지도·감독기관에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센터의 지도·감독기관을 정하는 일은 정부조직법 상에 각 부처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제35조),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교육(제28조), 법무부는 인권옹호(제31조), 보건복지부는 아동(제39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각 부는 청소년인권과 나름대로 관련되어 있다. 청소년인권에 보다 관련된 부처로 청소년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와 인권옹호를 담당하는 법무부라고 볼 때,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인권을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보호법 제27조에 의해서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의해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센터와 관련된 핵심적인 정부기구는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임을 알 수 있다. 즉,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정책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세 기구 모두 청소년인권센터의 지도·감독기관으로 손색이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도의 독립성을 갖춘 위원회라는 점에서, 청소년인권센터를 상시적으로 지도·감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결국 청소년인권센터의 지도·감독은 청소년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문화관광부가 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은 청소년정책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양 기관 모두 청소년인권센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센터의 주무부서를 정할 때에는 청소년의 인권 혹은 청소년의 권리를 어떻게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연계시키는 것이 좋겠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한국정부가 1991년에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참여권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보호정책은 주로 보호받을 권리를 다루고,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의 청소년정책은 발달권, 참여권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만약, 청소년인권센터의 주요 업무를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위기상담에 중점을 둔다면 청소년보호위

원회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청소년의 발달과 참여를 장려하는 인권교육 인권관련 제반 활동에 강조점을 둔다면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이 인권센터를 지도·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기관이 청소년인권센터의 지도·감독을 맡더라도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청소년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청소년인권의 신장을 위해서 유기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

(3) 청소년인권센터의 독립성

청소년인권센터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치할지 혹은 다른 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설치할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청소년인권센터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도청소년인권센터와 시·군·구청청소년인권센터는 여건에 따라서 독립기관 혹은 부설기관의 형식으로 설립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자들은 시·도센터와 시·군·구센터 모두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시·도센터를 독립된 기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전체의 65.3%로 기존 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설치하는 것(34.7%)보다 두배 가량 높고, 시·군·구센터는 독립된 기관이 좋겠다는 의견(58.5%)이 부설기관의 그것(41.5%)보다 약간 높았다.

현행 청소년인권센터 중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된 사례는 없고, 기존 시·도청소년상담실이나 청소년단체가 사업의 하나로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하여 왔다. 이는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향후 정부가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의 지원을 충분히 한다면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청소년관련 기관의 선례에 비춰볼 때, 시·도청소년종합상담실 혹은 시·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처

럼 시·도청소년인권센터도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청소년인권센터의 주요 사업인 청소년인권상담,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청소년인권 관련 정보의 나눔 등에 대한 업무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든 시·도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시·도청소년인권센터의 모델은 대도시형과 중소도시형으로 나누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인권센터는 정부가 설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역량있는 청소년단체 혹은 인권운동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이 좋다. 청소년지도자에게 시·도청소년인권센터를 다른 기관부설로 운영할 때 어느 기관이 좋겠느냐고 질문한 결과 시·도청소년종합상담실이 33.7%로 가장 높았다. 시·도청소년종합상담실은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있는 여러 청소년기관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국적인 협력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석사이상의 전문인력이 가장 많은 기관이기에 인권센터를 운영하는데 적합성이 높다. 현재 충남 청소년종합상담실이 시·군·구청소년상담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 다음은 청소년단체가 27.9%인데, 청소년단체의 경우 그 종류가 많고 각 단체마다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가장 역량있고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서울에서는 흥사단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광주, 익산, 군포에서는 YMCA가, 울산에서는 YWCA가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이 향후 시·도청소년인권센터를 위탁할 때에도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

일부 청소년지도자들은 인권관련사회단체가 청소년인권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선호하였다. 전체의 15.1%로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응답자의 대부분이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 등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라는 점에서 볼 때 의미가 있는 수치이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인권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 인권관련사회단체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서울의 인권운동사랑방, 수원의 다산인권센터가 청소년인권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인권센터가 청소년수련시설(11.6%), 청소년자원봉사센터(5.8%), 아동학대예방센터(3.5%)의 부설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과 설비 그리고 지도력에서 상당한 여건을 갖추고 있고, 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기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예방센터는 현재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학대 받는 아동에게 위기상담과 일시보호를 실시하기에 학대받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에서는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만약 국가가 시·도청소년인권센터를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이 갖춘 청소년인권에 대한 전문성, 인력, 시설, 유관 기관과의 협력관계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적합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시·군·구청소년인권센터는 독립된 기관으로 하는 방법과 다른 기관의 부설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본 조사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자들은 시·군·구센터를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부설기관으로 하자는 의견보다 다소 높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청소년의 수요가 높은 청소년상담실조차 전체 시·군·구에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센터를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기는 시기상조인 듯 하다.

따라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50만명 이상 시지역은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고, 50만명 미만의 지역은 부설기관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할 것을 제안한다. 본 조사에서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인권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설치한다면 시·군·구청소년상담실의 부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42.6%로 가장 많았다. 현재 시·군·구 단위에는 청소년상담실이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가장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인 듯하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단체(25.5%), 인권관련사회단체(14.9%), 청소년수련시설(13.8%)의 순이었다.

시·군·구단위에는 지역에 따라서 청소년계의 활동상황이 매우 상이하다. 경기도와 전북의 경우 모든 시군에 청소년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지만, 일부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구지역에 청소년상담실조차 없고,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단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활동능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시·군·구의 경우 청소년인구가 많고, 청소년인권에 대한 청소년계의 관심이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인권센터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4)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본 연구진은 청소년인권센터를 중앙센터, 시·도센터, 지역(시·군·구)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운영모델로 구상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하면 국가가 직접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사례는 없고, 대부분 인권운동단체가 인권센터를 운영하며, 주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인권센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청소년단체나 인권운동단체 등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가 민간에 청소년인권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충분한 지원과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인권센터의 사례를 보면, 광주광역시외의 경우 시청이 청소년기금 중에서 연간 2,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충남의 경우 충남청소년종합상담실의 한 사업으로 인권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광역시외의 경우 1

명의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비와 운영비가 별로 많지 않고, 충남의 경우 인건비조차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청소년인권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도청소년종합상담실이나 시·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처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의 전액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 인권센터 당 연간 예산의 총액을 얼마나 책정하고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인권센터의 운영방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청소년단체나 인권운동단체가 이를 수탁하여 운영한다. 이때 정부는 적절한 전문성과 활동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 향후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제반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단체와 인권운동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과거 민간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던 사업에 정부가 지원을 시작하면, 정부의 사업을 위탁받은 곳은 활성화되지만 그렇지 않는 기관은 오히려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다. 예컨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많은 청소년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하였는데, 1995년에 시·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지원을 받지 못한 청소년단체의 봉사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전철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시·도청소년인권센터와 지역청소년인권센터를 지정하더라도, 다른 청소년단체와 인권운동단체의 인권활동에 대해서도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인권활동가의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각 단위별 청소년인권센터의 조직, 인력, 사업, 재원, 시설과 설비, 협력관계 등에 대해서는 질을 달리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2. 중앙청소년인권센터

(1) 조직

청소년인권센터의 조직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인권센터의 핵심사업을 무엇으로 설정하고, 그 인원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기존 청소년인권센터는 청소년단체 등이 소규모로 설치·운영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모델로는 다소 한계가 있다.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데, 이용교는 ‘청소년 인권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방안’에서 청소년인권위원회 산하에 청소년인권센터를 두고, 인권센터의 기구를 인권상담부, 인권교육부, 정보운영부를 둘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인권센터의 소장은 기관을 대표하면서 업무를 총괄하고, 인권상담부는 인권상담, 위기전화운영, 법률구조사업 등을 하며, 인권교육부는 인권상황에 대한 연구, 인권교육자료개발, 청소년인권학교 등을 운영하며, 정보운영부는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청소년인권백서 발간, 국내외 인권자료 수집과 정리, 공중통신망에 인권정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한다(이용교, 1999: 162).

본 조사에서도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인권센터가 수행해야 할 과업으로, 인권상담, 인권교육, 인권에 관한 정보교류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권센터 자체를 독립된 기구로 둘 것인지, 청소년인권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소년인권센터를 청소년인권위원회 산하에 둘 경우에 인권센터는 인권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거나, 인권위원회에 사업을 제안하는 부서이지만, 인권센터를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본 연구는 중앙청소년인권센터를 청소년인권위원회의 산하 기관

혹은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고, 시·도청소년인권센터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단은 중앙청소년인권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설계하지만, 만약 중앙청소년인권센터를 청소년인권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할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간의 역할 분담을 하면 될 것이다.

중앙청소년인권센터는 인권센터 소장을 정점으로 하여, 인권상담부, 인권교육부, 정보운영부 그리고 업무지원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지원팀은 서무, 경리 등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소장의 자문기관으로 ‘인권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각 부서별로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그리고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설치한다. 인권상담부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조직으로 ‘청소년인권모니터단’과 성인들로 구성된 ‘청소년인권지킴이단’ 등을 설치한다.

중앙청소년인권센터는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활동을 가급적 줄이고, 시·도청소년인권센터와 지역청소년인권센터 그리고 다양한 민간 청소년인권센터의 활동을 장려하는 활동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세부 사업은 아래에서 논의할 것이다.

(2) 인력

인권센터의 주요 인력은 청소년인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률가,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인권운동가, 교사 등 전문인력과 사무직원으로 확충한다. 전체 인력은 소장파 각 부에 5명의 직원(소계 15명)과 업무지원팀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하고, 여건에 따라서 다소 축소 혹은 확장시킬 수 있다.

청소년인권센터는 매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청소년단체, 인권운동단체, 사회복지운동단체 등 각종 비정부기구에서 상당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뽑아서 충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문인력이 오랫동안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등에서 유관 기관보다 나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예컨대, 변호사나 대학교수를 인권센터의 소장으로 임용한다면, 그(녀)가 개업을 하거나 대학에 근무하는 경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상근직원과 별도로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 상담이나, 전문적 조언,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하여 줄 '전문위원'과 일반사무와 지킴이활동 등을 도와줄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특히, 법률, 의료, 상담, 복지, 교육 등에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들을 비상근 전문위원이나 자원봉사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3) 사업

청소년인권센터의 핵심 사업은 인권상담, 인권교육, 인권정보운영 등이다.

본 조사에서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인권센터가 수행해야 할 활동으로 인권침해사례 상담과 대처(1.42)를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며, 그 다음으로 인권교육지침서 개발과 보급(1.45), 청소년지도자·교사를 위한 인권교육(1.53)을 비롯하여 인권조사연구와 토론회 개최(1.71), 청소년인권교육 프로그램실시(1.78) 등 인권교육을 강조하였다. 청소년지도자들은 인권동아리활동의 지원(1.67), 인권침해사례 모니터링활동(1.72) 등 인권상담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또한, 청소년인권센터가 청소년인권신장을 위한 홍보·캠페인(1.65), 인권정보자료실의 운영(1.83),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협력사업(1.88)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하였다.

<표 VI-1> 청소년인권센터에서 수행할 활동

순 위	수행할 활동	매우 필요	필요함	필요하 지않음	전혀 필요하 지않음	평균
1	인권침해사례 상담과 대처	38.2	54.1	6.4	1.3	1.42
2	인권교육지침서 개발과 보급	24.2	52.8	19.4	3.6	1.45
3	청소년지도자·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30.3	54.0	12.5	3.1	1.53
4	청소년인권신장을 위한 홍보·캠페인	29.0	52.3	15.5	3.3	1.65
5	인권동아리활동의 지원	26.5	54.0	16.5	3.0	1.67
6	인권조사연구와 토론회 개최	21.4	57.0	19.4	2.2	1.71
7	인권침해사례 모니터활동	24.6	54.4	19.2	1.9	1.72
8	청소년인권교육 프로그램실시	26.8	57.0	13.0	3.2	1.78
9	인권정보자료실의 운영	22.3	56.8	17.6	3.3	1.83
10	국내외 유관 단체와의 협력사업	21.8	52.7	22.0	3.5	1.88

매우 필요하다 : 1점, 필요함 : 2점, 필요하지않음 : 3점, 전혀필요하지않음 : 4점으로 점수처리함.

이러한 청소년인권센터의 핵심적인 사업을 중앙센터, 시·도센터, 지역센터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본 연구진은 중앙센터는 인권상담, 인권교육, 인권정보운영 각 분야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표준화된 지침을 개발하며, 지도력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둘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중앙센터는 모든 부서가 정책개발의 기능을 핵심적인 역할로 수행해야 한다. 사실상, 인권상담부는 인권상담정책부, 인권교육부는 인권교육정책부, 인권정보운영부는 정보운영정책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인권상담부는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인권침해사례를 유형별·수준별로 연구하여 청소년인권센터와 관련 기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적인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혹은 성인(청소년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인권모니터단 혹은 지킴이단이 인권침해사례를 모니터하는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는 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 인권동아리활동의 지원도 인권동아리를 조직하는

방법, 동아리의 일상활동, 동아리사업에 대한 보고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표준안을 개발해야 한다.

인권상담부는 인권상담에서 자주 논쟁이 되는 법률과 관행을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맞게 고치는 정책을 개발하는 일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컨대,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는 친권에 복종해야 한다는 규정은 흔히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체벌은 교육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괜찮다는 초·중등교육법은 아동권리협약과 명백하게 배치된다. 인권상담부는 상담에서 표출된 아동과 청소년의 욕구를 어떻게 하면 정책으로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권교육부는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고, 그것을 교과교육과 연계시켜서 학교에서 정규교과로 가르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즉,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헌법상의 기본권, 아동권리협약의 핵심 내용 등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정책 제안해야 한다.

또한, 교사양성과정에서 헌법상의 기본권과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을 어떻게 가르치는 지를 확인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교사양성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 교직과목에 인권의 내용을 어떻게 포함시키고, 이를 친인권적 방법으로 가르치는 모델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일상생활공간에서 가장 많이 침해하는 사람이 부모와 교사라는 점에서 볼 때, 각종 부모교육과 교사재교육과정에 인권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교사를 위한 인권워크숍을 개최하고, 자녀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부모인권교실을 열며, 인권교육사례집 등을 발간하여 전국적으로 배포한다. 인권에 관심있는 학자들이 한국청소년권리학회와 같은 학술단체를

만들도록 장려하고, 전문 학자들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찬회를 개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인권교육은 책이나 글로 된 자료만으로 해서는 안 되고, 노래부르기, 그림그리기, 거리캠페인, 역할연기, 연극, 영화, CD나 비디오테이프 만들기 등 매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놀이를 통해서 재미있게 인권을 배우는 것은 그것 자체가 청소년의 학습권과 여가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인권정보운영부는 인권정보자료실의 운영을 핵심적인 사업으로 하고, 국내외 유관단체와의 협력사업,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을 도모한다. 중앙청소년인권센터가 시·도센터와 지역센터의 중추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국내외 각종 문헌정보와 시청각자료 등을 수집 정리 보관 연람할 수 있는 인권정보자료실을 운영해야 한다. 중앙센터의 자료를 발간하거나 배포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국제인권조약과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학술활동을 모니터하고, 각종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인권정보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최근 각종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산되고 유통된다는 점에서 인권정보자료실의 핵심 업무는 중앙청소년인권센터의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고, 홈페이지의 핵심적인 기능을 파일형태로 제작된 인권자료를 수집 분류하며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인권정보운영부는 직접 인권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기존 도서관이 이미 출간된 서적을 수집하고 정리하며 보관하고 열람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향후 인권정보운영부는 청소년인권에 관한 정보를 개발하고 출판하여 보급하는 일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인권정보를 한글로 번역하고, 한국의 청소년인권정보를 영어로 번역하여 다른 나라에 보급해야 한다. 인권정보운영부는 국내외 청소년인권단체와도 활발한 교

류를 주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4) 재원

중앙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재원은 국고로 조달한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청소년개발원 등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제반 경비를 국가가 제공하듯이, 중앙청소년인권센터의 재원도 국가에서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육성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청소년육성기금은 성격상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장려하는 돈이다. 다만, 청소년인권센터가 국고의 지원을 받지 못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을 받는 것은 가능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연간 예산은 소장을 포함한 직원이 20명일 경우에 인건비가 7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 내역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소장의 연봉은 5,000만원, 부장 3명은 4,000만원씩 소계 12,000만원, 그리고 선임직원 7명은 3,500만원씩 소계 24,500만원, 일반 직원 6명은 3,000만원씩 18,000만원, 사무직원 2명은 2,000만원씩 4,000만원, 일시적으로 사용할 인건비 6,500만원이다. 물론, 인건비는 직원의 경력, 학력, 전문성 등에 의해서 좌우되기에 확일적으로 정하기 어렵지만, 중앙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혹은 석사학위를 반드시 이수하고, 상당한 경력을 갖춘 중견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금액은 필요한 최소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청소년인권센터의 전체 예산을 인건비 40%, 운영비 30%, 사업비 30%로 본다면, 연간 예산은 17억 5천만원이다.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의 비율을 50%로 보고, 운영비 25%, 사업비 25%로 보면 연간 예산은 약 14억이지만, 중앙청소년인권센터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와 사업비의 비중을 전체 예산의 6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비는 건물의 유지와 관리, 사무용품의 구입과 관리, 각종 기자재의 구입과 관리, 기관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차량의 구입과 유지관리 등이 포함된다.

사업비는 인권상담사업, 인권교육사업, 인권정보운영사업 등 각 분야별로 크고 작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사업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여주기 위한 큰 행사를 기획하기 보다는 작은 행사를 내실있게 기획하고, 연차계획을 세워서 중복과 낭비 없이 체계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책의 출판과 시청각자료의 제작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재단 등 관련 기관 등이 하는 사업과 중복을 피하고 꼭 필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중앙청소년인권센터를 처음 설립할 때, 첫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설립시기를 1월이 아닌 7월에 하여서 연간예산의 절반인 8억 7,500만원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예산 확보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센터를 먼저 설립하고, 인권센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된 후에 중앙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5) 시설과 설비

중앙청소년인권센터가 영구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청사를 갖추고 사무실과 사무용품, 인권교육실과 교육기자재, 정보운영실과 컴퓨터 등 필수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청사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향후 정부혁신을 통해서 남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의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건물을 임대하여 활용한다.

인권센터의 핵심은 직원이지만, 그 직원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사무기자재를 포함하여 최적의 여건을 갖추

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직원은 업무를 컴퓨터를 통해서 하고, 종이 문서의 사용을 가능한 한 최소로 줄인다.

팀제 운영을 통해서 팀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문서의 결재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이며, 사무실에서 불요 불급한 수납공간을 없앤다. 기존 사무실에 많이 있는 캐비닛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문서보관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보관실을 별도로 두어서 사무실을 쾌적하게 관리한다.

인권상담을 위한 독립된 면접상담실과 집단상담실,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실과 각종 빔프로젝트 등 교육기자재는 한꺼번에 구입하기보다는 처음에는 필요한 최소한을 구입하고, 매년 사양이 향상된 새로운 제품으로 보충한다. 특히, 컴퓨터, 빔프로젝트 등 전자제품은 늦게 구입할수록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입과 관리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

(6) 협력관계

중앙청소년인권센터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주무부처를 포함한 정부기관과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중앙센터가 청소년인권위원회의 산하기관이든 독립된 기관이든 그 기관의 위상에 맞는 주무부처와의 협력관계의 형성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중앙청소년인권센터는 청소년인권에 대한 다양한 정책안을 개발하고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국가 정책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기구와 주무부처가 아닌 다른 행정부처와 깊은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만약,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가 중앙청소년인권센터의 지도·감독기관이 된다면, 중앙센터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생활터전이 시·군·구와 시·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주무부처와

도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중앙센터는 시·도청소년인권센터와 지역청소년인권센터와의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현재 청소년분야에 많은 공공기관이 있는데, 대부분의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위탁·수탁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중앙센터는 시·도센터를 지부의 형식으로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기존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시·도청소년종합상담실 그리고 시·군·구청소년상담실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직원 합동교육, 학술발표회, 각종 정보교환 등을 통해서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센터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인권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 청소년 혹은 인권과 관련된 각종 비정부기구와도 깊은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인권센터는 독자적인 힘만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인권센터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장려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인권을 배우고 가르치는 청소년인권캠프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시·도청소년인권센터

(1) 조직

시·도청소년인권센터는 청소년인권센터의 실용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중앙센터는 청소년과 부모 그리고 청소년지도자 등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청소년인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전국에 있는 시·도청소년인권센터와 지역센터가 할 일에 대한 표준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시·도청소년인권센터는 청소년과 부모, 교사와 청소년지도자 등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인권상담, 인권교육, 인권에 대한 정보운영 등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시·도청소년인권센터의 조직은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느냐 혹은 청소년단체 등의 부설기관으로 설립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진은 시·도청소년인권센터를 부설기관보다는 독립기관으로 설치하자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독립기관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시·도청소년인권센터도 중앙센터와 유사하게 인권상담, 인권교육, 정보운영에 역점을 두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중앙조직에 비교할 때, 인권정책의 개발보다는 이미 개발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크게 강조한다. 다만, 작은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장 밑에 인권실장을 두고, 실장 밑에 인권상담팀, 인권교육팀, 정보운영팀을 둔다.

소장의 자문기구로 ‘인권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인권상담, 인권교육, 정보운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인권상담전문위원’ 혹은 ‘인권교육전문위원’ 등으로 위촉한다.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두고, 관할 행정구역 시·군·구에 있는 지역청소년인권센터들의 협의체인 지역청소년인권센터협의회를 둔다.

(2) 인력

시·도청소년인권센터의 규모와 인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도단위 인구는 서울의 경우 천만명이 넘고 제주도의 경우 백만명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평균적으로 한 시·도에 300만명의 인구가 살고, 그중 청소년이 1/4가량이면 청소년은 약 75만명이다.

75만명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인권 센터를 설치해야겠지만, 시·도청소년종합상담실, 시·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의 규모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소장 1명을 포함하여 9~10명 수준이 적합하다. 소장 1명, 실장 1명, 3개팀의 각 팀장 1명과 최소한 팀원 1명(소계 6명), 그리고 행정요원 1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청소년인권센터의 인력은 중앙센터와 같이 청소년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률가,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인권운동가, 사회과 교사 등 전문인력으로 충원되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 부산, 광주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청소년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직원으로 채용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초창기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점차 충남, 전남, 강원 등 도지역으로 센터를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나중에 설립된 센터는 이미 운영중인 센터에서 훈련된 인력을 특별 채용하여 활용하면 인력난을 덜 수 있다. 특히, 센터의 소장은 전문성과 경력이 매우 중요한데, 신망있는 법률가나 대학교수를 소장으로 영입하여 센터의 위상을 정립한 이후에 현장에서 경험을 익힌 직원에게 그 직위를 물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상근인력의 전문성을 보충하기 위하여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각계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청소년인권에 관심있는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야 한다.

(3) 사업

시·도청소년인권센터가 수행해야 할 사업은 크게 인권상담사업, 인권교육사업, 인권정보운영사업 등이다. 그중 시·도센터가 역점 사업으로 실시해야 할 것은 인권상담과 인권교육이다.

인권상담은 인권침해사례를 호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대처

가 중요하다. 학교에서의 체벌, 부모에 의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고용주에 의한 체벌과 부당근로행위 등은 청소년에 대한 대표적인 인권침해사례이다.

따라서, 인권센터는 전화, 인터넷, 면접, 서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상담해야 한다. 주된 대상은 청소년이지만,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나 그 주변에 있는 친구가 대신 상담을 의뢰할 수도 있다. 상담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권상담을 전용으로 하는 전화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을 활성화시킨다.

인권상담은 상근직원만으로 부족할 것이므로 학부모, 교사,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인권상담교실’을 개최하여 자원상담원을 양성한다. 인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상담의 기법을 가르친 후에 자원봉사활동으로 인권상담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에 관한 또래상담교육을 시켜서, 청소년또래상담원으로 활용한다.

인권교육은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인권교육과 청소년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청소년의 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모와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관내에 있는 교육청과 협조하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인권교육계획’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희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때,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핵심적인 내용 등을 알려주고, 인권이 침해받기 쉬운 상황과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신고 혹은 상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준다.

시·도인권센터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을 직무연수의 하나로 실시한다.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인권과 좀더 관련이 깊은 교과목인 사회과, 도덕과, 윤리과 선생님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직무연수로 실시하고, 점차 그 대상을 다른 과목으로 확장시킨다.

인권교육이 학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인권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를 모아서 인권교육교사모임을 만들고 이들과 함께 인권의 관점에서 교과서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인권과 관련된 단원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학습하고, 인권을 신장시키는 민주적 학급운영과 학교운영의 모델을 개발한다.

인권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들을 설득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예컨대, 기차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의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인권을 고려한 보도방식을 습득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비행소년에게 변호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이 자기변론권과 변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 등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인권정보운영은 중앙센터 등에서 발간한 자료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모임에서 나온 자체 자료를 활용한다. 예컨대, 인권에 관심있는 교사들이 개발한 자료, 또래상담원이 경험한 사례에 대한 연구와 토론회 자료, 지역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연구, 인터넷으로 유통된 자료 등을 모아서 작은 자료집을 만든다. 시·도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리플렛을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인권센터를 접할 수 있게 홍보하고, 인권센터를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널리 알리며, 시·도인권센터의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를 연계해서 운영한다.

(4) 재원

시·도청소년인권센터의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는 국고 50%에 시·도비 50%로 하고,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시·도는 국고 70%에 시·도비 30%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도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하고, 인권센터는 자체 노력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예산은 1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소장은 3,500만원, 실장은 3,000만원, 팀장 3명은 2,500만원씩으로 7,500만원, 팀원 4명은 2,000만원씩으로 8,000만원, 그리고 행정요원 1명은 1,500만원, 그리고 일용 혹은 용역으로 쓰는 인건비로 1,500원을 책정할 때 인건비는 2억 5천만원이다. 전체 예산중에서 인건비의 비율을 50%, 운영비와 사업비를 50%로 보면 연간 예산은 5억원이고, 인건비의 비율을 60%, 운영비와 사업비를 40%로 보면 연간 예산은 4,167만원이다. 첫째의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시·도인권센터를 8월이나 9월에 개소하면 2억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

(5) 시설과 설비

시·도청소년인권센터는 별도의 건물을 건립하기 보다는 이미 지어진 시·도청소년수련관에 입주하거나 청소년상담실에 인접한 공간을 활용한다. 시·도청소년수련관이 생활권에 지어져 있다면, 비교적 공간적 여유가 있는 이곳에 시·도청소년인권센터가 입주한다.

물론, 시·도청소년인권센터가 시·도청소년수련관에 입주하면 대외적으로 수련관의 부설기관처럼 인식될 수도 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기관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시·도청 소재지에는 대체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쉼터 등이 협력관계가 약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에는 시·도대표수련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인권센터 등을 집중 배치해서 청소년

년에 대한 상담, 자원봉사, 인권상담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시·도인권센터의 시설과 설비는 사무공간, 독립된 상담실, 연수공간, 인권자료실 등이 있어야 하고, 일상업무와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와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인권센터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실 등과 한 건물에 입주할 경우에는 교육공간과 교육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청소년의 욕구에 대한 원스탑(one stop)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다.

(6) 협력관계

시·도청소년인권센터는 시·도센터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중앙센터에서 개발한 인권정책을 시·도센터에서 직접 실천하고, 중앙센터에서 개발된 인권상담의 기법, 인권교육의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시·군·구지역에 있는 지역센터의 욕구를 수렴해서 지역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갖고, 지역센터의 공통의 관심사를 중앙센터에 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개발하거나 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도청소년인권센터는 시·도청의 지원과 지도·감독을 받으면서도 상호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청소년인권에 대한 많은 사항들은 이미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과거의 관습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 많다. 시·도청이 청소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청소년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참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최근 청소년위원회 등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청소년대표의 선출이나 지도력훈련 등은 청소년인권센터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칙이나 선도규정은 학생 본인의 동의나 학생들의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규칙

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관행상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교칙을 준수하도록 강요받는다. 청소년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 교칙을 수정하기 위하여 시·도인권센터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할 수 있다.

인권센터는 정부기구 뿐만 아니라, 청소년단체,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여성단체, 노동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과 교류협력을 통해서 현안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최근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 임금착취의 문제는 노동운동단체와 협력하면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4. 지역청소년인권센터

(1) 조직

청소년인권센터가 일반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생활권에 위치해야 한다.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시·군·구단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청소년인권센터의 단위는 시·군·구에 있는 지역청소년인권센터이다.

그런데, 청소년과 부모의 상담욕구가 강한 청소년상담실조차 일부 시·군·구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인권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는 것은 요원하다. 본 연구진은 경기도에 있는 많은 시지역, 다른 도에 있는 인구 30만명이상의 시나 권역에 청소년인권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청소년인권센터는 독립된 조직보다는 기존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상담실의 부설기관으로 설치하고, 단체장이나 상담실장이 인권센터의 소장을 겸직하도록 조직을 설계한다. 지역인권센터는 인권상담, 인권교육, 정보운영을 기본 업무로 하되, 인권상담사업과 인권교육사업에 역점을 둔다.

지역청소년인권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상담과 인권교육에 관한 전문위원을 위촉한다. 인권센터의 운영에 청소년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만든다.

(2) 인력

지역청소년인권센터의 인력은 중앙이나 시·도와 달리 적합한 전문인력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경기도는 서울 주변에 위치하기에 청소년인권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대도시 주변지역을 제외하면 전문인력을 구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

지역청소년인권센터의 소장은 단체장이나 상담실장이 겸직을 하더라도 선임직원은 인권운동에 전문성과 열의가 있는 사람을 상근으로 뽑고, 평직원도 대학원 혹은 대학교에서 청소년인권 관련 전공을 한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센터 소장을 비상근으로 할 때 상근직원은 3명 혹은 적어도 2명이상은 되어야 조직의 형태를 '갖출 수 있다. 상근 직원을 2~3명을 쓸 경우에도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행정요원은 인권센터를 수탁한 단체의 행정요원이 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행정요원의 인건비의 일부는 인권센터에서 분담한다.

부족한 인력은 변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전문위원이나 전문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해당 지역 혹은 인접 지역에 있는 대학생이나 학부모 등을 자원봉사자로 발굴하여야 한다.

(3) 사업

지역청소년인권센터의 핵심업무는 인권상담사업과 인권교육사업에 둔다. 인권상담은 지역사회에서 익명성이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화상담과 인터넷상담 조차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인권상담은 개별 상담보다는 직원 혹은 자원봉사단이 학교, 교회 등 종교기관, 청소년단체 등 청소년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방문하여 인권에 대하여 집단상담을 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사례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지역청소년인권센터는 고발성이 강한 인권상담보다는 인권교육에 더 많은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지역교육청과 초·중·고등학교와 협조하여 센터의 직원 혹은 자원봉사자가 학교에 방문하여 하루 이내의 단시간 동안에 학생들에게 인권에 관한 기초정보를 알려주고 인권침해시에 인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는 것이다.

인권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 교사,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 청소년단체의 지도자 등에게 인권교육을 시키는 일이다. 성인에 대한 인권교육도 교재를 읽거나 강의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사례를 가지고 토론하는 방식이나, 성인들이 무심결에 침해하기 쉬운 인권침해 사례연구를 하는 일이다. 예컨대, 학교에서 흔히 일어나는 체벌을 줄이기 위해서 체벌 실태조사를 하고 발표하거나 체벌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는 것도 좋다. 교사와 학생이 역할을 바꾸어서 체벌과 관련된 역할연기를 하고, 체벌을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을 잘 지도한 사례를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도 좋은 학습방법이다.

(4) 재원

지역청소년인권센터의 재원은 국고에서 50%, 시·도비에서 25%, 시·군·구비에서 25%를 분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시·도센터의 경우에도 국고 70%, 시·도비 30%를 할당한 원칙을 준용하여서, 지역청소년인권센터의 재원은 국고 70%, 시·도비 15%, 시·군·구비 15%로 조성한다.

예산은 센터소장은 비상근으로 하여 활동수당 연 600만원을 지급하고, 3명의 직원 중에서 팀장급인 선임직원 1명은 2,500만원을 지급하며, 일반 직원 2명은 각 2,000만원씩 소계 4000만원을 지급하고, 행정요원의 임금을 900만원 범위에서 일부 분담한다. 이렇게 볼 때, 연간 인건비는 8,000만원이다. 지역센터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의 비중을 50%로 보면, 연간 운영비와 사업비를 합한 전체 예산은 1억 6천만원이다. 인건비의 비중을 60%로 보면, 전체 예산은 1억 3,333만원이 된다.

시·군·구 자치단체 중에는 청소년을 위하여 연간 1억 6천만원도 쓰기 어려운 곳이 많다는 현실에 비춰볼 때, 시·군·구는 청소년인권센터를 설치하기보다는 먼저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고, 인권상담과 인권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으면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시설과 설비

지역청소년인권센터는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기보다는 청소년상담실, 청소년단체 혹은 인권운동단체의 부설기관의 형식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설과 설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상근인 소장 1명과 상근직원 3명, 반상근 행정요원 1명을 포함한 4~5명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을 위한 공간 등은 센터의 수탁단체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6) 협력관계

지역청소년인권센터는 시·도청소년인권센터와 중앙센터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 등 공공기관, 그리고 다양한 비정부기구와도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아울러, 인권센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청소년상담실이 시·도센

터 혹은 지역인권센터의 협력기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지역상황은 해당 자치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다. 대도시에 인접한 지역은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와 함께 자원을 공유할 수 있고, 농어촌지역은 대도시와는 다른 측면의 인권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에 맞는 협력관계를 유연성있게 모색해야 한다.

5. 청소년인권센터 활성화 과제

기존 청소년인권센터가 몇 개 있지만, 정체성을 갖춘 청소년인권센터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중앙청소년인권센터, 시·도청소년인권센터, 지역(시·군·구)청소년인권센터의 설치·운영을 제안하였다.

아직 설치도 되지 않은 청소년인권센터의 활성화를 논의하는 것은 성급한 면이 없지 않지만, 본 연구진은 청소년인권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시·도청소년인권센터가 시급히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진은 청소년인권센터로 중앙센터, 지역센터와 함께 시·도센터를 제안하였는데, 청소년인권센터의 핵심사업을 인권상담, 인권교육, 인권정보운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접근성과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 시·도청소년인권센터를 제일 먼저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청소년인권센터의 조직, 인력, 재원, 사업 등을 갖춘 시·도센터를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한 후에 점차 도청 소재지로 확대시킨다.

둘째, 정부는 공공청소년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단체와 인권운동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청소년인권센터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시·도청이

설치하는 인권센터를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직접 설립한 인권센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청소년인권센터를 수탁하지 않은 민간단체도 소신을 갖고 인권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는 예산이나 청소년육성기금 등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민간인권센터에 대한 지원은 직접 예산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교육훈련의 기회를 늘리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 등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셋째, 정부와 민간이 협력관계를 형성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부가 민간의 활동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가 민간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민간단체가 연합하여 인권활동가에 대한 교육훈련을 갖고자 할 때, 교육비를 전액 혹은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체 건물에 회의실이 있고, 공무원 연수원 등 공공건물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을 민간단체가 교육훈련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할 때, 무료 혹은 실비의 반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운동단체들이 공동으로 교육자료집을 발간하거나, 활동의 결과물을 출판할 때 출판비를 보조하거나, 그 책을 대량 구입하여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방식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고용촉진사업으로 인턴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민간 청소년인권센터에 인턴을 파견하면 사실상 인건비를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넷째,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한정될 수밖에 없기에 청소년인권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기관을 확보해야 한다.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사회복지지원법인이 민간의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도 한다. 청소년인권운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인권재단과 같은 지원법인이 발족되어서 청소년단체나 인권운동단체의 인권활동을 지원하였으면 한다. 각 민간단체는 단체의 설립취지에 맞고 청소년의 문화에 맞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을 공모해서 청소년인권재단의 지원

을 받는다면 청소년인권사업의 양과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다섯째, 중앙센터, 시·도센터, 지역센터가 고루 설치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인 청소년인권위원회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각 국가에게 아동인권의 총괄기구를 설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한국은 아동업무와 청소년업무가 분리 되어 있지만, 필요하다면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혹은 아동청소년권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하위기관으로 중앙아동·청소년인권센터(혹은 중앙청소년인권센터)를 설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청소년인권위원회는 국내에서 청소년인권의 총괄기관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다른 나라와 유엔 등과 협력할 때 대외 협력의 창구가 된다.

여섯째, 청소년인권이 항구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인권에 대한 법령과 제도의 정비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관련된 생활양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유유서를 연령차별로 인식하기보다는 미풍양속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서 발표할 수 있는 한국청소년권리학회의 창립이 필요하다. 현재는 한국아동권리학회가 부분적으로 소임을 하고 있지만, 아동권리학회는 영유아를 포함하여 다루기 때문에 생존권과 보호받을 권리에 좀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청소년의 참여권과 발달권은 다소 소홀히 다루었다. 청소년권리학회가 창립되어 활동한다면 청소년의 발달권과 참여권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인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대안적인 생활양식을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획기적으로 신장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를 정당화시키는 민법과 초·중등교육법등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본법령을 개정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령 등을 제정해야 한다. 법령의 정비만으로 청소년의 인권이 신장되지는 않지만, 법령의 정비는 청소년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 이점에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이 통과되고,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며, 적절하고도 충분한 사업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시·도청소년인권센터의 설치·운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인권의 신장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순원(2000). 평화·인권·교육. 서울: 한울아카데미.
- 강순원·임현묵·이재분(2001). 인권교육과 평화교육 국가 정책 방안. 서울: 아우내 미래문화연구원.
- 곽노현(1998). 국민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한상진 편. 현대사회와 인권. 나남출판.
- 구로건강복지센터 외(2002. 6. 1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민간단체 보고서.
- 국제사면위원회 저·이용교, 이희길 역(1997). 인권교육의 기법 - 청소년을 위한 인권학습 자료집. 서울: 인간과 복지.
- 국제아동복지연맹홍콩지부·한국지역사회복지회 역(1999). 유엔아동권리협약 훈련교재. 서울: 한국지역사회복지회.
- 국제인권봉사회·한국인권단체협의회(1994). 유엔과 인권-유엔인권제도 교육 자료집.
- 길은배·이용교·김영지(2001).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각(1994). 헌법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지·이용교·안재희(2001). 청소년 권리신장 정책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정래(1998). 권리이론과 교육권. 교육과학사.
- 김정래(2000). 아동권리협약의 정신과 그 발전적 이행을 위한 한 논의, 아동권리연구 제4권 제1호, 한국아동권리학회.
- 김정래(2002). 아동권리향연. 서울: 교육과학사.
- 김정욱(1999).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서울: 한신대학교 민중교육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김중섭 편(2001). 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 2001 진주지역 사례연구. 서울: 오름.
- 김중섭 편(2002).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 진주지역 사례연구. 서울: 오름.
- 김형욱(2003). 학교에서의 아동참여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사쓰나이 기타 소학교의 교과외 활동을 중심으로. 제 11회 월례발표회 자료집. 한국아동권리학회.
- 김혜숙·김정래·고전(1999).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대한민국 정부(1999. 11).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
- 대한민국(2003). 제2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CRC/C/70/Add.14)에 대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문제제기(List of Issues-CRC/C/Q/REP/CO/2)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서면답변.
- 류은숙(199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에서 본 우리나라 사회권 보장 - 정부최초보고서의 분석.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 논문.
- 문화관광부(2001).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2002).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2002).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수립 연구(2003~2007).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1992). 한국인권의 실상 -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 역사비평사.
- 박종렬(1999). 청소년인권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방안. 한국청소년학회 편,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인가 자율적 주체인가?.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변용찬·서문희·배화옥(1998).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조치: 아동권리조약에 관한 2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심정보 · 이미식 · 이일권(2002).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 연구. 부산 : 부산교육연구소 · 국가인권위원회.
- 푸른부천21 실천협의회(2002). 부천, 가와사키시 아동권리 조례 간담회 자료집(2002. 12. 23). pp.28-50.
- 브라이언 버디킨(1998). 국민인권위원회는 왜 필요한가, 한상진 편, 현대사회와 인권. 나남출판.
-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1998). 한국 인권교육의 진로. 서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
- 성공회대 인권평화연구소 편(2002). 동아시아 인권의 새로운 탐색. 서울: 삼인.
- 스기하라 야스오 저 · 석인선 역(1995). 인권의 역사. 서울: 한울.
- 어린이 · 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1995). 유엔 어린이 · 청소년의 권리조약에 따른 민간단체보고서.
- 어린이 · 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편(1997).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 - 유네스코와 세계 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서울: 오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역(2000). 아시아의 인권교육 - 호주 · 인도 · 홍콩. 서울: 사람생각.
-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7).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오름
- 이기범(1997). 유엔 어린이 · 청소년 권리조약의 원리와 이행방안. 아동권리연구 창간호, pp.23-34.
- 이기범(1997). 유엔아동권리 조약의 이행을 위한 민간단체와 전문가의 역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실무회의 참가기, 아동권리연구 제1권 제2호, 한국아동권리학회.
- 이기범(1999).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 2차 보고서의 평가와 향후 과제 연구. 아동권리연구, 제3권 제2호, pp. 69-83.

- 이명준·류재택·정우탁·임현묵(2000). 인권교육 체계화 방안 연구.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석호(1999). 학교 인권교육 교육과정 구성방안에 관한 연구: 초등 사회과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광(2000). 학생인권 신장 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용교·이희길 역(1997). 인권교육의 기법. 인간과 복지.
- 이용교(1999). 아동권리 지킴이 프로그램, 한국아동권리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
- 이용교(1999). 청소년인권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방안. 한국청소년학회 편,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인가 자율적 주체인가(pp. 161-181).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이용교·고성혜·이희길(1996). 청소년인권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용교·김영지·임지연(2000).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 동향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재연(1997) 각 나라의 아동권리협약 실천 상황. 아동권리연구 제1권 제2호, pp. 5-20.
- 이종원·주동범·서정아(2000).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1999). 인권교육 길잡이. 서울: 사람생각.
- 인권운동사랑방 역(200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 2차보고서 심사회의 녹취록.
- 정기원·오미영(1994).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희욱·길은배·김정래(2000). 권리에 대한 청소년의식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정태수(1991). 아동의 권리협약 - 청소년의 권리. 예지각.

- 조용환(1999). 알리바이 인권기구? : 법무부 “인권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대한변호사협회.
- 조상희(1999).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재정비.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자료집). 한신대학교 민중교육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주희중·이명숙·박병식·이백철(1998). 청소년 인권의 현황과 대책.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천정웅(1999). 국제기구의 청소년인권 발전노력과 주요국 정책 동향. 최윤진 외, 청소년인권 정책 연구(pp.79-114)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천정웅·김영지·김경호(1999). 청소년이 알아야 할 인권이야기.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청소년육성위원회·문화관광부(2003. 11).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서울: 청소년육성위원회.
- 최윤진 편저(1998). 청소년의 권리. 서울: 양서원.
- 한국아동권리학회(1999. 11). UN아동권리협약 1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 한국아동권리학회(2001). 한국의 아동지표. 서울: 학지사.
- 한국아동권리학회(2002. 4). 아동권리 모니터링 -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1992).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적 불평등.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학회 편(1999).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인가 자율적 주체인가? - 청소년 인권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한국청소년학회 편(1999). 청소년인권 정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호리오 테루히사(1999). 인권사상의 발전과 인권교육, 인권교육 활성화

를 위한 토론회(자료집), 한신대학교 민중교육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Angel, William D.(Ed.)(1995). *The international law of youth rights - source documents and commentary*. Lond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ARRC(1994). *Shopping List of Techniques in Teaching Human Rights*. ZAMORA press.

ARRC(1995). *Human Right Education : A Survey of Ongoing Initiativ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hailand: Green Frog Publishing.

ARRC(1995). *HRE PACK*. Bangkok, Green Frog Publishing.

Brown Margot ed(1996). *Our World, Our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United Kingdom.

Council of Europe(2002). *Access to social rights in Europ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ouncil of Europe(2002).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ouncil of Europe(2002). *Proceedings - European Ministerial Conference on Human Right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ynthia, P.C. (1996). *Monitor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 Non-party state: The United States*. Monitoring Children's Rights, pp. 475-490.

Fache,W. (1996). *How to Develop a articipatory,Comprehensive and Coherent Youth Policy?* Monitoring Children's Rights, pp. 263-279.

- Franklin, Bob and Hammarberg, Thomas(Eds.)(1995). *The handbook of children's rights - comparative policy and practice*. New York: Routledge.
- Freeman, Michael(Ed.)(1996). *Children's Rights : A comparative perspective*. Aldershot, Brookfield USA, Singapore, Sydney: Dartmouth.
- Hammarberg, T.(1993). The Work of the Expert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www.unicef.org/crc/proced.htm>.
- Hart, R. A. (1992). *Children's Participation : From tokenism to citizenship*. UNICEF
- Hart, R. A.(1997). *Children's participation :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are*.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Ltd.
- Lansdown. G.(2003). *Promoting children's Participation in Democratic Decision- Making*. unicef.
- Rayner, Moira(1995). Children's rights in Australia. In Bob Franklin(Eds.), *The handbook of children's rights*(pp. 188-199). New York: Routledge.
- Rosalind Ekman ladd(1996). *Children's Rights Re-Visioned; Philosophical Readings*. Wadworth Publishing Company.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03. 1).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Republic of Korea*. Unpublished report.
www.unhcr.ch/html/menu2/6/crc/doc/session32.htm.
-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1999). *Youth Participation Manual*.
- UNESCO(1993). *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Education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Canada.

UN(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inter, M(1995). *Children as Fellow Citizens*. New York : Radcliffe
Medical Press Oxford.

二階堂陽一外(1981). 生活指導、大成出版社、152.

子どもの人権刊行委員会(1997). 子どもの人権大事典、エイデル研究所,
325~326.

喜多明人(2002). 子ども参加支援論の構築と課題—子どもの権利条約時
代の子ども実践.

平井節子(1999). 子どもは大人のパートナー、明石書店、19

静岡県藤枝市立高州南小學校、感動あ授業と生きる力—生活指導の機能
が生きる、文教書院、37.

www.youthassembly.org

www.crin.org

www.ncylc.org.au

www.youthlawcenter.com

www.oau-creation.com

www.icrg.org

www.europeanchildrensnetwork.org

부 록

1. 청소년용 설문지
2. 청소년지도자용 설문지
3. 청소년인권센터 연락처

공 백

청소년용

청소년권리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 관련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청소년 권리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권리신장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에 청소년 여러분의 요구와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바를 충분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응답에 따른 비밀이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또한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 6.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137-715)

연구진 : 김영지 · 이용교 · 김세진

(☎ 2188-8846, 8857 FAX : 2188-8819, yjkim@youthnet.re.kr)

1. 가정에서의 청소년 권리에 대해 **귀하의 상황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의 부모는 나를 비하하는 말을 자주 하신다	①	②	③	④
2) 가정에서 체벌을 자주 받는다	①	②	③	④
3) 가정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가정에서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5)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적 학대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다른 형제·자매들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7) 집에서 나는 무시당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8) 가정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9) 나의 인생은 부모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의 부모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돌봐 주신다	①	②	③	④
11) 나의 부모는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교육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12) 나의 부모는 내가 아플 때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며 건강을 잘 돌보아 주신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가정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 받는다	①	②	③	④
14) 나의 부모는 집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를 참여시킨다	①	②	③	④
15) 나의 부모는 평소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16) 나의 부모는 내 개인적인 생활과 비밀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가정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2. 학교에서의 청소년 권리에 대해 귀하의 상황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집이 가난한 학생은 학교에서 차별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3) 학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차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4)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차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5)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자주 하신다	①	②	③	④
6) 학교에서 나는 무시당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7) 학교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8) 우리 학교의 교칙은 학생들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9) 교칙을 제정하는데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0) 소지품 검사나 두발과 복장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11) 보충학습 등 입시공부를 위해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게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2)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학생자치활동이 보장되고 있다(학생회, 동아리활동 등)	①	②	③	④
13)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된다	①	②	③	④
14) 학교에서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15) 학교에서 다양한 여가·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6) 벌이나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을 변호할 기회 등 적절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17) 안전사고로부터 나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18) 학생들의 균형있는 영양상태와 건강을 고려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19) 장애학생을 배려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으로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20) 학교에서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3. 우리사회에서 다음의 청소년 권리가 어느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느끼는지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매우 보장	보장되는 편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1) 자신의 감정, 의사,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	①	②	③	④
2)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3)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	①	②	③	④
4)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나 환경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①	②	③	④
5)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	①	②	③	④
6) 자신의 사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	①	②	③	④
7) 아동·청소년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권리	①	②	③	④
8)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9) 부당한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10) 적절한 절차(자신을 변호할 기회 등)에 따라 처벌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11) 약물남용이나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	①	②	③	④
12) 신체, 정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약품·시설·장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13)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	①	②	③	④
14)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	①	②	③	④
15)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①	②	③	④
16) 휴식과 다양한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과 공간,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참여할 권리	①	②	③	④
17) 또래 친구들과 사귀고 모임에 참가할 권리	①	②	③	④

문 항	매우 보장	보장되는 편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18) 차별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	①	②	③	④
19) 개인차와 연령에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20)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①	②	③	④
21) 부당하게 시키는 일이나 유해한 노동,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22) 건강과 의료보장을 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23)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24) 자신의 개인 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①	②	③	④
25) 청소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	①	②	③	④
26)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존중받고 침해받지 않을 권리	①	②	③	④
27)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단체를 만들고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권리	①	②	③	④
28) 남녀 성별차이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②	③	④

4. 아래의 청소년권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이나 상태와 가장 가까운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유엔 아동·청소년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청소년들에게 「의견표명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①	②	③	④
4) 청소년들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청소년들은 아직 완전한 자립능력과 권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권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인권운동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7) 학생이 잘못했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	①	②	③	④
8) 수업시간에 소지품, 두발, 복장 검사 등을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9) 어떤 아이들은 왕따 당해 마땅하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청소년으로서의 나의 권리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분명하게 시정을 요구한다	①	②	③	④
12)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3) 청소년들에게 의사결정권과 참여권을 주어도 청소년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를 것이다	①	②	③	④
14)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나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5) 청소년으로서의 나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 한 홍보물(팸플렛 등)을 받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6) 대중매체는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 하하는 내용을 많이 보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7)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권리가 있 다는 인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18) 근로청소년들은 어려운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일한만큼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9)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은 임금체불이나 초과 노동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나 교육행정정보시 스템(NEIS)의 내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1) 나는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위한 청소년자 치기구인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의회' 활동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5. 전반적으로 우리사회의 청소년 권리 수준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보장받고 있다
- ② 잘 보장받고 있는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약간 침해당하고 있다
- ⑤ 매우 많이 침해당하고 있다

6. 청소년의 권리수준이 열악하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 부족
- ② 청소년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 부족
- ③ 입시제도 및 과도한 학습과제
- ④ 청소년을 미숙하고 통제 받아야할 존재로 보는 성인 중심적 사고
- ⑤ 청소년의 권리행사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프로그램 부족
- ⑥ 기타()

7. 청소년 권리신장 방안의 효과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매우 효과 있음	효과 있음	효과 없음	전혀 없음
1) 학교운영과정에서의 학생의견 수렴 및 반영	①	②	③	④
2) 청소년의 자치활동 강화	①	②	③	④
3) 학급당 인원 감축	①	②	③	④
4)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	①	②	③	④
5) 교칙 및 규칙 제정·개정예 청소년 참여보장	①	②	③	④
6) 학업성적 위주의 학생평가 탈피	①	②	③	④
7)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	①	②	③	④
8) 청소년대상 인권교육 실시	①	②	③	④
9) 청소년들에게 민주적 사고방식 교육	①	②	③	④
10) 인성교육의 확대	①	②	③	④
11) 학생에 대한 교사의 언행 주의	①	②	③	④
12) 교사와 학생의 대화 시간 갖기	①	②	③	④
13) 교사, 청소년지도자 대상 청소년인권교육 실시	①	②	③	④
14) 청소년들의 자기 권리 주장능력 강화	①	②	③	④
15) 홍보채자를 발간하여 가정, 학교, 관계기관 등에 배포	①	②	③	④
16)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비디오나 TV프로그램 등 영상물 제작·보급	①	②	③	④
17) 청소년권리 주제의 문화프로그램과 행사 개최	①	②	③	④
18) 10대 청소년에게 선거권 부여	①	②	③	④
19)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청소년 조직 구성 (인터넷상의 커뮤니티 등)	①	②	③	④
20) 청소년인권센터나 청소년상담실을 충실히 운영	①	②	③	④
21) 청소년 권리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한 법 제정	①	②	③	④
22) 가정에서 부모 자녀간 대화시간을 많이 갖는 것	①	②	③	④
23)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적 언행 조심	①	②	③	④
24) 가정에서의 체벌 금지	①	②	③	④
25) 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대 강화	①	②	③	④
26) 청소년 인권에 관한 부모교육 실시	①	②	③	④

8. 청소년권리 신장을 위해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제외하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어리다고 청소년을 무시하는 어른들 인식의 변화
- ② 청소년 관련 법·제도의 개선
- ③ 청소년 권리에 대해 교육·상담할 수 있는 기구(청소년인권센터 등) 운영
- ④ 청소년 및 청소년 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⑤ 학생자치활동 등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 확대
- ⑥ 기타()

9. 만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선거권 부여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 외국의 경우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점차 16세 하향화 논의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6세 ② 17세 ③ 18세 ④ 19세 ⑤ 현재 그대로 유지

10. 지방자치제 실시로 주민들은 자신들을 대표하여 지역운명을 헤나갈 ‘지방의회 의원’(시의원, 구의원 등)을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2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지방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몇 세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8세 이상 ② 20세 이상 ③ 23세 이상 ④ 현재 그대로 유지

다음은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청소년인권신장을 위해 일하는 청소년인권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 청소년인권신장 단체 예 : 광주청소년인권센터, 충남청소년인권센터, 익산청소년센터, 준비위, 부산 I & C 청소년인권평화센터, 울산청소년인권센터, 대전청소년인권센터(준), 홍사민청소년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웹네스터 청소년인권교육, 다산인권센터, 일하는청소년인권센터, 등

11.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11-1, 11-2에 답하세요 ② 아니오 → 11-3에 답하세요

11-1.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 ① 학교 ② 가정 ③ 인권관련 기관·단체 ④ 기타()

11-2. 인권교육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조금 도움이 되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1-3. 기회가 된다면 인권교육을 받아볼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2. 청소년 여러분의 권리보장을 위한 단체나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3.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4. 청소년인권교육, 인권상담 및 해결 등 청소년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수행할 기관으로 '청소년인권센터' 설립 필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조금 필요하다 ③ 잘 모르겠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5 '청소년인권센터'가 설립된다면 인권센터에서 수행할 아래 활동들의 필요성은 각각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매우 필요	필요 하다	필요 하지 않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1) 청소년인권 침해사태에 대한 상담 및 대처	①	②	③	④
2) 인권에 대한 조사연구와 토론회 개최	①	②	③	④
3) 인권침해사태 모니터링활동	①	②	③	④
4) 인권동아리활동의 지원(또래인권지킴이 등)	①	②	③	④
5) 청소년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시	①	②	③	④
6) 청소년지도자와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①	②	③	④
7) 인권교육지침서 개발·보급	①	②	③	④
8) 인권정보자료실의 운영	①	②	③	④
9) 국내외 유관 단체와의 협력사업	①	②	③	④
10) 청소년인권신장을 위한 홍보·캠페인	①	②	③	④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8. 당신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19. 당신의 학급과 학년은?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①	②	③
일반계 고등학생	④	⑤	⑥
실업계 고등학생	⑦	⑧	⑨

20. 당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행정구역은?

① 대도시(특별시·광역시) ② 중소도시(도청소재지나 시) ③ 군·읍·면

21. 여러분 가정의 경제수준은?

① 아주 잘사는 편 ② 잘 사는 편 ③ 보통 수준
④ 못사는 편 ⑤ 아주 못사는 편

22. 여러분의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아주 잘하는 편 ② 잘 하는 편 ③ 보통 수준
④ 못하는 편 ⑤ 아주 못하는 편

설문조사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소년지도자용

청소년권리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 관련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전국의 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권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권리신장을 위한 '청소년인권센터' 설치·운영이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 제시됨으로써 그 동안 일부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청소년인권센터'의 활성화 계기가 마련된 바, 청소년지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청소년지도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하신 후 반송용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발송, 또는 팩스(02-2188-8819)를 이용하여 7월 15일(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설문지가 더 필요한 경우 복사하여 사용 후 팩스로 회신
- ▶ 충실히 응답해주신 기관 50곳을 추첨하여 본원에서 발간한 「인권교육의 기법」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2003. 6.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137-715)

연구진 : 김영지 · 이용교 · 김세진

(☎ 2188-8846, 8857 FAX : 2188-8819, yjkim@youthnet.re.kr)

1. 다음은 청소년권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청소년권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이나 심태와 가장 가까운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유엔 아동·청소년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청소년들에게 「의견표명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①	②	③	④
4) 청소년들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청소년들은 아직 완전한 자립능력과 권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권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인권운동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7) 학생이 잘못했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	①	②	③	④
8) 수업시간에 소지품, 두발, 복장 검사 등을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9)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0) 청소년들에게 의사결정권과 참여권을 주어도 청소년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를 것이다	①	②	③	④
11) 대중매체는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하하는 내용을 많이 보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위한 청소년자치기구인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의회' 활동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0. 다음은 청소년지도자의 권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지도자의 권리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중요	중요 하다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남여 성별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②	③	④
2) 직급이나 서열, 연령 등의 이유, 또는 기타 다른 기준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②	③	④
3) 예결산, 인사, 조직, 행정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나의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①	②	③	④
4) 청소년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해 상급자(또는 상급기관)로부터 나의 고유한 교육관을 지킬 수 있는 권리	①	②	③	④
5) 내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업무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공문, 출장, 설비나 교구 채택료, 각종 계약 건 등)	①	②	③	④
6) 청소년행정당국이나 조직 관리자에게 청소년지도활동에 필요한 지원(기자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①	②	③	④
7) 건강·의료에의 권리	①	②	③	④
8) 적절한 휴식과 문화예술활동의 권리	①	②	③	④
9) 임금수준 현실화 등 기본적 생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10) 다양한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보장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11) 청소년지도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보장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12) 근무기관(단체) 내에서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권리	①	②	③	④
13)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동아리모임, 단체가입 및 활동 등)	①	②	③	④
14) 근무기관(단체) 외의 사회문제를 포함한 공공의 쟁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①	②	③	④

21. 현재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지도자의 권리 수준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보장받고 있다
 ② 잘 보장받고 있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침해당하고 있다
 ⑤ 매우 많이 침해당하고 있다
22. 청소년지도자의 권리신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23. 시민운동단체나 인권운동 관련단체(앰네스티 등)에 회원으로 참여하시거나 후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4. 귀하께서는 청소년 자치활동(동아리활동, 청소년자치위원회, 수련시설청소년운영위원회 등)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후원하시는 편입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5. 기회가 된다면 청소년 인권관련 프로그램(인권침해사례 모니터활동·인권 동아리활동·인권캠프 등)을 운영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26. 당신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7. 귀하의 연령은? 만 ()세
28. 현장경험 경력은? 총 ()년 ()개월
29. 전문가자격증을 소지하신 경우,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고른 후, 구체적으로 몇 급 자격증인지 써주십시오.
 ① 청소년지도사 ()급 ② 청소년상담사 ()급
 ③ 사회복지사 ()급 ④ 교사 ⑤ 기타 ()
30. 현재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① 청소년단체 ② 생활권수련시설 ③ 자연권수련시설
 ④ 청소년상담기관 ⑤ 청소년자원봉사센터 ⑥ 사회(인권)단체
 ⑦ 기타 ()
31. 현재 거주하고 있는 행정구역은?
 ① 대도시(특별시·광역시) ② 중소도시(도청소재지나 시) ③ 군·읍·면
32. 근무지는 어느 지역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남
 ⑬ 전북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설문조사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소년인권센터 연락처

구 분	주 소	연락처	홈페이지
충남 청소년 인권센터	천안시 원성동 543-4 천안 신희동 부지점 3층	041) 554-2000 Fax 556-8704	www.nettore.or.kr
홍사단 청소년 인권센터	종로구 동숭동 1-28 (3층)	02) 3672-6262 Fax 3672-6263	www.yka.or.kr (인권센터사업은 2001년 중단됨)
광주 청소년 인권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가 19번지	062) 234-0086 Fax 234-0076	www.yrights.or.kr
부산 청소년인권 평화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2동 1-116번지 5층	051) 441-5004 Fax 465-0706	www.inc.or.kr
군포일하는 청소년 인권센터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10-7 유일빌딩 5층	031) 453-8614 Fax 453-8613	http://kpymca.or.kr
울산 청소년 인권센터	울산광역시 무거동 1185-4	052) 247-3520~3 Fax 247-7520	www.ulsywca.or.kr
익산 청소년 인권센터	전북 익산시 영등 동 856-1	063) 835-1391 832-9400 Fax 832-9494	www.iksanymca.or.kr
인권운동 사랑방 인권교육실	서울시 종로구 명 륜동 2가 8-29 3층	02) 741-5363 Fax 741-5364	www.sarangbang.or.kr
다산 인권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 달구 원천동 81-6 법전빌딩 313호	031) 213-2105 Fax 215-4395	www.rights.or.kr

공 백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필진 ◆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 자문진 ◆

권해진 (전)홍사단 청소년인권센터 담당자
김권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장
김나영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영순 충남청소년인권센터 부장
김영원 울산청소년인권센터 담당자
김은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 사무관
박동련 부산 I&C 청소년평화인권센터 담당자
박진 다산인권센터
박진용 무등청소년회 과장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연구소
손의숙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연구부장
송원찬 다산인권센터
신건석 문화관광부 청소년정책과 사무관
심성보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유병훈 익산청소년인권센터 담당자
이운기 광주시 광산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팀
전성민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소장
정옥경 충남청소년인권센터 담당자
정희욱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채상미 광주청소년인권센터 담당자
최성학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운영과장
허찬 군포일하는청소년인권센터 담당자

공 백

2003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03-R01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
-청소년 의복문화와 소비-(맹영임·구정화)
- 03-R02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II
-청소년 음식문화와 소비-(조혜영·김선아)
- 03-R03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III
-청소년 소비생활 문제와 대책-(윤철경·조아미·
백지숙·유혜림)
- 03-R04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 -정책제안 요약집-(임지연)
- 03-R05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실태연구(이종원·유승호)
- 03-R06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김정주·김용대·성기원)
- 03-R07 청소년의 사이버커뮤니티 참여 및 이용실태 연구
(황진구·권태희)
- 03-R08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최원기·전명기·이
주연)
- 03-R09 중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전경숙·노재봉)
- 03-R1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폭력 대책 연구
(이민희·임영식·이진숙)
- 03-R11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길은배·문성호)
- 03-R12 청소년 리더십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우정자·김은경·김형주)
- 03-R1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김영지·이용교·김세진)

- 03-R14 청소년 정보소의 실태 조사 연구(김경준·최선희)
- 03-R15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조사개요보고서
(이경상·김진호·오해섭·김희진)
- 03-R16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과 함양방안 연구(김선미·남경희)
- 03-R17 가족복귀 가출청소년들의 귀가요인 분석 및 가출청소년지도 방안 모색(방은령)
- 03-R18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정책적 함의(문성호)
- 03-R19 지방정부의 청소년예산결정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김영호)
- 03-R20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유형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통제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김희화)
- 03-R21 청소년 진로개발을 위한 방향성 탐구(최동선)
- 03-R22 청소년의 사이버일탈의 원인에 관한 경험연구(이성식)
- 03-R23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노혁)
- 03-R24 거주지역환경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전신현)
- 03-R25 폭주청소년의 위험행동과 예방에 관한 연구(김문섭)
- 03-R26 자살사이트의 생성 및 이용, 그리고 운영: 심리적측면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문성원)
- 03-R27 부모를 위한 청소년지도 가이드(신인순 외)
- 03-R28 한·중·일 청소년 정책비교 연구(이종원)
- 03-R29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과 진로선택 경향 연구(김선미)
- 03-R30 2003전국청소년 자원봉사 주관사업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1 2003 대한민국 청소년봉사상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2 자원봉사 선진지 연수보고서(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3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매뉴얼(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4 일본자원봉사 지원센터 활동사례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5 한중정책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6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수립 공청회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7 청소년 삶의 질 향상 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8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김영한·서정아)
- 03-R39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재분·박효정·현주)
- 03-R40 일탈·범죄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김은경·이동원)
- 03-R41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손유미·김상호·조정아)
- 03-R42 귀국 및 탈북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조한범·이금순·이우영·전효관)
- 03-R4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춘화·윤옥경)
- 03-R44 서현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 비용산정에 관한 연구(김영한·김진호·김갑성)
- 03-R4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연구(길은배·한만길·최영표·강영혜·오해섭·김학성)
- 03-R46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분석 및 취업지원 방안(이경상·조혜영·박창남)
- 03-R47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교육시설 특성화방안(김정주·김진호·소병조)
- 03-R48 월드컵현상을 통해 본 신세대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청소년정책의 과제(이종원·이경상·김종길)

- 03-R49 청소년 책읽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이춘화·서정아·김상현)
- 03-R50 선진국형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김영지·전경숙·김민)
- 03-R51 청소년정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9회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수상집 모음집-
(황진구·강명숙·임지수)
- 03-R52 2003특성화 수련거리개발[3]-청소년마을체험
(윤철경·이은경)
- 03-R53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6]-국제언어캠프
(김선미·김호숙)
- 03-R54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7]-환경음식만들기
(서정아·최경학)
- 03-R55 청소년 단체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맹영임·이광호·김민·임연희)
- 03-R56 연령대별 외국청소년 정책비교 및 정책 대안
(윤철경·이상오·황성하·서수경)
- 03-R57 청소년 개발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김진호·송병국·임영식·김진화·오혜섭·윤명희·정효진)
- 03-R58 선진 각 국의 청소년 보호체계 사례조사
(우정자·김문섭·최종혁)
- 03-R59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함병수·임지연·김종두)
- 03-R60 청소년 국제교류 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조혜영·최원기·임지연)
- 03-R61 청소년수련시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황진구·김경준·이춘화·최창욱)
- 03-R62 인천시 청소년수련관 운영방식 연구(김경준·함병수·김영한·최창욱)

연구보고 03-R 1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인 쇄 2003년 12월 15일

발 행 2003년 12월 15일

발 행 처 :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 행 인 : 권 이 중

등 록 : 1993. 10. 23 제21-500호

인 쇄 처 : 선명인쇄주식회사

전화 02) 2268-4743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자료실)

ISBN · 89-7816-466-8

공 백

연구보고 03-R 1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김영지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김세진 (한국청소년개발원 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공 백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인권센터의 운영 현황과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청소년인권 전담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모색하고, 청소년인권센터를 확대 설치·운영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그 동안 본원의 청소년인권 분야 연구(1996 청소년인권보고서, 1999년 국내외 청소년인권 동향파악 연구, 2000년 권리의식조사, 2001년 인권정책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의 연장선상에서 2003년도에는 인권전담기구를 통한 실질적인 인권신장 노력의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 모색에 초점을 두어 수행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실태 파악, 외국의 청소년인권 신장 활동 및 인권기구·단체 사례분석, 청소년인권과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설문조사,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제시 등의 연구내용이 수행되었다.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최초 구상은 1996년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인 '청소년인권보고서'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공적 대응, 청소년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국제협약의 준수 등이 청소년인권센터의 설립 배경으로 제시되었으며, '청소년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청소년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의 연구, 청소년인권 교육자료의 개발, 청소년인권 상황에 대한 감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공공기관으로 청소년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후 설립된 청소년인권센터들은 사업내용과 역할에 있어서는 위 보고서가 제안하고 있는 운영모델을 따르고 있으나, 대부분 청소년단체·기관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 부설기구로 또는 하나의 사업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지원을 받는 기관이 아닌 민간차원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현황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인권센터는 충남(1999년 처음 설립), 광주, 부산, 경기도 군포시, 울산, 익산시 청소년인권센터 등 6개 정도이며, 기존 인권단체 중 인권운동사랑방과 다산인권센터에서 청소년인권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99년 운영되었던 홍사단청소년인권센터는 자체문제로 2001년 중단). 이들 인권센터는 기존 청소년단체(YMCA, YWCA, 부산 I&C 등)나 청소년상담실 등에서 담당자 1~2인을 두고 자체 예산이나 외부 프로젝트 공모 등을 통한 재원 조달로 청소년인권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인권교육, 인권상황에 대한 연구조사 및 자료개발,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 캠페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인권센터는 사회적 인식부족,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인권침해 사례 접수 및 처리 권한 부족, 인권 프로그램 및 자료 부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자치단체의 안정적 지원을 받는 곳은 광주청소년인권센터 한 곳뿐임). 이들은 전체적으로 운영 역사가 1~2년 정도로 짧기 때문에 실험적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설립·운영 중인 6개의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실태와 어려움에 근거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인력과 재정지원, 청소년 인권 프로그램에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전략 모색, 인권 전문지도자 양성 및 지속적인 교육 실시, 청소년 인권관련 자료 개발·보급, 청소년인권 침해사례 접수와 처리과정에서의 실질적 권한 보장 및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의 청소년 인권신장활동과 인권기구 운영 사례를 알아보았다. 영국, 노르웨이, 미국, 일본의 청소년인권 현황과 유럽의 청소년참여권 신장 정책 검토하고, 아동·청소년 ombudsman기구로서, 벨기에 아동권리위원회, 캐나다 ombudsman사무소, 덴마크 아동위원회, 프랑스 아동ombudsman, 마케도니아공화국 아동ombudsman, 뉴질랜드 아동위원회, 노르웨이 아동ombudsman, 스웨덴 아동ombudsman, 영국 웨일즈 아동위원회, 필리핀 인권위원회 아동권리센터, 일본 ombudsman 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권리신장 노력으로서 호주,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짐바브웨, 영국, 프랑스 등의 청소년의회 운영사례를 알아보았다. 청소년 인권단체·기관 현황으로는 미국아동보호재단, 아동권리정보네트워크(CRIN), 영국 BBC 방송국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영국아동학대예방협회, 호주 아동·청소년법률센터, 국제아동보호연구네트워크(Child Watch International), 벨기에 아동권리센터, 네팔의 아동권리클럽,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한 영국시민단체그룹, 캐나다 국제아동권리국 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많은 국가들이 청소년권리신장을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ombudsman이나 국가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가적 수준의 기관뿐만 아니라, 아동권리센터나 법률센터 등 민간부문의 권리단체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향후 오랜 경험과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외국의 인권기구 운영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인권 실태와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인권 실태 자료는 청소년인권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인권센터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측면에서, 2000년도에 실시한 청소년인권의식조사 도구를 일부 활용하여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게 하였으며, 청소년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인권 실태와 인식을 함께 알아 보았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인권 실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우리사회의 청소년권리수준'에 대해 청소년은 10.7%가, 청소년지도자는 4.7%가 '잘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청소년권리 수준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학교·사회에서의 청소년의 권리(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실태를 알아본 결과, 청소년들의 권리 수준은 대체적으로 '가정 - 학교 - 사회'의 순서로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 '입시제도 및 과도한 학습과제(32.4%)', '청소년을 미숙하고 통제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인중심적 사고(26.9%)', '청소년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부족(17.0%)', '청소년들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부족(15.7%)', '청소년의 권리행사와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및 프로그램 부족(6.4%)'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청소년권리 신장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어리다고 청소년을 무시하는 어른들 인식의 변화(55.3%)', '청소년 관련 법·제도의 개선(16.2%)', '청소년 권리에 대해 교육·상담할 수 있는 기구(청소년인권센터 등) 운영(10.4%)', '학생자치활동 등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 확대(9.9%)', '청소년 및 청소년 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6.6%)'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청소년지도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자의 권리 수준에 대해 '잘 보장받고 있다'는 의견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인권사업을 담당하고 시행할 지도자들의 권리 수준 또한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지도자의 권리신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는 '전문직으로서의 지위와 신분보장 제도화'가 57.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임금수준 현실화 및 처우개선(54.3%)', '지속적인 교육관리를 통한 전문성 확보(46.3%)', '사회적 인식확대 및 홍보활동' 19.4%, '지도사 네트워크 구축 및 조직화' 13.1%, '기타' 5.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7.8%의 청소년이 권리보장을 위한 단체나 기관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자 또한 94.3%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18.0%에 불과했으며, 청소년지도자는 54.1%로 절반을 조금 넘었다.

청소년인권교육, 인권상담 및 해결 등 청소년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수행할 기관으로 '청소년인권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68.7%의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청소년지도자는 88.8%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청소년인권센터' 설립시 가장 필요한 활동으로 두 집단 모두 '인권 침해사태에 대한 상담과 대처', 그리고 '청소년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시'와 '청소년지도자와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이라고 응답하였다.

'청소년인권센터'에서 상담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3%에 그치는 상황이며, 만족을 느끼는 청소년은 41.4%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의 원인으로서는 '인권상담의 전문성의 취약성'(57.1%)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그 외에 인권침해사태와 관련된 현실적인 방안제시의 어려움(14.3%), 인권상담 후 만족할 만한 구제조치를 받지 못함(14.3%)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청소년인권센터의 설립 유형과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중앙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 인권센터 필요성을 알아본 결과, 중앙단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별 인권센터의 필요성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시·도 청소년인권센터와 시·군·구 청소년인권센터 모두 기존기관의 부설형태보다는 독립적 기관으로 설립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 중에서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4.1%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업진행을 위한 인력 및 재정 부족(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의 참여 부족(16.7%)'과 '학교 및 관련기관의 이해와 협력 부족(16.7%)' 등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인권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인권프로그램의 개발·보급(30.9%)’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육성업무 관계자의 청소년인권의식 함양(30.4%)’, ‘인권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17.8%)’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향후 청소년인권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모델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실문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중앙청소년인권센터, 시·도청소년인권센터, 그리고 지역청소년인권센터별로 조직, 인력, 사업, 재원, 시설과 설비, 협력관계 부분의 운영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VI장 청소년인권센터 운영모델과 활성화 방안’ 참조). 향후 설립·운영될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모델로는, 중앙과 시·도 단위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시·군·구 단위는 기존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상담실의 부설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청소년인권센터 모델 현실화 및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느정도 접근성과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 시·도 단위에서(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등) 청소년인권센터의 조직, 인력, 재원, 사업 등을 갖춘 시·도센터를 시범 설치·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공공 청소년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뿐만 아니라, 민간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시·도청 설치 인권센터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거나, 지방정부 예산이나 청소년육성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교육훈련 기회확대와 자료와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셋째, 정부와 민간이 다양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서 - 인권활동가 교육훈련비 지원, 공공건물 회의공간 지원, 인권교육자료 출판비 보조, 청소년인권센터 인턴 인건비 지원 등 - 청소년인권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사회적으로 청소년인권활동

에 대한 다양한 지원기관을 확보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인권재단과 같은 지원법인이 발족되어 청소년단체나 인권단체의 청소년인권프로그램과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로서 청소년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 각 국가에 설치를 장려하고 있듯이, 청소년인권위원회는 청소년인권 업무의 총괄기구이자 대외 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여섯째, 청소년인권 실태와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학술적 연구를 통해 발표할 수 있는 한국청소년권리학회 창립을 통해 아동에 비해 참여권과 발달권에 대한 보다 체계적 연구와 청소년인권신장을 위한 대안적 생활양식을 확산할 수 있다.

일곱째, 청소년 인권침해를 정당화시키는 법을 제·개정한다. 민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검토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상충되거나 청소년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제·개정하고, 11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청소년기본법개정안과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인권조항 실현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실질적이고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2003년 수립된 '제3차 청소년육성 기본계획(2003~2007)'은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을 '청소년 권리신장을 위한 제도 정비' 분야 핵심 추진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청소년 인권사업을 전담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청소년인권센터 활성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 백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II. 청소년 인권현황과 개선 방향	9
1. 아동·청소년 인권 현황	11
2.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22
III.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실태	29
1.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개요	31
2. 주요사례로 본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현황	59
1) 광주시 청소년인권센터	59
2) 흥사단 청소년인권센터	72
3. 종합 분석 :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와 과제	83
IV. 외국의 청소년 인권신장활동과 인권기구 운영 사례	95
1. 주요 외국의 청소년 인권신장 활동	97
2. 청소년 인권기구 운영 사례	111
1) 아동·청소년 ombudsman 기구	111
2) 청소년의회	122
3) 청소년 인권단체·기관	134
3. 시사점	146
V. 청소년권리와 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49
1. 청소년대상 설문조사 결과	151
1) 조사개요	151
2) 조사결과	159
3) 조사결과 요약	225

2. 청소년지도자대상 설문조사 결과	227
1) 조사개요	227
2) 조사결과	234
3) 조사결과 요약	259
3. 종합 요약	262
VI. 청소년인권센터 운영모델과 활성화 방안	271
1. 운영모델 구상의 전제	273
2. 중앙청소년인권센터	281
3. 시·도청소년인권센터	290
4. 지역청소년인권센터	297
5. 청소년인권센터 활성화 과제	301
참고문헌	305
부 록	313
1. 청소년용 설문지	315
2. 청소년지도자용 설문지	327
3. 청소년인권센터 연락처	337

〈표 목 차〉

〈표 III-1〉	청소년인권교육 프로그램 내용 예시	33
〈표 III-2〉	인권영화제 내용	54
〈표 III-3〉	청소년인권센터 설립·운영 현황	84
〈표 V-1-1〉	설문영역 및 내용	153
〈표 V-1-2〉	조사대상자의 특성	158
〈표 V-1-3〉	가정에서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160
〈표 V-1-4〉	가정에서 체벌을 자주 받는다	161
〈표 V-1-5〉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적 학대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162
〈표 V-1-6〉	가정에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교육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	164
〈표 V-1-7〉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를 참여시킨다	166
〈표 V-1-8〉	가정에서 내 개인적인 생활과 비밀을 존중해 주신다	167
〈표 V-1-9〉	안전사고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여건	169
〈표 V-1-10〉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적이 있다	170
〈표 V-1-11〉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자주 하신다	173
〈표 V-1-12〉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176
〈표 V-1-13〉	교칙을 제정하는데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178
〈표 V-1-14〉	소지품 검사나 두발과 복장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179
〈표 V-1-15〉	벌이나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을 변호할 절차를 가지고 있다	182
〈표 V-1-16〉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받을 권리	183
〈표 V-1-17〉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85
〈표 V-1-18〉	유해물건·약물·시설·장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86
〈표 V-1-19〉	아동·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될 권리	189
〈표 V-1-20〉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	190
〈표 V-1-21〉	휴식과 문화생활 참여 권리	192
〈표 V-1-22〉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벌받을 권리	196
〈표 V-1-23〉	청소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199
〈표 V-1-24〉	‘유엔아동·청소년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201
〈표 V-1-25〉	청소년들의 자발적 인권운동을 알고 있다	202
〈표 V-1-26〉	청소년 정책참여를 위한 자치기구에 대해 알고 있다	204
〈표 V-1-27〉	근로청소년들은 어려운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206

<표 V-1-28> 청소년들은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207
<표 V-1-29> 청소년들의 자유권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209
<표 V-1-30> 어떤 아이들은 왕따 당해 마땅하다	211
<표 V-1-31>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	213
<표 V-1-32> 청소년의 권리수준 열악원인	217
<표 V-1-33> 권리신장 과제	222
<표 V-1-34> ‘청소년인권센터’ 설립의 필요성	223
<표 V-2-1> 설문영역 및 내용	229
<표 V-2-2> 조사대상자의 특성	232
<표 V-2-3> ‘유엔아동·청소년권리협약’의 내용을 어느정도 안다	235
<표 V-2-4>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위한 자치기구에 대해 알고 있다	236
<표 V-2-5> 청소년들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238
<표 V-2-6> 청소년의 열악한 권리수준의 원인	241
<표 V-2-7> 인권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본 경험	243
<표 V-2-8> 청소년인권센터의 지도감독기능 담당부처	245
<표 V-2-9> 시·도 청소년인권센터 설립형태	246
<표 V-2-10> 부설기관으로서의 시·도 청소년인권센터 형태	247
<표 V-2-11> 임금수준 현실화 등 기본적 생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	250
<표 V-2-12> 부당한 업무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253
<표 V-2-13> 근무기관(단체)에서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	256
<표 V-2-14> 청소년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참여 및 후원정도	259
<표 VI-1> 청소년인권센터에서 수행할 활동	284

[그림 목차]

[그림 III-1] 청소년인권모니터단 활동체계	39
---------------------------------	----